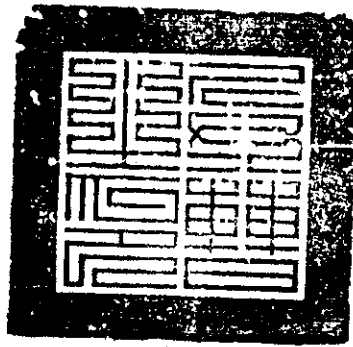


軍史

第 33 號



國防軍史研究所

軍史

第 33 號

1996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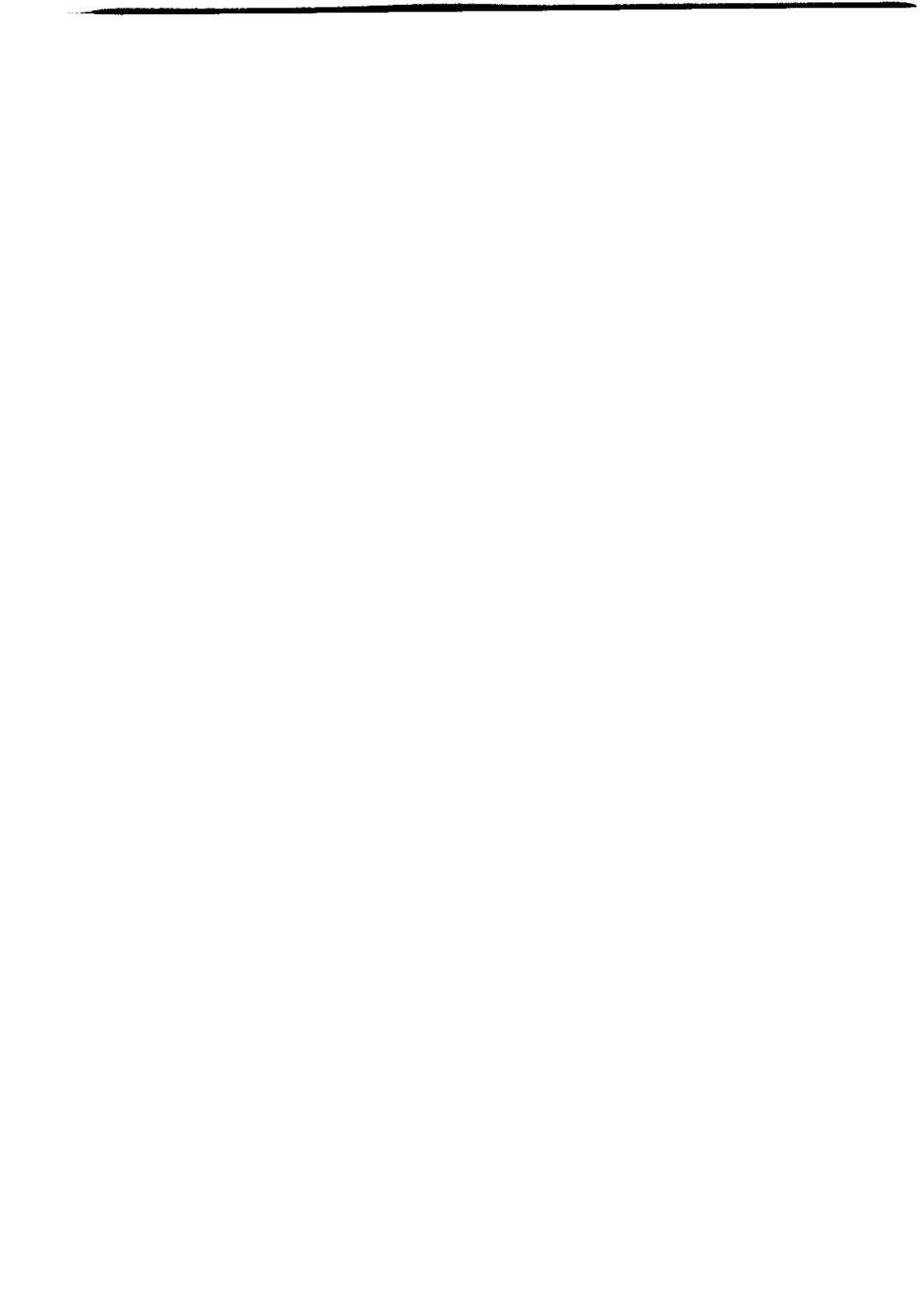
-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 李 仁 哲(1)
- 百濟勢力의 加耶進出과 加耶의 對應
..... 李 熙 眞(35)
- 高麗 武臣執權期 私兵의 성격
..... 오 영 선(63)
- 朝鮮前期 城郭 研究
..... 柳 在 春(87)
- 朝鮮後期 銃砲類 研究
..... 柳 承 宙(115)
- 朝鮮後期 訓練都監 運營의
社會經濟的 影響 金 鍾 洙(157)
- 丙寅洋擾와 興宣大院君 政權의 對應
..... 연 갑 수(189)



순국선열(국립) / 300. 戰爭紀念館(所設)
 조선전쟁때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가장 장엄적인 성역(城廓)

- <독립신문>에 나타난 國防關係記事의 檢討
 李相一(215)
- 大韓帝國 軍事訓練 體系에 대한 一考察
 徐仁漢(237)
- 韓國戰爭 以前 北韓의 統一論과 그 性格
 梁寧祚(255)
- 에도(江戶)시대 일본 蘭學者들의
 軍事論에 대한 연구
 朴榮濬(287)
- 크리미아 戰爭時 新聞報道가
 英國軍에 미친 影響 元泰載(323)

- 新刊紹介 (349)
- 「軍史」誌 投稿案内 (353)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李 仁 哲
(中央大 講師)

1. 머리 말
2. 고구려의 武器와 武裝
3. 고구려의 對百濟戰과 중장기병
4. 고구려의 對新羅戰과 중장기병
5. 맺음 말

1. 머리 말

4세기 전반에 고구려는 오늘날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같은 시기에 백제도 낙랑·대방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北進하였다.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급기야 평양성까지 밀고 올라온 백제군을 맞아 항전하던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밀고 밀리던 전쟁 양상은 소수림왕대 후반에서 고국양왕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고구려가 對百濟戰에서 세력의 우위를 보이게 된다. 광개토왕대에 이르면 영락 6년(396)에 고구려가 황해도

2 軍 史

지역을 완전히 장악함은 물론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임진강 이북과 인천 등지의 58성 700촌을 차지하게 된다.”

영락 10년에 고구려는 步騎 5萬을 파견하여 신라와 가야 지역에 침입한 倭를 격퇴하고 당시 한반도 내의 나라 간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장수왕대에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뿐 아니라 신라에 대해서도 침략을 감행한다. 마침내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게 되고, 백제는 고구려 세력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이렇게 남진한 고구려의 남방한계선은 『三國史記』 지리지 등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충청도 북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제압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필자는 고구려가 그토록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의 우수성에 있음을 고고학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특히 고구려가 보유한 重裝騎兵이 삼국 간의 대결에서 보여 준 威力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고구려가 4~5세기경에 보유했던 무기·무장을 고고학적인 발굴자료와 고분벽화를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백제의 무기·무장과 고구려의 무기 무장을 비교하면서, 對百濟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고찰하려 한다. 끝으로 對新羅戰에서 고구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필자는 이 같은 검토를 통하여 한국고대 전쟁사에서 환상적인 영웅사관을 청산하고, 보다 과학적인 역사 인식에 도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李仁哲, 1996 「廣開土好太王碑 守墓人烟戶條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 제2회 高句麗國際學術大會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下)』, pp. 67~78.

2. 고구려의 武器와 武裝

4~5세기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무기와 무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무기와 무장 특히 중장기병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요청된다.

고구려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무기·무장의 양은 신라나 가야지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이는 고구려 고분이 주로 적석총 혹은 돌간 흙무덤으로 만들어진 탓도 있겠지만, 『隋書』高句麗傳에 ‘(고구려에서는) 3년장을 지냈으며, 장례식 때에는 고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무덤 옆에 쌓아 놓고 모인 사람들이 다투어서 가져 간다’라고 한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부장하지 않았던 것에도 연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을 통하여 보는 바와 같이,²⁾ 그 동안 고구려 고분의 발굴에서 적지 않은 무기와 무장이 출토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다소간 이루어졌다.³⁾

<표 1>에서 찰갑쪽을 제외한 무기의 총합계는 203점이다. 개별무기가 전체무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활이 0.99%, 鐵鏃이 63%, 명적이 1.47%, 철모가 14.78%, 끝형무기가 0.49%, 환두대도가 6.4%, 短刀가 3.94%, 刀子가 3.4%, 철부가 4.43%, 갈구리가 0.99%이다. <표 1>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것은 철촉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고구려군의 절반 이상이

- 2) <표 1>은 『고구려문화사』(논장, 서울, 1988, p. 101)와 기타 발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3) 전주능, 1958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1) - 고분벽화 자료를 주로 하여』 『문화유산』 1958-5; 전주능, 1959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Ⅱ) - 고분벽화 자료를 주로 하여』 『문화유산』 1959-1; 역사과학연구소, 1975 「무기와 무장」 『고구려문화사』 (1988, 논장, 서울); 金基雄, 1985 「武器와 馬具(高句麗)」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 15, pp. 39~61; 耿鐵華·孫仁杰·遲勇, 1993 『高句麗兵器研究』, 延邊大學出版部; 金性泰, 1993 「高句麗의 武器(1)」 『文化財』 26; 金性泰, 1994 「高句麗의 武器(2)」 『文化財』 27.

4 軍 史

<표 1> 고구려 유적의 무기와 무장

유적명	무기종류		철축	명적	철모	끝형 무기	한두 대도	단 도	도 자	철부	찰갑 쪽	갈구 리
	활	총										
1 노남남파동유적			3	2					1	1		
2 노남리104호분				1								
3 심귀73호분			1							1		
4 풍청33호분					1				2	1		
5 공귀리돌각담무덤			1									
6 고산진적석무덤					6					1		
7 자성군송암리유적			1									
8 범동돌간무덤								1				
9 농오리무덤					1			1				
10 평양역구내고분	2		3									
11 안악3호분					3							
12 고산동10호분			3									
13 평양평천리							1					
14 고산6호분						1						
15 고산7호분			4									
16 보림리18호분						1						
17 장성리적석총			5									
18 고령묘자촌15호분			2		1		1					
19 집안동대자유적											1	1
20 마선구1호분			4							1		
21 집안상해방고분			1		3		1			1		
22 산성자산성			1		1							
23 통구13호분			4									
24 집안만도리고분			2									1
25 환인현연강향고분			2		2		5					
26 무순고이산성			7		2							
27 집안성후대대			6									
28 집안민주대대			1									
29 북창군대평리유적			3									
30 집안우산묘구적석묘			31		5		2	5			77	
31 집안장천2호분			5						1			
32 하활동촌고묘							1					
33 국내성지			2									
34 나룡산성			4									
35 통구고구려묘								1		1		
36 집안고구려묘			4				1				2	
37 산성하묘구332호분			12									
38 중강토성리			4						1	1		
39 칠성산96호분			2		1							
40 우산하41호분			1		2						155	
41 노남125호분			3									1
42 운평리8호분					1		1			1		
43 평양시상원군2호분					1							
44 평양시지경동무덤			6						1			
계	2		128	3	30	1	13	8	7	9	235	2

弓을 사용하는 병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화살촉의 속성상 각개 병사가 그것을 여러 개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출토량이 많게 나타났을 뿐이다. 무기의 속성으로 보면, 고구려 병사들이 많이 소유했던 무기는 오히려 鐵矛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철모 다음으로 많이 발굴된 무기는 環頭大刀, 鐵斧, 短刀, 刀子순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무기와 무장에 대해 정리해 놓은 <표 2>를 통해서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표 2> 고구려 고분벽화의 무기와 무장⁴⁾

무덤 명	무기종류								
	활	철모	한두 대도	철검	단도	철부	갑주	연대	
1 평양역전벽화고분				1		6		4C전	
2 감신총			4				4	4C전	
3 안악 3호분	8	27	5	3		20	다수	4C후	
4 씨름무덤	1				1			4C말	
5 안악1호분	1							4C말	
6 안악2호분		14	1				2	4C말	
7 무용총	4				1			4C말	
8 통구12호분	4	2	2					4C말	
9 매산리사신총	1							4C말	
10 약수리벽화고분	3	13	2			5	15	5C초	
11 세간무덤		2	1				3	5C	
12 대안리1호분	1	7					다수	5C	
13 팔청리벽화고분		1					1	5C	
14 쌍기둥무덤	1	1					1	5C후	
계	24	67	15	4	2	31	다량		

4) 박진욱, 1970 「3국 무기의 특성과 그것을 통하여 본 병종 및 전투형식」 『고고민속논문집』 2, p. 62; 역사과학연구소, 1975 『고구려문화사』 (1988, 논장), p. 101; 박진욱, 1991 『조선고고학전서 - 중세편 1』, pp. 238~242.

6 軍 史

〈표 2〉에서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총합은 143점이다. 〈표 2〉에서 새로 나타난 현상은 철촉의 숫자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데 비하여 활과 鐵矛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사실이다. 이는 활이 소의 갈비뼈로 만든 유기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땅 속에 묻혀 있는 동안 대개 썩어 없어져서 고분에서는 출토된 것이 별로 없으나,⁵⁾ 고분벽화에서는 그것이 그림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개별무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철모가 46.85%, 철부가 21.68%, 활이 16.78%, 환두대도가 10.49%, 철검이 2.79%, 단도가 1.39%순이다.

고구려의 활은 彎弓으로 길이가 짧아서 騎兵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⁶⁾ 그러나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보면 활은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병의 무기였다.⁷⁾ 고구려의 활촉은 초기에는 도끼날형·五角形·柳葉形 등의 넓적촉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넓적촉뿐 아니라 외날갈형·끝형·송곳형 등 뾰족촉이 나타나고 드물게는 變形兩翼形도 있다.⁸⁾ 넓적촉은 적이 화살을 맞았을 경우에 살상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나 적이 甲冑로 무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통력이 떨어지게 된다. 후기로 가면서 고구려에서 넓적촉과 함께 뾰족촉이 사용된 사실은 고구려의 전쟁상대인 백제나 신라의 병사들이 점차 갑옷으로 무장하였음을 보여준다.⁹⁾

鐵矛는 자루의 길이에 따라 장창과 단창으로 구분한다. 장창은 여러 사람이 같이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보병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으며¹⁰⁾

5)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p. 49.

6) 전주농, 1958 앞의 논문, p. 12; 박진욱, 1964 「삼국시기의 활과 화살」 『고고민속』 1964-3, p. 7;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p. 68.

7) 堀田啓一, 1983 「高句麗壁畫古墳にみる武器と武裝—特に安岳3號墳と藥水里壁畫古墳を中心に—」 『展望アジアの考古學』 考古學研究所論集, p. 515.

8) 金基雄, 1980 「古代 韓·日 兩國의 武器—考古學上으로 본 古代 韓·日關係史의 한 側面」 『日本文化的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p. 374.

9) 고구려 초기 활의 유효사거리는 50~80m 정도였고 평양 천도 무렵에는 100m 정도 되었다고 한다(金性泰, 1993 앞의 논문, p. 16).

10) 「作矛長三丈 或 數人共持之 能步戰」 (『三國志』 魏書東夷傳 濊傳)

기병이라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기병은 대체로 자루가 긴 長槍을, 보병은 자루가 짧은 短槍을 사용하였다.¹¹⁾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창을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기병이다. 이에 창을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은 기병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

칼에는 철검과 환두대도·대도·단도·도자가 있었다. 삼국시대에 칼을 사용한 병사는 대부분 보병이었다.¹³⁾ 漢代에 騎兵이 발달하면서 直刀가 기병의 무기로 되었다. 접근전에서 기병이 장창을 놓쳤을 경우에 직도를 뽑아 적을 베었던 것으로 보인다. 劍이 부러지기 쉬운 데 비하여 직도는 잘 부러지지 않아 애용되었다. 이에 따라 직도는 보병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¹⁴⁾ 刀는 그 길이에 따라 大刀와 短刀, 刀子로 나누고, 손잡이에 고리가 있는 것을 환두도라 한다. 대도가 발전하여 환두대도가 되었는데, 환두대도는 고리에 끈을 매어 전투 도중에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환두대도는 龍의 머리 등 화려한 장식이 가미되면서 무기라기보다는 의기로 전락하였다. 短刀나 刀子는 육박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근거리에서 적에게 던져서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였다고 생각된다. 도자나 단도는 각개 병사들이 모두 허리의 칼집에 넣어 차고 다녔을 것이다.

도끼는 갑옷을 입은 적을 쳐죽이는 데 적절한 무기였는데,¹⁵⁾ 안악 3호분이나 약수리고분의 벽화를 통해서 보면 보병만이 보유하고 있어 도끼가 보병의 무기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갈구리나 鐵戈는 보병이 말을 탄 적의 기병을 끌어내리는 데 적절한 무기였다.¹⁷⁾

안악3호분과 약수리고분 등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보면, 각개 병사들은

11) 보병용 창은 200cm, 기병용 창은 250cm 정도였다고 한다(김성태, 1994 앞의 논문, p. 234).

12) 박진옥, 1970 앞의 논문, p. 68; 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p. 515.

13) 박진옥, 1970 앞의 논문, p. 68; 김기웅, 1980 앞의 논문, p. 460.

14) 篠田耕一, 1992 『武器と防具(中國編)』, p. 37.

15) 篠田耕一, 1992 앞의 책, pp. 67~69.

16) 박진옥, 1970 앞의 논문, p. 68.

17) 박진옥, 1970 앞의 논문, p. 69.

하나씩의 무기만을 소지하고 있다. 화살이나 철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명의 병사가 여러 개를 소지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무기들은 한 명의 병사가 한 개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된 무기나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 숫자를 파악하여 전체 군인의 병종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5세기경까지의 고구려고분벽화에서 활을 든 24명의 병사는 弓手이고, 창을 든 67명의 병사는 槍手이고, 환두대도를 소지한 15명은 刀手이며, 검을 든 4명은 劍手이고, 도끼를 든 31명은 斧鉞手이다. 이 가운데 刀手·劍手·斧鉞手는 모두 步兵이고, 弓手와 槍手 가운데는 步兵 혹은 騎兵이 있지만, 弓手는 주로 보병이고 창수는 주로 기병이었다. 다만, 短刀나 刀子는 각개 병사가 모두 소지하기 때문에 무기 소지여부를 근거로 병종을 나눌 수는 없다.

고구려의 총체적인 전쟁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고분벽화에 보이는 고구려군의 무장상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2>를 통해서 보면, 고구려 병사들은 4세기 전반기에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 고구려 본기에는 동천왕 20년(246)에 鐵騎 5千을 거느리고 魏의 대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이 鐵馬와 甲冑로 무장한 시기는 3세기 전반경이었던 모양이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갑주는 대부분 鐵로 된 札甲로 만들어졌으나 革甲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⁸⁾ 감신총에 이어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까지도 갑주로 무장하였던 사실을 알려 준다. 甲冑로 중무장한 鐵馬長槍騎兵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적군의 살상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쟁양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 헤아려진다.

4세기 후반의 고구려군은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일까(圖 1). 안악3호분이 만들어진 시기는 370년대 후반으로 생각된다.¹⁹⁾ 고구려는 313년경에 낙랑군과 대

18) 전주봉, 1959 앞의 논문, pp. 53~66;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p. 56.

19) 李仁哲, 1997 「安岳3號墳의 蓮花紋과 墨書銘」 『강인구교수 기념논총』 게재 예정.

방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으로 남하하였다. 고구려가 낙랑·대방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이 지역의 문화를 상당히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고구려의 낙랑지역 점령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낙랑지역인 정백동 2호분, 정오동 5호분·10호분, 부조예군묘 그리고 석암리9호분·200호분·212호분, 이천리1호분 등에서 쇠뇌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²⁰⁾ 고구려가 낙랑지역을 점령한 한 고구려가 낙랑의 쇠뇌 제작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쇠뇌를 제작하거나 그 기술을 섭취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안악3호분 목서명의 주인공인 冬壽와 같은 인물들이 전연으로부터 망명해 오에 따라 前燕으로부터 무기와 무장의 제작기술이 고구려로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국원왕대에는 모용황의 침략을 받았는가 하면, 백제와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이는 안악3호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고구려군은 벽화에 보이는 상태와 같은 정도로 무장하지도 않았고, 쇠뇌의 제작이나 그 사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소수림왕 초기에 전연과 前秦의 교체기에 많은 투항자가 있었고, 이어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전진과 우호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전진으로부터 발달된 무기와 무장의 제작기술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고구려군이 벽화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로 철제갑주로 무장하고 쇠뇌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된 시기는 광개토왕대로 짐작된다. 덕흥리벽화고분 목서명 중에는 쇠뇌를 소지한 말탄 사람 옆에 “계현영이 쇠뇌(弩)를 들어 올렸다”는 글귀가 있다. 이 고분의 墓主에 대해서는 고구려인 설과 중국인 망명객 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이지만 묘주인 鎭이 고구려에서 벼슬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며, 고분의 위치가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라는 점을 감안하면,²¹⁾ 이 고분의 벽화를 그린 사람은 고구려인

20) 『北韓文化遺蹟發掘概報』(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pp. 34~55; 리창연, 「거툴무덤에 묻힌 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년 1호, pp. 6~12.

21) 徐永大, 1992 「德興里古墳 墨書銘」(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pp. 72~90.

일 가능성이 많다. 고구려인 화가가 쇠뇌의 모양을 제대로 알고 벽화를 그렸을 뿐 아니라 목서명을 남겼다면, 당시 고구려에는 쇠뇌가 널리 알려진 무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덕흥리벽화고분이 만들어진 시기는 영락 18년(408)으로 광개토왕대에 해당한다.

광개토왕대에 해당하는 또 다른 벽화고분은 약수리고분이다. 약수리고분에 보이는 행렬도는 안악3호분의 그것에 비하여 빈약하다.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서는 좌우 각기 3열의 병사들이 주인공을 호위하고 있으나, 약수리고분의 벽화에서는 좌우 1열의 병사들이 주인공을 호위하고 있다(圖 2). 안악3호분에 보이는 弓隊는 약수리고분벽화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약수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이 안악3호분 벽화의 주인공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²²⁾

지위가 낮음에도 약수리고분벽화는 찰갑으로 무장한 鎧馬의 숫자(14)가 안악3호분(8)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는 바로 5세기 초 약수리 고분벽화의 단계에 이르면, 고구려의 일반 병사들도 甲冑와 개마로 상당수 중무장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약수리고분의 벽화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이 步兵重視에서 騎兵重視로 전환하고 기마병의 방어용 무장인 甲冑와 鎧馬의 장비와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³⁾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는 갑주와 개마로 무장한 중장기병을 앞세우고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5세기 이후 고구려군은 모두 갑주와 개마로 중무장한 기병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약수리고분벽화에 분명히 나타난다. 약수리 고분벽화에 보면, 말을 탄 사람 가운데 20명은 갑주와 개마로 무장한 병사가 아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기병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갑주와 개마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중장기병은 적이 쏘는 화살에 가깝하게 대응하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으나 경무장의 기병에 비해 질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퇴각할 시기에 적의 경무장기병에게 공격

22) 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p. 523.

23) 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pp. 511~512.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투에서 기병이 보병에 비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圖 3)

페르시아전쟁 이후 기병의 기동타격력은 인정되어 왔다. 인간과 비교했을 때 말은 크고, 상대를 놀라게 하는 짐승이다. 말을 탄 기병이 공격했을 때 보병이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반면에 말들은 쉽게 무서움을 타며 흐트러지지 않는 적군의 창병 전열을 향해 달려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병은 접전하기 전에 선회한다. 기마병들은 창에 찔리기를 원하지 않으며, 창병에 대한 정면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창병의 전열을 향한 기병대의 위대한 공격이란 낭만적인 개념은 존 키간의 『전투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널리 밝혀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전쟁사가들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고, 기병 지휘관도 물론 알았을 것이다.²⁴⁾

무너지지 않은 전열을 향해 기병이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병대의 공격으로 적보병의 전열이 무너지거나 당황하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병은 성공적으로 보병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할 수도 있었다. 기병대 지휘관이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는, 적군의 보병 전열이 현재는 상당히 강력한 대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사기를 잃을 것이며 공격 앞에 취약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병전열에 대한 기병의 공격은 보병전열에 빈 틈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²⁵⁾

중무장한 고구려의 기병이 적의 보병대열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면서 적에 대해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병은 주로 정찰을 위한 목적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적군의 측면 또는 후면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²⁶⁾ 정찰이나 적군의 측면이나 후면 공격은 기동력이 빠른 경무장 기병이 훨씬 유효하다. 기병공격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병의 근접지원이 중요하다.

24) 아더 웨일, 『전쟁의 기원』 1985(이춘근 역, 1990), p. 108.

25) 아더 웨일, 앞의 책, 1990, p. 109.

26) 아더 웨일, 앞의 책, 1990, p. 109.

이에 기병 못지 않게 보병이 필요한데 약수리고분의 벽화에는 도끼를 맨 상당수의 보병이 그려져 있다.

이는 고구려군의 병종 편성이 기병이 중심이었기는 하지만 보병도 상당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아마도 고구려군의 공격부대는 주로 기병으로 구성되었겠지만 城에 주둔해 있던 병력은 대부분 보병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성에 주둔해 있던 병력도 모두 보병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헤아려진다. 기병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은 궤멸되어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것이다. 전투에서 인명피해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때 발생한다.²⁷⁾ 따라서 성에 주둔한 高句麗軍 가운데도 상당수 기병이 있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5세기 초 고구려군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손에는 활이나 장창을 들고 개마를 탄 重裝騎兵을 앞세우고 그 배후에 역시 활과 장창을 든 輕騎兵이 따르고, 그 뒤에 갑주로 무장한 보병이 활이나 쇠뇌, 창, 도끼, 환두대도 등을 들고 공격에 나섰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병사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군의 무장상태는 당시 백제나 신라·가야에 비해 우수한 것이었다.²⁸⁾ 고구려군은 이러한 우수한 무기와 무장에 힘입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에 대대적으로 남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4~5세기 단계에 甲冑로 무장한 중장기병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역시 갑주무장의 보병을 배합한 고구려군은 弓·矛·斧·刀·弩 등을 사용하는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고구려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비율이 철도가 46.85%, 철부가 21.68%, 활이 16.78%, 환두대도가 10.49%, 철검이 2.99%, 단도가 1.39%인 점으로 보아 고구려군은 長槍騎兵의 숫자가 다른 兵種에 비하여 많고, 弓·矛·斧·刀를 사용하는 보병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弩兵은 소수였다. 고구려군은 이러한 무기체제로 무장을 하고 4~5세기에 대대적으로 남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군과 백제군도 빠른 속도로 철제갑주로 무장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

27) 아더 웨일, 앞의 책, 1990, p 110.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술한다.

추게 됨에 따라 삼국 간의 항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3. 고구려의 對百濟戰과 중장기병

고구려가 對百濟戰을 어떻게 전개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백제의 무기와 무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3〉 경기·충청지역 출토의 무기와 무장²⁹⁾

유적명	철촉	철모	철창	철검	철구	철창	철검	환두대도	대도	단도	도자	철부	갑주	마구	연대
청당동고분	31	12		5		2		4			6	10			3C
청주송절동고분군	6	2			?	1					1				3C
석촌동고분	6	2		8			2				8	4			3C
연천삼꽃리적석총	2														3C
몽촌토성	1		1	1							1	1	B		3C
천안화성리유적	1							1							4후
화성백곡리고분	9	2		2					1		3	2	P	Z	4후
신봉동고분(82년 14)	24	7		7		5		1			5	12		9DZ	4후
신봉동고분(90년)															
A 지구(74기)	25		1	9		3		3	4		22	7		DZ	4후
B 지구(25기)	54	1		4	2			3			13	5	P	DZ	5중
신봉동고분(92년)															
토광묘(110기)	174	4		29		14		5	6	11	56	34		DZ	4후
황철석실분(2기)	3	1									1		T	D	5후
송산리 2호분	3	1							1						5후
송산리 3호분									1						5후
송산리 4호분	43	1													5후
송산리 5호분	11								1		1				5후
논산표정리 고분군	6	1								1	1	1			5C
논산모촌리 고분1차	24	1		1		1	1		1		4	1			5후
논산모촌리 고분2차	68			3				1	1	1	3	3			5후
계	491	35	2	69	3	26	3	15	19	13	125	80			

29) 이 글의 〈표〉에서 갑주와 마구 항목에 P는 판갑, B는 골갑, T는 투구, C는 찰갑, D는 등자, Z는 재갈, U는 운주, M은 頸甲, H는 柵葉, A는 鞍橋, *는 특이형 무기가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충청지역에 있는 백제의 왕릉이나 지배층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고분에서 무기나 무장의 출토량이 극히 적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의 지배층 역시 고구려 계통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생전에 유품들을 시신과 함께 매장하지 않는 장례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의 고분에서 무기과 무장이 적게 출토되는 현상은 백제의 군사력이 신라나 가야에 비하여 약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박장관습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도 소수의 무기과 무장이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표 3〉은 5세기경까지 경기·충청지역에서 출토된 무기과 무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무기의 합은 881점이고, 그 가운데 철촉이 55.73%, 도자가 14.19%, 철부가 9%, 鐵鎌이 7.83%, 鐵矛가 3.97%, 철착이 2.95%, 대도가 2.16%, 환두대도 1.7%, 단도가 1.47%, 철구가 0.34%, 철검이 0.34%, 철창이 0.23%순이다. 그러나 환두대도와 大刀는 같은 무기이고 철검도 같은 種의 무기라 보면 4.2%이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에서 활과 도자를 제외하고는 鐵斧가 가장 많이 사용된 무기이고, 다음이 철검이며, 그 다음이 철모와 大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고분에 발굴된 무기에 철모가 많은 것과는 달리 백제고분에서는 철부가 많이 출토되는 사실은 백제군의 병종편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鐵斧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적군이 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철검이 많다는 사실은 적군에 기병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철모가 적게 출토되고 있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제가 기병을 적게 보유했음을 보여 준다.

3세기에서 4세기 단계의 석촌동고분이나³⁰⁾ 연천삼곶리적석총³¹⁾ 그리고 몽촌토성에서³²⁾ 출토된 무기의 숫자를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 자체가 당시 백제 중앙군의 무기나 무장의 보유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

30) 서울特別市石村洞發掘調査團, 1986 『石村洞古墳群發掘調査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1986 『石村洞3號墳 東쪽 古墳群整理調査報告』

3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漣川三串里 百濟積石塚發掘調査報告書』

32)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 1987.

는 것은 아니라 본다. 몽촌토성에서는 쇠뿔 미늘갑옷의 찰갑 무더기가 발견되었다.³³⁾ 비록 발견된 예가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백제군이 일찍부터 牛骨札甲으로 된 갑옷으로 무장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마도 근초고왕대에 백제가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백제군의 상당수가 牛骨札甲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청당동 고분은 당시 백제의 남방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석촌동 고분이나 몽촌토성에 비해서는 무기의 출토량이 다소 많다.³⁴⁾ 『三國史記』 백제 본기를 통해서 보면 백제군의 전투도 대부분 城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토를 확장하여 성을 쌓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성에 주둔한 군대는 대부분 해당지역 주민들로 편성되고 일부 중앙의 군관이 주둔하는 형태였다. 城의 군대는 성의 방어를 중요 임무로 한다. 따라서 기록상 적의 영토를 침입하여 성을 탈환하는 군대는 중앙에서 출동하는 군대였다. 『三國史記』 백제 본기에서 보면 적의 영토로 침공해 들어가는 군대는 왕이 직접 통솔하는 병력이거나 왕의 측근 장군들이 이끄는 군대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3세기 단계에 백제군의 무기와 무장의 보유상태는 청당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 이상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청당동 고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철검과 刀子 그리고 도끼의 숫자가 많아진 점이다. 刀子は 육박전에서 호신용으로 유용한 무기라 생각되나 도지만 부장된 무덤은 여성의 무덤일 가능성이 많다. 낫(鐵鎌)과 도끼도 농기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다른 무기와 함께 출토되는 현상을 주목하면 역시 무기로 보는 편이 옳겠다. 도끼는 고구려고분 벽화에 분명히 무기로 그려져 있고,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된 예가 있다.³⁵⁾ 낫은 농기구이기도 하겠지만 전투에 사용되면 무기라 할 수 있다. 즉 고대의 전쟁에서는 무기와 농기구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농기구로 사용되면 농기구이고 무기로 사용되면 무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낫은 갈구리창이

33) 李康七, 1987 『韓國의 甲冑』, pp. 31~32.

34) 국립중앙박물관, 1993 『淸堂洞』.

35) 『三國史記』 列傳 7 訥儺傳.

나 鐵戈 대신 적의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거나 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데 유용한 무기였다고 생각된다.³⁶⁾ 3세기 단계의 백제의 말 무장에 馬具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시 전투가 보병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三國志』 韓傳에서 ‘말이나 소를 타고 다닐 줄 모른다’고 한 기록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 있을 것이다.

백제고분 가운데 마구와 板甲片이 출토된 것으로 시기가 가장 이른 고분은 화성백곡리고분으로 4세기로 편년된다.³⁷⁾ 이 고분에서는 재갈 1개, 교구 5개와 함께 소찰편 146개가 출토되었는데, 발굴 보고자는 이를 단갑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곡리고분과 같은 시기의 고분으로 마구가 많이 출토된 고분군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1982년도에 발굴한 청주신봉동고분이다.³⁸⁾ 1개의 석실분과 13기의 토광묘 중에 9기에서 등자 혹은 재갈이 출토되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백제가 기병을 상당수 편성하여 보유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1990년에 발굴한 신봉동A지구에는 71기의 무덤 가운데 단 3기에서만 마구가 출토되어 여전히 보병이 기병에 비해 훨씬 많았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청주 신봉동A지구 토광묘는 4세기 후반경에 축조되었다.³⁹⁾ 5세기 중반경에 조영된 신봉동B지구 25기무덤에서도 단 1기에서만 마구와 板甲이 출토되었다.⁴⁰⁾

역시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1992년에 발굴한 신봉동고분 110기의 토광묘와 2기의 횡혈식석실분에서도 15기에서만 등자, 재갈 등의 마구가 출토되고, 횡혈식석실분에서 투구가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4세기 후반, 횡혈식석실분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본다.⁴¹⁾

36) 金基雄, 1985 앞의 논문, p. 50; 1994 「三國時代의 武器」 『韓國武器發達史』, p. 81.

37) 姜仁求, 1994 『華城白谷里古墳』.

38)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淸州新鳳洞百濟古墳發掘調查報告書-1982年度調査』.

39) 車勇杰·禹鍾允·趙詳紀·吳允淑, 1990 「淸州新鳳洞A地區土廣墓群發掘調查報告」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40) 이원복·김홍주·김성명·박진우, 1990 「청주신봉동B지구널무덤발굴조사보고」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金成明·申鐘煥·李在烈, 1993 「淸州新鳳洞B地區2次發掘調查報告」 『考古學誌』 5.

신봉동고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철모와 철부의 출토량이 극히 적고 刀子의 출토량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자만이 출토되는 고분은 여성의 무덤일 가능성이 많다. 군인이 아닌 농민의 무덤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봉동고분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마구류와 갑옷의 출토이다. 마구의 출토는 신봉동고분이 백제의 동쪽 변경지역 고분이기 때문에 당시 백제의 중앙군은 상당수가 기병으로 조직되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신봉동고분 출토의 三角板釘結板甲과 투구는 5세기경에 백제의 중앙군이 상당수 갑주로 무장하였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두 개의 고분에서만 갑주가 출토되었을 뿐이어서 그 외의 다른 무덤에는 본래 骨甲이 매납되었으나 유기질이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주가 부장된 무덤의 주인공은 다른 무덤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신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주인공을 당시 신봉동 지역의 수장층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갑주의 제작 등에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백제의 중앙정부와 관련 있는 자로 보아 중앙에서 파견된 군관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갑주의 주인공이 중앙에서 파견된 군관이라면, 5세기 중반단계의 백제 중앙군은 철제갑주로 무장한 기병이 많았고 지방군도 골갑으로 무장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3세기에서 5세기 단계의 무기발굴성과를 통해서 보면,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철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는 각개 병사가 다량의 화살을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철촉 이외의 무기로는 철부가 9%, 철검이 7.83%로 비슷한 비율이고, 철모가 3.97%, 대도와 검이 4.2%이다.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에서는 철검의 숫자가 많은 사실이 주목된다.

4세기 이후에는 鐵矛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에 大刀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철검과 철부가 여전히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에서 백제군은 쇄뿔로 만든 札甲을 착용하고 4세기 후반에 판갑으로 무장하였다. 4세기 중반 이후에 마구가 출토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백제의 騎兵은 長

41)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淸州新鳳洞古墳群』.

槍뿐 아니라 활이나 大刀도 사용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백제유적에서 鐵矛의 출토량이 적다는 사실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같은 유형의 무기, 이를테면 竹槍과 같은 유기질 무기가 지방농민군의 보병용 근거리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백제의 유적에서 철모가 적게 출토된다는 사실은 또한 백제가 창을 주로 사용하는 기병을 적게 보유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백제의 騎兵이 활과 大刀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활과 대도는 고구려고분 벽화를 통해서 볼 때, 보병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보병은 鐵斧를 많이 사용하고 철검과 대도로 무장하기도 하였으나, 창을 사용한 예는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군이 사용한 활의 모습은 최근 발굴된 金銅龍鳳蓬萊山香爐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²⁾ 향로에는 두 명의 말탄 騎士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한 명이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 구도에서 활이 실제보다 크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되나, 활의 모양은 고구려 활과 같은 彎弓으로 되어 있어서, 백제에서도 기병이 만궁 즉 단궁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銅龍鳳蓬萊山香爐에 새겨진 두 명의 기사 가운데 활을 쏘고 있지 않은 기병의 머리 모습은 투구를 쓴 모양이다. 갑옷은 입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이기도 한다. 투구만 매장된 고분이 92년 충북대학교가 발굴한 석실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이 기사는 투구만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갑옷은 입지 않고 투구만 쓰고 있다는 사실은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하다. 이에 필자는 이 騎士가 입고 있는 옷이 革甲이 아닐런가 한다. 즉, 백제군은 骨甲·革甲·漆甲·鐵甲 등으로 무장하였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골갑과 철갑이지만 앞으로 革甲이나 漆甲이 발굴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제의 쏘는 무기로는 활 이외에 쇠뇌가 있는데, 홍수 때 풍납동토성에

42) 申光燮·金正完·金鐘萬·陳成燮, 1993 「扶餘陵山里建物址發掘調查概報」 『考古學誌』 5, pp. 211~229.

서 드러난 것이어서 시기는 알기 어렵다.⁴³⁾ 하지만 그것이 백제에서도 쇠뇌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려 주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宋書』 백제전에는 백제는 元嘉 27년(450)에 송으로부터 腰弩를 들여온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弩의 弦을 당기는 방법에는 손만으로 당기는 방법, 발로 弓을 밟고 손으로 당기는 방법, 허리를 사용하여 당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바,⁴⁴⁾ 송에서 들여온 腰弩는 허리를 사용하여 당기도록 만들어진 노가 아닌가 한다. 백제가 송으로부터 요노를 들여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구려군은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 철제갑주로 무장을 한 중장기병을 앞세우고 남하했다. 고구려군이 사용한 무기 가운데는 백제군이 보유하지 못한 쇠뇌(弩)가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군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백제군도 철제갑주와 쇠뇌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弩는 전국시대 이후에 중국 군대의 표준적 장비였다. 노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 것은 기동력이 뛰어난 북방이나 서방 유목민족의 騎兵과의 전투에서였다. 弩는 기병의 위력을 크게 저하시켰고, 기병이 쓰는 弓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병을 제압할 수 있었다. 후한말에서 삼국시대(3세기)까지 弩의 보급은 기병의 장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弩에 의해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 기병의 鎧甲은 더욱 단단해졌고, 馬에는 馬甲이 장착되어 重裝騎兵이 출현하게 되었다.⁴⁵⁾

고구려군은 漢族의 弩에 대항하기 위하여, 騎兵과 馬가 철제갑주로 무장하였을 것이다. 백제군이 중국으로부터 요노를 들여온 450년경에는 고구려군은 이미 철제갑주로 무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군의 요노는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별다른 위력은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백제가 본격적으로 弩를 제작하여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또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하므로, 고구려군에게 수도를 함락당하고 공주로 천도할 때까지 腰弩를 일선 병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43) 金基雄, 1980 앞의 논문, p. 379.

44) 篠田耕一, 1992 앞의 책, p. 121.

45) 篠田耕一, 1992 앞의 논문, p. 123.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에서 鎧馬를 탄 갑주기병을 보병이 찌른 후에 끌어당겨 땅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무기로는 草鎌이나 戟, 鈎鎌槍이 사용되었다.⁴⁶⁾ 백제에서 이와 유사한 무기를 찾았다면, 고분에서 출토되는 鐵鎌이다. 철검은 본래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이지만, 전시에는 적의 기병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무기였다고 판단된다. 적이 철제갑주로 무장하였을 때에는 弓이나 弩의 화살이 이를 관통하여 적을 살상하기 어렵다. 이때 중장기병의 鎧의 위를 가격하여 치명상을 입히고, 馬의 다리를 베거나 쳐서 말 위에 탄 기병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데에는 斧鉞이 적절한 무기였다.⁴⁷⁾ 따라서 백제고분에서 도끼가 많이 출토되는 현상도 고구려의 중장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백제군의 상당수가 도끼로 무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고구려군과 백제군의 무기와 무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실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三國史記』 卷24 近肖古王 24年(369) 9月)
- 2) 高句麗國岡王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帥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三國史記』 卷24 近仇首王 元年(375))
- ㉠ 高句麗舉兵來 王聞之伏兵於浪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三國史記』 卷24 近肖古王 26年(371))
- ㉡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三國史記』 卷24 近肖古王 26年(371) 冬)

46) 篠田耕一, 1992 앞의 책, p. 74. pp. 92~93.

47) 篠田耕一, 1992, 앞의 책, p. 67.

- ㉔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三國史記』卷24 近肖古王 30年(375))
- ㉕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三國史記』卷24 近仇首王 3年(377)10月)
- ㉖ 王命達率眞嘉謨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三國史記』卷25 辰斯王 6年(390) 9月)
- ㉗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 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三國史記』卷25 辰斯王 8年(391) 7月)
- ㉘-1) 高句麗攻拔關彌城(『三國史記』卷25 辰斯王 8年(391) 10月)
- 2)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三國史記』卷18 廣開土王 元年(391) 10月)
- ㉙ 遂謀將兵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 彌城 麗人守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三國史記』卷25 阿莘王 2年)
- ㉚ 與高句麗水谷城下敗績(『三國史記』卷25 阿莘王 3年(394) 7月)
- ㉛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陳於涓水之上拒戰 我軍大 敗 死者八千人(『三國史記』卷25 阿莘王 4年(395) 8月)
- ㉜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三國史記』卷25 阿莘王 8年(399) 8月)
- ㉝ 麗王巨璉帥兵三萬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 領數十騎出 門西走 麗人追而害之 (中略)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이萬年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三國史記』卷25 蓋鹵王 21年(475) 9月)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城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앞의 사료를 통해서 볼 때, 백제 근초고왕 26년(371, 고국원왕 41년)까지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에서 백제군이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초고왕 30년(375)경부터는 고구려군이 승리하게 된다. 사료 ㉖에서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하나 그 戰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양성 공격에 실패한 듯하며 사료 ㉗에서 도곤성을 함락하고 200인을 사로잡아 왔다고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사료 ㉘의 진사왕 8년(392) 이후에는 양국간의 전쟁이 완전히 고구려군의 우세

로 드러난다.

고구려군이 공성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까닭은 앞에서 검토한 고고학적 자료의 검토 결과를 적용시키면 고구려군이 甲冑로 무장하고 백제성 가까이 접근하여 공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백제군의 화살이 고구려군의 갑옷을 관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백제군이 공성전에서 실패하고 있음은 백제군이 그다지 甲冑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탓에 고구려군이 쏘는 쇠뇌를 화살에 맞아 고구려 성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료 ㉠와 ㉡는 평지전에서 고구려군이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역시 重裝騎兵을 앞세운 고구려군이 활·도끼·철검·철모 등으로 무장한 백제군의 보병전열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음을 나타낸다.

사료 ㉢는 우수한 무기와 무장을 갖추어 평지전에서 우위를 점유한 고구려군이 城 안에 숨어 있는 백제군을 끌어내기 위해 부락의 民家를 약탈했던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영락 6년(396)에 고구려의 水軍이 강화도와 인천 등지를 공격한 사건도 예성강에서 임진강 유역에 걸쳐 포진한 백제성에서 백제군을 평지전으로 유인하여 분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4~5세기의 백제군은 고구려군에 비하여 무기와 무장이 모두 열세에 놓여 있었다. 고구려군이 중장기병을 앞세우고 우수한 무기로 공격해 오는 데 대하여 백제군은 활·도끼·철검·철모 등으로 무장하고 대항하였다. 자연히 長槍과 쇠뇌 그리고 鎧馬와 甲冑로 무장한 고구려군의 공세 앞에 백제군의 戰列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군은 이러한 勝勢를 타고 급격히 남진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4. 고구려의 對新羅戰과 중장기병

고구려의 對新羅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신라의 무기와 무장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 경주지역 출토의 무기와 무장*

유적명	유적종류	철촉	철모	철창	철검	철창	철검	한두대도	대도	단도	도자	철부	가죽	갑주	마구	연대
입실리유적				?			1					1				BC1
구정리유적				1				1				7				BC1
조양동5호분				1								?				AD1
조양동38호분							*1					8				
조양동3호분		?	?				?								Z	AD2
조양동토광묘곽묘			1					1								2
황성동토광묘		1														3
정래동토광묘		?	25				?					?		P		3
황남동검총			2				2		1							3후
황남동205번지교분		4										1				4전
미추왕릉1구역		6			3				1		1	3				4전
미추왕릉2구역					3							1				4전
미추왕릉5구역		3	1		5			1			18	7	5			4전
미추왕릉9구역		4			5				3		18	6	3			4전
황남동110호분		46	3	1	7			3			9	11	2		DZ	4전
월성로가지구교분		37	38		3	1	1	6	5		6	30		P	DZ	4중
월성로나지구교분		3	1		1					1	3	5	1			
월성로다지구교분		13			1			1			2	1			DZ	
미추왕릉7지구		7			3				6		5	5			DZ	4C
미추왕릉4지역		36	2		4			1	5	4	3	2	1		DZ	4후
황남동83호분			7					1			5	5			DZ	4후
인왕동149분		10	6					1			6	6	4	6	D	4후
인왕동19·20호분		18	3	*1				6	*1		18	10			DZ	4후
황오동14호분		37	12		10	1		1	1		21	10	3		DZ	4후
황오동109호분		28	11		9			1	3		8	5	2	CT	DZ	4후
황남대총남분		1028	559					10	32		42	380	1	CT	DZ	4후
황오동54호분		20	20						3				3	CT	A	4후
황남대총북분		38	3	*5	4			6			3	7			DZ	5전
황남동82호분			6		1	2		1			1	6	4		DZ	5초
황오동고분		12	11			1		3	5	2	40	1	4		DZ	5초
미추왕릉전C지구		?						1			?	8			DZ	5전
미추왕릉전D지구									?		1	1			DZ	5전
황남동과파교분		15	2								1	3	5		DZ	5전
황남동151호분										1		2			UZ	
천마총		118	33	*3	2			1	5	9	55	8		CT	All	5중
금관총		2	8	5				3	?		?	0		CT	All	5중
황오동1호분		1	6					1			4	9			DZ	
황오동33호분		46			4			1	4		10	9			DZ	5후
금령총		28	3	1		2		3			53	4	8		All	5후
식리총		30	11	9	1	1		2	2	5	27		2		All	5후
황오동4호분		24									11	2			All	5후
은령총		5	3	2	3	2				2	4	3	3		DZ	5후
노서동138호분		1	4		1					1	17				DA	5후
계		1621	781	27	71	11	5	51	83	27	394	557	48			

48) (표 4)에서 All은 마구 일체를 나타내고, ?는 발굴보고서에 수 점이 있다고 하고 그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신라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철제무기가 출토되고 기원후 2세기 경의 조양동3호분에서는 馬具가 출토되었다.⁴⁹⁾ 3세기경의 정래동토광묘에서 縱長方板革綴短甲이 출토된 사실은 신라가 이른 시기부터 갑주로 무장했음을 보여 준다.⁵⁰⁾ 본격적인 甲冑와 마구의 출현은 4세기 이후이다. 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월성로가-29호분에서 縱長方板革綴短甲이 출토되고,⁵¹⁾ 4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왕릉급의 황남동109호분 제3·4곽에서는 등자와 桂甲의 札甲과 伏鉢有縱細長方板冑 그리고 馬甲冑가 출토되었다.⁵²⁾

4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는 황남대총 이후에 조성된 왕릉에는 金·銀 혹은 金銅製의 甲冑가 매납되고 있다.⁵³⁾ 5세기대의 대형적석목곽분에는 금관을 비롯한 금제, 은제, 금동제의 장신구가 부장되고, 철제갑주는 거의 부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4세기 후반까지는 철제갑주가 중요한 부장품의 하나로서 권력과 신분의 상징물이었으나, 5세기대에는 금·은·장신구가 그 역할을 대신했음을 반영한다. 5세기대에는 철제갑주가 비교적 소형분에만 매납되고 있다.⁵⁴⁾ 이는 철제갑주의 부장이 하위 신분층으로 확산되면서 실용화되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는 5세기 중반 이후에 경주귀족 출신의 군인들에게 鎧馬와 甲冑의 무장이 보편화되고, 보병도 상당수 板甲으로 무장하였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⁵⁵⁾

〈표 4〉를 통해서, 경주지역에 주둔한 신라의 중앙군 가운데 상당수가 5세기경에 중장기병으로 무장을 하고, 활·鐵矛·鐵鎌·철착·環頭大刀·大刀·鐵斧·가지극 등의 무기를 보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무기의 구성을 보면, 철촉을 제외하고는 鐵矛의 출토량이 가장 많다. 이는 고구려의 고분에서 출토된 무기의 비율이나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구

49) 韓炳三, 1980 「慶州 朝陽洞 古墳發掘의 意義」 『韓國考古學年報』 7.

50) 崔鍾圭, 1983 「慶州 九政洞 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 139.

51)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pp. 226~230.

52) 齋藤忠, 1937 「慶州皇南里第百九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古蹟調査報告』.

53) 文化財管理局, 1976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1974 「天馬塚」.

54) 宋桂鉉, 1993 「加耶出土의 甲冑」 『伽耶と古代東アジア』, p. 196.

55) 李仁哲, 1995 「6~7世紀의 武器·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新羅를 中心으로」 『韓國古代史論叢』 7, p. 38.

성비와 유사하다. 철모의 숫자가 적고 鐵斧와 鐵鎌의 숫자가 많은 백제나 가야의 무기출토 양상과는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의 중장기병이 長槍으로 무장했음을 의미하며, 보병 가운데도 창병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신라의 무기체제나 전투방식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5세기 중반 이후 鎧馬와 甲冑로의 무장이 귀족들에게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重裝騎兵部隊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544년에 騎兵軍團인 10停이 창설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三國史記』卷40 職官 下 武官條에 10정이 진흥왕 5년(544)에 편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종래에 10정에 대해서는 신라 통일기에 9주에 설치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⁵⁶⁾ 그러한 견해는 10停과 9州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주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마구류를 통해서 보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마구와 기병용갑주를 통해서 볼 때, 10정은 진흥왕 5년(544)에 창설되어 백제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7개 停이 설치되고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개의 停이 설치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⁵⁷⁾

신라에서는 鐵矛가 많은 반면에 철검의 숫자가 적는데, 이는 가지극의 숫자로 보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병의 對騎兵用 武器로 鐵鎌과 함께 가지극이 사용되었고 볼 수 있겠다.⁵⁸⁾

〈표 5〉에 경산⁵⁹⁾·대구⁶⁰⁾·칠곡⁶¹⁾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무기를 보면,

-
- 56) 末松保和, 1954 「新羅鐘停考」 『新羅史의 諸問題』, pp. 359~367; 井上秀雄, 1974 「新羅兵制考」 『新羅史基礎研究』, pp. 190~191.
 57) 李仁哲, 1993 「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35~338.
 58) 朴진욱, 1963 「신라의 가시돌친 무기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1963년 4호, p. 28; 金基雄, 1980 앞의 논문, pp. 389~392.
 59) 嶺南大學校博物館, 1991 『慶山北四里古墳群』; 1991 『慶山林堂地域古墳群 I - 造永A地域』.
 60) 慶北大學校博物館, 1989 『大邱伏賢洞古墳群 I』; 朝鮮總督府, 1938 『昭和十三年古蹟調査報告』.
 61) 慶北大學校博物館, 1961 『若木古墳調査報告』; 1966 『仁同·不老洞·高靈古衙古墳發掘報告書』. 嶺南大學校博物館,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書』.

〈표 5〉 경상·대구·칠곡지역 출토의 무기와 무장

무기종류 유적명	철 촉	철 모	철 창	철 검	철 착	철 검	환 두 대도	대 도	단 도	도 자	철 부	가 지 크	마 구	연 대
경산복사리고분	13	3				2	3	2		1			Z	4후
경산임당고분군	61	15		14			1		1	14	4	8		
대구팔달동유적	72	17		4				1		4	24			4전
복현동고분	2			3						7		2		
비산동34호분	6	3	2	3			1			5	2	3	DZH	5후
내당동50호분				2	1			1	1	10	1	4	Z	5후
내당동59호분	7									3	1	3	AH	5후
달성군해안고분										1	2			
대구신지동고분	1	1		1				1	1					
비산동37호분	14	5		3	1		1		2	30	1	16	DZ	5후
내당동51호분	11	1			1		3	1		6	1		AH	5후
내당동55호분		3		3			2	1	5	22	20	2	DZ	5후
블로동고분	7						2						Z	
칠곡인동고분	18	4	*1	2				1		2	5	1	D	
구암동고분		1						1		4			ZH	5초
약목고분		多	1					1		1			D	5중
계	212	54	3	35	3	2	13	10	10	110	61	38		

전반적인 무기의 종류 면에서는 경주지역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철모의 출토량이 大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아직 甲冑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경주지역과 차이를 보여 준다. 보다 더 큰 차이는 개별고분에서 출토되는 무기의 양이 경주지역에 비하여 극히 적다는 점이다.

비산동37분, 내당동55호분, 구암동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신라의 금관과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⁶²⁾ 이는 이 지역의 지배자가 신라왕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達伐城에 城主를 두었다고 하는 기록을 참고해 보면,⁶³⁾ 이 지역에서

62) 朝鮮總督府, 1923 「慶尙北道達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十二年古蹟調査報告』.

63) 『三國史記』 卷2 沾解尼師今 15年.

규모가 큰 무덤은 城主의 무덤으로 볼 수 있고, 무기가 부장된 소규모 무덤들은 성주 휘하의 지방농민군의 무덤으로 생각할 수 있다.⁶⁴⁾ 금동관이 출토된 고분에서 마구가 출토되고 있는 양상을 주목하면, 당시 신라의 지방군은 城主나 그에 준하는 지방군의 지휘자는 기마로 무장하였으나 일반 농민군은 도끼나 활, 철모, 철검 등으로 단순 무장한 보병이었다고 믿어진다.

(표 6) 신라 서부 및 북부지역 출토의 무기와 무장

무기종류 유적명	철 촉	철 모	철 창	철 검	철 창	철 검	환두 대도	대 도	단 도	도 자	철 부	마 구	연 대
성주성산동1호분		4					2	1		3	3		4후
성산동2호분		7			2		1				1		4후
성산동6호분										6			4후
성산동38호분				1						3	1	ZH	5전
성산동39호분										5	2	ZH	5전
성산동57호분	3	2		1						1	2	H	5전
성산동58호분										5		ZH	5전
성산동59호분	2	2									1	K	5전
의성대리고분	20	2			1		1			2			4C
의성탑리고분													5후
1 묘 괘				1							1		
2 묘 괘	12	2			1		1			3	2		
3 묘 괘	2						1			1			
4 묘 괘										1			
5 묘 괘				1								DZ	
봉 토	16	1		1	1							DZ	
선산낙산동고분	1	3		4						1	4		4C
낙산동월과정산												D	5C
안동조탑동고분	5			1			1			6	2		5전
꽃산고분										1		UZ	
중가구동고분										3	1		5중
계	61	23		10	5		6	2		41	20		

64)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大邱八達洞遺蹟』.

성주지방은 원래 벽진가야 혹은 성산가야였으나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신라에 병합되었다.⁶⁵⁾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도 신라양식을 하고 있다.⁶⁶⁾ 성산동고분은 도굴된 것이 많아 본래의 무기부장상태를 알기는 어렵다.⁶⁷⁾ 4세기대에 의성의 대리고분에서 마구가 보이지 않다가⁶⁸⁾ 4세기에서 5세기 말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의성의 탐리고분에서 마구가 출토되고 있다.⁶⁹⁾ 이는 이 지역에서도 5세기 단계에 성주급에 해당하는 자들이 말을 타고 전투를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5세기 단계에서 의성지역은 신라의 변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의 출토량이 적고 갑주의 부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의성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상주·선산·김천 등지에도 상당수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⁷⁰⁾ 현재까지 발굴된 것이 많지 않다. 발굴되었다고 하더라도⁷¹⁾ 출토유물이 적어서 이 지역의 무기·무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안동의 조탑동고분과 중가구동고분 등은⁷²⁾ 지방농민군의 무장상태를 보여 주는 고분이라 생각된다. 이들 고분 중에는 도굴된 것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실제 지방농민군의 무장은 발굴된 것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발굴된 무기들을 통해서 보면, 서북지역의 농민군은 대개 활이나 그들이 농기구로 사용하는 도끼와 낫을 들고 적이

65)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pp. 100~101.

66) 金泰植, 1993 앞의 책, p. 152.

67)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金世基, 1988 「星州星山洞古墳—第38, 39, 57, 58, 59號墳調查概要—」 『開館10周年記念 星州星山洞古墳 特別田圖錄』, 啓明大學校博物館.

68) 金基雄, 1968 「義城大里古墳發掘調查報告」 『史學研究』 20.

69) 國立博物館, 1962 『義城塔里古墳』.

70) 李殷昌, 1989 「加耶古墳 研究 上」 『國史館論叢』 5, pp. 22~23.

71) 李盛周, 1987 「善山伽耶古墳의 研究—洛山洞古墳群發掘調査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4; 李殷昌, 1992 「善山洛山洞古墳의 研究 I—洛山洞 月波亭山 古墳군의 發掘調査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0.

7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75 『造塔洞古墳發掘調查報告』; 1977 『中佳邱洞古墳調查發掘報告』.

침입하면 대응하고 호신용으로 도자를 늘 차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보면, 4~5세기 단계에 경주지역의 신라군이 활·鐵矛·鐵鎌·철착·環頭大刀·大刀·鐵斧·가시극 등으로 무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무기의 구성 비율이 고구려의 그것과 유사하며, 이는 신라의 무기체계나 전투방식이 광개토태왕대 이후에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신라에서는 5세기 중반 이후에 경주귀족 출신의 군인들에게 鎧馬와 甲冑의 무장이 보편화되고, 보병도 상당수 板甲으로 무장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신라의 지방군의 경우에는 城主나 그에 준하는 지방군의 지휘자 등이 騎馬로 무장하였으나 일반농민군은 도끼나 활, 철모, 철검 등으로 단순 무장한 보병이었다. 자연히 신라의 지방군이 고구려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음 사료는 그러한 사정을 보여 주고 있다.

- ㉠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三國史記』卷3 訥祗麻立干 34年(450) 7月)
- ㉡ 高句麗侵北邊(『三國史記』卷3 訥祗麻立干 38年(454))
- ㉢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三國史記』卷3 訥祗麻立干 39年(455))
- ㉣ 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三國史記』卷3 慈悲麻立干 11年(468))
- ㉤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孤鳴等七城 又進軍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3年(481) 3月)
- ㉥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 大破之(『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6年(484) 7月)
- ㉦ 高句麗襲北邊 至戈峴 冬十月 陷孤山城(『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1年(489) 9月)
- ㉧ 將軍實竹等 與高句麗 戰薩水之原 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兵圍之 百濟王 牟大 遣兵三千 解救圍(『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6年(494) 7月)
- ㉨ 高句麗圍百濟雉壞城 百濟請救 王命將軍德智 率兵以救之 高句麗衆潰(『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7年(495) 8月)
- ㉩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8年(496) 7月)

㉔ 高句麗攻陷牛山城(『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9年(497) 8月)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은 5세기 중반 눌지왕 34년(450)경부터 시작된다.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보면 고구려군은 신라의 지방성을 공격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평지 전투에서는 신라와 백제 혹은 가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앞의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검토와 연결시키면 5세기 중반경에 신라의 중앙군은 상당한 정도로 무기와 무장을 갖추고 있으나 신라의 지방군은 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고구려군은 신라의 중앙군에게는 패배하였으나 신라의 지방군에게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의 고고학적 자료는 5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에서 鎧馬와 甲冑로의 무장이 귀족들에게 일반화되고 重裝騎兵部隊가 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케 한다. 신라 중장기병의 무장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었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고구려로부터 전래된 것이겠지만 신라군이 갑주로 무장하고 백제군과 연합작전을 구사하게 되면서 고구려군의 남하는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6세기에는 고구려군이 오히려 羅濟聯合軍에 패배하여 한강유역을 상실해야 했다.

5. 맺 음 말

4~5세기 단계에 甲冑로 무장한 重裝騎兵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역시 갑주로 무장한 보병을 배합한 고구려군은 弓·矛·斧·刀·弩 등을 사용하는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고구려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비율이 철도가 46.85%, 철부가 21.68%, 활이 16.78%, 환두대도가 10.49%, 철검이 2.99%, 단도가 1.39%인 점으로 보아 고구려군은 長槍騎兵의 숫자가 다른 兵種에 비하여 많고, 弓·矛·斧·刀를 사용하는 보병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弩兵은 소수였다. 고구려군은 이러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4~5세기에 대대

적으로 남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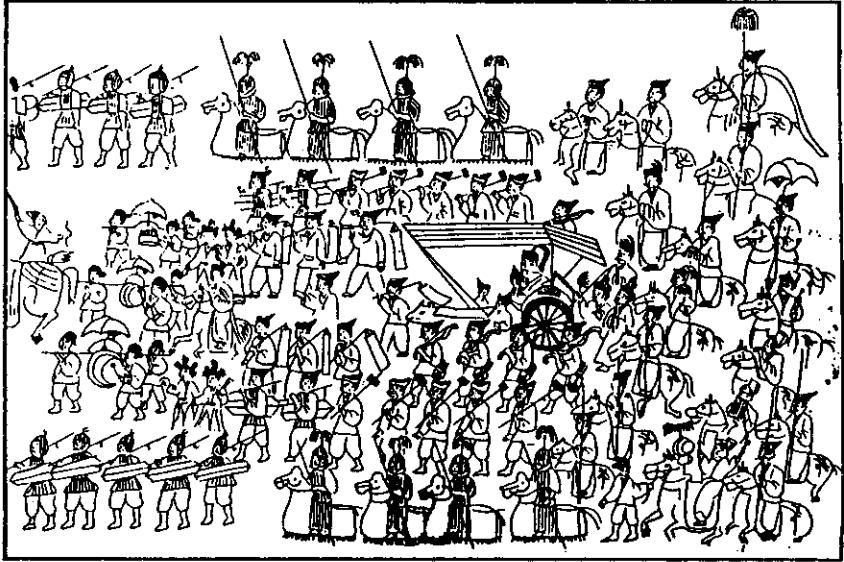
백제군은 고구려군에 비하여 무기와 무장이 모두 열세에 놓여 있었다. 고구려군이 중장기병을 앞세우고 우수한 무기로 공격해 오는 데 대하여 백제군은 활·도끼·철검·철모 등으로 무장하고 대항하였다. 자연히 고구려군의 공세 앞에 백제군의 戰列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군은 이러한 勝勢를 타고 급격히 남진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신라는 5세기 전반경까지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가속화되면서 5세기 후반에는 신라군과 백제군이 연합하여 고구려군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을 동안에 신라군은 고구려로부터 무기와 무장의 제작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5세기 후반 신라의 중앙군은 고구려군과 비슷한 정도로 무기와 무장을 갖추 수 있었다. 특히나 5세기 후반경부터 신라에 중장기병부대가 창설되어 활동하게 되면서 고구려군은 신라의 지방군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신라의 중앙군에게는 패배하게 되었다.

여기서 신라군과 백제군의 연합작전에 고구려군이 패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무기와 무장이 비슷한 상태였던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백제의 輕騎兵이 빠른 속도로 고구려군의 後尾를 공격하게 됨에 따라 중무장으로 인하여 질주속도가 느린 고구려의 중장기병은 크게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무장의 고구려 보병들 역시 신라의 중장기병대의 위협적 공격에 戰列이 흐트러져 도주하거나 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고대의 전쟁사에서 중장기병은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의 고구려 영토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백제군과 신라군이 중장기병을 별반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5세기 후반부터 신라군이 고구려군과 마찬가지로 중장기병을 보유하게 되면서 삼국간의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우위는 더 이상 확보되지 않았다. 6세기 이후에는 삼국이 모두 鎧馬와 甲冑로 무장하게 됨에 따라 삼국간의 전쟁양상은 중장기병 보유비율의 상대적 우위, 자국의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제3국과의 군사연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결정지어졌다. 그러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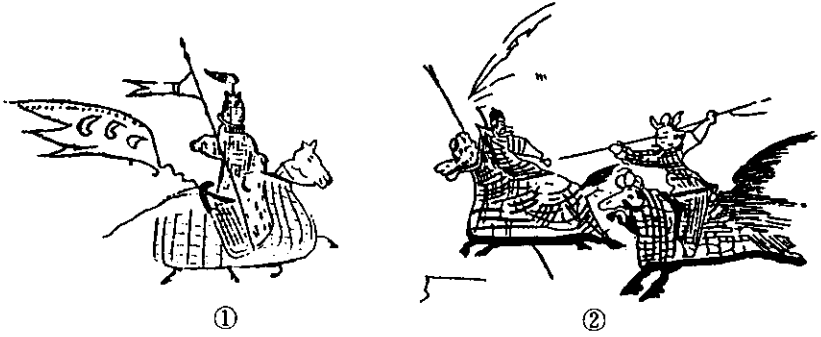
로 4~5세기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란 重裝騎兵이 最大로 戰果를 올릴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낸 歷史的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圖 1) 안악3호분 노부행렬도



(圖 2) 악수리고분 노부행렬도



(圖 3) 고구려의 중장기병

- ① 말갑옷(쌍기둥무덤벽화)
- ② 공성도(세간무덤벽화)

百濟勢力的 加耶進出과 加耶의 對應

李 熙 眞
(放送大 講師)

1. 머리 말
2. 加耶勢力的 自救努力 및 百濟와의 분쟁
3. '任那再建'의 의미
4. 高句麗-安羅의 通謀
5. 맺 음 말

1. 머리 말

5세기 후반은 5세기 초 급격하게 팽창하며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미쳐 왔던 고구려의 세력이 퇴조하며 가야를 비롯하여 백제·신라 등이 자국 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제 세력은 자신들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각 세력간의 소규모 분쟁과 알력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과 알력의 양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시기 가야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각도 결정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크게 보아 이 양상을 왜의 쇠퇴 때문에 가야와 백제 등 한반도 제 세력간의 갈등이 조

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¹⁾과 이미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던 가야·백제·왜 간의 분쟁과 알력으로 보는 것으로 나뉜다.²⁾

전자에는 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듯하며 후자에는 각각의 사건들을 유기적인 연관없이 지나치게 개별적으로만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이전의 사건들을 비롯한 각 사건들간의 연관관계가 무시되는 감이 없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각 사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상황의 입체적 복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주요 사건으로는 백제의 재기에 따른 가야·백제·왜 세력관계의 변화, 이와 연계된 소위 ‘任那再建’³⁾ 문제가 있다. 이 사건들은 5세기 말~6세기 초 가야세력이 재편되면서 재기를 노리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전개되는 주변 세력과의 관계변화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임나재건’ 문제는 기존설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소홀했던 감이 있다. 임나일본부 같은 주변문제와 연관시켜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임나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파악은 간과하고 논지를 전개시켜 나아갔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나재건’ 문제를 대략 6세기 전반 신라에 투항했던 김해가야나 탁순 등의 재건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임나재건’을 추진했던 주체 등, 이 문제와 연관되어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의 의사로 신라에 귀순한 세력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임나의 재건이라고 불렀을 것인가 하는 점과 이러한 명분이 기타 가야제국에 설득력 있

1)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鈴木英夫,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集, 朝鮮古代史の爭點, 高麗書林, 1987.

延敏洙, 「6世紀 加羅諸國을 둘러싼 百濟, 新羅의 動向」, 『新羅文化』 7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이 대표적이다.

3) 이 사건은 보통 ‘任那復興’이라는 용어로 많이 불리워져 왔고, 『日本書紀』에도 ‘復興’ ‘復建’ ‘再建’ ‘建立’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본고의 논지에는 ‘再建’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한 듯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는 문제로 장기간 논의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밝혀 보는 데 주력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5세기 말~6세기 초에 이르는 가야사의 한 부분을 앞 시기와의 연속선상에서 복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加耶勢力的의 自救努力 및 百濟와의 분쟁

5세기 후반은 5세기 초 급격하게 팽창하며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미쳐 왔던 고구려의 세력이 퇴조하며 가야를 비롯하여 백제·신라 등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상황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제 세력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야세력의 再編과 백제가 再起하는 과정을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야세력의 재편에 있어서는 369년 이래 백제에 편입되어 부용세력으로 전락했던 가야가 고구려의 임나가라 정벌 이후 그 세력을 회복하여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앞 논문에서 일부 언급했다.⁴⁾ 이렇게 세력권을 정비한 가야제국과 주변 세력 간에 갈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日本書紀』繼體紀 기사에 나타난 백제와의 충돌이다. 관계 사료는 다음과 같다.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且暮易通 鷄犬難別。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然縱賜合國 後世猶危。況爲異場 幾年能守。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迺以物部大連迺麤鹿火 宛宣勅使。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百濟·新羅·任那等 授記胎中譽田天皇。故大后息長足姬尊 與大臣

4) 李熙眞,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任那加羅征伐 배경과 영향」, 『韓國古代史研究』 10, 1995.

武內宿禰 每國初置官家 爲海表之蕃屏 其來尙矣. 抑有由焉. 縱削賜他 違本區域. 綿世之刺 距離於口. 大連報曰 教示合里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并制旨 依表賜任那四縣.(下略)(『日本書紀』17 繼體紀 6年)

七年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日本書紀』17 繼體紀 7年)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跋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 賜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日本書紀』17 繼體紀 7年)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短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駝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日本書紀』17 繼體紀 8年)

九年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 遣罷歸之.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跋人 懷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跋與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日本書紀』17 繼體紀 9年)

二十三年春三月 百濟王謂下哆喇國守穗積臣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 每苦風波. 因茲 濕所齎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土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沙.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日本書紀』17 繼體紀 23年)

이 사건을 다룬 연구 중에는 기사내용에 대한 깊은 분석이나 검토 없이 지역을 할양했다는 내용만을 중시하여, 왜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백제

로부터의 문화수입 때문에 4縣과 己汶·帶沙地域을 백제에 할양했다고 보거나⁵⁾ 백제에 대한 왜의 군사지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⁶⁾

그렇지만 백제가 帶沙地域으로 진출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백제세력의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력을 회복한 백제가 伴跋라는 일개 가야소국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왜에 군사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백제가 왜의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설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왜가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있는 세력이었다고 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사실 己汶地域 분쟁의 처리과정만 보더라도 왜는 사태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5세기 중엽이래 세력을 확장한 高靈加耶가 이 기사가 나타나기 이전 어느 시기엔가 己汶·帶沙地域으로 팽창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⁷⁾이 타당할 듯하다. 5세기 후반의 백제는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세력이 위축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고령가야의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 세력을 회복한 백제의 반격에 의해 고령가야는 기문지역 상실에 이어 帶沙地域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제나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왜가 외교적 교섭 내지는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日本書紀』 기사는 이것이 마치 왜가 백제-가야관계를 주도한 것처럼 특유의 가필과 왜곡을 거쳐 수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繼體紀 기사에 반영된 것은 백제와 고령가야가 왜에 대해 외교전을 벌이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5세기 후반부터 加耶聯盟의 맹주로 부상한 고령가야가 6세기 초 己汶·帶沙地方을 놓고 백제와 분쟁을 벌인 것⁸⁾이며, 이러한

5) 末松保和, 앞의 책, pp. 124~125.

6) 鈴木英夫, 앞의 책, p. 79.

延敏洙, 1990. 앞의 책, pp. 118~119.

7) 金泰植, 앞의 책, pp. 114~118.

8) 己汶地方을 놓고 百濟와 충돌했던 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행동은 백제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5세기 초 이전만 하더라도 각종 사료에 나타나듯 對外政策에 있어 백제와 보조를 맞추어 오던 加耶諸國이 백제를 상대로 분쟁을 벌이는 것을 보아 5세기 중엽 이후에 보이는 가야세력의 독자적 움직임은 백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끈질긴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야의 이러한 움직임은 백제의 재기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가야세력은 다시금 수세적인 자세에서 자존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高靈加耶가 522년 新羅와의 通婚을 계기로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와의 동맹시도 역시 좌절하게 되고 그 와중에 曠己呑 같은 가야소국이 신라에 병합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면서⁹⁾ 가야제국은 다른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가야세력 중 고령가야에 필적할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安羅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사태해결을 모색했다는 점¹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 회의의 동기와 과정, 결말을 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라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남부지역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백제와 이에 대립하고 있던 신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¹¹⁾ 다른 하나는 안라의 자주적인 움직임을 우려한 백제의 군사력에 의해 안라의 의도가 좌절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다.¹²⁾ 두 설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대한 연구를 보면 그 주체가 大加耶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으며(金泰植, 위 책, pp. 95~104) 그렇지 않다 해도 후에 大加耶의 영향을 받게 된 加耶의 一國이 百濟와 충돌했던 것은 틀림없으므로 본고가 추구하는 논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 金泰植, 앞의 책, pp. 189~197.

10) 金泰植, 앞의 책, pp. 198~199.

11) 白承忠, 「任那復興會議」의 전개와 그 성격, 『釜大史學』 17, 1993. pp. 50~59.

12) 金泰植, 앞의 책, pp. 198~205.

或本云 天皇 二十八年歲次甲寅崩. 而此云二十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毛城.(『日本書紀』17 繼體紀 25年 冬12月)

전자는 이 기사를 백제가 안라 인근에 걸탁성을 축조하는 정도로 보는 반면, 후자는 백제군이 안라에 무력침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시각은 이 시기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전자의 설은 논리를 세우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안라를 인정하여 독립국임을 보장하려 했다는 백제의 사신이 안라 회의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¹³부터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한다면¹⁴ 아무리 백제와 신라가 경쟁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일개 가야소국인 안라가 자신에 접근하려는 강국 백제와 사신을 이런 정도까지 박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라가 신라의 유화책에 부응하여 백제에 등을 돌렸다고 한다면 위 기사에 나타나듯 군대까지 동원한 백제가 안라 인근에 성을 축조하는 정도로 그쳤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 기사가 안라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우려한 백제의 안라 침공으로 보는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서도 안라가 신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백제의 남부 가야진출을 용인했다고 보는 설도 있으나,¹⁵ 앞에서 제기한 대로 백제의 사신은 회담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이는 백제측의 소외감과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¹⁶ 점에서 안라가 백제의 진출을 용인할 정도로 백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후의 일이지만 안라는 백제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구려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백제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

13) 안라가 개최한 국제회의의 과정에서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謾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이라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는 백제의 사신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4) 白承忠, 앞의 책, p. 51.

15)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1993. p. 158.

16) 金泰植, 앞의 책, p. 203.

으므로 백제의 진출을 용인했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가야세력의 독자성을 지키려 하던 안라의 움직임이 백제의 군사력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라와의 동맹시도에서 안라회의에 이르는 과정은 백제와의 분쟁에서 패배한 가야세력이 주변세력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독자성을 보존하려 하였으나 백제의 무력에 의해 실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나타난 加耶諸國의 의도는 신라에 저항하려는 측면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백제의 힘을 빌어 신라의 위협을 막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가야는 독자성 유지에 장애가 되는 주요세력을 백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탁순과 김해가야가 소멸되는 등 사태발전이 있었다. 이 경과에 대해서는 기존연구에서도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¹⁷⁾ 본고에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어쨌든 백제는 이렇게 해서 병력을 안라에 진주시키고 毛野臣을 중심으로 하는 왜세력까지 축출하여 다시 가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백제가 세력을 팽창시키면서 가야를 부용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郡令·城主 과건의 의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사실 타 세력의 관리가 자국영토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할 세력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가야에 대한 간섭을 증대시키려는 백제와 이에서 벗어나려는 가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라 등 일부 가야제국의 반백제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라와의 동맹체제가 얼마 가지 않아 파탄을 맞게 되는 데에서 고령가야를 비롯한 일부 加耶諸國은 親百濟의 政策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고령가야의 태도 때문에 가야연맹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¹⁹⁾ 그렇게까지 해서 신라와의 동맹을 유지하고자 했던

17) 金泰植, 앞의 책, pp. 206~213.

18) 朱甫敬,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1982, p. 169.

19) 金泰植, 앞의 책, pp. 196~202 참조.

고령가야가 쉽게 親百濟政策으로 전환하였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고령가야의 영역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듯한 고분과 유물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고령가야가 백제에 접근하면서 백제의 영향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²⁰⁾ 이렇게 볼 경우 522년을 전후하여서는 가야연맹 자체의 분열까지 감수하면서 신라에 접근하려던 고령가야가 540년 이후 갑자기 친백제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정세에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가 없으란 법은 없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

먼저 고령가야가 백제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보는 근거인 고고학적 성과가 확실치 않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유물에 시대상이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가야가 친백제정책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은 빨라야 530년대 후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고령가야 멸망까지 이러한 정책이 이어졌다고 해도 20여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불과 20년 정도에 불과한 기간에의 정책이 고고학적 성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안라에 진주했던 백제군이 530년대 후반 신라에 의해 밀려나면서 백제가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데에도²¹⁾ 모순이 있다. 소위 임나재건을 위한 가야-백제간의 교섭은 54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가야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가야의 서남부 지역에 들어와 있는 군령·성주를 내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549~550년에는 가야제국에 대한 부용화를 마쳤다고 보고 있다.²²⁾ 그러면 이는 가야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고령가야와 安羅를 중심으로 갈려져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려 한 듯하다는 지적²³⁾에도 모순이 생긴다. 고령가야가 친백제적 정책을 취했다면 상반된 외교정책을 취하면서도 안라

20) 金泰植, 앞의 책, p. 259.

21) 金泰植, 앞의 책, p. 236.

22) 金泰植, 앞의 책, pp. 260~283 참조.

23) 金泰植, 앞의 책, p. 260.

와 고령가야가 동일보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加耶諸國 전체의 입장에서조차 백제에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 많았다. 加耶가 한강유역 점령 전투에서 병력을 제공하여 상당한 희생을 치르기도 영토의 획득이 없었던 점²⁴⁾이 그 일례이다. 전쟁에서 병력을 제공하기도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미 자기 보호를 위한 연합의 단계를 지나 백제에 부용화되는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이는 가야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라기보다 백제의 강요에 의해 병력을 동원당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후에 管山城戰鬪에서 加耶軍이 동원된 것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신라보다는 백제가 간섭하는 일이 많을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가야는 백제를 더욱 위협적인 세력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가 자발적으로 백제에 종속되어야 할 정도로 백제보다 신라의 위협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加耶諸國이 백제의 對外政策에 동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도 실상은 ‘부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야가 표면적으로는 백제에 동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려 했을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加耶諸國이 당시 신라와 끊임없이 교섭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이후 管山城戰鬪와 고령가야를 비롯한 加耶諸國 消滅 등의 상황 전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6세기 중엽의 상황은 5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초까지 한동안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었던 가야가 백제와 분쟁에서의 패배, 신라를 비롯한 주변세력과의 관계정립 실패로 다시금 백제의 세력권에 흡수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4)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등에 백제와 신라가 영토를 획득한 기록은 있으나 가야가 영토를 획득했다는 기록은 없다.

25) 金泰植, 앞의 책, p. 291, 296.

3. ‘任那再建’의 의미

이렇게 가야에 대한 백제의 간섭이 증대되면서 벌어진 가야·백제간 교섭이 소위 ‘任那再建’ 문제이다. 앞절에서는 단순히 가야에 대한 백제의 간섭이 증대하는 의미만 서술하고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서술은 본질로 미루었다. 이제 소위 ‘임나재건’의 의미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이 의미를 가야제국이 신라로 투항하는 사태를 막아 보자는 정도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주도했던 백제의 의도라던가 임나재건의 의미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연구 중 왜의 가야 지배를 전제하는 설에서는 백제의 힘이 강해진 데다가 일본사신이 무능하여 임나제국이 신라로 귀순하는 사태를 막아 보려는 시도를 백제에서 주도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보는 것도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설에 따르자면 먼저 531년 백제군의 안라 진주 문제에 대한 왜의 태도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생긴다. 여기서 欽明紀 2년조를 비롯한 『日本書紀』 기사들에는 백제군의 안라 진주를 추인받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고 본다.²⁷⁾ 임나재건을 위한 가야·백제간 교섭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므로 임나재건을 위한 교섭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왜가 지배하고 있었던 가야제국에 백제군이 진주했다면 이는 왜왕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역행위를 추인받으려 백제가 사신을 파견했다고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왜가 백제에 별다른 응징은 물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도 왜가 백제의 종주국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왜가 지배하고 있다는 임나에 백제의 군령·성주가 파견되고 백제가 일부부 사

26) 末松保和, 앞의 책, p. 152.

27) 末松保和, 앞의 책, p. 158.

신을 소환하라²⁸⁾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의 양상이 이러한은 물론 임나의 사신들조차 백제에 가서 조칙을 들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백제의 힘이 강해졌고, 일본사신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설 자체에서도 상황전개에 의문이 있음은 인정되고 있다.²⁹⁾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의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다. 만일 왜와 加耶聯盟諸國과의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다면, 왜가 ‘임나를 세우라’는 요청을 안라왜신관이나 가야연맹제국이 아닌 백제에게 할 까닭이 없다. 또한 왜와 가야연맹제국 사이에는 주종관계가 없으나 왜와 백제와의 사이에만 주종관계가 있다면, 加耶諸國 牟岐들이 왜의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백제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왜는 이 회의를 명령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³⁰⁾는 비판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왜가 임나재건회의를 조종하거나 추진하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임나재건을 사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김해가야·탁기탄의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³¹⁾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다음 기사들에는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吞·百濟遣將軍君
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
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日本書紀』17 繼體紀 23年 3月)
敬順天皇詔勅之詞 拔取新羅所折之國南加羅·喙己吞等 還屬本貫 遷實任那

28) 『日本書紀』19, 欽明紀 2年 7月.

『日本書紀』19, 欽明紀 5年 2月

『日本書紀』19, 欽明紀 5年 3月

『日本書紀』19, 欽明紀 5年 11月條 등 참조.

29) 末松保和, 앞의 책, p. 152.

30) 金泰植, 앞의 책, p. 263.

鈴木英夫, 앞의 책, p. 83.

31) 이는 三品彰英이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吉川弘文館, 1956. p. 165)에서도 제기 하였으나,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이 이외에도 白承忠 앞의 글 p. 75, 金泰植 앞의 책, pp. 265~266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永作父兄 恒朝日本.(『日本書紀』19 欽明紀 2年 秋7月)

위 기사의 내용은 신라에게 권하여 다시 남가라와 탁기탄을 세웠다는 것과 천황의 조칙에 따라 신라에게 뺏긴 남가라, 탁기탄을 뺏아 그전대로 임나에 옮기고 길이 부형의 나라가 되어 일본을 섬긴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이 기사들에는 조작의 흔적이 있다. 왜의 천황이 가야·백제·신라 등에 조칙을 내려 명령한다는 식의 내용이 그것이다. 繼體紀 23년 기사는 모야신의 파견시기가 김해가야 멸망 이전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³³⁾ 이미 신라에 편입된 탁기탄을 단지 권고하는 정도로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식의 표현은 명백한 허구이다. 이렇게 보면 남가라, 탁기탄을 회복한다는 식의 표현도 가필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조작되기 전의 사료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欽明紀 2년 추7월조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사의 맥락은 근초고왕·근구수왕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던 백제와 임나관계를 강조하며 현실의 관계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석하자면 남가라·탁기탄을 그전대로 임나에 옮긴다는 내용도 글자 그대로 다시 독립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야소국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조가 잘 되면 신라에 편입된 가야소국들도 백제와의 협력을 바라게 될 것이라는 식의 장기적인 희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탁기탄 이래의 가야소국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라에 투항했다는 점 때문이다. 오히려 김해가야와 卓淳이 신라에 귀순하는 과정은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보면 기사의 표면적인 내용대로 성왕이 김해가야·

32) 白承忠의 앞의 글(pp. 47~48)에서는 『日本書紀』19 繼體紀 21년 6월조도 같은 근거로 보고 있다.

33) 金泰植, 앞의 책, p. 199.

34) 李熙眞, 「加耶의 消滅過程을 통해 본 加耶-百濟-新羅關係」, 『歷史學報』141, 1994. pp. 24~26 참조.

탁기탄을 원상회복시킨다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내용대로라면 신라와 가야에 대해 극단적인 내정간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이것은 신라는 물론 김해가야·탁기탄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거나 외교협상의 대상으로조차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선전포고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라와의 충돌을 의미할 수 밖에 없음을 물론 당사자인 김해가야·탁기탄 등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백제의 외교 목표는 고구려와의 대립을 우선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는 신라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가야제국과도 가급적 충돌은 피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신라와 김해가야, 탁기탄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외교 현안으로, 그것도 가야제국과 왜까지 끌어들여 추진하려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拔取新羅所折之國南加羅·喙己香等還屬本貫 遷實任那’라는 기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김해가야·탁기탄의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왜왕의 임나건립 요청사실이 부각되는 이유는 백제의 패권주의를 호도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왜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³⁵⁾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논지에 따르면 왜의 입장에서 가야가 한반도 교역을 위한 거점이고 이것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백제와 임나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천황에게 의지하자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왜왕의 국서내용은 백제에 임나의 건립 또는 경영을 위임하였다기보다 임나의 존속과 흥성의 필요성을 논한 것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의 개입은 불가했기 때문에 이를 간파한 백제는 왜를 끌어들여 가야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했다고 보았다.³⁶⁾ 즉 이 교섭에서 가야는 백제에 자신의 안전보장을 요청했고 백제는 신라와의 쟁투없이 가야연맹제국을 부용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지에서는 백제가 주도하고 있는 외교문제에 왜를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

35) 金泰植, 앞의 책, pp. 263~264.

36) 金泰植, 앞의 책, pp. 264~275.

하다. 백제의 패권주의를 호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왜를 끌어들이다고 백제의 패권주의가 호도된다고 볼 수 있는가부터 의문인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백제는 왜가 임나를 재건한다는 외교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야와 왜가 백제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왜가 백제에 협조적이었다고만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럼에도 가야제국의 지도자들이 백제의 의도조차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다고 볼 수 없다. 백제도 왜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가야가 사안의 추진주체를 혼동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백제는 외교교섭의 주도권을 왜에게 넘기려 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형식적이라 해도 단순히 패권주의를 호도하려고 주도권을 넘겨 준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도 문제이지만 입장이 다른 왜를 끌어들이어 형식적이거나 주도권을 넘겨 준다면 교섭과정에서 왜의 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제의 의도대로 사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소지만 커질 뿐이다. 실제로 군령·성주를 일본부에 귀속시켜 달라는 등³⁷⁾ 왜가 가야문제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왜와 백제로서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가 왜에서 파견한 인물들이 신라와 통모한 것을 비난한다던가 그들의 추방을 거론한다는 점에서도 왜는 백제의 의도를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백제의 우방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왜를 끌어들이었다는 의미가 모호해진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가야연맹이 백제-가야간 교섭을 결렬시키기 위해 일본 천황의 핑계를 댄 것은 백제의 외교적 명분, 즉 왜와의 협조 아래 백제가 임나를 도와 주려고 한다는 전제조건을 공격한 것³⁸⁾이라는 점도 의문이다. 백제는 신라와의 쟁투없이 가야연맹제국을 부용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왜를 끌어들이어 자신의 우방으로 만들고 이를 가야측에 입증하

37) 遺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 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日本書紀』19 欽明紀 4年 11月)

38) 金泰植, 앞의 책, p. 275.

여야만 하였다는 것이나, 그렇다면 왜와의 협조라는 명분을 이용하여야만 할 정도로 가야에 있어서 왜가 결정권을 가진 세력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백제가 왜군을 요청하여 임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계획으로 보아서, 당시의 가야지역에는 왜군대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군대의 군량을 백제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가야지역에는 왜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전제에서라면 가야는 왜의 군사력이나 정치력 때문에 왜의 비중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백제가 가야에게 왜를 자신의 우방이라고 확인시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점부터 의문이 된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한 왜가 설사 백제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야가 백제에 비해 약소세력이기 때문에 백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즉 왜는 조정자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가 가야제국과의 관계 때문에 왜를 끌어 들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백제 군령·성주의 일본부 귀속문제 등에서 나타나듯 왜는 제3자 입장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왜가 가야문제를 주도하고 있었다면 백제의 군령·성주가 가야에서 활동할 정도로 백제의 영향력이 강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임나전란이 성왕의 뜻에 달려 있었다면 성왕에게 임나를 세우라는 등 백제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표현⁴⁰⁾이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흐름을 보아 왜는 이 사태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기존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위 ‘임나재건’ 문제는 김해가야·탁기탄의 원상회복을 의미할 수 없고, 가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추

39) 金泰植, 앞의 책, p. 275.

40) 『日本書紀』 19 欽明紀 4년 11월조와 欽明紀 5년 11월조 참조.

진주체는 백제였으며 왜는 단지 제3자의 입장이었다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야를 대상으로 한 사안을 무엇 때문에 백제가 주체가 되어 추진했으며 왜까지 연계되어야 했느냐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즉 백제의 의도가 가야를 잠식하는 데 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임나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느냐는 점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임나재건이라는 명분이 가야제국에 갖는 의미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왜의 개입문제도 연계된다. 왜 역시 임나재건이라는 명분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본질적으로 백제-가야간 문제임에도 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가야는 백제, 왜뿐 아니라 신라와도 이 문제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가야가 신라와 접촉한 목적이 가야의 독립보장과 탁기탄·김해가야·탁순의 반환이었고 반대급부로서 백제와의 단절 또는 對倭 交易上 신라와의 협조를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⁴¹⁾ 이를 신라가 거절했기 때문에 가야는 백제에 접근해 안전보장을 받으려 했으나 백제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라와 재접촉, 백제가 이를 봉쇄하기 위해 곧바로 안라에 사신을 보내 다시 설득을 하는 모습이 같은 해인 欽明紀 2년 7월조에 나타난다고 했다는 식으로 가야-신라간 접촉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欽明紀 2년 4월조의 내용을 보면 가야제국의 阜岐들이 ‘도모하는 취지’를 신라에게 알린 적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성왕의 계책을 신라와 의논하려 했으나 기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百濟聖明王謂任那阜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盍各盡忠 奉展聖懷. 任那阜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更告新羅 尙無所報.(『日本書紀』 19 欽明紀 2年 4月)

41) 金泰植, 앞의 책, pp. 266~267.

이 내용은 백제의 성왕이 임나의 한기들에게 임나를 재건할 계책을 논하자고 했을 때 나온 언사이다. 이는 적어도 임나재건 문제를 신라와 의논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백제의 성왕에 보고된다는 사실은 임나재건이라는 문제가 백제·가야·왜뿐 아니라 신라와도 협의가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⁴²⁾라는 구절 역시 신라도 협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확인해 준다.

또한 이는 가야가 신라와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을 백제에 알려 주고 있음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성왕 역시 신라와 직접 접촉할 의사가 있음도 나타내 준다. 가야·신라 접촉에서 신라에 가야의 독립보장과 탁기탄·김해가야·탁순의 반환 요구가 다루어졌다면, 이 내용으로 보아 신라에 대한 정치적 반대급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제기된 대로 백제와의 단절 또는 對倭 交易上 신라와의 협조였다면⁴³⁾, 이는 백제의 이익에 상반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기밀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야로서는 구체적인 회담내용은 물론 접촉했다는 사실조차 백제나 왜에게 알리기를 꺼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오히려 임나재건의 안을 내놓으라는 정도의 말에 바로 신라와의 접촉내용부터 거론하고 있다. 또 위 사료의 내용을 보아서도 백제는 임나건립 문제에 있어 신라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임나재건에 있어서 탁기탄 등의 독립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입장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신라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다.

· 그러므로 이렇게 접촉의 내용을 백제에게 보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신라에 의논하려는 내용은 대략적으로라도 백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가야와 백제 사이에 이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이 내용을 백제가 가야를 통해 신라에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임나재건 문제가 백제·가야·왜뿐 아니라 신라와도 협의되어야 할 정도로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을 나타내 준다고

42) 『日本書紀』19 欽明紀 2년 4월.

43) 金泰植, 앞의 책, p. 266.

하겠다. 따라서 가야가 신라와 접촉하려 했던 것도 탁기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식의 단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단서는 위 사료에서 성왕이 근초고왕대 가야·백제관계가 각별하게 맺어졌음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⁴⁴⁾ 이 사안을 두고 4세기 중엽의 일을 언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사건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근초고왕대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제·가야·왜가 망라된 4세기 중엽의 사건이라면 근초고왕대의 가야지역 평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백제세력이 팽창하면서 주변세력, 특히 가야세력을 세력권화에 편입시켰다는 사실은 필자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나재건도 결국 이 사건과의 연계선상에서 제기되고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나재건이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4세기 중엽에 성립했던 백제·가야·왜 동맹체제의 재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백제가 임나재건을 주도한 이유이다. 이는 백제 중심의 동맹체제 재건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왜의 개입 역시 4세기부터 동맹체제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체제의 재건에 당연히 참여시키려 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라와의 접촉도 4세기 중엽의 체제를 돌이켜 보면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이 때의 체제는 백제·가야·왜 동맹체제의 성립에 더하여 신라가 백제와 화친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백제가 한반도 남부는 물론 왜까지 주도적인 위치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것이었다. 4세기 중엽의 동맹체제는 4세기 말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파괴되고 말았지만, 6세기의 상황은 신라도 백제와 함께 고구려와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백제로서는 다

44) 이를 성왕이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 사실성에 대해서는 李熙眞, 「4세기 중엽 百濟의 加耶征伐」(『韓國史研究』 86, 1994)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시 한 번 이 체제의 재건을 노렸던 것이고 신라가 이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도 타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라와의 접촉은 4세기 중엽의 구도를 재현하는 데 최소한 신라의 복인을 얻자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가 주도하는 동맹이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구려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백제의 제안에 대해 함부로 반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백제와의 접촉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미묘한 상황을 타개하려 한 듯하다. 이 체제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이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가야에 있어서도 반가울 리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도 어려운 것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백제·가야 등과의 접촉을 꺼렸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欽明紀 2년 4월, 2년 7월 기사 등에 단순히 화친관계의 성립만 언급한 것은 외교사절들 앞에서 백제가 강제적으로 자국 위주의 동맹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성왕이 언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친의 의미만 강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도모하는 취지라는 것도 4세기 중엽 백제·가야·왜 동맹의 성립시, 신라가 백제와 화친을 맺는 형태의 재현을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가 소위 '임나재건'을 추진한 이유는 4세기 중엽 이룩한 바 있었던 백제·가야·왜 동맹체제의 재건과 신라와의 우호적 동맹체제를 성립시키려 한 것이었다. 즉 백제가 4세기 중엽에 이루어 놓은 기득권을 되찾자는 것이 임나재건의 본질적 의미였다. 그러나 가야제국의 입장에서 이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에 속박되어 고구려의 압박을 받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왜와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가 주도하는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달갑지 않음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의 제안을 묵살함으로써, 가야는 다른 세력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연기시킴으로써, 왜는 백제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각각 '임나재건'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임나재건책'은 더 이상

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나 버린 것이다.⁴⁵⁾ 물론 백제도 가야나 신라 등이 자신의 제안에 반대없이 따라 주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은 신라와 가야, 특히 가야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응수타진을 해 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세기 중엽의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발의 강도나 중심세력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백제가 가야를 세력권에 넣으려는 의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임나재건책’의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야에 대한 부용화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4. 高句麗 - 安羅의 通謀

앞에서 가야제국은 주변세력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신라에, 나머지는 백제의 세력하에 들어가고 말았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일부 가야제국은 자립을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료가 『日本書紀』 欽明紀 9년 하4월 조의 기사이다.

夏四月壬戌朔甲子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王 德率宣文等 奉勅至臣蕃
曰 所乞救兵 應時遣送. 祇承恩詔 嘉慶無限. 然馬津城之役 虜謂之曰 由安羅
國與日本府 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
深勞念. 伏願 可畏天皇 先爲勘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 詔曰 式聞奏 爰
觀所憂 日本府與安羅 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朕
命卽自遣之. 不命何容可得. 願王 開襟緩帶 恬然自安 勿深疑懼. 宜共任那 依

45) 기존의 연구에서 백제가 임나재건을 추진하려 한 것은 백제를 맹주로 하는 범가야 제국의 연맹구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 있기는 했다.(延敏洙, 앞글, 1990, p. 36) 그러나 이는 4세기대와의 연속성은 물론 그 사실성까지도 부정하는 전제에서 단순한 추측만 한 것일 뿐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연맹구상의 내용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46) 金泰植, 앞의 책, p. 288.

前勅 戮力俱防北敵 各守所封. 朕當遣送若干人 充實安羅逃亡空地.

이 기사의 내용은 백제가 安羅와 소위 ‘日本府’가 高句麗와 밀통하여 백제를 치려 했다는 음모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이를 보는 시각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제관학자의 것으로서 이 사건을 백제의 임나 점유에 위협을 느낀 임나일본부가 고구려를 끌어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⁴⁷⁾ 다음으로는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高句麗王平成與歲謀 攻漢北獨山城(『三國史記』 26 百濟本記 聖王 26年 春正月) 以滅兵六千 攻百濟獨山城(『三國史記』 19 高句麗本記 陽原王 4年 春正月)

기사와 연계시켜 任那再建策을 내세우며 압박해 오던 百濟를 安羅와 소위 ‘日本府’가 高句麗를 끌어들이어 견제하려 했다고 보는 설이 있다.⁴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설에서는 이를 비판하여 위 기사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고, 안라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이러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⁴⁹⁾

이 중 첫 번째 설인 임나일본부가 고구려를 끌어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논지는 사실 모순 투성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설명하자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먼저 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백제는 이미 신속관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적대세력이던 고구려를 끌어들이어 견제해야 할 정도가 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왜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세력이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왜는 백제를 통제할 영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영지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

47) 末松保和, 앞의 책, pp. 170~171.

48) 金泰植, 앞의 책, pp. 283~287 참조.

49) 延敏洙, 「古代韓日關係史 研究의 現段階와 問題點-金鉉球·金泰植氏의 업적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43, 1994, pp. 346~347.

변화는 단순히 ‘임나의 쇠퇴’ 정도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굳이 이런 식으로 보자면 왜 자체의 쇠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전에는 적대관계이던 고구려-왜 사이에 극적인 관계개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변화는 서술하지도 않은 채 단순한 추측만 했을 뿐이며 왜에 대한 백제의 신속 같은 것을 전제하는 한 이 상황변화를 사료적 근거를 갖추어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왜가 고구려를 끌어 들였다는 식의 논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은 안라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안라가 관련되었다는 것은 백제가 유포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최근의 설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 설에서는 우선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백제가 가야를 세력권하에 넣는 소위 ‘부용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근거로 임나재건회의 과정에서 가야측이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와 548년 고구려·동에 연합군의 백제의 독산성 공격, 550년 고구려와의 도살성·금현성 전투, 553년 신라의 漢水流城攻取,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의 성왕의 전사 등 백제의 국제적 환경은 극히 불리했을 뿐 아니라 위급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므로 가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신라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⁵⁰⁾

그러나 임나재건회의에서 보인 가야측의 비협조는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 자체가 가야에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일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백제세력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가야가 자발적으로 백제에 협조했기 때문에 ‘부용화’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즉 가야제국이 임나재건회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부용화’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백제의 국제환경이 위급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신라에 한수유역을 탈취당하기 전까지는 신라와 연합하여 일단 한수유역을 차지하는 등,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위에서

50) 延敏洙, 앞의 책, pp. 346~347.

열거한 상황은 밀통의 의심을 받고 있는 548년 독산성 전투 이후의 상황이다. 따라서 548년 이후에 백제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가야지역에 진출할 여력이 없었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국제적으로 분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는 백제도 사전에 가야의 선택을 강요해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한수유역 탈환작전 같은 거사를 앞두고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같은 약소세력에 압력을 넣어 세력권하에 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야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고구려나, 553년 이전에는 백제와 동맹관계에 있는데다 이전에 동맹을 맺으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신라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백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백제세력이 가야를 세력권하에 넣을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551년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漢水流域을 攻取할 때 가야군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관산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에 대한 가야측의 불신과 거부감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⁵¹⁾ 이러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전투에 백제편에서 참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백제의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참전이었고, 이는 백제에 부용화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야가 백제에 부용화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여 제시된 근거는 설득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安羅와 高句麗의 밀통에 대한 포로의 증언도 고급정보를 알 턱이 없는 포로의 말을 방증할 자료가 없고, 안라와 고구려가 접촉한 것은 4세기 말 군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안라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밀통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⁵²⁾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밀통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밀통 자체가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을 고급정보로 보는 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다. 이러한 성격의 정보라면 오히려 소문 돌기가 쉬운 것이어서 고급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와

51) 延敏洙, 앞의 책, p. 347.

52) 延敏洙, 앞의 책, p. 347.

안라는 4세기 말에 군사적 접촉이 있었을 뿐,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6세기에 들어서서까지 고구려와 안라가 서로의 존재를 모를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 접촉의 구체적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밀통였으므로 그 성격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안라군이 이 전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밀통을 통해 고구려를 끌어들이는 안라의 입장에서는 백제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의 추이도 보지 않고 나설 수가 없다. 따라서 안라군이 이 전투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안라의 통모를 의심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물론 고구려의 독산성 공격이 실제로 안라와 어떤 식으로 밀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현재에 와서 밝히려는 시도 자체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백제가 안라를 의심할 정도로 안라의 반백제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안라의 일본부가 신라와 계략을 통하여 백제가 저지하는 내용이 나타난다.⁵³⁾

이렇게 밀통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면 백제가 이 사건을 제3자인 왜까지 한편으로 몰아 외교문제로 비화시킨 것이 포로의 허위사실 유포에만 근거를 두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백제가 중요한 외교문제를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처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백제가 외교적으로 안라를 압박하려는 것이 목표였다면 제3자의 입장에 선 왜의 협력을 얻어 안라를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백제가 안라에 더하여 왜와의 관계 훼손까지 감수하면서 왜가 통모에 가담했다고 몰아 간 것은 적어도 백제-가야(안라)간 갈등의 골은 이전부터 매우 깊었고 백제가 혐의를 가질 정도의 정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고구려의

53)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宣文·中部奈率木利勝淳·紀臣奈率彌麻沙等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 通計新羅 深責罵之(中略) 竊聞 任那與新羅運策席際 現蜂蛇怪.」(『日本書紀』19, 欽明紀2年 秋7月)

독산성 공략이 안라와의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안라가 백제의 영향을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나아가 안라를 비롯한 加耶諸國이 독자노선 추구라는 측면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 세력은 百濟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5세기 중엽~6세기 초까지의 상황은 가야가 백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이것이 좌절되어 이 과정에서 몇몇 가야소국은 신라에 투항하는 길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가야제국은 다시 백제세력권으로 흡수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 음 말

이상으로 5세기 후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加耶는 5세기 후반 백제가 위축된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는 등 세력을 재정비했을 뿐 아니라 百濟와도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가야세력은 오래 가지 않아 백제·신라 등 주변세력의 압력을 받아 위축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일부 가야소국은 신라에 투항하고 나머지 가야제국도 ‘임나제건’을 앞세워 압력을 넣어 오던 백제의 부용세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때에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소위 ‘임나제건’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4세기 중반 근초고왕대에 이룩한 바 있던 백제·가야·왜 동맹체제를 다시 한 번 이루어보자는 의도로 풀이했다. 백제는 이런 식으로 한반도 남부에 자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가야를 비롯하여 신라·왜의 비협조로 그 자체가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되나 백제가 가야세력 상당부분을 세력권에 넣는 데는 차질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안라 등 일부 가야소국의 저항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기본적으로 백제에서 벗어나려는 가야의 노력과 가야를

세력권에 넣어 두려는 백제의 의도가 충돌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결국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의 가야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신라·왜 등 주변세력의 변수가 작용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는 가야의 백제 종속이 어떠한 형태이건 '자발적인' 것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야가 신라세력의 팽창 때문에 백제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는 기존설과는 달리 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려 하다가 실패하여 백제의 부용국으로 전락했던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세기 후반~6세기 초의 가야사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4세기 이후의 가야사도 4세기 중엽 백제·가야·왜 동맹체제 성립과 5세기 초의 해체에 이은 5세기 후반~6세기 초의 체제재건 시도라는 흐름 속에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가야사가 4세기 이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高麗 武臣執權期 私兵의 성격

오 영 선
(서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리 말
2. 무신정권의 성립과 정권쟁탈에 이용된 私兵
3. 최씨정권의 성립과 사병
4. 사병적 공병으로서의 '삼별초'
5. 사병의 형성 배경과 그 논리
6. 맺음 말

1. 머리 말

1170년 무신정변의 결과 형성되어 100년간 지속된 무인집권기는 한국 정치사상 매우 독특한 경험을 겪은 시기였다.¹⁾

고려전기 이래 의종대까지 고려사회는 문반관료 위주의 정치구조가 지속 강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무반관료는 정치운영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정변은 그 동안 정치운영에 소외되었던 무반관료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운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체 무반관료들의

1) 무인집권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무인집권기연구반, 1994 「무인집권기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와 현실』 11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무인집권자가 등장하였다.

무인집권기 가운데서도 崔忠獻을 시작으로 1196년(명종 26년)부터 1258년(고종 45년)까지 神宗·熙宗·康宗·高宗 등 4대 60여 년 간 국정을 오로지했던 최씨집권기는 가장 특징적인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전의 집권자에 비해 집권 기간이 대단히 장기간이었다는 점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제반 구조들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정권이 이후 4대에까지 계승되었다는 점이 주목될 만하였다.²⁾

어느 정치세력이든 무력기반, 즉 군사력의 향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군대 지휘 계통에 자신의 심복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公兵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공병조직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제도적 규정을 받고 있는 공병조직은 그 운용에 있어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지휘관의 임명, 군사의 동원 등에 있어 합법적인 외양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병을 구성하는 군인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대, 즉 私兵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군사력의 존재는 커다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극력 저지하려 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사병의 보유는 불가능하다. 사병의 존재는 국가권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무신집권기에 나타나는 사병의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시기 무신집권자들이 양성했던 사병은 무신집권기 사회성격의 일면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무신집권기의 사병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방·문객·가병 등의 사병집단과 別抄軍制는 무신집권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에 힘입어 각 兵種에 관한 세밀한 고증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실이 많이 밝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私兵이 조직되는 정치적 배경이나 논리, 그것이 당시 정치세력 및 정치상황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하는 측면에 대해

2) 참고, 1995 「최씨집권기 정권의 기반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참조.

서는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³⁾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힘입어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무신정권의 성립과 정권쟁탈에 이용된 私兵

무신정변 당시 무신들이 동원한 군사력은 주로 巡檢軍이었는데, 이들은 公兵에 속하는 부대였다.

- A-① 저물 무렵 왕이 普賢院 근처에 이르렀을 때 李高와 李義方이 먼저 가서 왕의 諭旨라 속여 巡檢軍을 모았다.⁴⁾
- ② 李高·李義方 등이 巡檢軍을 거느리고 京城에 直走케 하여 街衢所에 이르러 別監 金守藏을 죽이고 궁궐에 들어갔다.⁵⁾
- ③ 李高·李義方 등이 巡檢軍을 거느리고, 밤에 太子宮에 다달아 行宮別監 金居實, 員外郎 李仁甫 등을 죽이고, 또 泉洞宅에 들어가 別常員 10여 명을 죽이고서, 사람을 시켜 길에서 외치기를, “무릇 文臣의 관을 쓴 자는 胥吏라 할지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 하니, 군졸들이 벌떼 같이 일어났다.⁶⁾
- ④ 巡檢軍들이 창과 벽을 뚫고 궁중의 보물을 훔쳤다.⁷⁾
- ⑤ 徐恭은 재상이 되어 더욱 겸손하여 문관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미워하고 무인들을 예우하였으므로 경인의 난에 重房에서 巡檢軍 20

3) 아별초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이를 정치세력과의 연관하에서 이해한 연구가 있다. (金秀美, 1995 「高麗武人政權期の 夜別抄」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이 논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기존의 삼별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한 연구로 평가된다.

4) 『高麗史』 권19, 세가 毅宗 24년 8월 정축.

5) 『高麗史節要』 권12, 의종 24년 8월.

6) 『高麗史節要』 권12, 의종 24년 8월.

7) 『高麗史』 권19, 세가 毅宗 24년 9월 무인.

명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여 화를 당하지 않았다.⁸⁾

무신정변을 주동한 정중부·이의방·이교 등은 따로 사병은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공병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사실 무신정변 이전까지의 무신들의 정치적 지위로 볼 때 이들이 사병을 육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⁹⁾ 때문에 이들이 동원한 군사력은 사료 A-①·②·③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검군이 대부분이었다. A-③에서 보듯이 정변이 거의 성공할 즈음에는 순검군 외에도 많은 군졸들이 참여하였지만, 정변의 주력은 역시 순검군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정변이 성공한 후에는 궁궐에 들어가 궁중의 보물을 훔치는 등의 무법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A-④). 또한 서공의 경우를 보면 그는 평소 무신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던 관계로 무신정변 당시 重房의 명령을 받은 순검군에 의해 신변의 보호를 받고 있다.(A-⑤)¹⁰⁾

무신정변이 성공한 이후에도 무신들은 巡檢軍 및 府兵 등의 公兵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B-① 李義方도 평소 李高가 자기를 꺾박하는 것을 미워하더니, 드디어 그 음모를 알고, 蔡元과 함께 李高 등이 宮門 밖에 이르러는 것을 기다려 곧 쇠방망이로 쳐서 죽이고, 巡檢軍을 시켜 그의 어머니와 도당을 잡아

8)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년 7월.

9) 무신정변 이전에도 역시 문신 또는 무신들이 일정한 규모의 사병을 육성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무신집권기 이전에 조직된 사병은 일정한 목적을 수행한 이후에는 대부분 공병조직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었다. 이는 무신집권기 이후의 사병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무신정변 이전 무신들 역시 소규모의 사병을 조직하여 무신정변에 동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무신정변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력은 역시 공병조직이었다.

10) 이는 무신정변 당시 重房이 조직적으로 정변을 참여했음을 알려 주는 기사로 주목된다. 즉 정중부·이의방·이교 등이 정변을 주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중방에 있는 여러 장수들의 도움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무신정변의 구상 단계부터 중방의 장수들과 협의했는지, 혹은 무신정변을 일으킨 직후 중방의 조직을 이용하려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이 기사는 무신정변 당시의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가 모두 목베어 죽였다.¹¹⁾

- ② 이튿날 간관이 함문 앞에 엎드려 힘차게 간쟁하니, 이준의가 술김에 巡檢軍을 시켜 욱보이게 했다.¹²⁾
- ③ 밤에 궁궐에 화재가 일어나서 諸寺僧들과 府衛軍이 궁궐에 가서 불을 끄려 하는데, 정중부·이준의 등이 입직하고 있었다. 이의방 형제가 흑변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궐내로 들어가서 자성문을 닫고 들이지 않았다.¹³⁾
- ④ 重光寺·弘護寺·歸法寺·弘化寺의 僧 2,000여 인이 城의 東門에 모이니, 문을 닫았다. 이에 성밖 인가를 불태우고 崇仁門을 불태우고 들어가 李義方 형제를 죽이려 하였다. 이의방이 알고 府兵을 징집하여 쫓아 승 100여 인을 죽였으나 府兵 역시 많이 죽었다. 이에 府兵에 명하여 성문을 나누어 지키고 승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府兵을 보내 重光寺·弘護寺·歸法寺·龍興寺·妙智寺·福興寺를 파괴하려 하였다.¹⁴⁾

무신정권 직후 李義方 및 그의 형 李俊儀는 무신정변 당시 이용하였던 巡檢軍을 정적 제거 및 정권유지에 이용하였다(B-①, B-②). 같은 公兵에 속하는 일반 府衛軍은 아직까지 경계의 대상이었다. 즉 궁궐에 화재가 일어나 諸寺僧과 府衛軍이 궁궐로 가서 불을 끄려 하는데, 이의방 형제는 흑변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궁궐로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B-③).¹⁵⁾ 이는 이의방이 무신정변 직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 전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신들이나 다른 무신들이 일반 부병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의방이 정권을 장악한 수년 후에는 일반 府兵도 이의방의 목

11)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년 1월.

12)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년 9월.

13) 『高麗史』 권19, 세가 명종 1년 10월 입자.

14)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4년 1월.

15) 물론 이때 이의방 형제가 두려워한 존재는 무신정변 초기 사원과 무신세력과의 충돌을 돌이켜 보면 府衛軍보다는 諸寺僧에 비중이 두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때 府衛軍 역시 경계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다.

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B-④). 이는 이제 이의방이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의 공병조직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시기 집권무신들은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제각기 사적인 무력집단을 거느리기 시작하였다. 무신들간에 정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무뢰·호협은 이들이 조직한 사병의 좋은 공급원이 되었을 것이다.

C-① 이고가 반역할 뜻이 있어 몰래 惡小들과 법운사의 중 수해, 개국사의 중 현소 등과 교분을 맺고 밤낮으로 연회를 벌여 술을 마시며 말하기를, “큰일이 만일 성공하면 너희들은 모두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하고, 制書를 거짓 작성하였다. 원자의 冠禮에 즈음하여 왕이 여정궁에서 연회를 베풀자 이고가 선화사가 되어 연회에 간여하니, 비밀히 현소를 시켜 惡小들을 법운사 수해의 방에 불러들여 각각 소매 속에 칼을 가지고 담장 사이에 숨게 하여, 장차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¹⁶⁾

② 蔡元이 朝臣들을 모두 죽일 음모를 하다가 일이 누설되니, 李義方도 채원을 꺼려 드디어 조정에서 죽이고, 門客과 群小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¹⁷⁾

③ 李俊儀의 門客들은 모두 흩어졌다. 이준의가 李義方에게 가서 사과하니, 이의방도 몰래 가서 사과하였다.¹⁸⁾

④ 慶大升이 勇士 牽龍 許升에게 말하기를, “내가 死士 30명을 화의문 밖에 매복시키겠으니, 네가 먼저 鄭筠을 안에서 죽이고, 신호하면 호응하겠다.” 하였다.¹⁹⁾

16)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년 1월.

17)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년 4월.

18)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4년 1월.

19)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9년 9월.

- ⑤ 李義政은 慶大升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들은 후부터 항상 勇士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경비하였다.²⁰⁾

무신정권은 성립 초기부터 집권무신 사이에 정권쟁탈을 위한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惡小(C-①)·門客(C-②, C-③)·群小(C-②)·勇士(C-④, C-⑤)·死士(C-④) 등으로 표현되는 사병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변의 주요 고비마다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이같이 명종대에 집권무신들간에 제각기 사병을 육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은 아직까지 집권무신의 정치권력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종대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이 무신들의 의결기구인 重房에서 결정되었다. 때문에 유력한 무신들은 제각기 중방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²¹⁾ 따라서 이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해 보려는 문객들이 이들 주변에 모여 들었고, 무신집권자도 이들이 문객들을 모으는 것을 제지하기 어려웠다. 물론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무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하였겠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다. 경대승 집권 당시 경대승을 죽여 정중부의 원한을 갚겠다고 공언하는 무관이 있었는데도 경대승이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새로 都房을 조직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였다.²²⁾

물론 그 무관도 그러한 말을 공언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적인 무력기반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20)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0년 1월.

21) 重房은 무신정권이 성립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실질상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이 중방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정치는 일종의 합의제 정치로, 무신집권자는 중방의 원로무신들의 입장을 존중하였고, 중방 역시 집권자의 협력자가 되면서도 때로는 그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였다.(閔丙河, 1990 『武臣政權의 支配機構』 『高麗武臣政權研究』 새문사, p. 81.)

22) 『高麗史』 권100, 열전13, 慶大升傳.

3. 최씨정권의 성립과 사병

가. 신변보호를 위한 '都房'

도방은 무신정권 초기 신변보호 및 정권쟁탈을 위해 육성된 사병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형태의 것이었다.²³⁾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한 경대승은復古의 기치를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기독교자의 위치에 있었던 무신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경대승은 무신 공동의 적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조직한 것이 도방이었다.

D-① 뒤에 어떤 武官이 말하기를, “정중부 시중이 앞장서서 대의를 부르짖어 文臣을 누르고 우리들의 울분을 씻었으니, 공이 크다. 이제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四公을 죽였으니, 누가 그를 칠 것인가” 하였다. 경대승이 두려워하여 결사의 勇士 백수십 명을 모아 門下에 두고 都房이라 하여 경비하게 하였다. 긴 배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주고 晝夜 교대로 宿直을 하게 하였으며, 자신도 그들과 한 이불 속에 자면서 성의를 보였다.”²⁴⁾

② 京城에 도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慶大升의 都房이라고 자칭하였다. 有司가 체포하여 가두면, 경대승이 번번히 놓아 주었다. 이 때문에 드러내 놓고 약탈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었다. (중략) 또 都房에서 꺼리는 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의민은 더욱 두려워하였다.”²⁵⁾

③ 慶大升이 鄭仲夫를 칠 때 牽龍 金子格이 공이 있어 都房을 거느리게 하였다. 慶大升이 죽자 도방에서 돈을 모아 장사를 마치고 흩어지면서 술을 마셨는데, 김자격이 무고하였다. 왕이 평소 경대승을

23) 柳昌圭, 1985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동아연구』 6(1995,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출판부 재수록).

24) 『高麗史』 권100, 열전13, 慶大升傳.

25)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0년 1월.

꺼렸으므로 重房에 명하여 체포하게 하고 將軍 鄭存實로 하여금 엄하게 치죄하게 하였다. 고문이 몹시 혹독하여 길에서 죽은 자가 많고 살아 남은 자는 4~5명에 불과하였다.²⁶⁾

경대승은 도방의 구성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하기도 하고(B-①), 도방의 구성원들이 공공연히 악탈을 하여 관청에서 체포를 하면 힘을 써 풀어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B-②). 경대승의 이러한 원칙없는 배려는 반대세력에 대해 공격의 명분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방은 반대세력의 사병을 압도하는 우세한 무력을 가지고 경대승의 집권을 뒷받침하였다. 비록 다른 무신들의 사병을 해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경대승의 도방은 다른 무신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경대승이 죽은 후 반대세력에 의해 바로 도방이 제거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B-③)

하지만 경대승이 조직한 도방은 다른 무신들이 조직한 사병과 비교하여 그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무신들의 사병에 비해 보다 조직화한 것이었다. 경대승의 도방 역시 다른 무신들의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혹은 유사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대승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이의민의 경우, 도방을 조직하였다는 기사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의 사병은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충헌에 의해 다시 조직된 도방은 그 성격에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D-④ 崔忠獻은 스스로 방자함을 알고 不測한 변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무릇 文武官 및 閑良과 軍卒 가운데 힘 있는 자를 모두 招致하여 六番으로 나누고 날마다 그 집을 直宿하게 하니, 都房이라 칭하였다.²⁷⁾

⑤ 崔忠獻이 賓客을 모아 重陽宴을 베풀었다. 都房의 힘 있는 자로 하여금 手搏을 하게 한 후 이긴 자에게는 곧 校尉와 隊正을 상으로

26)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13년 8월.

27) 『高麗史』 권21, 세가21, 神宗 3년 12월.

주었다.²⁸⁾

- ⑥ 崔忠獻의 都房六番은 모두 宮城 밖에 모여 있었으나, 최충헌의 生死를 알지 못했다. 茶房 盧永儀란 자가 최충헌을 따라 궁 안에 들어갔다가 지붕에 올라 크게 외치기를 “똥공이 무사하다” 하니, 이에 都房이 다투어 들어가 구했다.²⁹⁾

都房은 최충헌이 집권한 이후 다시 한 번 조직되었다. 최충헌 역시 경대승의 사망과 함께 해체되었던 도방을 보다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신변보호기구로 삼고자 하였다(D-④). 또한 이를 위해 최충헌 역시 도방의 구성원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 사적인 시혜를 베풀었다(D-⑤). 실제 도방은 희종 7년 국왕이 중들을 동원하여 최충헌을 살해하려 했을 때에도 도방은 최충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D-⑥)

하지만 최충헌이 조직한 도방은 경대승의 도방과 비교하여, 큰 성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도방의 모집 대상은 ‘文武官 및 閑良과 軍卒 가운데 힘 있는 자’였다(B-④). 이 가운데 ‘閑良’을 제외한 ‘文武官’과 ‘軍卒’은 모두 중앙군이거나 중앙 관직의 담당자였다. 이는 경대승이 조직한 도방의 구성원이 ‘勇士’였으며, 이들이 도적질로 관아의 골칫거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때 도방의 구성원은 대부분 국가의 공적인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던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은 사적으로 최충헌의 도방에 남아 있으면서도 계속 공적 임무에 종사하면서 중앙군 가운데 도방에 속하지 않은 군사를 간접적으로 崔氏家의 측근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³⁰⁾

28) 『高麗史節要』 권14, 希宗 5년 9월.

29) 『高麗史』 권21, 세가21, 熙宗 7년 12월.

30) 유창규씨 역시 도방의 구성원들이 중앙의 공적인 체계에 연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방의 상위층을 이루는 ‘文武官’은 최충헌의 문객집단 전체를 도방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킨 것이고, 군사적 기능을 주로 하는 도방에 문인 관료까지 포함된 것은 최충헌의 집권기에 아직까지 문인 문객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軍卒’은 여러 衛에 속한 중앙군으로 이들은 국가의 군사로 계속 활동하면서 최충헌과 사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한다(柳昌圭, 1985 논문 pp. 119~121 참조). 도방의 구성원 가운데 ‘閑良’은 그 신분이 분명하지 않고, 특별한 관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중앙의 공적인 체계

하지만 도방은 이후 최씨집권자의 家奴로 구성된 家兵이 점차 조직화되면서 직접적인 무력기구로서보다는 상급무인들의 시위기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방에 속한 무인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서 최씨가문의 문객으로 활동하였다.³¹⁾ 최씨정권 역시 도방에 속한 자신들의 심복을 관직에 임명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방은 최이대에 內外都房으로 확대되고, 최항대에는 36번으로 확대되는데, 이 역시 도방에 속한 상급무인들의 수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³²⁾

한편 최씨정권이 붕괴된 후 도방은 관료체계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E-① 왕이 康安殿에 행차하니, 百官들이 陳賀하기를 새로 즉위하는 것같이 하였다. 예가 끝나자 朴松庇·金仁俊이 또한 여러 공신과 左右別抄·神義軍·都房 등을 이끌고 殿庭에 들어가 절하면서 萬歲를 불렀다.³³⁾
- ② 왕이 王輪寺에 행차하니, 各番都房·左右別抄·神義軍·書房·殿前이 연을 모시고 갔다. 보는 사람마다 감격하여 울었다.³⁴⁾
- ③ 몽고사절이 外城을 헐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도방에게 명해 헐게 하였다.³⁵⁾

최의가 제거된 후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고종이 참석하자 都房은 左右別抄·神義軍과 함께 殿庭에서 시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E-①). 이는 물

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31) 『高麗史』 권129, 叛逆3, 崔忠獻傳 附 崔怡.
「崔怡가 門客인 大將軍 朴承賁 등을 시켜 栢樹를 취하여 심게 하였다.」
- 32) 유창규씨는 이것을 도방의 인원 수는 증가하지 않은 채 番의 횡수만 늘린 것으로 도방의 구성원이 崔氏家에 番을 드는 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최씨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도방 소속원이 중앙정부와도 관련을 맺음으로써 최씨가를 중앙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도방 소속원의 이해가 최씨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취약점이 된다고 하였다.(柳昌圭, 1985 앞의 논문, p. 400)
- 33) 『高麗史』 권24, 세가24, 고종 45년 3월 기묘.
- 34) 『高麗史』 권24, 세가24, 고종 45년 4월 신묘.
- 35) 『高麗史』 권24, 세가24, 고종 46년 6월 경인.

론 최의를 제거한 朴松庇·金仁俊의 지휘에 의한 것이었지만, 원래의 도방의 임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³⁶⁾ 그 후 왕이 왕륜사에 행차하는 데에도 左右別抄·神義軍·書房 등과 함께 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F-②), 외성을 철 때에도 도방은 동원되고 있다.(F-③)

원종대에 들어와서 도방은 그 활동이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준이 정권을 장악한 후로는 도방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임연이 정권을 잡은 이후 도방은 다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F-① 林衍이 三別抄·六番都房을 毬庭에 모아놓고 宰樞와 의논하였다.³⁷⁾

② 林衍이 甲冑를 갖추고 三別抄·六番都房을 거느리고 安慶公 滄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³⁸⁾

③ 林衍이 金俊의 옛집에 들어가니 安慶公 滄이 都房六番을 보내 호위하였다.³⁹⁾

④ 林衍이 죽자 順安侯가 林衍의 아들 林唯茂를 敎定別監으로 삼았다. 임유무가 都房六番을 모아 집을 호위하였다.⁴⁰⁾

이때의 도방은 최씨집권기 때와는 달리 다시 6번으로 축소되어 있다(F-①, F-②, F-③, F-④) 이는 도방이 다시 무력기구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도방의 활동도 공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도방은 공병 조직인 三別抄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F-①, F-②). 三別抄나 都房이 모두 임연의 지휘하에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임연의 사병으로 보기는

36) 물론 이전에도 도방이 공적인 임무에 동원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항 집권기에 들어와 도방은 공적인 임무에 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고종 43년 3월 무오에 몽고군사가 칙령 밖에까지 이르자 최항이 도방을 시켜 중요한 곳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이는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국왕과는 관계없이 최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7) 『高麗史』 권26, 세가26, 원종 10년 6월 임진.

38) 『高麗史』 권26, 세가26, 원종 10년 6월 을미.

39) 『高麗史節要』 권18, 원종 10년 7월.

40) 『高麗史節要』 권18, 원종 11년 2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도방의 지휘권은 최종적으로 국왕에게 있었다. 임연에 의해 국왕이 된 安慶公 滄이 都房六番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F-③). 그렇다면 임유무가 도방을 지휘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그가 국왕 대신 監國의 지위에 있던 順安候에 의해 敎定別監에 임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 권력유지를 위한 ‘家兵’

최충헌의 집권 이후 정치구조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병의 운용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최씨집권기는 무인집권기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국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위가 형성되었다. 최씨집권자들에게 붙여졌던 ‘令公’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러한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⁴¹⁾ 이러한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무력기반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가병이었다.

가병은 말 그대로 한 집안에서 부리는 병사라는 뜻으로 사병의 원래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충헌 집권 이전부터 한 집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무력으로서 家僮·家奴·家僕 등이 있었다. 1178년 7월 旗頭 80명이 술집에 모여 감옥에 갇힌 대장군 張博仁을 구출할 것을 의논하자, 정중부가 家僮들을 보내 체포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⁴²⁾ 이때 체포된 기두의 수가 80명인 것으로 미루어 파견된 가동의 규모는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도 역시 문객이나 사병의 일부분을 이루었을 것이지만, 정중부에게 있어 예측의 정도가 보다 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동이 아직 군대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데에 비해 가병은 그 규모가 큰 것과 함께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G-① 최충헌이 家兵을 사열하는데 左梗里로부터 右梗里까지 군사들이 두서너 겹 열을 지어 2~3리에 걸쳤으며, 창자루에 銀瓶을 달아매

41) 졸고, 1995 앞의 논문 pp. 64~68 참조.

42) 『高麗史節要』 권12, 明宗 8년 7월.

어 國人들에게 자랑해 보이며 오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아들 최이의 가병은 選地橋로부터 梨嶺을 지나 崇仁門까지 이르렀는데, 旂를 세우고 북을 울리면서 전투를 연습하였다.⁴³⁾

- ② 崔瑀가 家兵 3천명을 보내어 북계병마사 민희와 더불어 淸原보를 잡아 서울로 압송하여 저자에서 腰斬하였다.⁴⁴⁾

최충헌의 가병은 그 규모를 사열하는 데 두서너 겹으로 2~3리에 걸쳐 있었고, 아들 최이의 가병 역시 전투연습을 하는 데 있어 실체를 방불케 하였다(G-①). 또한 최우가 서경에서 반역한 淸原보를 잡기 위해서 파견한 가병의 수는 3,000명에 이르렀다(G-②). 이같이 최씨집권자의 가병의 규모가 확대되고 군대조직으로서 정비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이전 시기에 유력 무신들이 육성하였던 문객이나 사병 조직이 용납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최씨집권자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써 자신에 위협적인 인물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최충헌은 집권 초기 동생 최충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 천여 명을 깨뜨렸고,⁴⁵⁾ 회종 3년 3월에는 생질 박진재를 제거하면서 그의 문객들을 해체시켰다.⁴⁶⁾ 이후에는 최씨집권자를 제외한 다른 무신들이 문객 등의 사병을 육성한 경우를 보기 어렵다. 1233년 李子成이 동경의 반란군 崔山·李儒 등을 진압하고 돌아오자 將士들이 날마다 그 집에 모여들었으나, 이자성은 최이의 시기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병을 칭탁하여 이를 거절하였던 것⁴⁷⁾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최씨집권자의 家兵 속에는 家奴들을 중심으로 한 私兵과 함께 都房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⁴⁸⁾ 이에는 좀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家兵이라는 표현 속에 도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43) 『高麗史節要』 권14, 고종 3년 12월.

44) 『高麗史』 권23, 세가23, 고종 20년 12월.

45)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7년 10월.

46) 『高麗史節要』 권14, 熙宗 3년 3월.

47) 『高麗史』 권103, 李子晟傳.

48) 金塘澤, 1983 「武臣政權時代の 軍制」 『高麗軍制史』, p. 289.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도방은 분명 家兵과는 구별되는 조직이었다.

H-① 崔瑀가 家兵·都房·馬別抄를 사열하는데, 鞍馬와 衣服과 弓劍, 兵甲이 사치스러웠다. 五軍으로 나누어 習戰하는데, 死傷者가 많았다.⁴⁹⁾

② 최우가 최항을 추밀원지주사로 벼슬을 올리고 家兵 500여 명을 나눠 주었다. (중략) 최이가 죽자 知吏部事 上將軍 周肅이 夜別抄 및 內外都房을 거느리고 왕에게 정권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猶豫하여 결단치 못했다. 殿前 李公柱와 崔良白, 金俊 등 70여 인이 최항에게 귀부하니, 주숙도 따랐다. 內外都房이 合番하여 호위하였다.⁵⁰⁾

家兵·都房·馬別抄 등은 각각 구별되는 존재였다(H-①). 또한 최이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최항에게 나누어 준 家兵 500명 속에는 도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H-②). 상장군 周肅이 夜別抄 및 內外都房을 거느리고 국왕에게 붙으려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병력이 가병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최항에게 붙었던 殿前 李公柱와 崔良白, 金俊 등 70여 인은 바로 최우가 최항에게 나누어 준 家兵 500명 또는 최우가 죽기까지 아직 물려 주지 못했던 자신의 가병을 지휘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씨의 家奴 출신으로 상장군에 있던 주숙과는 그 출신이 달랐다.⁵¹⁾

가병은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군사력이었다. 가병의 역할은 최씨집권자의 신변보호 및 정적의 제거 외에도 최씨집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역할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도방과 기능 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기능은 오히려 가병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⁵²⁾

49) 『高麗史節要』 권15, 고종 16년 11월.

50) 『高麗史』 권129, 叛逆3, 崔忠獻傳 附 崔沆.

51) 洪承基, 1983 「高麗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 家奴」 『震檀學報』 53-54합(1995,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재수록).

52) 홍승기 교수는 종래 都房을 최씨집권자의 사병 또는 가병조직으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崔氏家와 더 밀착되어 있으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병조직으로서 가병을 들고 있다.(홍승기, 1983 앞의 논문, p. 184)

4. 사병적 공병으로서의 ‘삼별초’

무신집권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력기반은 삼별초로 알려져 있다. 대몽항쟁 당시 강력한 항쟁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삼별초는 도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우대에 조직되었다. 삼별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I-① 崔瑀가 나라 가운데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를 모아서 매일 밤 순행하여 횡포를 막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夜別抄라고 이름 붙였다. 도적이 여러 道에 일어나자 別抄를 나누어 보내서 이를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가 심히 많아 左右로 나누었다. 또 國人으로서 蒙古로부터 도망쳐 온 자로 一部를 삼아 神義軍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三別抄이다. 權臣이 집권하자 이로써 爪牙를 삼아 祿俸을 후하게 하고 혹은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고, 또 죄인의 재물을 籍沒하여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권신이 마음대로 부렸고, 그들은 앞을 다투어 힘을 다하였다. 金俊이 崔嬭를 죽이고, 林衍이 金俊을 죽이고, 宋松禮가 林惟茂를 죽임에 모두 그 힘을 빌렸다.⁵³⁾

최씨집권자들이 자신들의 무력기반으로서 방대한 가병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삼별초를 조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별초의 전신인 夜別抄가 조직된 이유는 ‘나라에 도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때 도적의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물건을 훔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방의 반란군을 의미할 수도 있다.⁵⁴⁾ 당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던 농민층의 몰락현상을 주목할 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

53) 『高麗史』 권81, 兵志1, 兵制, 元宗 11년 5월.

54) 김당택 교수는 ‘盜’를 ‘물건을 훔치는 자’ 또는 ‘지방의 반란군’으로 해석하면서 최우가 야별초를 조직한 동기도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 다수 존재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그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金塘澤, 1984 『武臣執權期の軍制』 『高麗軍制史』 pp. 292~295 참조)

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⁵⁵⁾ 집권자의 입장에서 이들은 치안유지라는 측면뿐 아니라, 국가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퇴치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씨집권자의 가병을 공적인 임무에 동원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또한 최씨정권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家兵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1216년 거란 유종의 침입 당시 최충헌이 자신의 門客 가운데 從軍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귀양 보낸 사실⁵⁶⁾에서 알 수 있듯이 가병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최씨정권의 유지에 있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고려전기 이래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던 二軍六衛는 조직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기존의 운영 방식을 급속하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집권자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공병 조직을 구성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⁵⁷⁾

삼별초의 성격에 대하여 흔히 공병이나, 사병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⁵⁸⁾ 삼별초는 원래부터 공병으로서 조직되었다. 삼별초에 속한 군

하지만 야별초가 성립 초기부터 최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기록은 김당택 교수도 인용하였듯이 최항대 이후부터 나타난다. 야별초의 시기적 활동의 구분에 대해서는 金秀美, 1995 앞의 논문 참조.

55) 徐聖鎬, 1992 「高麗 武臣執權期 商工業의 전개」 『國史館論叢』 37, pp. 84~86 참조.

56) 『高麗史節要』 권14, 高宗 3년 12월.

57) 김수미씨는 야별초의 활동양상을 4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제1기(고종 17년~19년)는 사료에 나타난 대로 주로 '盜의 暴亂한 행위를 제어하는 등 치안유지를 담당하였고, 제2기(고종 19년~36년)는 주로 몽고와의 항전이나 지방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에 이용되었으며, 제3기(고종 37년~45년)에는 몽고와의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몽고와 항전을 하기 보다는 집권자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기, 제4기(원종 9년~11년)는 야별초가 집권자의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해 나갔던 시기라고 하였다.(金秀美, 1995. 앞의 논문 pp. 158~165)

58)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池內宏, 1926 「高麗의 三別抄について」 『史學雜誌』 37-9

(『滿鮮史研究』 中世篇 3, 1963에 재수록)

金庠基, 1939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여(一)」 『震檀學報』 9

(『韓國東方文化交流史研究』 을유문화사에 재수록)

사들은 국가 규정에 의한 녹봉과 토지를 받고 있었고 당시 유명무실해진 公兵 조직에 대신하여 그 군사력을 보강하였기 때문이다.⁵⁹⁾ 또한 삼별초의 지휘는 武官들이 맡고 있었다.

I-② 夜別抄指諭 金世冲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최우를 힐문하였다.⁶⁰⁾

③ 崔瑀의 都房 夜別抄都領 李裕貞이 스스로 적을 치겠다고 청하므로 군사 160명을 주어 보냈다.⁶¹⁾

삼별초의 전신인 야별초에는 都領·指諭 등의 관직이 있었다(I-②, I-③).⁶²⁾ 이는 야별초가 국가의 공적인 체계에 속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金世冲이 정면에서 최우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었던 것(I-②)과 최우의 都房에 속했던 李裕貞이 스스로 從軍하기를 청할 수 있었던 것(I-③)은 바로 그들이 국가의 관료체계 속에 포함된 武官으로서의 입장에서였을 것이다. 다만 이후 최우 등 집권자들이 사사로운 혜택을 자주 베풀면서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등의 일에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私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최우가 이같이 자신의 수족처럼 이용할 부대를 국가의 공병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집권자의 위치가 국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존재로서 인정되었던 정치현실과 관련이 있다. 즉 최충헌 말년 이후 역대의 최씨집권자들은 영공이라는 칭호로 불리면서 이제는 기존에 사적으로만 운영하였던 제반 기구들이 공적인 외양을 갖추어 갔던

尹龍琳, 1977 「崔氏武人政權의 對蒙抗戰姿勢」 『史叢』 21·22合輯

金潤坤, 1981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郡縣民」 『東洋文化』 20·21合輯

金塘澤, 1983 「武臣政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육군본부

_____, 1987 「崔氏政權과 그 軍事的 基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申安湜, 1989 「高麗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 7

59) 申安湜, 1990 앞의 논문 참조.

60)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19년 6월.

61) 『高麗史』 권23, 세가23, 고종 22년 8월 신해.

62) 夜別抄의 指諭·都領 등을 역임한 인물에 대해서는 金秀美, 1995 앞의 논문, pp. 150~155 참조.

것이다.⁶³⁾ 최씨집권자는 사병뿐만 아니라 공병 조직까지도 장악하는公私의 주재자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삼별초의 성립은 이제 공병 조직 자체를 최씨집권자의 의도에 맞추어 조직함으로써 군사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최씨정권에 대한 충성이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당시 몽고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최씨정권이야말로 위기극복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삼별초의 하나인 神義軍을 몽고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온 군사들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삼별초는 집권자의 수족으로서의 구별뿐만 아니라 치안유지 및 외적의 방어라는 공병 조직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었다.

대몽항쟁 당시 몽고군에 저항하는 주체는 일반 농민들과 천민들로 인식되고 있다.⁶⁴⁾ 지배층들이 자신의 안위에만 매달려 강화도에서 소극적인 투쟁만을 계속하고 있을 때 본토에 남겨진 농민들은 향토의 안녕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고려의 공병 조직 가운데 대몽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이 바로 삼별초 조직이었다. 삼별초가 집권자의 사병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삼별초와 농민들이 함께 몽고군의 침략에 저항한 경험은 뒷날 삼별초의 항쟁에 일반 농민들이 적극 호응하게 되는 배경의

63) 최충현은 집권 이후 정치기구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일인 독재의 지배기구로 변화시켰다. 이때 그가 성립시킨 1인 중심의 독재지배기구는 이후 최씨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배기구로는 敎定都監·政房·書房 등 정치기구와 도방·가병·삼별초 등 무력기구 등이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이들 정치기구 및 무력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성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이 이 시기의 무단정치를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방식으로는 최씨정권이 6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을 끊임없이 사적으로 분해하면서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의 실현과정에서 공적인 정당화의 방식이 주목되어야 한다.

64) 姜晉哲, 1973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 『한국사』 7 국권위, p. 365.

尹龍燦, 1977 「崔氏武人政權의 對蒙抗戰姿勢」 『史叢』 21·22合, pp. 321~322.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5. 사병의 형성 배경과 그 논리

무신집권기는 문신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고려전기의 정치 지배질서가 크게 바뀌어 한국사에서 독특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사병의 존재 역시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武臣政變을 계기로 기존의 정치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유력한 무신들은 각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무력수단을 갖추었다. 사병을 육성하는 방법으로는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무장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無賴·豪俠·惡小·死士·壯士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⁶⁾

사병의 형태는 단일하지는 않다. 구성요소의 다양성도 있거니와 사병을 필요로 하는 정치구조가 변화하면서 사병의 형태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사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흔히 무뢰·호협·악소·사사·장사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할 수 있다. 이

65) 삼별초의 항쟁을 초기부터 강인한 민족정신에 바탕한 민족항쟁으로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삼별초의 성립 자체가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끝론 사병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신정권이 무너진 뒤 몽고에 항복하기로 결정한 고려정부가 곧바로 삼별초를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이 삼별초의 반란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몽고와의 강화 여부를 둘러싸고 정권 내부에서 벌어졌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무신정권이 일으킨 반란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王政復古를 기도하였던 원종이 몽고와 결탁하여 개경환도를 단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자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때까지 지배층의 수탈과 몽고라는 외세에 저항하였던 농민들도 고려왕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삼별초의 항쟁은 각지에서 몽고의 침략에 저항하였던 일반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민족항쟁이라는 성격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6) 고려 중기 사병의 구성원을 이룬 부류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채용석, 1992 「고려 중·후기 '무뢰'와 '호협'의 행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8 참조.

들의 존재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사회모순이 현저해지는 변화기에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비중이 커진다. 이들이 사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12세기 역시 고려사회는 사회적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민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민의 저항은 처음 유망이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무신집권기에는 무력항쟁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민들이 점차 기존의 지배질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⁶⁷⁾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시 파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이나 사회상황에 포섭되고 영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부류도 있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당시 정치세력과 결합하려 하였다. 무신집권기 이전 숙종과 李子義의 권력투쟁에서 이미 양쪽 모두 무퇴용사, 즉 사병을 육성한 경우도 있었다.⁶⁸⁾ 그렇지만 무신집권기 이전 조직된 사병은 일정한 목적을 수행한 이후에는 공병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었다. 이는 무신집권기의 사병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문객과 사병은 정치적 권력투쟁과정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발달한 농장·고리대·강제적 교역의 형성과 경영 그리고 확대에 이용되었다. 농민들의 저항을 누르면서 지배층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지배체제를 빌리는 방식 외에도 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이 필요하였다.

문객과 우두머리 사이에는 의리와 결속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객이나 사병들은 자신이 의탁한 우두머리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고, 우두머리는 문객·사병들에게 출세를 보장해 주었다. 이고가 악소들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大事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모두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가짜 임명장까지 만들어 준 것이나, 경대승이 도방을 조직하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고 그들의 불법행위까지도 용인해 준 사실, 최충헌의 생질 박진재가 사병을 기르면서 “자기 문객들은 용력 있고 날래었지만 관직을 얻은 자가 적다”고 최충헌에게 불평한 사실⁶⁹⁾

67) 徐聖鎬, 1992 앞의 논문, pp. 84~86.

68) 채웅석, 1992 앞의 논문 참조.

69) 『高麗史』 권129, 叛逆 崔忠獻傳.

등을 볼 때 무신들은 문객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무신들은 이러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문객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 의리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결속이 기본적으로 호혜적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등의 이념에 바탕하였다기 보다는 계약에 의한 주객관계를 바탕으로 하였다.⁷⁰⁾ 집권무신이 사망하거나 제거되었을 때 그에 소속되었던 문객들이 해체되거나 제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의방 문객들의 경우 이의방이 제거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이의방의 원수를 갚기 위해 결집하였던 것⁷¹⁾을 보면 그들의 내부 결속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이의방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의방의 제거로 인해 자신들의 성장이 제약받게 되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사병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우두머리에 대한 충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우두머리의 도움을 받아 관직을 얻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관직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적 의리에 충실할 것이 요구되었다. 契丹遺種의 침입 당시 최충현이 자신의 문객 가운데 종군하여 공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두 귀양보냈다는 사실⁷²⁾은 바로 그러한 면을 잘 보여 준다.

6. 맺 음 말

무신집권기에 나타났던 사병의 존재는 고려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12세기 이후 지속되었던 사회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사회구조 속에 정착하지 못한 유동층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신의 무력기반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당시의 국가권력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나타내

70) 채응석, 1992 앞의 논문.

71) 『高麗史節要』 권12, 고종 6년 9월.

72) 『高麗史』 권129, 叛逆 崔忠獻傳.

주기도 한다. 사실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듯 지속적으로 사병조직이 유지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12세기 이래 무패·호협·악소·사사·장사 등으로 표현되는 사병의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하지만 무신집권기 이전에 조직된 사병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공병조직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었던 데 비해 무신집권기 이후의 사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무신집권기의 사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단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병은 당시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갖추어 나갔기 때문이다. 무신정변 당시 무신들은 공병 조직을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직까지 사병은 이렇다 할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이들은 제각기 사적인 무력집단을 거느리기 시작하였다. 정치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집권자가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신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유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견제하는 데에 사병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경대승이 조직하여 최씨집권기에서도 이용되었던 도방은 이러한 형태의 사병으로서 가장 조직화된 부대였다.

하지만 최충헌의 집권 이후 정치구조상에 최씨집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병의 운용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유력 무신들이 조직하였던 사병들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오직 최씨집권자만이 사적인 무력집단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의 최씨집권자의 사병은 ‘家兵’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면서, 최씨집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병으로써 이전 시기 유력 무신들이 육성하였던 문객이나 사병조직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병은 이제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한 유력한 무력기반으로서 활용되었다.

최충헌 말년 이후 역대의 최씨집권자들이 ‘영공’이라 불리면서 국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존재로서 인정되면서 최씨집권자들은 자신의 수족처럼 이용할 공병을 조직할 수 있었다. 삼별초가 바로 그것이다. 최씨집권자들은 이전에 사적으로만 운영되었던 제반 기구들에게 공적인 외양을 갖추게 하면서 사병으로서 가병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병조직까

지도 장악하였다. 이는 군사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신에 대한 충성이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무신집권기 사병은 당시의 정치상황의 변화와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점차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추어 갔던 것이다.

朝鮮前期 城郭 研究

—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중심으로 —

柳 在 春
(江原大 講師)

1. 머리 말
2.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 記錄의 特性
3. 城郭의 種類別·地域別 分布
4. 城郭의 規模 分析
5. 城郭의 附帶施設
6. 城郭의 築城材料
7. 關防地와 築城
8. 맺 음 말

1. 머리 말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인 말할 것도 없이 세종실록지리지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지리지는 조선전기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史料이며, 또 이 지리지가 내용 구성상 다소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조선전기의 성곽’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더 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곽자료는 부족하

나마 필자가 이미 「『世宗實錄』地理志 城郭記錄에 대한 檢討」(韓國史學會, 『史學研究』 第50號, 1995)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본 논고에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소개한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전기(16세기 전반) 성곽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래 『東國輿地勝覽』은 1477년에 편찬된 『八道地理志』에 『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文士들의 시문을 첨가하여 成宗 12년(1481) 총 50권으로 편찬되었는데, 中宗代에 와서 李荇·申公濟·尹殷輔·洪彥弼 등이 增修하여 中宗 25년(1530)에 완성한 官纂地理志이다.

그러나 이 地理志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1차 수정은 1485년 金宗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때 詩文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 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大明一統志』의 예에 따라 ‘고적’ 편목이 신설되었으며, 중국의 지리지에는 편제되어 있지 않은 姓氏·烽燧 두 항목이 신설되었다. 그 후 1489년 任士洪·成侃 등이 부분적으로 교정·보충하였으나 내용상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中宗 23년(1528)에 착수하여 中宗 25년에 속편 5권을 합하여 총 55권으로 완성하고 「新增」이라는 두 자를 붙여 간행하게 되었다.¹⁾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各道の 연혁과 총론·관원, 행정구역별 연혁·관원·郡名·姓氏·風俗 등 20여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²⁾ 이에 학계의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왔으며, 특히 성곽·관방·봉수와 같은 항목은 군사유적조사나 기타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서 빈번히 이용되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기록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물론 조선전기 築城에 관한 先學의 연구가 있으나³⁾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기록 자체를 검토·

1) 『新增東國輿地勝覽』, 進新增東國輿地勝覽箋, 新增東國輿地勝覽序, 進東國輿地勝覽箋, 東國輿地勝覽序.

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항목이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개성부·한성부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항목, 예를 들면 宮室·部坊·市街 등이 있다.

3) 車勇杰의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忠南大 博士學位論文, 1988), 沈正輔의 「韓國邑城의 研究」(學研文化社, 1995) 등이 있다.

분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城郭」, 「關防」項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하여 조선전기(16세기 전반) 성곽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가장 중요한 방비시설인 성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 자료 이용에 一助하고자 한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項 記錄의 特性

『新增東國輿地勝覽』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기록 방식과는 달리 먼저 항목을 제시하고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 『世宗實錄』 地理志보다 훨씬 체계적인 구도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관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결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즉 關防地의 성곽인 경우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城郭」, 혹은 「關防」項에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城郭」, 또는 「關防」항에 기록하였다.⁴⁾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각종 통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성곽」항에 기재된 것과 「관방」항에 기재된 성을 별도로 취급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軍事와 관련된 성곽·관방·봉수 3개 항목은 「土產」 다음에 기재하고 있는데, 성곽은 『世宗實錄』 地理志와 마찬가지로 대개 읍성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山城이나 기타 營鎮城 등의 성곽을 기록하였다. 성곽에 대한 기록 내용은 대체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① 석축·토축 등 축성재료에 관한 것, ② 둘레·높이와 같은 성의 규모와 관련된 것, ③ 井泉, 川溪池渠, 軍倉, 門樓 등의 성내 시설이나 水源에 관한 것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 城의 특별한 地勢, 축성 시기 혹은 해

4)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성곽 총수는 관방지 성곽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성곽 총수 통계에 이를 합산하여 서술하지 않고, 관방지 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하였다.

당 城과 관련된 記文이나 詩文 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⁵⁾

또한 읍성은 대개 治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산성을 비롯한 여타의 성곽은 治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방향과 里數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世宗實錄』 地理志의 성곽기록과 비교하여 볼 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항 기록에서는 周長의 표시 단위가 종전의 '步' 위주에서 '尺' 위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尺 단위 표시로의 변화는, 물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 방침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세종대 이후 적극 추진된 도량형의 통일화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⁶⁾ 그러나 성곽 周長을 측량함에 있어서 여전히 동일한 尺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尺'이라는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였지만 그 적용된 尺의 종류와 길이는 지역마다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 周長 기록에 표시된 尺이 동일한 종류·길이의 尺이었다면 조선후기에 편찬된 『輿地圖書』에서 성곽의 周長을 기록하면서 굳이 尺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⁷⁾

그러나 필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기록에 표기된 尺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로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었다고 생각한다. 즉 상당수의 城이 포백척의 길이인 46.73cm(遼守尺 : 혹은 51.2~53.4cm)⁸⁾를 적용하면 현존의 城址 길이와 근사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尺度 표시를 보면 城堡의 周長은 대부분 포백척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종 16년 四道

5) 記文은 경상도 흥해현 읍성의 權近記文을 비롯하여 11개의 성곽에 대한 記文이 있고, 이외에 詩나 會寧都護府의 行城의 경우 「金宗瑞論築行城四鎮便否疏」가 실려 있다.

6) 세종대에는 周尺을 비롯한 營造尺·布帛尺 등에 대한 尺의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세종 13년 4월 工曹의 건의로 포백척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나 세종 28년 11월 영조척 40개를 새로 제작하여 서울과 각 지방에 나누어 주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에 조선후기 영조 때 삼척부에 보관하고 있던 세종조의 포백척을 가져다 尺을 교정하게 한 것만 보아도 세종대의 척도 정비가 이후의 도량형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 卷52 世宗 13년 4월 辛丑, 卷114 世宗 28년 11월 戊辰, 『英祖實錄』 卷51 英祖 16년 4월 乙亥)

7) 『輿地圖書』 忠清道 淸州牧·洪州牧 城池 참조.

8) 田大熙가 그의 논문 「朝鮮代 度量衡器의 實 크기에 관한 研究」(韓國海洋大學 『論文集』 제4집, 1983)에서 제시한 수치이다.

巡察使 洪應이 여러 浦의 堡에 대해 보고한 내용 가운데 會寧浦(全羅道 長興)와 永登浦(慶尙道 巨濟)의 堡 길이는 포백척으로 각각 1,990尺, 1,068尺인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두 城堡의 尺數는 비록 尺의 종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用尺이 포백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 성곽 周長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周尺 6尺=1步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앞서 발표한 拙稿에서도 밝힌 바 있다.⁹⁾ 그런데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성곽의 周長 기록의 상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世宗實錄』地理志의 성곽 步數×6×周尺 길이(20.81cm)=X라고 할 때 'X'값을 다시 포백척 길이로 나누게 되면 대략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尺數와 近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步數에 6尺을 곱한 尺數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尺數와 대략 일치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되어 있는 步數가 동일 尺을 기준으로 한 '步' 개념이 아닌 단순한 6尺=1步라는 개념만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新井宏은 그의 논문 「朝鮮の尺度變遷について」에서 이와 관련하여 周尺 6尺=1步뿐만 아니라 量田尺을 적용한 '步' 개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러나 新井宏이 그의 논문에서 추정한 대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編者가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을 周尺 6尺=1步로 오해하였다고 보는 데는 다음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周長 기록을 보면 반드시 『世宗實錄』地理志의 '步' 단위를 周尺 6尺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보다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있다는 것이며,¹¹⁾

9) 拙稿, 『世宗實錄』地理志 城郭 記錄에 대한 檢討, 『史學研究』第50號, 1995.

10) 新井宏, 「朝鮮の尺度變遷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30集, 1992.

11)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營·鎮·堡의 城을 關防項에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城郭項」에 기록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셋째는 성곽 기록에 있어서 새로운 조사없이 『世宗實錄』地理志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世宗實錄』地理志의 '步'의 길어도 마찬가지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성곽 周長 표시에 사용된 '尺'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체로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생각하나 實길이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를 일일이 규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향후 城址에 대한 실측 조사를 병행한 연구작업을 진전시킨다면 어느 정도 규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城郭의 種類別·地域別 分布

성곽의 종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능과 입지 등을 고려하고 가급적 『新增東國輿地勝覽』성곽항에 기재된 성명칭을 고려하여 도성·읍성·산성 등으로 나누었다.¹²⁾

다음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에 기록되어 있는 城은 모두 181개(行城 10개소는 포함되지 않음)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읍성이 67.9%인 123개이고,¹³⁾ 22.6%인 41개가 산성이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읍성·산성의 수와 비교하여 보면 산성의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읍성은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읍성과 산성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읍성 : 산성의 비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전체 성곽수에서

12) 개성과 평양의 城은 內·外城을 갖춘 특수한 城이고,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읍성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으나 통계 편의상 모두 읍성으로 분류하였다.

13) 孫永植의 『韓國城郭의 研究』(文化財管理局, 1987) 63面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읍성 가운데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95개라고 하였는바, 이는 필자가 조사한 본문 <표 1>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함경, 평안, 황해도와 강원도의 2곳(홀곡, 통천)을 제외한 수치와 맞지 않는다.

(표 1) 各道別 城郭分布(『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 所載)

분류 도 별	도 성	읍 성	산 성	기 타	計
한 성 부	1				1
개 성 부		1			1
경 기도		1	1		2
충 청 도		17	9		26
경 상 도		30	11	2(미상)	43
진 라 도		30	5	9(영진 5, 특수 3, 미상 1)	44
황 해 도		5	3		8
강 원 도		9	2	1(역성)	12
함 경 도		14	3	1(미상)	17
평 안 도		16	7	3(미상)	26
計	1	123	41	16	181

※ 其他에는 편의상 都城·羅城·邑城·山城에 해당되지 않는 城을 포함시켰음.

※ 行城은 상기 도표에서 제외하였는데, 당시 행정으로는 함경도에 4개소, 평안도에 6개소가 있었음.

※ 퇴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성곽항에 기재된 읍성 5개, 산성 4개도 상기 도표에 포함시켰음.

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된 셈이다.¹⁴⁾ 이는 군사·행정적인 면에서 읍성이 중요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성의 수축과 보수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⁵⁾ 즉 산성의 경우 읍성이 없거나 읍성이 견고하지 못하여 산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산성의 군사적 가치가 높은 곳, 혹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점차 폐철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산성의 경우 대부분 군창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

14)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곽을 분류하여 보면 읍성과 산성의 비율은 113:112이다(拙稿, 『世宗實錄』地理志 城郭記錄에 대한 檢討, 『史學研究』第50號, p. 258 참조).

15) 읍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임진왜란시 큰 방어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유성통 등이 산성 수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임란중·임란후에는 오히려 산성이 많이 수축되게 되었다(李章熙, 「壬亂中 山城修築과 堅壁淸野에 대하여」,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1995. pp. 623~631).

을 보더라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¹⁶⁾

『新增東國輿地勝覽』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는 성곽을 분류하여 보면 읍성·산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외에 營鎮城·驛城·行城 등이 나타나고 있다.¹⁷⁾

영진성은 각 지역의 營·鎮이나 그 所管의 관방지에 쌓은 성을 말하는 데,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성은 모두 8개소이다. 이러한 城은 전라도의 長興都護府·珍島郡·旌義縣·大靜縣·順天都護府에서만 나타나는데 지리지 편찬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關防項에 기재되어야 하는 城이라고 하겠다.

행성은 국경지역을 위주로 천연적인 지세를 이용하여 적의 침입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든 성을 말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함경도 4개소, 평안도 6개소 등 모두 10개의 행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驛城으로는 강원도 삼척의 옥원역성이 여말선초에 축성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¹⁸⁾ 일찍이 守城千戶가 배치되어 관리되기도 하였던 이 城은 군창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나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¹⁹⁾ 특수한 사색에 속하는 城이기도 하다. 이 城의 설치는 驛卒의 軍兵化라고 하는 측면에

16)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에 기재되어 있는 군창은 모두 50개인데 이 가운데 37개가 산성에 있다(關防項에 기록되어 있는 군창은 10개소).

17)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에 기록되어 있는 城 가운데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짓기 어려운 것이 7개이다. 이는 달성(대구도호부), 礪石城(진주목), 조양현성(보성군), 어울동고성(용강현), 철산성(철산군), 대삭주성(삭주도호부), 산창동성(영풍도호부)인데, 이 성들은 邑治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면서 堡障 역할을 하거나 古城이기는 하지만 군사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 또는 管內 주요지역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다.

18) 『太宗實錄』卷24 太宗 12年 12月 壬子.

19) 이 城은 1760년경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나타나고 있으나 1830년경에 편찬된 『關東誌』에는 '沃原古城'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사이에 폐철된 것으로 보인다.

〈丑 2〉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行城 現況

道	行政區域	位 置	길 이	높 이	비 고
咸鏡道	三水郡	在郡北一里	1,517尺	5尺	石築
	會寧都護府	禿山煙臺-慶源 訓戎鎮	11,720尺	15尺	
	鍾城都護府	-	151,590尺	-	石·土築 木柵
	穩城都護府	-	143,768尺	12尺	
平安道	昌城都護府	-	1,300尺	-	7處
	朔州都護府	在仇寧口子東西洞口	1,331척	7尺	
		延坪嶺	1,830尺	8尺	
	渭原郡	-	1,172尺	4尺	
	理山郡	赤灘, 南門外	3,314尺	7尺, 5尺	
	碧潼郡	-	37,247尺	4尺	3處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 성곽항에 기록되어 있는 城을 각도별로 분포를 조사하여 보면, 읍성은 경상도·전라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두 道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道는 남쪽 변경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이미 조선초기부터 왜구에 대비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많은 지역에 축성이 이루어졌다. 읍성 수

측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은 倭寇를 해안선에서 막아 피해를 줄이고 民力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일종의 방어정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방식이 소극적인 방어라면 治所를 둘러싸고 있는 읍성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라고 할 수 있다.

〈표 3〉 朝鮮前期 地理志 所載 邑城數 比較

구 분	경기도	충청2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世宗實錄	1	15	29	23	5	8	14	18
新增東國	1	17	30	30	5	9	14	16

※ 道別 행정구역의 변천은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보면 다음의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京都漢城府와 開城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八道の 행정구역수는 府 4, 大都護府 4, 牧 19, 都護府 45, 郡 81, 縣 176개 등 모두 329개이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성곽의 유무를 살펴 통계하여 보면, 八道の 행정구역수 329개 가운데 52.2%인 172개 지역에는 성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이를 각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南北 4道の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함경도는 전체 22개 행정구역 중 6개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성곽이 설치되어 있어 70% 이상의 지역이 성곽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경기도에는 불과 2개 지역에만 성곽이 설치되어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p. 414.

〈표 4〉 『新增東國輿地勝覽』 八道行政區域 區分表

區 分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	計
京都漢城府							1
開 城 府							1
京 畿 道			4	7	7	19	37
忠 清 道			4		11	39	54
慶 尙 道	1	1	3	7	15	40	67
全 羅 道	1	—	2	4	12	38	57
黃 海 道	—	—	2	4	7	11	24
江 原 道	—	1	1	5	7	12	26
咸 鏡 道	1	1	—	12	4	4	22
平 安 道	1	1	3	6	18	13	42
計	4	4	19	45	81	176	331

〈표 5〉 行政區域數와 邑城·山城 分布(『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분 류 도 별	행 정 구역수	성곽이 없는 곳		산성은 없으나 읍성은 있는 곳	읍성은 없으나 산성은 있는 곳	읍성·산성이 모두 있는 곳
		數	비율(%)			
경 기 도	37	35	94.5	1	1	—
충 청 도	54	29	53.7	16	8	1
경 상 도	67	27	40.2	27	8	3
전 라 도	57	24	42.1	28	3	2
황 해 도	24	16	66.6	5	3	—
강 원 도	26	16	61.5	8	1	1
함 경 도	22	6	27.2	13	2	1
평 안 도	42	19	45.2	15	6	1
計	329	172	52.2	113	32	9

※ 漢城府와 개성유후사는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도성과 읍성이 있는 곳으로 이미 상기 도표에 기재되었으므로 본 도표에서는 제외하였음.

4. 城郭의 規模 分析

성곽의 규모는 城의 둘레 길이와 높이가 그 척도가 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項에서는 거의 모든 城에 대하여 둘레와 높이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尺度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성곽 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각 성곽의 周長 내용을 통계하여 보면 읍성의 경우는 다음의 <표 6>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000尺~5,000尺 규모의 城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尺~4,000尺 규모의 邑城이 57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평안도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하여 특별히 큰 규모의 城이 많다. 이는 평양부를 비롯하여 의주·용천·용강·구성·영변 등 주로 서북로 지역의 읍성으로, 서북로는 중국을 왕래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방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큰 규모의 견고한 성을 수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성의 경우는 1,000尺~4,000尺 규모의 城이 전체 41개 가운데 27개로 6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읍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북로 지역에 해당하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8,000尺 이상 되는 산성이 있었다. 특히 황해도의 경우 瑞興都護府의 大峴山城(둘레 20,238尺)과 載寧郡의 長壽山城(둘레 8,915尺), 殷栗縣의 九月山城(둘레 14,386尺)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현산성과 구월산성은 인근 지역과 더불어 軍倉을 併置한 곳으로 성곽의 규모에 맞게 인근 지역에서 공동관리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입성하여 방어함으로써 그 방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성곽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은 城의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功役이 많이 들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뒤따르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성곽의 높이를 무조건 높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읍성과 산성을 막론하고, 6~10尺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읍성인 경우, 높

〈표 6〉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各 邑城의 周回 크기 分布

周回 道別	1000尺	1001~	2001~	3001~	4001~	5001~	6001~	7001~	8001尺	未詳	計
	이하	2000尺	3000尺	4000尺	5000尺	6000尺	7000尺	8000尺	이상		
개성부									1		1
경기도				—	1						1
충청도		4	4	7	2						17
경상도	2	7	5	9	5	2					30
전라도	2	4	8	7	4	1	1		3		30
황해도		2	—	1	—	1			1		5
강원도			4	4	—		1				9
함경도		1	1	3	3	5			1		14
평안도		2	3	1	3				7		16
計	4	20	25	32	18	9	2	—	13		123

〈표 7〉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各 山城의 周長 分布

周回 道別	1000尺	1001~	2001~	3001~	4001~	5001~	6001~	7001~	8001尺	未詳	計
	이하	2000尺	3000尺	4000尺	5000尺	6000尺	7000尺	8000尺	이상		
경기도				1							1
충청도		3	3	2	1						9
경상도	1	3	4	1	2						11
전라도	1	2		1		1					5
황해도									3		3
강원도	1			1							2
함경도			1	2							3
평안도		1		2		1	1		2		7
計	3	9	8	10	3	2	1		5		41

이가 기재되어 있는 114개 城 가운데 56개가 이에 해당하며, 산성인 경우는 높이가 파악되는 36개 城 가운데 30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읍성인 경우는 11~15尺인 곳도 무려 49개나 되었다. 이는 산성인 경우는 산세를 이용하여 쌓기 때문에 높게 축성할 필요성이 적고, 읍성은 대개 평지에 축

성하기 때문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보다 성벽을 높게 쌓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 20년 築城都體察使의 건의에 따라 축성 기준을 정하면서 城의 높이를 포백척으로 15尺을 표준으로 삼도록 한 일이 있으나²¹⁾ 앞에서 살펴본 통계치로 볼 때 이 기준이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황에 기재된 城 가운데 높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은 土築으로 되어 있거나 퇴락된 城이 대부분이다. 이는 토축일 경우 높이 측정 지점의 설정이 분명치 못하고, 이미 오래 된 곳이 대부분 이어서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며, 석축으로 하였더라도 퇴락된 경우 역시 높이 측정이 의미가 없고 정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표 8〉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城郭의 높이 分布

구 분	1~5尺	6~10尺	11~15尺	16~20尺	21尺 이상	未 詳
읍 성	5	56	49	2	3	7
산 성	5	20	8	1	2	6
기 타	3	7	4	—	2	
計	13	83	61	3	7	

※ 행정 10개 제외, 都城은 성벽 높이를 京城(外城)이 40尺, 宮城(內城)이 21尺, 평양성은 內城이 13尺이고, 外城은 32尺인데 外城의 尺數를 통계표에 포함시켰음.

5. 城郭의 附帶施設

성곽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성의 방어성을 높이기 위한 성벽 및 주변에 성첩, 포루, 문루, 해자 등의 시설이

21) 『成宗實錄』卷225 成宗 20年 2月 壬辰.

「築城都體察使啓 下三道諸浦築城 高位無定制 大體未便 今後諸浦諸邑之城 用布帛尺以十五尺為準 築城之後 未滿五年頽落者 監築官吏罷黜 已有成法……」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城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아무리 견고한 성벽과 포루 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입성한 군민이 수일을 지탱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군사시설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城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籠城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식량과 물이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 장기간 守城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태종대부터 성곽의 개축, 보수, 신축이 늘어나면서 성곽 관리에 있어서 군창의 설치나 水源地 확보가 강조되었다. 특히 종전의 성곽 가운데 水源이 없거나 빈약한 곳은 移設하거나 城基를 조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²²⁾

軍倉의 경우를 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項에 기재되어 있는 181개의 성곽 가운데 27.6%인 50개소에 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74%인 37개소가 산성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다음 〈표 9〉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성의 경우 총 41개 가운데 90.2%인 37개소에 군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산성에 군창이 설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산성에 대부분 군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성은 險地에 위치하여 유사시에 갑자기 양곡을 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읍성의 경우는 官衙가 있기 때문에 양곡 보유가 가능하고, 또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신속한 반입이 가능하여 군창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군량문제 해결이 용이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읍성에 군창이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읍성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2) 세종 10년 황희가 평안도 각 고을의 城堡의 허실에 관해 논의한 것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1月 19日 丁卯), 제주읍성의 경우 城內에 水源地가 없자 城 남쪽의 물이 있는 곳에 별도로 重城을 쌓아 성내에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城郭), 중종 15년 의주 읍성 축조에 관한 논의에서 城基를 줄여 산허리를 가로질러 축성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산 정상 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는 문제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中宗實錄』 卷40 中宗 15年 8月 戊申) 이외에도 水源池 문제로 인한 移設이나 城基 조정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표 9〉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城郭附帶施設에 관한 기록 통계

구 분	분 류	성곽수	軍倉 이 있는 城	井·泉 이 있는 城	川·溪·渠·池 가 있는 城	비 고
경 기도	읍 성	1	—	—	—	
	산 성	1	1	1	1	
	기 타	—	—	—	—	
충 청 도	읍 성	17	—	16	3	
	산 성	9	8	8	2	
	기 타	—	—	—	—	
경 상 도	읍 성	30	—	24	15	
	산 성	11	10	7	7	
	기 타	2	2	2	1	
전 라 도	읍 성	30	—	25	11	
	산 성	5	4	4	4	
	기 타	9	1	4	—	
황 해 도	읍 성	5	—	3	—	
	산 성	3	3	2	2	
	기 타	—	—	—	—	
강 원 도	읍 성	9	4	8	1	
	산 성	2	1	2	—	
	기 타	1	1	—	—	역 성
함 경 도	읍 성	14	—	12	2	
	산 성	3	3	3	1	
	기 타	1	—	—	—	행성 4개 제외
평 안 도	읍 성	16	2	15	4	
	산 성	7	7	2	—	
	기 타	3	2	2	—	행성 6개 제외
합 계		181	50	143	57	

※ 關防地城에 있는 軍倉 10개소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군창은 당초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흉년시 賑貸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濫用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종종 9년 호조판서 高荊山이 보고한 다음의 내용은 군창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濫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호조판서 高荊山이 서계하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계획은 병기를 단련하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그 요령은 有司에 그

적임자를 임명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나라에는 國都에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軍倉을 설치하여 軍需를 대비하게 하는데, 해당 官司와 監司들도 모두 합부로 꺼내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 군수를 重視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흉년이 들어 別倉의 곡식만으로는 凶年을 구제하는 데에 모자라니, 군창의 곡식까지 아울러 賑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맡아 지키는 관리가 법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데다가 곡식을 收納하고 放出할 때 제멋대로 濫用하여 창고가 텅비게까지 되었습니다. 交代할 때의 解由는 文案만을 갖추어 두므로, 해당 관청에서는 헛되이 그 문서상의 수량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臣의 생각으로는 本道の 都事에 명하여 교대할 때의 前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창고를 조사하여 위에 啓聞하여 해당관청에서 그 모자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난 뒤에 海虞를 주도록 한다면, 간사한 술책이 행할 수가 없게 되고 軍國의 수용이 虛耗할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²³⁾

한편, 水源地 확보에 관한 것을 보면 한성부·개성부를 제외한 八道の 성곽도 181개 가운데 74.8%인 143개의 성곽에 井·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八道の 181개 성곽 내에 있는 井·泉의 총수는 1,521개인데, 이를 井·泉이 있는 성곽 총수로 나누면 평균 10여 개의 井·泉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10개 미만의 성곽이 112개소이다. 그렇지만 20개 이상의 井·泉이 있는 성곽도 14개소에 달하며, 전주읍성 같은 경우는 무려 223개의 井·泉이 있었다.

또한 川·溪·渠·池와 같은 井·泉보다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水源地가 있는 城은 57개소인데, 절반이 넘는 38개소가 경상도·전라도에 집중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지리적 여건이 좋은 대규모 산성의 군창은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23) 『中宗實錄』卷21 中宗 9年 10月 壬寅.

「戶曹判書高荊山書啓曰 備邊之策 不過曰兵鍊食足 而其要在於有司之得其人而已 國家自國都至郡縣 置軍倉以備軍需 該司監司 皆不得擅發其軍需之意 至矣 近來凶歉別倉之穀 不足於救荒并軍倉賑貸 不得已 加以典守之吏 慢於奉法 斂散之際濫用自恣 以至虛耗 交代解由 苟具文案該曹虛管其數而已 臣意令本道都事 與前後交代一同 反庫啓聞之後 該曹覈其虧欠有無 而給解由 則奸術無由得行 而軍國之需 不至於虛耗矣」

공동으로 저곡하여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해당지역의 民官軍이 모두 입성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성곽항에는 이러한 군창의 併置 事例가 3개 城에 나타나는데 대현산성(황해도 서흥도호부), 구월산성(황해도 은율현), 대삭주성(평안도 삭주도호부), 안주읍성(평안도 안주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 城들의 병치 지역을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0〉 軍倉 併置 事例

道	行政區域	城郭名稱	軍倉併置地域
황해도	서흥도호부	大峴山城	遂安, 谷山, 新溪, 牛峰, 兎山, 黃州, 鳳山
	은율현	九月山城	文化, 信川, 安岳 = 左倉 殷栗, 豐川, 松禾, 長淵, 長連 = 右倉
평안도	삭주도호부	大朔州城	博川, 架山, 泰川
	안주목	安州邑城	平壤, 三和, 龍岡, 江西, 三登, 中和, 成川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성곽항에 기록되어 있는 門樓나 羅閣 등의 城郭附帶施設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新增東國輿地勝覽』所載 附帶施設 現況(門樓, 羅閣, 擁城 등)

區分	行政區域	城名稱	施設內容	備考
京都		京城	門樓	
		宮城	門樓	
開城府	尙州牧	羅城	門樓, 羅閣 13,000間	
		內城	門樓	
慶尙道	善山都護府	邑城	羅閣 552間	
		咸陽郡	南·西門 2개	
全羅道	扶安縣	邑城	門 3개, 羅閣 243間	
		義州牧	東·西·南에 譙樓 建立	
平安道	昌城都護府	邑城	東西南北 4개 門, 擁城	
		州城	懸橋를 설치하여 通行	
		靑山城		四面危險

6. 城郭의 築城材料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項에 기재되어 있는 성곽의 축성재료를 검토하여 보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성곽의 대부분이 石築이라는 점이다. 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는 총수는 행성을 제외하고 181개인데 이 가운데 93.9%인 170개의 城이 석축으로 되어 있고, 關防項에 기재되어 있는 城은 총 159개 가운데 89.9%인 143개가 석축으로 되어 있다.²⁴⁾ 토축은 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는 土築城은 9개가 있고, 관방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4개가 있다.

이와 같이 석성이 일반화된 것은 석성이 우선은 견고하고 방어력에 있어서도 토성보다 우수한 장점이 있다. 토성은 성벽 조성에 있어서 부득이 경사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목책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곽 전투에서의 利點은 석성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토성은 유실될 염려가 많고, 성벽 조성에 功役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²⁵⁾ 유지나 보수, 또 그 이점을 고려한다면 석축성이 훨씬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석축성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邑城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위엄 있는 석성을 수축함으로써 지방권력 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초기 축성재료에 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로 慶尙右道兵馬節度使營 축성 당시 李詹이 쓴 記文이 있는데, 이 記文을 보면,

-
- 24) 다음 항에서 논의되는 「관방지와 축성」에서는 축성 수가 총 159개로 되어 있는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방지의 城까지 포함한 것이다.
- 25) 車勇杰 교수는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忠南大 博士學位論文, 1988)에서 석축성과 토축성의 功役을 환산하여 비교하고 있다. 물론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토축이 석축에 비해 대략 3배 가량 功役이 적게 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형·토질 등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겠지만 토축이 보다 손쉬운 성벽 축조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李詹의 記文에…… 그 城을 토축으로 하면 쉽게 무너지고, 벽돌로 하게 되면 功役이 많이 들어 어려우나, 만약 석축으로 한다면 견고하고 또 功役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마침내 그 성을 石築으로 하기로 하고……²⁶⁾

라고 하고 있다.

석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석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석재를 모으기 용이한 곳을 城基로 잡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러한 여건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석재를 모으는 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석재는 징발된 인력으로 일시에 모으기도 하였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당번 군사로 하여금 매일 조그씩 모으도록 하기도 하였다.²⁷⁾ 또한 이 행되지는 않았지만 종종때 의주성을 축조하면서 가까운 주변에서 석재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주변 古城의 석재를 옮겨서 이용할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던바,²⁸⁾ 이는 그러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石·土 외에 축성재료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甃築’ ‘甃城’으로 표기되어진 벽돌로 만든 성곽이 있다. 이 벽돌축은 개성부 內城과 의주목의 松山里堡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벽돌을 사용한 이유는 분명치 않고, 축조공법도 遺址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축조법으로 ① 성벽 양면을 벽돌로 축조하고 가운데는 土石을 채우는 것, ② 성벽 外面을 벽돌로 축조하고 나머지는 토축(혹은 土石混築)으로 마무리하는 것, ③ 담장처럼 벽돌과 진흙을 혼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를 이용한 목책은 나무를 빗겨 잘라 밑쪽 부분을 땅에 묻어 고정시키고 울타리식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끝은 뾰족하게 하여 쉽게 접근하거나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안쪽에는 적과 대적하는 데 용이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목책 성벽은 일부 행성 축조에 이용되었으나 대부분 關防地城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목책이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다가 보수도 간편하고, 또 변경의 城堡는 상황에 따라 置廢와

26)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昌原都護府 關防 右道兵馬節度使營.

「李詹記…… 謂土其城 則易以崩 甃其城 則難爲功 若石則且省也 遂石其城……」

27) 『燕山日記』燕山君 8年 11月 庚午 참조.

28) 『中宗實錄』卷40 中宗 15年 8月 戊申 참조.

〈丑 12〉 『新增東國輿地勝覽』 關防項 所載 木柵

道 別	行政區域	名 稱	길 이	높 이	備 考
咸 鏡 道	鏡城都護府	甫老知柵	—	—	
		甫化德柵	—	—	
	吉 城 縣	德萬洞小堡	248尺	8尺	1513년 石城으로 改築
	鍾城都護府	行城(일부)	3,582尺	—	일부 구간임
平 安 道	義 州 牧	松山堡	—	—	중종 때 甌城을 木柵으로 改築
	昌城都護府	牛仇里柵	—	—	
		古哈堡	500尺	5尺	1518년 설치
	江界都護府	黃靑堡	720尺	6尺	1500년 설치
		從浦堡	700尺	—	1500년 설치
	渭 原 郡	南坡堡木柵	55尺	18尺	1521년 설치
	碧 潼 郡	吾音會木柵	626尺	12尺	
		丕農怪木柵	612尺	12尺	
		多大洞木柵	830尺	12尺	

移設이 많아서 굳이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功役을 많이 들여 石城을 쌓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世宗 때에 堡를 설치한 지 오래 된 곳은 지속적인 墾田으로 인한 材木의 부족과 매년 수리해야 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목재를 사용한 鎭堡는 점차 고정적인 城堡가 되면서 石材로의 개축이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이외에 土石 混築 방식이 있고, 행정 같은 경우 구간별로 석축·토축·목책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

7. 關防地와 築城

조선시대에 「關防」이란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니다. 조선초기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도성·읍성·산성 등 일반적인

29) 『世祖實錄』 卷16 世祖 5年 4月 戊寅.

「諸鎭諸堡 初設之時 山多材木 並設壁堡 今則居民日衆 至墾山田材木盡伐 每年修葺 其弊無窮」

성곽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주로 왜구나 북방 이민족의 침입 요로에(당시는 이를 賊路라고 칭하였다.) 설치한 방어시설을 의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방은 내국인의 무단 이탈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고, 내지인 경우는 침입 경로의 要害地에 설치하여 적의 신속한 진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저술된 『燃藜室記述』의 「邊圉典考」에서는 城池·關防·鎭堡·山城·巖山城·烽燧 등으로 구분하고 관방을 鎭營·邊鎭·藩閫의 통칭이라고 하였고,³⁰⁾ 『萬機要覽』에서는 海防은 별도로 분류하고 관방을 「凡道路控會 嶺隘緊要 築城置兵 以備外侮 皆是物也」³¹⁾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增補文獻備考』에서는 관방이 대체로 성곽을 의미하는 용어³²⁾로 사용되는 등 시대에 따라서 관방이라는 용어는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곽과 관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관방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군병이 배치된 邊地나 要路의 營·鎭·堡·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방은 兵馬·水軍節度使營을 비롯하여 鎭, 營·堡, 戍, 農堡, 長城, 木柵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곳에는 그 營鎭의 격에 따라 兵馬·水軍節度使, 僉節制使, 萬戶, 權管이 배치되어 管掌하거나 단순히 병사만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³³⁾

『新增東國輿地勝覽』관방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방 총수는 229개소이다. 관방수를 보면 다음 〈표 13〉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의 4道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 그 축성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총수 229개 가운데 69.4%인 159개소의 관방지에 축성이 이루어져 있는데,³⁴⁾ 평안도·함

30) 『燃藜室記述』別集 卷17 邊圉典考.

31) 『萬機要覽』軍政篇 4 關防.

32) 『增補文獻備考』卷25~30 輿地考 關防.

33) 『新增東國輿地勝覽』관방항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軍兵 배치가 명시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상주병은 두지 않고 유사시의 防備處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非兒里堡(평안도 벽동군), 水口堡(평안도 의주목), 鹿屯島農堡(함경도 경흥도호부)처럼 계절에 따라 군병을 置撤하는 곳도 있었다.

34)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관방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51개이나 전라도 장흥도호부의 會寧浦城, 진도군의 金甲島城·南桃浦城, 旌義縣의 大水山防護所城·西歸浦防護所城, 大靜縣의 遮歸防護所城, 順天都護府의 水軍節度使營城·突山浦城 등 8개의 城은

〈표 13〉 『新增東國輿地勝覽』所載 各道의 關防數와 築城

분류 도별	關防數	關防 築城	築城率	備 考
한성부	—	—	—	
개성유후사	—	—	—	
경기도	7	—	0	
충청도	12	7	58.3	
경상도	37(35)	31(29)	83.7	1522년 2개소 폐지
전라도	52(50)	20(19)	38.4	1510년 1개, 1522년 1개소 폐지
황해도	10	1	10.0	
강원도	5	3	60.0	
함경도	57(51)	52(48)	91.2	1509년 2개, 1516년 3개, 1521년 1개 폐지
평안도	49	45	91.8	
計	229(219)	159(152)	69.4	

※ () 안의 수치는 폐지된 것을 감안한 수를 말함.

※ 축성률은 폐지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비율임.

경도·경상도 지역의 관방지 축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방지 성곽의 규모를 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은데, 周長은 500~1,000尺 규모의 성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01~1,500尺 규모의 城이다. 또 높이는 6~10尺 규모의 城이 높이를 알 수 있는 135개 가운데 55.8%인 74개소에 달하며, 16척 이상 되는 곳도 5개소가 있다.

이 城들은 石築·土築·木柵·甃築·板城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보통의 성곽과 마찬가지로 석축이 14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길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咸鏡道 三水郡의 魚面堡를 제외한 142개소의 총연장은 263,508尺에 달한다. 또한 목책은 10개소인데 길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7개소의 총연장이 4,043尺, 토축은 4개소에 총연장 2,683尺

關防地 城이나 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 당시 약간의 錯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 『新增東國輿地勝覽』 관방지 성곽의 둘레길이 및 높이

단위 : 尺

분 류	둘 레 길 이								높 이			
	500 尺 이하	501~ 1000	1001~ 1500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3500尺 이상	1~5	6~10	11~15	16이상
計	18	38	36	22	12	10	7	12	23	74	33	5

이며, 甌築과 板城은 각각 1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 관방항에는 현재의 제주도 지역에 해당하는 濟州牧·旌義縣·大靜縣에 防護所·水戰所라는 특수한 사례가 나타난다. 그 현황을 보면 〈표 12〉와 같은데, 이는 왜구를 비롯한 침입자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해안변 가운데 배의 정박이 용이한 浦口 등에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軍兵이 상주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대개는 留鎮軍卒이 배치되었다.

방호소에 城이 수축된 곳은 6개소인데, 旌義縣의 大水山防護所城·西歸浦防護所城, 大靜縣의 遮歸防護所城은 축성시기를 알 수 없고, 明月浦防護所(濟州牧)·東海防護所(大靜縣)에는 종종 5년(1510) 城을 수축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는바,³⁵⁾ 이는 그 해 일어난 삼포왜란의 발발을 계기로 연안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명월포는 근처에 倭船이 와서 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貢膳을 수송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축성하여 방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종종 5년(1510) 제주 동쪽 70리 되는 곳으로 金寧浦防護所를 옮기고 別防城이라고 칭하였는데,³⁶⁾ 역시 倭船이 정박하는 근처였기 때문에 축성하였다.

제주지역에서의 관방지 가운데 방호소나 수전소가 특징적인 것이라면 평안도·함경도 지역에서의 특징은 '堡'이다. 물론 堡가 평안도·함경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는 각 부·목·군·현별로 대부분 수개 이상의 堡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堡는 작은 城砦를 말하는데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大靜縣 關防.

36) 위와 같은 책, 濟州牧 關防.

〈丑 15〉

防護所·水戰所

區 分	防 護 所	水 戰 所	備 考
濟 州 牧	5	7	別防城, 左右衛
旌 義 縣	3	2	
大 靜 縣	5	3	
計	13	12	

주로 변경을 따라, 그 외에는 境內로 침입하는 要路에 주로 설치되었다.³⁷⁾

堡는 세종 때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4郡 6鎭의 설치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자연적인 경계로 북방 이민족으로 방어하게 되자 그 연변에 주로 배치하였다. 그런데堡는 반드시 외침에 대비한 것만은 아니었다. 4郡 6鎭의 설치와 함께 이 지역으로 이주된 주민을 보호하고, 또한 적의 침입에 있어서는 작은 要塞의 역할을 함으로써 변경 방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³⁸⁾ 한편으로는 우리 領內에 있는 주민이 여진이나 중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³⁹⁾堡 주변의 주민들은 봄~가을에 이르기까지는 흩어져 농사를 짓되 침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낮에는堡 밖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밤에는 다시堡로 들어와야 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주민들은堡 밖을 소개하고堡로 들어가 겨울을 나도록 하였다.⁴⁰⁾ 그러나堡의 설비가 미비하거나 軍額이 적어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근의 읍성으로 입보하는 경우도 있었다.⁴¹⁾

관방지에 축성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잠정적인 평화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전투보다는 소규모의 침입에(특히 왜구나 여진족의 침입) 대비

37) 『世宗實錄』卷67 世宗 17年 3월 庚子.

『世宗實錄』卷88 世宗 22年 2월 乙未.

38)堡는 ① 적의 동태 감시, ② 주민대피, ③ 전투시설 이 3가지가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堡 주변에는 煙臺가 설치되어 즉시 봉수나 放砲, 혹은 吹角을 통하여 주변의 주민과 인근 지역 및 내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世宗實錄』卷73 世宗 18年 윤6월 계미).

39) 『世宗實錄』卷26 世宗 6年 10월 癸亥.

40) 『世宗實錄』卷79 世宗 19年 12월 丙子.

41) 『世宗實錄』卷123 世宗 31年 3月 戊子.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성이나 읍성은 소규모의 침략행위 보다는 전쟁이나 대규모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 소용되는 시설이며, 관방지의 城은 소규모의 침입으로부터 요충지를 지킴으로써 침입자가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대규모의 침입에 있어서도 적의 빠른 진격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도 유용한 것이었다.

관방지에 대한 축성은 조선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 관방항에 축성연대가 표기된 것만을 보면 전체 관방지성 159개 가운데 43개소가 1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축성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1500年을 前後한 關防地 築城 現況

道 別	行政區域	關 防 名	周長(尺)	높이(尺)	築造年代
충 청 도	서 천 군	서천포영	1,311	9	1514
	서 산 군	파지도영	1,337	11	1516
	태 안 현	소근포진	2,165	11	1514
	남 포 현	마량진	1,371	9	1510
	보 령 현	수군절도사영	3,174	11	1510
	당 진 현	당진포영	1,340	9	1514
경 상 도	경 주 부	감포영	736	13	1512
	홍 해 군	칠포영	1,153	9	1510
	동 래 현	해운포영	1,036	13	1514
	기 장 현	두모포영	1,250	10	1510
전 라 도	영 광 군	다경포영	980	12	1515
		법성포영	1,688	12	1514
	제 주 목	명월포방호소	2,020	8	1510
		별방성	2,390	7	1510
	대 정 현	동해방호소	500	8	1510
	홍 양 현	백석포장성	1,611	6	1523
풍안평장성		2,400	6	1523	

道 別	行政區域	關 防 名	周長(尺)	높이(尺)	築造年代
강 원 도	삼척도호부	삼척진	900	8	1520
	양양도호부	대포영	1,469	12	1520
	울진현	울진포영	750	11	1512
합 경 도	삼수군	가을과지보	610	8	1500
		소농보	604	8	1500
		신방구비농보	1,250	8	1502
평 안 도	길성현	별해보	1,355	8	1501
		감파농보	428	7	1518
		덕만동소보	500	8	1513
	회령도호부	보을하진	3,612	—	1509
	온성도호부	황척과보	1,690	8	1523
	경흥도호부	아오지보	2,825	8	1488
	부령도호부	무산보	1,764	15	1509
	의주목	청수보	1,686	—	1493
		소곶보	7,712	—	1492
		고말성보	646	7	1500
		광평보	110	8	1500
		옥강보	744	5	1500
		송산보	855	8	1500
		성고개보	890	9	1500
		강계도호부	고합포	500	5
마마해보			807	5	1518
황청보			720	6	1500
위원군	종포보	700	—	1500	
	직동성	1,000	18	1518	
	남파보목책	55	18	1521	

8. 맺 음 말

이상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성곽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보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이어지는 조선전기 지리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지리지는 이 시기의 지리·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기초적인 史料이다.

특히 성곽연구에 있어서는 당시의 전국적인 현황을 기록한 유일한 문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필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성곽, 혹은 관방항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성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 시기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개개의 결과는 모두 앞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으나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과 『世宗實錄』地理志의 성곽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남북의 4道에 집중적으로 성곽이 설치되고, 石城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①山城이 대폭 줄어들고 읍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 ②성곽 周長 표시 단위가 ‘步’ 중심에서 ‘尺’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 ③읍성·산성은 거의 모두 석축이며, 木柵塗泥城·壁城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④조선초부터 꾸준히 관방지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져 왔지만 1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무려 43개소(전체 관방지 축성 159개)의 관방지에 축성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 서로 다른 점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을 것이나·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점은 필자의 무능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

朝鮮後期 銃砲類 研究

柳 承 宙
(高麗大 教授)

1. 서 언
2. 在來式 銃砲類의 種別과 性能
3. 外來式 銃砲類의 種別과 性能
4. 發射物의 種類와 性能
5. 결 언

1. 서 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 국가들 간에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분쟁이 자주 야기되었고 때로는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그때 그때 전쟁의 승패는 대개 그 나라의 민족적인 단결력과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 결정지워지기 마련이지만 상호간에 비등한 국력을 갖추었을 경우, 무기성능의 우열이 승패를 가능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상대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항상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보유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시대의 왕조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려말에 전습한 화약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왕조초기부터 각종의 화약병기를 개발하여, 때로는 倭寇를 토벌하고 때로는 女眞을 정벌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 후반에는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자 군사정책이 해이해졌고 화약병기의 중요성도 망각되어 갔다.

그러나 日本은 16세기 중엽에 서양의 신식소화기인 鳥銃을 전습하여 실전에 사용하였고 숙련된 鳥銃兵을 앞세워 壬辰亂을 일으켰으므로 조선의 군사는 초전의 참패를 면할 수가 없었다. 鳥銃은 이미 壬辰亂 前에 對馬島主가 선물로 바쳤지만 조선정부는 그것의 성능을 시험해 보거나, 전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기고에 사장시켰다가 것처럼 참혹한 패퇴를 거듭한 것이다. 이에 조선정부는 亂의 이듬해에 訓練都監을 개설, 明將 戚繼光의 『紀效新書』를 지침서로 삼아, 鳥銃兵을 근간으로 한 三手兵을 양성하고 東伍分軍法에 따라 京鄉軍을 재편하였던 것이다. 이 東伍三手制는 이후 250여 년 간 조선의 군사제도로 존속하였는데 開港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다시금 壬辰亂時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다. 日本은 開港直前に 서양의 현대식 소화기인 라이플銃을 전습하여 군사력을 강화한 뒤 조선정부를 협박 開港하게 하였고, 불과 1개 大隊병력으로 조선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던 東學農民軍 1만여 명을 牛金峙에서 무참히 살상하였으며 끝내는 조선을 강점하였다. 이렇듯이 무기성능의 우열이 전쟁의 승패는 물론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壬辰亂에서 開港期에 이르기까지 조선정부의 군사정책, 특히 화약병기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궁극하게 여겨, 鳥銃과 더불어 銃·砲·火藥의 제조상태를 고찰한 바 있다.¹⁾

본고에서는 첫째, 조선왕조정부가 조선후기에 걸쳐 사용했던 화약병기가 어떤 것들이며, 둘째, 정부는 그 화약병기들을 얼마나 개량하려 노력하였으며, 셋째, 그 화약병기들이 開港期까지 중앙의 각 군영과 지방의 각 읍진에 얼마만큼 비치되어 있었는지를 고찰하여 開港期 外勢에 대응할 군사력의 일단을 가늠해 보려 한다.

1) 柳承宙, 「朝鮮後期 銃·砲·火藥의 製造實態」, 『韓國武器發達史』, 所收(1994. 10. 國防軍史研究所刊) pp. 639~758. 그리고 本書 pp. 478~538에는 陸士 姜性文 教授가 조선중·후기의 화약병기류, 특히 각 博物館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화약병기의 일람표와 실물사진 및 실측도를 조사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在來式 銃砲類의 種別과 性能

조선후기의 총포류를 연구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점은 砲와 銃의 개념과 호칭이 모호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조선전기부터 제작 사용되어 왔던 天·地·玄·黃字銃筒이나 勝字銃筒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사실상 전자는 砲類에 속하고 후자는 銃類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銃筒이라 부름으로써 호칭의 혼용에서 말미암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조선후기의 『朝鮮王朝實錄』 등을 보면 총포류에 대한 식견을 갖지 못한 관료들이 天·地·玄·黃字나 勝字銃筒을 字號의 구분 없이 銃筒²⁾이라고만 했을 경우 그것이 天·地·玄·黃字銃筒 중 어느 어느 것을 지칭한 말인지 또는 天·地·玄·黃字銃筒과 勝字銃筒을 모두 합쳐서 한 말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火砲³⁾라고 했다가 大砲라고 총칭했을 경우이다.⁴⁾

그러나 다행히도 咸鏡道都巡察使 韓孝純은 銃筒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선조 36년(1603)에 『神器秘訣』을 펴내면서 砲와 銃의 구분을 卷頭條에 명시하고 있었다. 곧, 砲類의 경우 “大砲 1門에는 鐵鑊 1把, 鐵錘 1把, 剪子 1把, 鐵鎚 1件, 藥升 1個, 送子 1根, 木榔頭 1個, 皮袋 1個, 木馬 10個, 大鉛子 9個를 구비하고 中鉛子, 藥線, 火繩, 火藥은 砲의 크기와 성능에 맞추어 조절한다”고 하고 “天字銃·地字銃·虎蹲砲·佛狼機가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 銃類의 경우는 鳥銃을 예시하고 있다. “鳥銃 1門에는 槊杖 1斤, 錫鑿 1個, 藥管 20個, 皮袋 1個, 銃套 1件을 구비하고 小鉛子, 火繩, 火藥 등은 총의 크기와 성능에 맞추어 조절한다”고 하고 “雙眼銃, 百字銃, 大·小勝字銃 이하의 모든 銃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韓孝純은 砲와 銃의 裝放法에 필요한 品目들을 구분해서 열거해

2) 『宣祖實錄』 45, 宣祖 26年 閏11月 戊申 『宣祖實錄』 55, 宣祖 27年 9月 戊寅.

3) 『宣祖實錄』 64, 宣祖 28年 6月 乙巳 『宣祖實錄』 69, 宣祖 28年 11月 庚寅.

4) 『宣祖實錄』 66, 宣祖 28年 8月 壬戌 『宣祖實錄』 68, 宣祖 28年 10月 丙寅.

놓음으로써 砲와 銃의 구별이 명확해졌다. 결국 天·地字銃筒과 虎蹲砲, 佛狼機 등을 大砲로 분류하고 鳥銃과 雙眼銃, 百字銃, 大·小勝字銃 및 宇·宙·洪·荒·日·月·盈·昃字銃 등은 銃으로 분류된 셈이었다. 대개 銃으로 분류한 것들은 휴대용의 小火器였다. 곧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大百字銃의 諸元을 『火器都監儀軌』와 『火砲式諺解』에서 보더라도 무게 28斤, 길이 2척 7촌, 화약 3兩, 火藥線 半條, 鐵丸 15個로 휴대가 가능한 소화기였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문제는 『朝鮮王朝實錄』 등에서 위정자들이 조선전기부터 전래되어 온 재래식 天·地·玄·黃字銃筒을 「銃筒」 또는 「火砲」라고 총칭하는 데서 오는 개념상의 혼란이 문제였다. 그러나 선조 28년(1595) 이후부터는 佛狼機, 虎蹲砲 등 外來의 砲名은 명시하는 대신 재래의 天·地·玄·黃字銃筒만은 「大砲」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神器秘訣』(1603)이 반포된 이후에는 「大砲」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다.⁵⁾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碗口類처럼 大·中·小砲로 구분되었고⁶⁾ 18세기 초에는 그것이 銅鐵로 제조되었다고 해서인지 「銅砲」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휴대용 銃筒은 銃으로 그 이상의 중량을 가진 銃筒은 砲로 구분하였고 명칭도 가급적 銃筒이란 용어 대신 砲 또는 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부르기로 하였다. 재래의 砲類에 속한 것은 天·地·玄·黃字 및 別黃字銃筒과 大, 中, 小, 小小碗口들이다. 이들 砲類의 諸元과 성능 그리고 조선후기에 걸쳐 얼마나 이용되고 제조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이들 砲類의 제원과 성능은 조선후기에 저술 간행된 兵書들, 특히 宣祖 36년(1603)에 咸鏡道都巡察使 韓孝純이 편찬한 『神器秘訣』과 光海君 6년(1614)에 작성된 『火器都監儀軌』, 仁祖 13년(1635)에 李曙가 찬집한 『火砲式諺解』, 純祖 13년(1813)에 訓練大將 朴宗慶이 저술한 『戎垣必備』 및 大將申櫛이 高宗 5년(1868)과 6년에 각각 찬집한 『訓局新造軍器圖說』과 『訓局機械圖說』에서 일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5) 『宣祖實錄』 66, 宣祖 28年 8月 壬戌, 『宣祖實錄』 68, 宣祖 28年 10月 丙寅.

6)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癸丑, 『顯宗改修實錄』 14, 顯宗 6年 12月 戊寅.

7) 『英祖實錄』 30, 英祖 7年 9月 辛巳.

(表 1)

砲名	典故	砲材	砲重	砲長	火藥	火藥線	機木	箭	射距離	土隔	丸	射距離	內圓徑
天字砲	神器秘訣				30兩	中藥線5寸					中鉛子100枚		
"	火砲式診解				30兩	中藥線1條	8寸	大將軍箭 (56斤3兩)	900步				
"	戎垣必備	熟銅	120斤	6尺6寸3分	30兩	中藥線1條	7寸	大將軍箭 (50斤)	1,200步		水鐵鉛衣丸	10餘里	5寸6分
地字砲	神器秘訣				20兩	中藥線5寸					中鉛子60枚		
"	火砲式診解				20兩	中藥線1條	6寸	將軍箭		3寸	烏那丸200枚	800步	
"	戎垣必備	熟銅	724斤	5尺6寸7分	20兩	中藥線1條	5寸	將軍箭		土隔	烏那丸200枚		5寸
玄字砲	神器秘訣				4兩	中藥線5寸					小鉛子30枚		
"	火器都監機軌	銅	70斤	2尺3寸5分	4兩	中藥線半條		次大箭次中箭			鐵丸100箇		隱藏次中箭 (火藥3兩 機木3寸)
"	火砲式診解				4兩	中藥線半條	4寸	次大箭	800步	2寸	鐵丸100箇		
"	戎垣必備	熟銅	155斤	4尺1分	4兩	中藥線1條	3寸 1分	次大箭(7斤)	2,000餘步	土隔	鐵丸100箇		2寸9分
黃字砲	神器秘訣				3兩	中藥線5寸					小鉛子20箇		
"	火砲式診解				3兩	中藥線半條	3寸	皮翎次中箭	1,100步	1寸 1分	鐵丸20箇		
"	戎垣必備	熟銅	130斤	3尺8寸4分	3兩	中藥線半條	3寸	皮翎箭 (3斤8兩)	1,100步	土隔	鐵丸40箇		2寸2分
別黃字砲	火砲式診解				4兩	中藥線半條	3寸	或放皮翎木箭	1,000步	1寸 5分	鐵丸40箇		

우선 天·地·玄·黃字 및 別黃字砲의 제원과 성능을 간추려 보면 다음(表 1)과 같다.

이상의 兵書들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天字砲는 熟銅製로 1,209斤에 달하고 화약 30兩, 中藥線 1條(또는 5寸)이며 檣木長 7~8寸으로 大將軍箭 50~56斤 3兩을 사용할 때 사정거리가 900步 내지 1,200步라고 하였고 中鉛丸 100枚를 발사기도 하지만 水鐵鉛衣丸을 발사할 때는 10여 리를 간다고 하였다. 水鐵鉛衣丸은 圓經 3寸 6分 무게가 13斤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火砲式諺解』(1635)의 大將軍箭의 무게가 56斤 3兩이므로 檣木도 8寸으로 두꺼우나 사정거리는 900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戎垣必備』(1813)에서는 大將軍箭의 무게를 50斤으로 줄이고 檣木도 7寸으로 줄이면서 사정거리를 1200步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神器秘訣』(1603)에서는 中鉛丸 100개를 발사한 반면, 『戎垣必備』에서는 13斤에 달하는 水鐵鉛衣丸을 쓴 점 등은 조선후기에 걸쳐 戰用에 유리하도록 개선해 갔던 사실을 엿볼 수 있겠다. 天字砲는 선조 26년(1593) 1월의 平壤城奪還戰에 攻城用으로 위력을 발휘하였고⁸⁾ 女眞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守城用으로 중시되고 있었다.⁹⁾ 따라서 天子砲는 『神器秘訣』, 『火砲式諺解』, 『戎垣必備』의 冒頭に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地字砲는 熟銅製로 무게가 724斤이고 火藥 20兩과 中藥線 1條(또는 5寸)을 사용하며 將軍箭(무게 29斤 8兩 또는 33斤)을 쏠 경우 檣木을 6寸 또는 5寸으로 하였고 발사 때에는 土隔을 3寸으로 하여 鳥卵丸 200個를 사용하는데 사정거리가 800步에 달하였다. 地字砲는 임진왜란중에 평양성의 공격용으로, 晋州城의 방어용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海戰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¹⁰⁾

玄字砲도 熟銅製品으로 『火器都監儀軌』의 것은 70斤이나 『戎垣必備』는 155斤이다. 이 중 어느 수치가 맞는지 여부보다는 『戎垣必備』의 天·地·玄·黃字砲의 비례상으로는 155斤이 맞겠지만 火器都監을 설치했던 당시의 天

8) 『宣祖實錄』 50, 宣祖 27年 4月 乙丑, 『宣祖實錄』 69, 宣祖 28年 11月 庚寅.

9) 『宣祖實錄』 40, 宣祖 26年 7月 甲寅.

10) 『宣祖實錄』 86, 宣祖 30年 3月 甲寅.

·地·玄·黃字砲의 무게 비례를 알 수 없는 시점에서 70斤이 반드시 틀린 기록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砲의 길이가 전자는 2尺 3寸 5분에 불과한 데 비하여 후자는 4尺 1분에 달하고, 또 화약은 4兩으로 동일하지만 火藥線 또한 전자는 中藥線 半條인데 후자는 中藥線 1條를 사용하였고 次大箭의 사정거리 또한 전자는 『火砲式諺解』의 기록에 오차가 없는 한 800步인데 후자는 2000여 보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玄字砲보다 점차 길어져서 19세기 초의 玄字砲는 砲身이 거의 두 배에 달하도록 길어진 것이다. 어떠한 임진왜란중에 玄字砲는 海戰에 긴요한 포였으며¹¹⁾ 地字砲와 함께 龜船에 장치되어 倭船을 격파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¹²⁾

黃字砲도 熟銅製品이고 『戎垣必備』에는 무게가 130斤이고 길이가 3尺 6寸 4分, 內圓經이 2寸 2分이며 火藥 3兩, 中藥線 半條를 사용하였다. 皮翎次中箭을 발사할 경우는 檄木이 3寸, 사정거리가 1,100步이나, 放丸할 경우 토격이 1寸 1分, 鐵丸 40個를 발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別黃字砲는 火藥 4兩과 中藥線 半條, 토격 1寸 5分, 鐵丸 40個를 발사하였고 皮翎木箭을 쓸 때는 檄木이 3寸이고 사정거리가 1,000步였다고 한다. 이상의 天·地·玄·黃字 및 別黃字砲들은 모두 17세기 초의 兵書에 수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진왜란중에 각기 성능에 따라 활용했던 砲類들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이후의 필요에 따라 개조되거나 개선되었던 것으로 다음 <表 2>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말 各道の 『畧誌』에는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었고 『萬機要覽』 중의 御營廳에도 黃字砲 1柄이 있었다.

天·地·玄·黃字 및 別黃字砲는 『兵書』에 熟銅鐵 또는 銅鐵로서 제조된다고 하였지만 正鐵과 鑄鐵로도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天字砲가 『畧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의문이지만, 각 砲는 대체로 효용도에 따라 수량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地字砲는 47位, 玄字砲는 232位, 黃字砲는 125位, 別黃字砲는 42위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玄字, 黃字砲의 이용

11) 『宣祖實錄』 124, 宣祖 33年 4月 丁丑.

12) 『宣祖實錄』 68, 宣祖 28年 10月 丙寅, 『宣祖實錄』 76, 宣祖 29年 6月 壬戌.

〈表 2〉

道 別 砲 別	平 安	全 羅	慶 尙	計
地 字 砲		17	29	46
鑰鐵地字砲			1	1
玄 字 砲	13	46	12	71
鑰鐵玄字砲			78	78
玄字熟銅砲			83	83
黃 字 砲	4	6	86	96
正鐵黃字砲			20	20
銅鐵黃字砲			2	2
黃字熟銅砲			7	7
正鐵別黃字砲			37	37
鑰鐵別黃字砲			5	5

도가 높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 砲類는 龜船에 장착하여 海戰에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水營이나 각 鎭에 소장되어 있었다.

여기에 부연해 둘 것은 小小黃字砲가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小小黃字砲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점이다. 17세기 초의 마지막 병서류인 『火砲式諺解』에 실려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병자호란 이후에 黃字·別黃字砲를 축소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小小黃字砲가 顯宗 5년(1664) 6월에 사거리가 짧고 긴요치 않은 무기로 관명된 점으로 미루어¹³⁾ 小小黃字 역시 砲로서의 효능이 사라져 『邑誌』에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天·地·玄·黃字銃筒에 대한 호칭상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表 3〉과 같이 18세기 말의 『邑誌』에도 갖가지 칭호가 등장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초의 『萬機要覽』에도 銅砲가 訓練都監에

13)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甲寅.

119坐, 御營廳 160坐, 禁衛營 10坐 摠戎廳에 10坐가 있었고, 大砲는 龍虎營에 4坐가 있었으며, 水鐵大砲 67坐가 摠戎廳에 있었다.

〈表 3〉

道名 砲名	平 安	黃 海	京 畿	全 羅	慶 尙	計
各 色 砲	3,009					3,009
各 樣 砲	35					35
火 砲				1		1
大 砲					20	20
大 砲 銃		1				1
水鐵大砲			2			2
水鐵大砲銃				1		1
鑰鐵大砲銃				2		2
銅 砲					10	10
熟 銅 砲				17		17
熟 銅 銃				4		4
小 砲 銃		1				1
熟 字 銃				5		5

上表에서 볼 때, 첫째 대포의 칭호가 혼용된 이유는 각 문이나 각 軍門에서 軍器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할 胥吏 곧 色吏가 보고업무에 태만하였거나 대포의 식별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빚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各色이나 各樣으로 표현하여 天·地·玄·黃字砲類뿐만 아니라 碗口類 및 외래의 大砲까지 숫자만 파악하여 보고한 경우와 또 火砲라고만 보고한 경우, 그리고 大砲銃이라 하여 총·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해 버린 경우 등이다.

둘째는 대포를 대·중·소포로 구분하지 않고 水鐵·鑰鐵·銅·熟銅 등 제품

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인 식별 수준이었다.

셋째, 熟字銃은 熟銅砲의 誤記가 아닐까 하여 上表에 넣어 두었지만 熟字란 字別의 포가 있었는지는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各色砲, 各樣砲를 차지하고라도 18세기말 현재 『邑誌』에 나타난 각 道의 大砲數는 64坐였고 서울의 19세기 초 현재 각 軍門의 대포 수는 370坐到 달하였다.

〈表 4〉

典 據	砲 名	砲 材	砲 重	砲 長	火 藥	火藥線
火砲式諺解	大 碗 口				30兩	中藥線1條
"	中 碗 口				13兩	中藥線半條
"	小 碗 口				8兩	中藥線半條
"	小小碗口				1兩8錢	中藥線3寸
戎 垣 必 備	別大碗口	熟銅	1,100斤	4尺3寸	70兩	中藥線1條
"	大 碗 口	熟銅	528斤	3尺1寸	35兩	中藥線1條
"	中 碗 口	熟銅	290斤	2尺7寸3分	35兩	中藥線1條

檄 木	團 石	射 距 離	震 天 雷	射 距 離
5寸	74斤	370步		
4寸	34斤	500步		
2寸5分	11斤1兩	500步		
1寸5分	水磨石1箇			
7寸5分	水磨石120斤	400步	別大飛震天雷120斤	350步
5寸2分	水磨石45斤	500步	大飛震天雷66斤	400步
4寸4分	水磨石35斤	500步	中飛震天雷30斤	350步

다음, 碗口類의 경우도 『兵書』에 제원과 성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 小小碗口는 전술하였듯이 현종 5년 6월에 사거리가 짧고 간요하지 않다고 하여 부수어서 다른 화기의 제조에 보태기로 한 것을 왕이 그냥 두게 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못하였다.

碗口는 임진왜란중에 李長孫이 창제한 飛震天雷의 등장으로 왜란 이전에 쓰여진 團石의 발사뿐 아니라 飛震天雷를 발사하는 砲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걸쳐서도 大·中·小碗口類는 계속 생산되었던 것 같고 江都 등 요새지에 攻守用의 대포로 비치되고 있었다.¹⁴⁾ 따라서 『邑誌』에도 평안도에 鐵碗口 3좌와 水鐵碗口 3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上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17세기 초의 기록인 『火砲式諺解』에 기록된 大·中·小·小小碗口類와 19세기 초의 기록인 『戎垣必備』에 기재된 別大·大·中碗口類 간에는 諸元이나 성능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약 2세기간 특히 병자호란을 치른 뒤부터 碗口類는 전술한 天·地·玄·黃字砲와 같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개발된 砲類로 조선후기에 제작 사용된 것 중에는 蒺藜砲와 霹靂砲가 있다. 蒺藜砲는 세종대에 개발된 小蒺藜砲가 있는데¹⁵⁾ 그것이 임진왜란 이후의 蒺藜砲와 동일한 것인지는 상고할 수 없고, 다만 『火砲式諺解』(1635)에 의하면 「用地火筒 穿穴 以小發火藥線 納其穴 兩個相合 以苧繩付結」하여 발사한다고 하였고 霹靂砲는 火藥 8兩, 中藥線 半條, 土隔 3寸, 鐵丸 1個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중 蒺藜砲가 사용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火砲式諺解』에 수록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中宗대에 개발된¹⁶⁾ 霹靂砲는 明將 麻貴가 島山戰에 사용하였는데 명중률이 낮았다고 한다.¹⁷⁾ 그러나 兩砲가 나름대로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의 『邑誌』에 보면 蒺藜砲는 전라도에 9좌가 있었고 中蒺藜砲는 1좌, 小蒺藜砲 1좌도 있었다. 그리고 霹靂砲는 평안도에만 1좌가 남아 있었다.

이 밖에 세종대의 大·中·小發火¹⁸⁾ 중 大發火와 中發火가, 그리고 中宗대에 개발한 紙信砲¹⁹⁾ 곧 紙神砲는 모두 임진왜란중의 幸州大捷에서 사용되

14) 『英祖實錄』 30, 英祖 7年 9月 辛巳.

15) 『世宗實錄』 45, 世宗 11年 7月 己卯, 『世宗實錄』 118, 世宗 29年 12月 辛亥.

16) 『中宗實錄』 62, 中宗 23年 7月 辛巳.

17) 『宣祖實錄』 100, 宣祖 31年 5月 辛亥.

18) 『世宗實錄』 45, 世宗 11年 7月 乙卯.

19) 『中宗實錄』 62, 中宗 23年 7月 辛巳.

었다.²⁰⁾ 그리고 文宗代에 개발한 鐵信砲는²¹⁾ 사료상에는 없으나 역시 임진왜란중에 사용되었던지 『火砲式諺解』(1635)에 의하면 火藥 13兩, 中藥線半條, 土隔 2寸이라고 하고 「用習陣時及烟臺相應放之」라고 하였다. 그런데 光海君 4년(1612)에 충청도에서 만들었다고 한 破陣砲는 상당히 우수한 대포였던 것 같으나 뒤에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²²⁾

이 밖에도 병자호란 이후에 제작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大砲들이 상당수 있었다. 『萬機要覽』에 의하면 다음 <表 5>와 같이 서울의 軍門들에는 單家砲 54坐 循環砲 20坐, 木母砲 628坐, 鐵母砲 2坐, 威遠砲 245사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상의 대포들에 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表 5>

砲名 軍門	單家砲	循環砲	木母砲	鐵母砲	威遠砲
訓鍊都監		10			
御營廳		3	2	2	79
禁衛營		3			79
摠戎廳	54	4	626		87
龍虎營					
計	54	20	628	2	245

한편, 壬辰倭亂 이전에 사용된 재래식 銃의 경우 대표적인 것은 勝字銃筒이었다. 勝字銃의 諸元과 성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다음 <표 6>에서 볼 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同種의 銃名에 나타난 火藥·火藥線·丸의 개수를 『神器秘訣』(1603)과 『火砲式諺解』(1635)를 비교해 볼 때 火藥量이 증가되고 火藥線도 늘어났으며 丸의 개수도 많아졌다. 그것은 결국 銃의 무게와 길이도 증가

20) 『宣祖實錄』 35, 宣祖 26年 2月 丁未.

21) 『文宗實錄』 4, 文宗 卽位年 10月 乙亥.

22) 『光海君日記』 59, 光海君 4年 11月 壬寅.

〈表 6〉

典 據	銃 名	銃 材	銃 重	銃 長	火 藥
神器秘訣	大勝銃				6錢
"	次勝銃				4錢
"	小勝銃				2錢或2錢2~3分
火器都監儀軌	小勝字粧家	正鐵	7斤	2尺	2錢5分
火砲式諺解	勝字銃筒				1兩
"	次勝字銃筒				5錢
"	小勝字銃筒				3錢

火藥線	土隔	丸	射距離	箭	備 考
小藥線3寸		小鉛子3~4枚			
小藥線3寸		小鉛子2~3枚			
小藥線3寸		小鉛子1枚			
小藥線3寸		鐵丸1個			家則依鳥銃家制
小藥線3寸	6分	鐵丸15個	600步	皮翎木箭	無檄木
中藥線3寸	3分	鐵丸5個			
中藥線3寸	2分	鐵丸3個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대형화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는 小勝字銃을 鳥銃과 같이 銃家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이다. 銃家가 부착됨으로써 命中率을 높이고 휴대하기가 편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勝字銃은 全羅左水使 金堦가 선조 6년(1573)경에 창제하여²³⁾ 同王 16年(1583)의 尼蕩亂 平정시에 크게 이용하였으며²⁴⁾ 大·小型으로 개량하여 임진왜란 이듬해의 幸州大捷에서는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²⁵⁾ 이

23) 姜性文, 「朝鮮後期の 武器」 『前掲書』 p. 499. 참조.

24) 『宣祖實錄』 17, 宣祖 16年 6月 辛酉, 『宣祖實錄』 18, 宣祖 17年 4月 甲辰.

25) 『宣祖實錄』 35, 宣祖 26年 2月 丁未.

처럼 勝字銃이 地上軍의 중요한 小火器로 역할할 뿐 아니라 海戰에서도 유용한 小火器로 이용되고 있었다.²⁶⁾ 따라서 정부는 砲手를 양성하면서 鳥銃과 함께 勝字銃의 사격술을 익히게 하였던 것이며²⁷⁾ 선조 32년(1599) 5월 砲手の 試取規定을 정하면서도 小勝字銃의 사격술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진술하였듯이 勝字銃의 命中率을 높이고 휴대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鳥銃을 모방한 別樣勝字²⁸⁾ 또는 別樣裝架勝字銃²⁹⁾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곧 『火器都監儀軌』에 기재된 小勝字粧家인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이 勝字銃은 성능이 양호한 小火器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의 『邑誌』에도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것의 명칭이 銃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砲로 기록되기도 하였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표 7>에서는 모두 銃으로 정리하였다.

<表 7>

道別 銃 鍾	咸 鏡	平 安	黃 海	全 羅	慶 尙	計
勝 字 銃	103	753	1	37	20	914
鎗鐵勝字銃					5	5
大勝字銃					1	1
大小勝字銃	95					95
小勝字銃				2	3	5
小勝字鎗鐵銃				10		10
別勝字銃					78	78
大車勝字銃					80	80
車防勝字銃					21	21
車防次勝字銃					21	21
唐勝字銃				2	4	6

26) 『宣祖實錄』 56, 宣祖 27年 10月 壬子.

27) 『宣祖實錄』 49, 宣祖 27年 3月 己卯.

28) 『宣祖實錄』 135, 宣祖 34年 3月 丙辰.

29) 『宣祖實錄』 166, 宣祖 36年 9月 乙卯.

〈表 7〉에 나타난 勝字銃의 수는 무려 1,230柄에 달하였다. 그러나 『萬機要覽』에 의하면 서울의 軍門들 중 御營廳에 2柄이 있고 禁衛營에는 勝字銅砲 2坐가 있는데, 鑪鐵製의 勝字銃은 있지만 銅鐵製가 없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그것이 砲인지 銃인지를 상고할 수 없었다.

상기한 〈表 7〉에서 보면 丙子胡亂 이후 勝字銃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첫째 勝字銃의 제품재료가 正鐵로서 打造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鑪鐵로도 제조하였던 점이며, 둘째는 丙子胡亂 이후 別勝字銃이 개발되었고 또 戰車에 사용된 듯한 大車, 車防勝字銃과 車防次勝字銃이 생산되었으며 明軍에 의해 우리의 勝字銃을 모방 제작한 듯한 唐勝字銃이 있는 등 성능과 용도에 따라 개선된 흔적이 많았다.

한편,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倭軍의 鳥銃에 대항할 小火器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전래의 勝字銃을 大·中·小型으로 변형하거나 小勝字粧家와 같이 命中率을 높이고 휴대하기가 편하도록 개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와 성능을 지닌 여러 가지 小銃들을 개발 생산하였다. 곧 宇·宙·洪·荒字銃과 日·月·盈·昃徐字銃들이 그것이다.

〈表 8〉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술한 勝字銃이 『神器秘訣』(1603)에서 『火砲式診解』(1635)로 넘어 가면서 重量이나 규모가 전체적으로 대형화하였듯이 〈表 8〉 중의 銃들도 약간씩 諸元과 성능 면에서 月字·昃字銃을 제외하고 모두가 확대 증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는 〈表 8〉 중에 보다 규모가 커진 상태로 『火砲式診解』에 나타난 諸元들을 勝字銃과 비교해 볼 때 次勝字나 小勝字보다도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勝字銃보다도 더 작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老弱軍에게 지급하려 한 것 같다.

어떻든 宇·宙·洪·荒字銃이나 日·月·盈·昃字銃 등은 壬辰倭亂時에는 물론 丙子胡亂時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顯宗 5年(1664) 6月 備邊司에서 ‘昃字銃이 사거리가 짧고 긴요하게 쓰이지도 않으니 부수어서 다른 火器를 만드는 데 쓰자’고 제안한 데 대하여 顯宗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하필 부숴 버릴 것인가, 그대로 두도록 하라’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보

〈表 8〉

典 據	銃名	火藥	火藥線	丸	典 據	銃 名
神器秘訣	宇字銃	2錢半	小藥線2寸半	小鉛子2枚	火炮式諺解	宇字銃筒
"	宙字銃	2 錢	小藥線2寸	小鉛子1~2枚	"	宙字銃筒
"	洪字銃	2 錢	小藥線2寸	小鉛子1~2枚	"	洪字銃筒
"	荒字銃	2 錢	小藥線2寸	小鉛子1~2枚	"	荒字銃筒
"	日字銃	2 錢	小藥線2寸	小鉛子1~2枚	"	日字銃筒
"	月字銃				"	月字銃筒
"	盈字銃	1錢5分	小藥線2寸	小鉛子1枚	"	盈字銃筒
"	昃字銃	1錢5分	小藥線2寸	小鉛子1枚	"	昃字銃筒

火 藥 線	箭	火 藥	射 距 離	丸	火 藥
小藥線半半條	木稜箭1個	3錢	700步	鐵丸3個	3錢5分
小藥線半半條	皮翎木箭1個	2錢	700步	鐵丸2個	2錢5分
小藥線半半條				鐵丸1個	3錢
小藥線半半條				鐵丸2個	3錢
小藥線半半條	皮翎小隱藏箭1個	3錢	1100步	鐵丸3個	3錢5分
小藥線半半條				鐵丸1個	5分
小藥線半半條				鐵丸1個	1錢
小藥線半半條	火箭1個			鐵丸2個	2錢5分

아도 그 나머지의銃들은 성능이 양호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그 때문에 18세기 말의 『邑誌』에도 다음 〈表 9〉와 같이 상당수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邑誌』에 元字銃 6柄이 경상도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諸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상고할 수 없거니와 혹 이것도 元·亨·利·貞字銃의 일환으로 제조된 것인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9〉

道別 銃名	全 羅	慶 尙	計
宇 字 銃		22	22
宙 字 銃		9	9
黃 字 銃	2		2

한편 壬辰倭亂중에 개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快鎗도 전래의 勝字銃과 유사한 小銃이었다. 『火器都監儀軌』에 의하면, 正鐵로 제조하였고 중량이 8斤이며 銃長이 2尺 4寸으로 火藥 3錢, 小藥線 3寸, 鐵丸 1個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神器秘訣』에 의하면 命中率은 鳥銃이 快鎗보다 10배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사용이 불가피했던지 光海君 6年の 火器都監에서는 724柄이나 제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命中率이 뒤떨어진 銃이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걸쳐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여 18세기 말의 『邑誌』에는 평안도에만 5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仁祖 27年(1649) 4月 軍器寺의 別造廳에서는 紙銃 100柄을 제조하였고 國王이 이를 試放한 뒤 監官과 工匠들을 포상하고 있었다.³⁰⁾ 그것의 규모와 성능이 어떠한지 상고할 수 없고 그것이 곧 紙火銃이라면 18세기 말의 『邑誌』 중 평안도의 紙火銃 294柄과 같은 것일 것이고 火銃과 동일하다면 『萬機要覽』 중의 禁衛營에 소장된 火銃 30柄과 같은 것일 것이다. 이 밖에도 丙子胡亂 이후에 제작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小銃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18세기 말의 『邑誌』에는 熟銅銃, 熟銅小銃이 전라도에 각각 4柄씩 있었고, 『萬機要覽』에도 銅小銃이 訓練都監에 11柄이 있고 短銃 2枝 299叢과 3枝 299叢이 御營廳에 있으며 나팔別銃 10柄이 摠戎廳에 소장되어 있었다.

30) 『仁祖實錄』 50, 仁祖 27年 4月 庚子.

3. 外來式 銃砲類의 種別과 性能

임진왜란중에 명나라의 원군들이 가져온 총포류는 여러 종에 달하였고 그 중에서도 조선정부의 관심을 끈 것들은 평양성 탈환전에 위력을 발휘한 銃砲類들이었다. 그것들 중 가장 유용한 大砲로 지목된 것은 佛狼機였다.

〈表 10〉

神器秘訣	佛狼機 子砲9門 每子砲1門當火藥2兩 中藥線4寸 中鉛子2~3枚
火器都監儀軌	佛狼機四號 銅製 重90斤, 長3尺1寸7分 子砲 銅製 重12斤, 火藥3兩, 中藥線半條, 鐵丸1個 佛狼機五號 銅製 重60斤, 長2尺6寸5分 子砲 銅製 重6斤4兩, 火藥1兩5錢, 中藥線半條, 鐵丸1個
火砲式諺解	佛狼機1號 佛狼機2號 火藥7兩, 中藥線半條, 土隔1寸, 鐵丸1個 佛狼機3號 火藥1兩5錢, 中藥線半條, 土隔8分, 鐵丸1個 佛狼機4號 火藥1兩5錢, 中藥線半條, 土隔7分, 鐵丸1個 佛狼機5號 火藥1兩5錢, 中藥線半條, 土隔5分, 鐵丸1個

佛狼機는 임진왜란 이듬해에 평양성의 탈환전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同王 27年(1594) 3月, 兵曹判書 李德馨이 宣祖에게 당시의 상황을 보고할 정도였고³¹⁾ 同王 28年 10月 비변사에서는 龜船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주야를 가리지 말고 건조토록 하는 동시에 佛狼機와 大砲·火箭 등을 많이 신게 하여 海戰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³²⁾ 이처럼 佛狼機의 성능이 인정되자 同王 32年 5月에는 砲手의 試取科目에도 포함시켰던 것이다.³³⁾

佛狼機는 육전과 해전에 필수적인 大砲가 되어 宣祖 34년에는 都體察使

31) 『宣祖實錄』 49, 宣祖 27年 3月 己卯.

32) 『宣祖實錄』 68, 宣祖 28年 10月 丙寅.

33) 『宣祖實錄』 113, 宣祖 32年 5月 丙子.

李德馨이 慶尙道の 待變軍器로 비치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후에 軍器寺나 訓練都監에서 새로 제작한 佛狼機들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고,³⁴⁾ 光海君 6年(1614)에 火器都監에서는 佛狼機 4號 50位와 子砲 250門, 5號 50位와 子砲 250門을 각각 鑄造하였다.³⁵⁾ 병자호란 이후에도 佛狼機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정부가 佛狼機의 생산을 계속하였으며,³⁶⁾ 顯宗 6年(1665) 統制使 鄭傳賢이 佛狼機 4, 5호 50位와 正鐵字砲 200門을 생산하였던 것이다.³⁷⁾ 그리고 각 鎭·堡의 官吏, 將卒들이 裝放法을 숙지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³⁸⁾ 특히 佛狼機는 「臨江禦敵」에 필수적인 大砲라 하여 胡亂 이후 특별히 제조하여 江都의 待變軍器로 비치되기 시작하였고,³⁹⁾ 전술한 統制營의 佛狼機 및 子砲가 江都로 수송되었으며⁴⁰⁾ 숙종 7年(1681)에 다시 강화유수 李選의 요청으로 佛狼機와 각종 화포에 이용하기 위하여 경상·전라도의 兵營·水營과 統營 및 평안, 황해도의 병영들로 하여금 間年輪回하여 合口丸 500個와 鳥卵丸 5,000個를 備送토록 규정하고 있었다.⁴¹⁾ 그리고 肅宗 34年(1708)에도 왕이 또한 佛狼機를 守城과 臨津에 가장 적합한 ‘戎器 중의 要器’라고 하면서, 佛狼機의 제조를 청한 吏曹判書 李寅燁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⁴²⁾ 따라서 18세기 말의 각도 『邑誌』에는 다음 <表 11>과 같이 상당수의 佛狼機가 子砲와 함께 남아 있었다.

佛狼機는 各道에도 상당수가 있었지만 서울의 軍門에도 다음 <表 12>과 같이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34) 『宣祖實錄』 135, 宣祖 34年 3月 丙辰.

35) 『火器都監儀軌』 3~4葉.

36)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癸丑.

37) 『顯宗改修實錄』 13, 顯宗 6年 5月 癸巳.

38) 『肅宗實錄』 12, 肅宗 7年 8月 壬午.

39)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癸丑.

40) 『肅宗實錄』 12, 肅宗 7年 8月 壬午.

41) 『肅宗實錄』 11, 肅宗 7年 5月 癸酉.

42) 『肅宗實錄』 46 肅宗 34年 8月 戊申.

〈表 11〉

	咸 鏡	平 安	黃 海	全 羅	慶 尙	計
佛 狼 機		9	1	42	70	122
子 砲		60	1	158	114	333
佛狼機四號	5				65	70
子 砲	5				151	156
佛狼機五號	9				54	63
子 砲	20				349	369

〈表 12〉

	訓鍊都監	御 營 廳	禁 衛 營	摠 戎 廳	計
佛 狼 機			60		60座
鎗 佛 狼 機				415	415座
鐵 佛 狼 機				60	60座
四號佛狼機	15				15座
四號鎗佛狼機		10			10座
五號佛狼機	50				50座
五號鎗佛狼機		50			50座
子 砲	335		300		635個
鐵 子 砲				3,982	3,982個

상기한 〈表 11, 12〉에서 佛狼機로만 쓰여진 것에 과연 1, 2, 3號가 포함된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火砲式諺解』 이후 『朝鮮王朝實錄』에 1, 2, 3號에 대한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4, 5호를 통칭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佛狼機는 母砲나 子砲를 모두 銅鐵로 주조하였는데 母砲를 水鐵로 子砲를 鐵로 주성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떻든 18세기 말 『邑誌』에 수록된 佛狼機는 母砲의 경우 245座며 子砲도 858個에 달하였고 19세기 초 서울의 4軍門에도 母砲가 660座, 子砲가 4,617個에 달하여 總 母砲 905座에 子砲 5,475個이나 되었다.

다음 虎蹲砲에 관해서는 『神器秘訣』에 명칭만 있을 뿐 설명이 없고 다만 『火砲式彥解』에 의하면 “火藥 6兩, 中藥線 半條, 土隔 2寸, 鉛丸을 사용하면 70個(1丸 重 2錢), 鐵丸을 사용하면 30個(1丸 重 2錢), 發사시에는 모두 大鉛子 1個를 筒 중에 넣는데 大鉛子の 무게가 5兩”이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虎蹲砲 역시 1593년 1월의 평양성 탈환전에서 佛狼機와 더불어 위력을 발휘한 大砲 중의 하나였다.⁴³⁾ 宣祖 26年(1593) 君臣간에 논의한 내용에서 보면 “호준포는 鐵丸 또는 石丸을 發사하고 裝藥時 火藥을 넣은 다음 泥土를 채운다”고 하였으며,⁴⁴⁾ 이듬해 4월에 宣祖와 兵曹判書 李德馨과의 문답에서는 倭大鳥銃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다 같이 火藥 4兩을 裝填한다고 하고 있었다.⁴⁵⁾ 그런데 同王 31년에는 明將 麻貴가 島山戰에 사용하는 등 虎蹲砲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同王 32年 5月 虎蹲砲를 佛狼機·百字砲와 함께 砲手의 試取科目에 포함시켰던 것이다.⁴⁶⁾ 병자호란 후 江都의 待變軍器로 중요성을 지니는 등 虎蹲砲의 위력이 인정되었으므로 『萬機要覽』에 의하면 訓練都監에 17位, 御營廳 1位 등 18位가 남아 있었다.

이밖에 明의 援軍을 통하여 제조법과 發射술을 배워 조선정부가 사용한 大砲類에는 飛虎子母砲와 噴筒火 및 地雷砲가 있다.

飛虎子母砲에 관해서는 宣祖가 同王 29年 11月 李元翼에게 지급하면서, “飛虎砲는 明軍의 經略 宋應昌이 제조한 것으로 母砲의 모양이 種子와 같고 손잡이 차루가 있으며 裝藥, 土隔後, 子砲를 母砲에 붙이고 母砲에 불을 댕기면 子砲의 心이 空中에서 發毒하니 震天雷와 흡사하다”고 하고, “母砲 1門에 子砲 48개를 장전하는 데 사용이 간편하며 虛放하더라도 해로울 게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 軍營에 두었다가 밤에도 放砲하고 낮에도 發사하여 盜賊에 대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震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裝放法을 설명하기를 “深切키가 種子 같은 곳에

43) 『宣祖實錄』 49, 宣祖 27年 3月 己卯.

44) 『宣祖實錄』 35, 宣祖 26年 2月 乙巳.

45) 『宣祖實錄』 50, 宣祖 27年 4月 乙丑.

46) 『宣祖實錄』 113, 宣祖 32年 5月 丙子.

火藥을 裝填하고 그 위 뜯린 구멍에 불을 붙이고 또한 子砲의 心에다 손으로 누르면 곧바로 卵砲를 折去, 火藥이 곧 접촉하여 火鞭이 모두 흩어진다.”고 하였다.⁴⁷⁾ 이 飛虎砲는 흡사 『戎垣必備』에 나오는 飛礮와 같은 것인지는 상고할 수가 없지만 비몽포도 圖型이 또한 種子와 같고 자루가 있으며 子·母砲로 구성된 점 등이 유사하다.

다음, 噴筒火의 경우는 임진왜란중 海戰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에 統制使는 噴筒火가 서울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備邊司에서는 그것을 모두 中國으로 보내 버려 없다고 하고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宣祖는 訓練都監에 지시하여 明의 援軍이 아직 남아 있을 때 學得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訓練都監에서는 “李提督 衙門에 이 기술을 지닌 자인 孫龍을 찾아 이를 傳習하려 하였으나 소요되는 材料가 미비하여 明人들로부터 購入·製造 중에 있고, 孫龍이 또 弓矢用의 毒藥 製造法을 알고 있어 함께 傳習중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宣祖는 同王 33年 6월에 “毒藥製造法을 전수한 자에게도 앞서 傳敎한 대로 각별히 論賞”토록 명령하였다.⁴⁸⁾ 그 때문에 訓練都監에서는 劑藥人 孫龍을 全羅監營과 統制使營에 보내어 藥法, 砲法을 가르치도록 시킨 결과 毒藥과 噴火의 製造法을 모두 傳習하였던 것이다.⁴⁹⁾ 이리하여 이듬해 5월에 宣祖는 秘密備忘記로 傳旨하여 毒藥을 傳習한 監官인 通事 金甘孫에게는 東班六品職을 除授하고, 監官이었던 加設主簿 曹世鎭에게는 實職으로 陞授하고, 匠人인 良人 李眞介는 禁軍을 除授하였으며 噴筒火를 傳習한 加設訓練院主簿 柳元도 陞授토록 하였다.⁵⁰⁾ 이때부터 분화통의 생산이 계속되었는지 『萬機要覽』의 禁衛營에는 604柄이나 있었다.

다음, 地雷砲의 경우에도 역시 劑藥人 孫龍으로부터 제조법을 전수한 듯하다. 앞서 孫龍은 明將 吳惟忠의 標下人인 데 得罪하여 落後된 자였다. 地雷砲를 제작 사용하려 하였으나 火藥이 부족하여 傳習할 수 없어 우

47) 『宣祖實錄』 82, 宣祖 29年 11月 戊申.

48) 『宣祖實錄』 126, 宣祖 33年 6月 癸巳.

49) 『宣祖實錄』 137, 宣祖 34年 5月 癸巳.

50) 『宣祖實錄』 137, 宣祖 34年 5月 癸巳.

선 扶安으로 보내어 海上焰硝를 煮取하려 하였는데 訓練都監에서 明軍에 달려 보내라고 독촉했기 때문에 煮取치 못하고 올라왔던 것이다. 이에 宣祖는 地雷砲와 더불어 海硝法을 전수토록 서울에 머물게 하였고, 傳習人 및 傳語譯官도 앞서 傳旨한 대로 書啓論賞토록 지시하였다.⁵¹⁾ 그러나 地雷砲의 製造, 발사시험은 인조 3년(1625) 弘濟院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었다. 이때 備邊司에서는 戰守에 유익함을 인식하고 西北地方의 戰守處로 하여금 조속히 製造하여 女眞의 침입에 대비케 하였다.⁵²⁾ 그러나 地雷砲는 제조비가 엄청나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明人 文卿男의 말을 들은 뒤, 兵曹에서는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5년 6월에 계문하여 文卿男을 黃州, 安州에 파견, 地雷砲 4~5좌씩을 製造케 하였고 그 밖의 힘준하고 埋設할 만한 곳에도 비치토록 하였다. 文卿男은 앞서 평양에서 地雷砲를 특별 製造한 바 있어 그것의 제조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에 의한 地雷砲 1좌를 생산하는 데는 ‘假板半葉 松板 5葉, 水鐵 50斤, 正鐵 5斤, 熟麻 1斤과 丸藥은 震天雷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6斤, 혹 7斤이 소요된다.’고 하였다.⁵³⁾ 文卿男이 파견되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묘호란을 치른 뒤이라 이듬해인 인조 6년 9월 平安兵使 尹璫이 馳啓한 바에 의하면 ‘地雷砲가 女眞軍을 막는데 가장 긴요하여 前兵使 申景瑗이 힘써 製造하여 百坐 가량 있으나 火藥 10,000餘斤, 藥線厚紙 500餘卷을 辦得치 못하고 있다.’ 하여 備局回啓로, “地雷砲所用 焰硝 2,000斤, 石硫黃 130斤, 紙甲 400部를 下送하였다.”⁵⁴⁾고 한다. 이러한 地雷砲는 『戎垣必備』에 기록된 埋火法과 유사한 듯하다. 어쨌든 女眞의 침입에 대비하여 중시된 地雷砲의 생산은 계속되었던지 18세기 말의 『邑誌』에도 平安道에 3坐, 慶尙道에 雷砲란 이름으로 29坐가 남아 있었다.

이 밖에도 壬辰倭亂중 明의 援軍을 통해 소개된 大砲로는 開山大砲⁵⁵⁾와

51) 『仁祖實錄』 16, 仁祖 5年 6月 乙巳.

52) 『仁祖實錄』 8, 仁祖 3年 3月 乙卯.

53) 『仁祖實錄』 16, 仁祖 5年 6月 乙巳.

54) 『仁祖實錄』 19, 仁祖 6年 9月 辛未.

55) 『宣祖實錄』 27, 宣祖 25年 6月 丙午.

大將軍砲⁵⁶⁾가 있다. 이 중 大將軍砲는 李元翼이 그것의 제조법이 까다로우며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滅虜砲는 宣祖 27年 1月 平壤戰에 佛狼機, 虎蹲砲와 함께 사용한 大砲였다.⁵⁷⁾ 그러나 이상의 大砲들은 그후 朝鮮後期에 걸쳐 이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丙子胡亂을 거친 뒤에는 大砲·中砲라고만 표시된 것이 있는가 하면 南蠻大砲도 등장하였다.⁵⁸⁾ 大砲·中砲가 새로운 砲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胡亂 이후의 『朝鮮王朝實錄』에 전래의 碗口類와 외래의 佛狼機 등은 정식 명칭을 썼지만 天·地·玄·黃字砲는 고유명칭을 쓰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의 大砲·中砲는 곧 전래의 天·地·玄·黃字砲를 통칭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南蠻大砲는 紅夷砲를 지칭한 듯하다. 紅夷砲는 仁祖 9年(1631)에 陳奏使 鄭斗源이 耶蘇會宣教師로부터 선물로 받아 왔던 것이 傳來의 시초였다. 그때 宣教師의 알선으로 明의 砲手 朴武吉을 대동해 올 수 있었으며 朴燕에 의해 국내에서 紅夷砲의 제작이 실현되었다.⁵⁹⁾ 紅夷砲는 李麟佐亂을 겪은 뒤인 英祖 28年(1752)에 廣州留守 李箕鎮이 “南漢山城의 바깥쪽에 하나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곧 병자호란때 淸軍이 점령해 있었던 要地다. 그 후에 守禦使 閔鎮厚가 그 봉우리 위에 작은 城을 쌓고 千摠을 시켜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은 높고 城堞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니 차라리 두 개의 墩臺를 쌓아 賊이 오르지 못하도록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자 英祖가 “그곳에서 城中을 내려다 볼 정도냐”고 물었고 箕鎮은 “淸軍이 그곳에 紅夷砲를 들고 들어 갔다”고 하고 있다.⁶⁰⁾ 이상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淸軍이 南漢城 밖의 한 高峰으로 紅夷砲를 운반하여 城內에 砲擊을 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56) 『宣祖實錄』 27, 宣祖 25年 6月 丙午, 『宣祖實錄』 35, 宣祖 26年 2月 乙巳.

57) 『宣祖實錄』 49, 宣祖 27年 3月 己卯.

58)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癸丑.

59) 金良善, 「仁·孝兩朝 蘭人의 漂到와 韓·中·日 三國의 外交關係」, 『郷土서울』 제30집, 1967. 8, p. 38.

60) 『英祖實錄』 77, 英祖 28年 9月 辛巳.

그런데 李麟佐亂 직후인 同王 7年(1731) 9월에 訓練都監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銅砲 50坐 紅夷砲 1坐 및 그것을 실을 車 52輻을 新修하였다.”고 하고 “銅砲는 탄환의 사거리가 2,000餘 步며, 紅夷砲는 사거리가 10餘里라 유사시에 쓸 만한 것”들이라고 하고, “紅夷砲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이 만든 것이라 임금께 바치는 것이니 監董한 자들을 포상할 것”을 청하였고, 왕은 곧 이를 허락하였던 것이다.⁶¹⁾ 이때 訓練都監에서 新製한 紅夷砲 2坐가 계속 보존되었던지는 상고할 수 없으나 19세기 초의 『萬機要覽』에도 訓練都監에만 紅夷砲 2坐가 남아 있었다.

한편 임진왜란중에 明나라의 援軍을 통해서 들여온 소화기 중 鳥嘴銃 곧 鳥銃은 말할 것도 없지만 三眼銃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우선 三眼銃의 諸元을 『兵書』에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

火 器 都 監 儀 軌	三眼銃 正鐵製品 重7斤半, 長1尺4寸8分, 每穴當 火藥3錢 小藥線3寸 鐵丸1個
火 砲 式 諺 解	三眼銃 每一穴當 火藥3錢 小藥線3寸 土隔2分 鐵丸1個

三眼銃은 곧 三穴銃으로 『朝鮮王朝實錄』에는 두 名稱의 쓰임새가 비슷한데 후기에 갈수록 三穴銃이라 쓰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三穴銃이란 명칭을 통용키로 하겠다. 三穴銃이 조선정부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宣祖 26年(1593) 1月 平壤城의 奪還戰況을 尹根壽가 왕에게 보고할 때부터였다. 곧 「天兵放三穴鳥銃 倭軍盡斃」라고 한 것이다.⁶²⁾ 三穴銃의 성능을 비교하기를, 備邊司에서는 “각종의 화기들 중 전투용으로 가장 긴요한 火器로는 鳥銃이 최상이고 三穴銃筒이 다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三穴銃筒은 鳥銃과는 달리 제조하기가 어렵지 않아 冶匠熟手라면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해서 同王 26年 12월에 黃海道는 兵使의 주관하에, 그리고 平安·全羅는 監

61) 『英祖實錄』 30, 英祖 7年 9月 辛巳.

62) 『宣祖實錄』 34, 宣祖 26年 正月 甲子.

司에게 각기 道内の 産鐵邑에 卜定 打造토록 지시하고 있었다.⁶³⁾ 따라서 鳥銃의 생산이 부족한 시기인 임진왜란중에는 鳥銃·勝字銃과 더불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撫軍司에서도 同王 27年 3月の 狀啓에서 砲手들에게 鳥銃을 모두 지급할 수 없어 “鳥銃·三眼銃·勝字銃筒을 相雜習放키로 하였다”는 것이다.⁶⁴⁾ 정부는 三穴銃의 제조를 독려하여 砲手を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고⁶⁵⁾ 同王 28年 5月에는 三穴銃을 「禦敵之良器」이므로 習放해야 한다고 해서 入直砲手들에게 사격술을 익히게 하고 論賞規定 또한 鳥銃의 경우와 같게 하였으며⁶⁶⁾ 결국 同王 32年(1599) 5月の 砲手試取法을 제정하면서 砲手が 鳥銃 이외에 虎○砲·佛狼機·三眼銃·小勝字銃·百字銃의 裝放法을 試取하게끔 규정하였던 것이다.⁶⁷⁾ 이처럼 三穴銃의 성능이 인정되고 試取科目으로 포함될 정도였던 만큼 光海君 6年(1614)의 火器都監에서도 203柄을 제조한 것이며⁶⁸⁾ 정묘호란을 겪은 뒤, 정부는 仁祖 5年(1627) 6월에 이르러 諸道の 各邑으로 하여금 三穴銃을 加造토록 하였던 것이다.⁶⁹⁾ 이처럼 三穴銃이 鳥銃·勝字銃과 더불어 중요한 小火器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의 각도 『邑誌』에도 다음 〈表 14〉와 같이 상당수가 기재되고 있었다.

〈表 14〉

道別 銃名	咸 鏡	平 安	黃 海	京 畿	忠 清	全 羅	慶 尙	計
三穴銃	18	46	7	13	1	38	142	265

63) 『宣祖實錄』 46, 宣祖 26年 12月 丁卯.

64) 『宣祖實錄』 49, 宣祖 27年 3月 己卯.

65) 『宣祖實錄』 49, 宣祖 27년 3月 己卯, 『宣祖實錄』 55, 宣祖 27年 9月 戊寅.

66) 『宣祖實錄』 63, 宣祖 28年 5月 庚子.

67) 『宣祖實錄』 113, 宣祖 32年 5月.

68) 『火器都監儀軌』

69) 『仁祖實錄』 16, 仁祖 5年 6月 乙巳.

이 밖에 單穴銃이 慶尙道에 1柄, 二穴銃이 함경·전라도에 각 1柄, 三枝鳥銃이 경상도에 24柄, 四穴銃이 경상도에 102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三穴銃의 改造品인 듯하다. 그러나 正鐵로서 打造하는 三穴銃을 鑄鐵로 제조한 것이 경상도에 16柄이 있었는데 이는 上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18세기 초의 『萬機要覽』에 의하면 서울의 軍門들에도 상당수 소장되어 있음을 다음 <表 15>에서 확인된다.

<表 15>

軍門別 銃名	訓練都監	御營廳	摠戎廳	龍虎營	計
三穴銃	153	70	24	12	259

이상 軍門들의 소장품도 軍門에 따라 각기 三穴銃·鐵三穴砲·銅三穴砲 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모두 三穴銃으로 파악하였고 御營廳의 銅三穴砲도 上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訓練都監의 三層火門 1柄과 禁衛營의 三合銃 4柄은 그것이 곧 三穴銃인지 확인할 수 없어 표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처럼 18세기 말에는 各道에 三穴銃 265柄이 있었고 19세기 초 서울의 각 軍門에도 259柄이 있어 무려 524柄이 소장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중에 三穴銃 곧 三眼銃이 전래되면서 그것을 개조 또는 개량한 것이 雙眼銃인 듯하다. 雙眼銃은 『神器秘訣』에 보면 銃身 2個가 左右로 나누어 붙어 있는 小銃으로 각 銃身마다 6층의 藏藥室이 있어 각층마다 火藥 2錢, 小藥線 3寸, 小鉛子 1枚씩을 장전토록 되어 있었다. 雙眼銃의 무게와 길이 또는 성능이 어떤지도, 전투용으로서의 활용도가 컸는지도 상고할 수 없지만, 18세기 말의 『邑誌』에는 二穴銃이 함경도와 전라도에 각각 1柄씩 있고 『萬機要覽』에 의하면 摠戎廳에 雙門砲 1소가 있다. 그리고 『邑誌』에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單穴銃(慶尙道 1柄), 四穴銃(慶尙道 102柄)이 있는데 이 모두가 三眼銃을 표본으로 하여 개조 개량한 소총이 아닐까 싶다.

임진왜란중에 명군에 의하여 소개된 총 중 三眼銃에 이어 조선정부가

유용하게 여겨 傳習한 것은 百字銃이었다. 百字銃에 대한 諸元이 기록된 『兵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 <表 16>과 같다.

<表 16>

神器秘訣	百字銃, 火藥1兩, 小藥線3寸, 小鉛子6~7枚(此器 大·中·小不等 器小則減藥 減則子亦減)
火器都監儀軌	百字銃筒, 銅製, 重28斤 長2尺7寸, 火藥3兩, 小藥線半條, 鐵丸15個
火砲式諺解	大百字銃, 火藥3兩, 小藥線半條, 土隔1寸5分, 鐵丸15個
	中百字銃, 火藥2兩, 小藥線半條, 土隔1寸5分, 鐵丸5個
	小百字銃, 火藥1兩5錢, 小藥線3寸, 土隔7分, 鐵丸 3個

이상에서 볼 때 『神器秘訣』 중의 百字銃은 『火砲式諺解』에 있는 小百字銃의 諸元과 유사하며 火器都監의 그것은 大百字銃의 諸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중에 傳受하여 조선후기에 걸쳐 제작 사용한 百字銃은 大·中·小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중 百字銃의 성능은 일찍부터 인정되었으나⁷⁰⁾ 정부가 百字銃의 대량생산에 착수한 것은 宣祖 27年(1594) 9月頃이었다.⁷¹⁾ 百字銃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전투용으로서 성능이 인정되자 同王 32年(1599)부터 砲手의 試取科目에 포함시켰으며⁷²⁾ 同王 34년에는 女眞의 침입에 대비하여 北道砲手에게 지급, 훈련케 하는⁷³⁾ 동시에 都體察使 李德馨의 요청으로 倭侵에 대비하기 위한 慶尙道待變軍器로 하송하고 있었다.⁷⁴⁾ 이처럼 百字銃은 女眞과 倭의 침입에 대비하는데 소중한 小火器이기 때문에 光海君 6年(1614)의 火器都監에서도 百字銃 곧 大百字銃 20位를 생산하고 있었다.

70) 『宣祖實錄』 50, 宣祖 27年 4月 乙丑.

71) 『宣祖實錄』 55, 宣祖 27年 9月 戊寅.

72) 『宣祖實錄』 113, 宣祖 32年 5月 丙子.

73) 『宣祖實錄』 134, 宣祖 34年 2月 癸巳.

74) 『宣祖實錄』 134, 宣祖 34年 2月 癸巳.

따라서 18세기 말의 各道 『邑誌』에도 다음 표와 같이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었다.

〈表 17〉

道別 種類	咸 鏡	全 羅	慶 尙	計
百 字 銃		140		140
百 字 砲			29	29
百 字 銃 筒			25	25
正鐵百字銃			30	30
鑰鐵百字銃			4	4
大百字銃筒	18			18
大·中百字銃	18			18
中百字銃筒	5			5

百字銃은 上表에서처럼 銃·銃筒·砲로 쓰이고 있으나 필자는 百字銃이 種類로 보아 휴대용 소총이기 때문에 銃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런데 18세기 말 『邑誌』에 등재된 百字銃의 數는 264위에 달했으나, 서울의 軍門들에는 百字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서 사용하게 된 외래의 銃들 중에서는 鳥銃이 가장 중요한 휴대용 소화기였다. 임진왜란 이래 鳥銃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는 宣祖 26年(1593) 2月 鳥銃의 사격술을 科擧의 試驗科目에 넣었다는 사실로도 익히 알 수 있거니와⁷⁵⁾ 宣祖 32年(1599) 5月에는 砲兵의 試取時에도 鳥銃과 더불어 虎○砲·佛狼機·三眼銃·小勝字銃·百字銃의 사격술을 겸하여 시험한 사실은 더욱 鳥銃의 우수성을 실감케 하였다.⁷⁶⁾ 이 때문에 임진왜란 이듬해부터 鳥銃을 제조 사용하였고 砲手를 3명으로 한 三手制

75) 『宣祖修正實錄』 27, 宣祖 26年 丙戌.

76) 『宣祖實錄』 113, 宣祖 32年 5月 丙子.

를 채택, 서울의 軍器寺와 訓練都監에서 생산할 뿐 아니라 諸道の 各邑에도 月課銃藥法을 제정하여 鳥銃 火藥 鉛丸을 제조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兵書』에도 鳥銃에 관해서는 諸元과 性能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神器秘訣』(1603)에만 전술한 것처럼 鳥銃의 裝放에 필요한 部品를 수록하고 裝放法을 설명한 뒤 “火藥 2錢, 或 2錢 2~3分, 小鉛子 1枚”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 『火砲式諺解』(1635)에도 설명이 빠졌으며 『戎垣必備』(1813)에도 鳥銃의 우수성과 제조시 유의할 점 및 그림 1점만 수록하고 있다.

임진왜란중에 明軍도 鳥嘴銃을 사용하였지만 특히 日本軍의 倭大鳥銃은 宣祖 27年(1594)에 李德馨이 “火藥 4兩, 鐵丸 20個, 혹 小丸 4個를 사용하는데 그 위력은 대포와 같고 명중률은 鳥銃의 신묘함을 지녔으며 중국제의 百字銃보다 우수하다.”고 하여 그것을 모방 제조해서 사용키로 하였던 것이다.⁷⁷⁾ 그 때문인지 顯宗 5年(1664)의 한 기록에 의하면 江都의 軍器 中에 大鳥銃이 584柄이나 들어 있었다.⁷⁸⁾ 다시 숙종 말경에는 朴英俊이 鳥銃을 모델로 증량과 크기를 늘려 千步銃을 개발한 뒤부터 英祖 때에는 그것을 三南月課鳥銃과 대체하여 西北地方부터 비치하기 시작하였다.⁷⁹⁾ 이처럼

〈表 18〉

道名 銃名	咸 鏡	平 安	黃 海	京 畿	忠 清	全 羅	慶 尙	計
鳥 銃	3,681	39,567	3,845	806	240	5,075	30,644	83,858
正鐵鳥銃							2	2
常鳥銃							4	4
平鳥銃					22			22
千步銃		236					150	386
千步鳥銃					34	354	56	388
大砲鳥銃							24	24
倭鳥銃						6	61	67

77) 『宣祖實錄』 50 宣祖 27年 4月

78)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甲寅

79) 『英祖實錄』 8 英祖 元年 12月 己丑

鳥銃은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걸쳐 대량 생산되었으며 또 그것의 성능을 바탕으로 보다 대형화한 鳥銃도 개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상황은 18세기 말의 『邑誌』와 19세기 초의 『萬機要覽』에 수록된 鳥銃의 수와 종류의 다양함에서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邑誌』에 수록된 鳥銃數를 도별로 정리해 보면 앞의 <表 18>과 같다.

여기에서 鳥銃 正鐵鳥銃 및 常鳥銃 平鳥銃은 모두 제원과 성능이 같은 鳥銃이지만 제품원료에 따라 正鐵鳥銃이라고 하거나 또 군병이 상시 휴대하고 있는 鳥銃이라는 의미에서 常·平鳥銃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런데 大砲鳥銃이 千步銃을 말한 것인지는 상고할 수 없다.

그리고 『萬機要覽』에 기재된 서울 소재 각 軍門의 鳥銃數는 다음 <表 19>와 같다.

<表 19>

軍門 銃名	訓練都監	御營廳	禁衛營	摠戎廳	龍虎營	計
鳥銃	8,444	6,488	13,638	14,203	316	43,089
千步銃	4	1	4			9

『萬機要覽』중 각 軍門에 소장된 鳥銃數는 鳥銃과 千步銃으로 대별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각양각색의 명칭을 달리하는 鳥銃類를 포괄하고 있었다. 다음 <表 20>에서 볼 수 있듯이 각 軍門에는 휴대용 常用鳥銃인 行用銃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도 제품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거나 제품원료가 다른 鳥銃도 있었으며 외국제의 鳥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곧 <表 20>에서는 첫째, 크기와 형태에 따라 長·中長鳥銃과 大·中鳥銃 및 別鳥銃 등의 구분이 있고, 둘째는 제품원료에 따라 銅絲·黑骨·銅鳥銃의 구별이 있으며, 셋째는 용도에 따라 馬上銃이 별도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 20〉

軍門 銃名	訓練都監	御營廳	禁衛營	摠戎廳	計
行用銃	7,946	6,387	12,534	5,157	32,024
大長銃		1		300	301
長鳥銃	50				50
長銃				29	29
別長銃		48			48
中長鳥銃			8		8
大鳥銃	56		2		58
銅絲大鳥銃	32				32
大銃		2			2
中銃				54	54
別鳥銃	154		1,027		1,181
別銃				30	30
黑骨鳥銃	1				1
銅鳥銃		1			1
馬上銃	205	1	1		207
唐鳥銃		1			1
胡製鳥銃		30			30
胡別鳥銃			49		49
倭鳥銃		14	1		15
倭銃				7	7

4. 發射物의 種類와 性能

兵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발사물 중 가장 위력이 있었던 것은 다음 <表 21>에서 볼 수 있는 震天雷 및 飛震天雷, 別大飛震天雷라 부르는 폭발물들이다.

<表 21>

種 類	出 典	諸 元
震 天 雷	火砲式諺解	鑄水鐵, 體圓 重113斤 或以走火 或以隱連線放之
飛 震 天 雷	火砲式諺解	鑄水鐵, 體圓 重20斤4兩, 中碗口發射 中藥線1條, 火藥1斤
別大飛震天雷	戎 垣 必 備	鑄水鐵, 重120斤, 火藥5斤, 別大碗口發射

위 표 중의 震天雷와 飛震天雷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성능상의 차이가 컸다. 전자와 후자가 모두 水鐵로 제작되고 몸체가 둥근 폭발물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전자는 무게가 113斤에 달하고 走火나 隱連線으로 발사하던 폭발인 데 반하여, 후자는 무게가 20斤 4兩에 불과하고 中碗口로 발사하던 포탄이다.

그런데 震天雷와 飛震天雷는 그 이름이 사료상에 혼용되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飛擊震天雷이다. 飛擊震天雷는 선조 25년(1592)에 火砲匠 李長孫이 창제하였고 大碗口로 발사하며 500~600步의 사정거리를 확보한 것이었다. 동년 9월에 朴晉이 慶州城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종의 시한폭탄이었다.⁸⁰⁾ 이 기록에서도 飛擊震天雷라 쓰기도 하고 震天雷로 쓰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중에도 震天雷라고 불렀고⁸¹⁾ 광해군 대에도 震天雷로 기록되고 있다.⁸²⁾ 당시 飛震天雷 또는 震天雷를 충분히

80) 『宣祖修正實錄』 26, 宣祖 25年 9月 丁巳.

81) 『宣祖實錄』 46, 宣祖 26年 12月 壬戌, 『宣祖實錄』 76, 宣祖 29年 6月 壬戌.

82) 『光海君日記』 130, 光海君 10年 7月 丁亥.

식별하고 있었을 정부가 인조 13년(1635)에 발간한 『火砲式診解』에 震天雷와 飛擊震天雷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종대의 기록이나⁸³⁾ 숙종대의 기록에도 震天雷로만 쓰여지고 있었다.⁸⁴⁾ 순조 13년(1813)에 작성한 『戎垣必備』 중의 別大飛震天雷는 水鐵로 역시 구조하였는데 그 무게가 120斤에 달하였고 別大碗口로 발사하고 있었다. 이때 別大飛震天雷의 무게는 『火砲式診解』에 있는 震天雷의 무게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火砲式診解』 중의 震天雷와 飛震天雷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들의 遺物을 찾아 판별할 수밖에 없으나 우선 두 가지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겠다. 첫째는 震天雷와 飛震天雷의 명칭상 구별로서 전자나 후자가 다 같이 일종의 시한폭탄이었지만, 전자는 무게가 113斤에 달하여 당시의 碗口類로서는 발사할 수 없고 후자는 발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후자에만 ‘飛’字를 붙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순조 13년의 『戎垣必備』에서는 무게가 120斤에 달하는 震天雷지만 別大碗口를 제작하여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別大飛震天雷란 ‘飛’字가 붙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역대의 사료상에 나타나는 ‘震天雷’란 용어도 隱連線으로 발사하는 113斤 짜리 震天雷를 지칭하거나 때로는 中碗口로 발사하는 20斤치의 飛震天雷를 지칭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銃·砲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발사물도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는 箭類를 사용하거나 丸類를 사용하였다. 箭類를 사용하는 경우는 裝填法상 火藥과 箭 사이에 檜木을 이용하였고 丸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火藥과 丸 사이에 土隔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銃·砲를 막론하고 조선후기에는 주로 箭類보다 丸類를 사용하고 있었다. 箭類인 경우는 天字砲에 大將軍箭을, 地字砲에 將軍箭을, 玄字砲에 隱藏次中箭 또는 次大箭을, 黃字砲에 皮翎次中箭 또는 皮翎箭을, 別黃字砲에 皮翎木箭을 사용하였고, 銃에도 勝字銃에 皮翎木箭을, 宇字銃에 木稜箭을, 宙字銃에 皮翎木箭을, 日字銃에 皮翎小隱藏箭을 戾字銃에 火箭을 각각 사용하였다.

83) 『顯宗改修實錄』 11, 顯宗 5年 6月 癸丑.

84) 『肅宗實錄』 12, 肅宗 7年 8月 壬午.

하지만 이상의 砲나 銃에는 모두 丸類도 사용하고 있었다. 天字砲에는 中鉛子 또는 水鐵鉛衣丸을, 地字砲에는 中鉛子 또는 鳥卵丸을, 玄·黃字砲에는 小鉛子 또는 鐵丸을, 別大·大·中·小·小小碗口에는 團石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別大碗口는 別大飛震天雷를, 大碗口는 大飛震天雷를, 中碗口는 中飛震天雷를 각각 사용하였다. 외래의 砲인 佛狼機는 鐵丸 또는 中鉛子を, 霹靂砲는 鐵丸을, 虎○砲는 鐵丸 또는 鉛丸을 각각 발사하였다.

銃의 경우도 大·中·小百字銃은 鐵丸을 勝字·次勝字·小勝字銃은 小鉛子 또는 鐵丸을, 雙眼銃은 小鉛子를, 三眼銃과 快鎗은 鐵丸을, 宇·宙·洪·荒·日·月·盈·昃字銃은 모두 小鉛子나 鐵丸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箭類에 大將軍箭·將軍箭·次大箭·隱藏次中箭·皮翎次中箭·皮翎小隱藏箭 및 皮翎木箭·木稜箭 등 大·中·小의 크기나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이 있듯이 丸類도 大·中·小와 재료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였다. 참고로 18세기 말의 『邑誌』에서 砲類와 銃類에 사용했던 箭類와 丸類를 적기해 보면 箭類는 소장량이 많지 않아 天字砲에 사용한 木大將軍箭이 경상도에 33個, 次木大將軍箭이 경상도에 10個가 있고, 地字砲에 사용하는 將軍箭이 평안도에 24個, 木將軍箭이 경상도에 88個, 地字箭이 경상도에 10個가 있으며, 玄字砲用的 玄字箭이 경상도에 20個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丸類는 상당량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砲類의 경우를 『兵書』에서 살펴보자. 『神器秘訣』(1603)에는 天字砲가 中鉛子 100個를, 地字砲가 小鉛子 30個를, 黃字砲가 小鉛子 20個를, 그리고 佛狼機가 每子砲當 中鉛子 2~3個를 장전 발사한다고 기록하였으나 『火器都監儀軌』(1614)에는 玄字砲가 鐵丸 100個를, 佛狼機 4號 子砲와 5號 子砲에 모두 鐵丸 1個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火砲式諺解』(1635)에서는 天字砲는 大將軍箭(56斤 3兩)을, 地字砲는 鳥卵丸 200個를, 玄字砲는 鐵丸 100個를, 黃字砲는 鐵丸 40個를, 別黃字砲는 鐵丸 40個를, 그리고 佛狼機는 1·2·3·4·5號 子砲 모두 鉛丸 1個씩만 장전하고 그 밖의 霹靂砲도 鐵丸 1個, 虎○砲는 鉛丸 70個 또는 鐵丸 40個를 장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戎垣必備』(1813)에 이르면 天字砲가 水鐵鉛衣丸을, 地字砲가 鳥卵丸 200個를, 玄字砲가 鐵丸 100個를, 黃字砲가 鐵丸 40個를 각각 장전 발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첫

재, 天字砲가 丙子胡亂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인가 水鐵鉛衣丸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둘째, 地·玄·黃·別黃字砲는 임진왜란 직후와는 달리 이후부터는 鐵丸數가 거의 2~3배로 늘어났다는 점이며 셋째는, 佛狼機의 경우 鉛丸數가 1個씩으로 고정되었다는 점이며 넷째는, 天·地·玄·黃·別黃字砲의 彈丸이 『火砲式諺解』에서는 鐵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어떠한 砲類의 彈丸은 『兵書』에 나타난 종류만으로는 水鐵鉛衣丸·鳥卵丸·中鉛子·鐵丸·鉛丸·小鉛子 등이 있었다. 우선 『邑誌』에서 砲類의 彈丸으로 쉽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만 간추려 보면 다음 <表 22>와 같다.

<表 22>

道 別 種 類	咸 鏡	平 安	全 羅	慶 尙	計
各 樣 砲 鐵 丸		481,060			481,060
大 砲 丸				4,211	4,211
地 字 水 鐵 丸				70	70
玄 字 水 鐵 丸				130	130
玄 黃 中 鐵 丸		624			624
黃 字 水 鐵 丸				320	320
正 鐵 別 黃 字 鉛 丸				3	3
鳥 卵 水 鐵 丸		14		500	514
鳩 卵 水 鐵 丸			5,100		5,100
鴨 卵 水 鐵 丸			30		30
佛 狼 機 水 鐵 丸				250	250
子 砲 鐵 丸		451			451
大 水 鐵 丸	50		50	250	350
次 大 水 鐵 丸				552	552
之 次 大 水 鐵 丸				1,433	1,433
大 丸			50		50

앞의 〈表 22〉에서 보면 砲丸의 종류와 명칭은 다양하다. 그러나 砲丸이라 총칭한 경우도 있지만 地·玄·黃·別黃字水鐵丸 또는 佛狼機子砲의 水鐵丸 등 砲의 명칭을 분명히 하였거나 鳥卵·鳩卵·鴨卵水鐵丸 또는 大·次大·之次大水鐵丸 및 大丸 등 탄환의 모양과 크기를 표시하여 砲類의 탄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이들 포탄은 佛狼機子砲의 탄환까지도 포함하여 주로 水鐵로써 만들어졌는데 〈表 22〉중의 砲彈數만도 495,148個에 달하였다. 그리고 『萬機要覽』에 의하면 摠戎廳 관하 北漢山城의 訓·御·禁·僧倉 소장 水鐵丸이 9,446個가 있었다.

銃類의 탄환으로도 鉛丸 또는 鐵丸이 사용되고 있었다. 鳥銃은 임진왜란 이후 줄곧 鉛丸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여타의 銃類는 鉛丸보다 鐵丸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 그것은 〈表 8〉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百字銃·勝字銃 및 字·宙·洪·荒·日·月·盈·昃字가 모두 『神器秘訣』(1603)에서는 小鉛子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火砲式譯解』(1635)에서 모두 鐵丸으로 바뀌었고 三眼銃과 快表도 『火器都監儀軌』(1614)에 鐵丸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邑誌』에 수록된 鉛丸은 다음 〈表 23〉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이 鳥銃의 鉛丸이었으며 일부만이 佛狼機의 字砲와 大·小鳥銃에 사용한 鉛丸인 것으로 보인다.

鳥銃의 鉛丸數는 26,712,640個에 달하고, 倭鳥銃의 鉛丸數 21,166個, 千步銃의 鉛丸數 1,000個는 모두 銃名이 밝혀진 것들이며 전체 鉛丸數의 99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大·次大·之次大·之之次大鉛丸과 中·之次中·之之次中鉛丸과 次中小·小中·之之次鉛丸 및 鉛丸으로 총칭된 것 등은 모두 합쳐 7,734個에 불과하며, 이것들은 佛狼機子砲나 虎○砲 및 〈表 22〉에서 볼 수 있는 각종 鳥銃의 탄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萬機要覽』에 의하면 訓練都監 1,809,792個, 御營廳 2,771,856個, 禁衛營 2,604個, 摠戎廳 442,116個, 龍虎營 3,600個, 北漢山城 1,335,216個, 臨津鎮 5,000個, 長山鎮 5,000個 등 도합 6,375,234個가 있었다.

다음 鐵丸의 경우는 그것을 사용한 砲類나 銃類를 일일이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 앞서 砲類의 탄환 문제를 언급할 때 지적하였듯이 砲名을 붙였거나 砲彈임을 알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은 쉽게 銃彈인지 砲彈인지를

〈表 23〉

道名 銃丸	咸 鏡	平 安	黃 海	京 畿	忠 清	全 羅	慶 尙	計
鳥銃鉛丸	10,239,898	1,735,379	865,406	14,070	287,142	3,056,449	10,514,296	26,712,640
倭鳥銃小鉛丸						266	20,900	21,166
千步銃鉛丸							1,000	1,000
鉛 大 丸						15		15
大 鉛 丸						163	420	583
次大鉛丸							249	249
之次大鉛丸							106	106
之之次大鉛丸							45	45
中 鉛 丸							176	176
之次中鉛丸							1,254	1,254
之之次中鉛丸							248	248
次中小鉛丸							18	18
小 中 鉛 丸							11	11
之之次鉛丸							29	29
鉛 丸						5,000		5,000

확인할 수 없다. 우선 砲類 중에서도 佛狼機의 子砲彈이 火器都監에서는 鐵로 제조하기도 하였지만 『火砲式諺解』에 鉛丸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고 虎○砲가 鉛丸과 鐵丸을, 그리고 佛狼機를 제외한 모든 砲類는 鐵丸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銃類들 중에서는 전술한 鳥銃과 千步銃 및 大·小鳥銃類 이외에는 모두 鐵丸을 사용하고 있었다. 『邑誌』에서 앞의 〈表 22〉에서 砲彈으로 명시한 것 이외의 鐵丸類를 모두 적기해 보면 다음 〈表 24〉와 같다.

〈表 24〉

道別 種類	咸 鏡	平 安	黃 海	京 畿	全 羅	慶 尙	計
大小各樣水鐵丸	72,314				5,300		77,614
百字水鐵丸						70	70
水鐵丸	52,465	6,180	74		184,538	92,697	335,954
次水鐵丸						1,434	1,434
之次水鐵丸						203	203
之之次水鐵丸						25	25
中鐵丸					145		145
中水鐵丸						1,087	1,087
次中水鐵丸						407	407
之次中水鐵丸						25	25
之之次中水鐵丸						169	169
小丸					880		880
小水銅鐵丸						210	210
小水鐵丸	1,865				1斗8升	35,144	3000斗8升
小小水鐵丸						827	827
水鐵鉛丸					7,737	1,000	8,737
水鉛丸					9,000		9,000
水鉛鐵丸		723					723
正鐵丸						10,634	10,634
鐵丸				300			300
銅鐵丸						274	274
正銅鐵丸						200	200
銅鐵鉛丸						1,000	1,000
鎗鐵丸						150	150
四錢水鐵丸	6,000						6,000
各字三梳丸		1,000					1,000

위 〈表 24〉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鐵丸의 제품 소재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水鐵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水鐵과 鉛鐵을 재료로 한 水鐵鉛丸이 있고 또 水鐵과 銅鐵을 자료로 한 水銅鐵丸이 있으며, 正鐵丸·銅鐵丸·鎗鐵丸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水鐵丸으로 명

기된 丸數가 460,824個이고 水鐵鉛丸類가 18,460個, 水銅鐵丸 210個, 正鐵丸 10,634個, 銅鐵丸이 1,474個, 鎗鐵丸이 150個이며, 鐵丸으로만 파악된 것이 鐵丸 300個, 中鐵丸 145個, 小丸 880個며 各字三梳丸 1,000個가 있다. 곧 水鐵丸이 460,824個인 데 비하여 여타의 것은 모두 합쳐 33,253個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소재로서 탄환을 제조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탄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나름대로의 개선과 개량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조선후기에 각종의 砲類와 銃類가 생산되고 鉛丸 또는 鐵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火藥의 생산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邑誌』에 의하면 함경도에 10,258斤, 평안도에 73,988斤, 황해도에 11,146斤, 경기도에 798斤, 충청도에 577斤, 전라도에 52,895斤, 경상도에 90,959斤 등 도합 240,621斤이 있었으며, 『萬機要覽』에 의하면 訓練都監 181,380斤, 御營廳 92,895斤, 禁衛營 99,054斤, 摠戎廳 14,449斤, 北漢山城 54,749斤, 臨津鎮 100斤, 長山鎮 100斤 등 도합 442,727斤에 달하였다.

5. 결 언

임진왜란시에 韓·明·日 三國은 戰用이 가능한 무기를 모두 동원하였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무기를 개량할 뿐 아니라 참전국의 우수한 무기를 모방, 제조하였다. 따라서 삼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 무기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개발하여 군사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시도하였다.

조선정부는 오랫동안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만한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초기에 개발한 무기체계를 크게 개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鳥銃과 같은 서구의 신제무기도 수용하지 못한 채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결국 조선정부는 전래의 열악한 무기체계와 군사편제로 일본군을 감내하지 못하고 明나라에 援軍을 청하여 국토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뒤늦게나마 정부는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래의 銃砲類와 槍

劍類 및 弓矢類를 제작, 사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서구로부터 수용한 銃砲類를 모방,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중 정부는 銃類로서 鳥銃과 더불어 前時期에 발명한 勝字銃과 새로 개발한 字·宙·玄·黃·日·月·盈·昃字銃을 사용하였고 明軍을 통해 전수한 三眼銃과 百字銃을 제조, 사용하였으며 砲類의 제작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陸戰에서 城을 공격 또는 방수하기 위하여, 海戰에서 賊船을 파괴하기 위하여 각종의 砲를 동원하고 있었다. 곧 조선전기에 개발한 天·地·玄·黃字砲와 大·中·小碗口, 蒺藜砲, 霹靂砲와 明軍을 통하여 전습한 佛狼機 등을 주로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중에 사용되었던 銃砲들은 조선후기에 걸쳐 계속 제작, 사용되었던 무기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鳥銃은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된 무기였다. 이들 銃砲類는 왜란과 호란 등 실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또는 평시의 훈련과 실험을 통하여, 명중률을 높이고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갔다. 따라서 天·地·玄·黃字砲나 大·中·小碗口類는 砲身이 굵거나 길어지고 중량이 증가되는 등 大型化하여 갔으며 銃類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鳥銃의 경우, 그것을 개조하여 중량과 사거리를 두 배 이상 확대한 千步銃이 생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반면에 小型의 銃砲類는 도태되어 갔다. 곧 조선후기 銃砲類의 발달은 이처럼 大型化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箭類를 사용하던 銃砲들이 丸類를 사용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丸類도 임진왜란 때는 鉛丸을 이용하였지만 점차 鐵丸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걸쳐 정부는 在來 또는 外來의 화약병기를 개량하고 또 많은 양을 중앙의 軍營과 지방의 각 營·邑·鎭에 비치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군사정책이 해이해져 지방의 정규군인 東伍軍은 유명무실해 갔고 중앙의 五軍營 軍士도 收布軍化하고 있었다. 따라서 開港을 전후한 시기에 외침을 당해서도 화약병기의 유무가 아닌 훈련된 군사가 없어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鎖國政策으로 서구의 신식무기들을 일찍이 수용하지 못한 것은 더욱 큰 과오였다.

朝鮮後期 訓練都監 運營의 社會經濟的 影響

金 鍾 洙

(群山大 教授)

1. 머리 말
2. 屯田의 설치와 확대
3. 軍需 鑛工業의 成長
4. 亂塵의 등장과 상업의 발달
5. 서울의 인구 증가와 사회질서의 동요
6. 맺 음 말

1. 머리 말

우리 역사에서 조선후기는 중세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농업·광공업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이 그 이전 중세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변동하면서 중세적 사회질서가 동요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발전에서 軍事 부문이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임진왜란 이후 등장한 조선후기 최대의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운

영은 사회·경제 각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¹⁾ 훈련도감은 군인 각자에게 식량과 무기, 軍裝, 馬匹 등을 부담시키는 조선전기의 병농일치적 군역제와는 달리 모든 군수물자를 확보하여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훈련도감은 군인들의 衣·食·住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으며, 이들에게 鳥銃, 火藥, 槍劍 등을 제작 공급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도감은 국왕의 적극적 지원과 정부기구, 군대조직을 총동원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이것은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조선후기 토지제도와 상업·광공업 부문, 서울의 인구 구성과 사회상 등의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전기 이래 전개된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훈련도감의 등장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켰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농업, 광공업, 상업, 사회 등 각 부문에 훈련도감이 끼친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屯田의 설치와 확대

훈련도감의 설립·운영은 우선 조선후기 둔전의 설치와 확대를 가져왔다.²⁾ 조선초기 科田法에서는 公廩田이라는 명목하에 중앙 각 관청들이 각자의

1) 訓練都監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車文燮, 1970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

拙稿, 1994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 2호.

_____, 1996 「朝鮮後期 訓練都監의 設立과 運營」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조선후기 屯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朴時亨, 1961 「朝鮮土地制度史 中」; 1994 도서출판 신서원 재편집.

鄭昌烈, 1970 「朝鮮後期の 屯田에 대하여」 『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李景植, 1973 「17世紀 農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 『韓國史研究』 9.

_____, 1987 「17世紀 土地折受制와 職田復舊論」 『東方學志』 54·55·56 合輯.

朴準成, 1984 「17·8世紀 官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의 變化」 『韓國史論』 11.

李榮薰, 1988 「官房田과 衙門屯田의 展開過程과 所有構造」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收租地를 가지고 있었으나, 세종 27년(1445) 전세 개정시 국가재정의 일원화에 따라 이것들은 모두 國用田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중앙 관청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수세체계로부터 독립한 자신의 소유지와 免稅地, 즉 둔전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둔전의 설치는 훈련도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³⁾

임란 이듬해인 선조 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부 내에서 둔전 설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⁴⁾ 그해 10월 급료병으로 구성된 새로운 군대인 훈련도감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군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국왕과 정부 관료들은 둔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⁵⁾ 전란으로 인해 官·民 모두 피폐해진 상태에서 둔전 설치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선조 27년(1594) 봄부터 시작된 훈련도감의 둔전 개간은 팔복할 만한 것이었다. 훈련도감은 국왕의 親兵이라는 정치적 지위와 군대 조직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둔전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둔전 설치 지역으로서는 경작자가 있고 소유권자가 있는 有主의 田地, 國家收稅處는 제외되어야 했다. 民의 私的 所有權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태여 有主의 田地에 둔전을 설정하여 분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다. 戰亂으로 인해 개간이 가능한 無主 空閑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 훈련도감은 이러한 無主地 중 土質이 우수한 곳을 折受받을 수 있었다.⁷⁾

3) 朴時亨, 1961 앞의 책 : 1994 도서출판 신서원 재편집본 p. 236.

4) 『宣祖實錄』 권44, 선조 26년 11월 丁巳, 22책 p. 120.

5) 『宣祖實錄』 권46, 선조 26년 12월 壬子, 甲子, 己丑, 22책 pp. 177~187.

6) 『宣祖實錄』 권46, 선조 26년 12월 丙寅, 22책 p. 188.

7)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3월 己卯, 22책 p. 231 ; 권55, 선조 27년 9월 丁酉, 22책 p. 353 ; 권60, 선조 28년 2월 甲辰, 22책 p. 429.

한편, 훈련도감은 둔전 개간에 필요한 식량과 種子, 耕牛와 농기구 등도 조직적으로 확보하였다. 募粟을 통해 둔전 개간에 필요한 식량과 種子를 마련하였고,⁸⁾ 공명첩을 발급하면서 耕牛를 확보하였다.⁹⁾ 또 훈련도감은 자체적으로 무기 제조장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각종 철제 농기구를 마련하는 데도 유리하였다. 특히 훈련도감은 耕牛 확보를 위해 공명첩의 발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선조 29년 11월에는 목화 1,000여 근과 소금 200~300石을 가지고 당시 穀價가 싼 전라도에서 미곡을 구입하여, 흉년으로 곡식이 비싼 제주도에 가서 소를 구입하기도 하였다.¹⁰⁾ 이때 훈련도감은 耕牛를 확보하기 위해 抑賣도 불사하였다. 제주도로 差官을 보내 한 마리당 3升布 1필을 지급하면서 소를 강제로 빼앗아오다시피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耕牛를 확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¹¹⁾

이 당시 훈련도감이 둔전 개간에 투입한 노동력은 도감군과 農軍, 募民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도감군들을 둔전 개간에 동원하였다. 선조 27년 11월 훈련도감은 포수 7哨 중 2哨의 군인들이 東·西郊의 屯田에 동원되어 도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5哨라고 말하고 있고,¹²⁾ 또 왜란이 거의 끝나가던 선조 31년(1598) 7월 유성룡은 '砲·殺·射手 2,000여 명이 둔전에 分送되어 京中에 남아 있는 군인은 거의 없다'라고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다.¹³⁾ 이들은 훈련도감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비병이었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둔전 개간에 임하였다.

다음으로 農軍을 조직하여 둔전 개간을 추진하였다. 이 당시에는 전쟁 이재민이 대량 발생하였으므로 훈련도감에서는 이들을 모집하여 품삯을 지급하고 種子, 耕牛, 농기구 등을 제공하면서 둔전을 개간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종결될 무렵에 이르면 농군에 의한 둔전 개간 형

8) 『宣祖實錄』 권60, 선조 28년 2월 甲辰, 22책 p. 429.

9) 『宣祖實錄』 권53, 선조 27년 7월 甲申, 22책 p. 308.

10)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 11월 乙未, 23책 p. 92.

11) 『宣祖實錄』 권80, 선조 29년 9월 丁巳, 23책 p. 78.

12) 『宣祖實錄』 권57, 선조 27년 11월 癸巳, 22책 p. 403.

13) 『宣祖實錄』 권102, 선조 31년 7월 壬寅, 23책 p. 471.

식은 감소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전쟁의 종결에 따른 歸農 인구의 증가에 따라 ‘募民竝作’이 가능한 터에 정부에서 구태여 매달 품삯을 지급해야 하는 농군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民을 모집하여 토지를 지급하면서 屯田을 개간하도록 하는 ‘募民竝作’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형식과는 달리 ‘給民耕作하여 計數收入’¹⁵⁾하는 형식으로 屯田의 개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임란 당시에는 농민을 모집하여 병작반수로 屯田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공 이외에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였다. 사람들이 戰歿流散하여 버려진 토지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제공하고 竝作半收한다면 농민이 모일 리가 없었다. 이에 훈련도감은 免役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¹⁶⁾ 이것은 전란 중 각종 役 부담에 고통을 받던 無田 농민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이후 이것은 훈련도감 屯田 경영의 대표적인 형태로 되었다.

이상과 같이 훈련도감은 전서 중 각처의 無主地를 折受받아 農糧과 耕牛, 농기구 등을 마련하여 도감군, 농군, 募民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屯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수확된 농산물은 훈련도감에서 자체적으로 建造한 선박으로 운송하고,¹⁷⁾ 匠人들의 급료도 지급하였다.¹⁸⁾ 선조 26년 10~12월에 전개된 정부 내의 屯田 설치론이 논란만 무성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나 버리고 만 것과는 달리 훈련도감은 군대 조직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屯田 개발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屯田 경영은 위와 같은 형태로만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屯田을 빙자한 변칙적인 형태들이 출현하였다. 즉 無主 閑曠地를 募民耕種하는 정상적인 屯田 경영 형태가 아니라, 면세 면역의 특혜를 빌미로 하여 일반 농민들의 既墾田畓이나 소유

14) 『宣祖實錄』 권108, 선조 32년 정월 戊戌, 23책 p. 569.

15)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3월 己卯, 22책 p. 231.

16) 『宣祖實錄』 권69, 선조 28년 11월 壬申, 22책 p. 592.

17) 『宣祖實錄』 권103, 선조 32년 5월 己巳, 23책 p. 623.

18) 『宣祖實錄』 권108, 선조 32년 정월 戊戌, 23책 p. 560.

지를 浸食하고, 또 농민들 스스로 자기 소유지를 둔전에 投入 投屬하는 投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¹⁹⁾ 이러한 형태에서는 훈련도감에서 병작반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면세 면역의 대가를 받아내는, 즉 단순히 收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民田收稅’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둔전 경영에서의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었고, 또 토지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훈련도감은 군사기관이지만 둔전 경영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시켜 나갔다. 그런데 이 당시 문반 관료들은 이러한 훈련도감의 둔전 경영에 대해 차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民田의 冒占이나 投托 등 변칙적인 둔전 경영이 점증하고 있었고, 더구나 훈련도감의 둔전 경영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오며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²⁰⁾ 따라서 정부 관료들 내에서는 훈련도감 둔전을 혁파하고 이것을 호조로 귀속시키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둔전 설치안이 논의될 당시 이들은 호조 주도하의 둔전 경영을 想定하였지, 이와 같이 호조와는 별도로 훈련도감에 의해 둔전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문반 관료들의 집요한 요구 속에서 결국 훈련도감의 둔전은 宣祖末에 호조 산하의 훈련도감 군수조달 기관인 糧餉廳으로 귀속하게 되었다. 이때 양향청이 접수한 훈련도감 둔전의 총계는 4,496結 30負 7束에 달하였다.²¹⁾

그런데 비록 양향청이 훈련도감의 군수조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양향청은 호조판서가 그 提調를 例兼하는 기관으로서 훈련도감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²²⁾ 훈련도감과 양향청은 심지어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까지 인식되었다.²³⁾ 이에 훈련도감이 양향청으로 둔전을 모두 넘겨 준 이

19)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丙寅, 24책 p. 103.

20) 조선후기 문반 관료들은 ‘都監旣領兵馬 而又管錢穀 則不無權力太重之慮 分其兵糧 (『正祖實錄』 권7, 정조 3년 3월 庚戌, 45책 p. 104)’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 『萬機要覽』 財用編 4, 糧餉廳 屯土.

22) 『訓局事例撮要』 下卷, 糧餉廳(영조 11년 5월 초2일).

23) 『英祖實錄』 권35, 영조 9년 9월 癸未, 42책 p. 377. ‘糧餉廳與訓局有異’.

후 받은 경제적 타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李恒福은 ‘훈련도감은 둔전 혁파 이후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활자를 제작하고 책을 出刊하여 경비로 삼았다’라 할 정도였다.²⁴⁾

둔전 혁파 이후 재정 궁핍으로 곤란을 겪던 훈련도감은 곧 양향청과는 별도의 둔전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광해군 즉위년(1608) 9월 사헌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養兵하는 곳은 단지 訓練都監뿐인데 훈련도감의 둔전이 양향청으로 귀속된 이후 훈련도감의 제반 시설과 기구들이 점차 해이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사헌부는 반역으로 인해 몰수된 田畝이나 堤堰, 魚筋, 鹽盆 등을 모두 훈련도감에 지급하여 군수에 보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²⁵⁾ 이로써 훈련도감은 다시 둔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훈련도감의 둔전은 인조대에 들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갔다. 인조반정 이후 인조 정권은 광해군대에 설치된 말썽 많은 둔전들은 모두 혁파한다고 했으나 그 후 둔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²⁶⁾ 이것은 인조대의 끊임없는 국내외 정치적 위기 속에서 훈련도감의 정비 강화에 소홀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였다. 『萬機要覽』에 기록된 훈련도감의 諸鎮 諸屯 중 龍津陣(경기도 광주), 仙源庫(강화도), 加羅洞屯(春川), 甘勿岳屯(洪川), 水邊山屯(楊根) 등이 인조대에 설치된 것이다.²⁷⁾

인조대에는 훈련도감 둔전과 아울러 宮家와 여타 營衛門 둔전도 함께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상응하여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宮房田과 營衛門 둔전을 혁파하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²⁸⁾ 이것들은 국가세입의 감소, 民田冒占 등 허다한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둔전 중 특히 훈련도감 둔전에 의해 나타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4) 李恒福, 『白沙集』 권2, 跋「訓練都監印韓昌黎集跋」(한국문집총간 62책 p. 196).

25) 『光海君日記』 권8, 광해군 즉위년 9월 丙午, 31책 p. 356.

26)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10월 戊申, 35책 p. 247.

27) 『萬機要覽』 軍政編 2, 訓練都監 諸鎮 諸屯.

28) 이 시기 둔전 혁파론에 대해서는 李景植, 1987 앞의 글이 자세하다.

훈련도감은 국왕의 親兵, 중앙 최대의 군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민전을 빼앗고 지방관을 협박하는 등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²⁹⁾

그러나 仁祖는 관료들의 훈련도감 둔전 혁파 요구에 대하여, ‘둔전은 군수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혁파하자는 것은 遠慮가 아니다’³⁰⁾라거나, 도감 둔전만은 절대 혁파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³¹⁾ 이러한 국왕의 의지에 의해 훈련도감 둔전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다. 仁祖에 이어 孝宗 역시 둔전의 혁파론에 대하여 비록 훈련도감 둔전에 의해 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군수의 조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³²⁾ 효종대는 북벌론이 전개된 시기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훈련도감 둔전의 혁파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될 수 없었다.

훈련도감 둔전을 혁파하라는 주장은 顯宗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는 효종대의 군비 강화를 반성하는 시기로서 훈련도감의 縮小 變通論도 함께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현종 원년(1660) 8월 弘文館 관료들은 훈련도감 등의 군문둔전을 혁파하여 호조로 귀속시키자고 주장하였고,³³⁾ 현종 5년 11월 부제학 李慶億은 각 아문둔전은 ‘百年痼弊’라고 주장하면서 그 變通을 요구하였다.³⁴⁾ 특히 이경억은 아문둔전 중 훈련도감의 둔전이 最多라고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변통을 집중 요구하였다.³⁵⁾ 정부관료들의 이러한 요구 속에서 결국 훈련도감 내 군수부서의 하나인 火藥色 둔전의 혁파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³⁶⁾

그러나 이러한 火藥色 둔전 혁파 조치도 그 이듬해 정월에 가면 수정되어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즉 현종 8년 정월 호조판서 金壽興은 훈련도

29) 『承政院日記』 27, 인조 7년 7월 12일, 2책 p. 234.

30) 『承政院日記』 56, 인조 15년 3월 26일, 3책 p. 631.

31)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10월 戊申, 35책 p. 247.

32)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3월 甲申, 35책 p. 537.

33) 『顯宗改修實錄』 권4, 현종 원년 8월 丙戌, 37책 p. 189.

34) 『顯宗改修實錄』 권12, 현종 5년 11월 庚寅, 37책 p. 411.

35) 『顯宗實錄』 권9, 현종 5년 11월 丙午, 36책 p. 440.

36) 『顯宗實錄』 권13, 현종 8년 정월 己卯, 36책 p. 536.

감 둔전 내에 有主 民田이 混入된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나머지는 훈련도감의 소유권하에 양향청은 단지 收稅 등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자고 건의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³⁷⁾ 이로써 훈련도감은 둔전 관리만을 양향청으로 넘겨 준 채 둔전 소유권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훈련도감이 다시 둔전을 관리하려는 의도는 곧바로 표명되었다. 훈련도감 소유의 둔전을 양향청에서 관리하자 둔전 경영이 不實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현종 10년 7월 훈련대장 유혁연은 훈련도감에서 이전처럼 別將을 파견하여 둔전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호조판서 金佐明 역시 田結 最多處에 한하여 이전처럼 별장을 파견하도록 하자고 동의하여 결국 다시 둔전에 별장이 파견되었다.³⁸⁾ 이것은 현종대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시도도 해 보았던 둔전 혁파 조치가 완전히 무효가 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였다.

숙종대 이후에도 둔전혁파론이 제기되고는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이것에 비해 보다 현실성을 갖춘 둔전 운영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숙종대 둔전 운영 개선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둔전의 免稅結數에 일정한 제한을 두자는 제안³⁹⁾과 지방관이 屯稅를 수취하여 군문에게 납부하자는 방안⁴⁰⁾이 제기된 것이다. 전자는 民田의 冒入 投托과 둔전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였고, 후자는 監官·別將·屯監 등으로 칭해지는 군문에서 파견한 둔전 관리자들의 武斷과 횡포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둔전 운영 개선안은 정부 내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면서 肅宗代를 거쳐 英祖代에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후자의 개선안은 景宗 3년(1723) 감관·별장·둔감 등의 파견이 폐지되고 둔세의 수취는 지방관의 책임으로 하는 조치로써 실현되었다.⁴¹⁾ 그리고 전자의 개선안은 영조 5년 12월에 제정된 「諸衙門田畝出免稅別單」⁴²⁾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국가와 民 모두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던 軍門 屯田

37) 『顯宗改修實錄』 권16, 현종 8년 정월 己卯, 37책 p. 536.

38) 『顯宗改修實錄』 권21, 현종 10년 7월 甲寅, 37책 p. 678.

39)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4월 丁未, 38책 p. 353.

40)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4월 庚子, 39책 p. 64.

41) 『增補文獻備考』 권145, 田賦考 5 屯田, 中책 p. 673.

42) 『備邊司謄錄』 86, 영조 5년 12월 13일, 8책 p. 777.

의 무절제한 확대는 차츰 시정되고, 그 운영 역시 정비되어 갔다.

위와 같은 훈련도감 둔전의 설치와 확대는 여타 宮房이나 衙門 屯田의 선례가 되었고, 조선후기 둔전의 확대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3. 軍需 鑛工業의 成長

훈련도감은 조선후기 軍需鑛工業의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훈련도감의 설립은 鳥銃을 主武器로 사용하는 포수의 양성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전기의 主武器였던 弓矢를 대신하여 조총을 주무기로 하는 훈련도감의 설립은 조총과 火藥, 彈丸의 생산을 위한 군수광공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것은 비단 이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⁴³⁾

鳥銃의 등장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총은 ‘날으는 새도 맞출 수 있어 鳥銃이라고 한다.’⁴⁴⁾라고 하는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명중률이 대단히 높은 무기였다. 또한 조총은 종래 조선의 銃砲와 같이 손으로 藥線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하는 것으로 명중률뿐만 아니라 발사 속도에 있어서도 종래 조선의 총포에 비해 2~3배나 빠른 우수한 무기였다.⁴⁵⁾ 또 射程 거리도 멀었고, 소리도 위력적이었으며,⁴⁶⁾ 사용법도 간단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조총은 종래의 무기에 비해

43) 조선후기 군수광공업의 발전은 柳承宙 교수의 아래 논문 참조.

柳承宙, 1969. 7 『朝鮮後期 軍需鑛工業의 發展—鳥銃問題를 中心으로—』 『史學志』 3.
 _____, 1969. 10 『朝鮮後期 硫黃鑛業에 관한 研究—특히 17·18世紀 軍衙門의 設店收稅店을 中心으로—』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_____, 1981 『朝鮮後期 軍需工業에 관한 一研究』 『軍史』 3.
 _____, 1993 『朝鮮後期鑛業史研究』 고대출판부.

44) 『宣祖實錄』 권71, 선조 29년 정월 丁酉, 22책 p. 643. ‘能中飛鳥 故曰鳥銃’.

45) 『星湖僿說』 권4, 萬物門, 陸若漢. ‘鳥銃不用火繩 而石火自發 其放丸 比我國二放之間 可放四五丸’.

46) 『仁祖實錄』 권16, 인조 5년 5월 丙寅, 34책 p. 198.

47) 『承政院日記』 109, 효종 즉위년 11월 13일, 6책 p. 199. ‘鳥銃易於習熟 鄭經世, 『愚伏集』 권5, 玉堂論時務劄. ‘砲非難習之技 人人可學’.

월등히 우수한 무기였다.

조충의 등장은 弓矢 위주의 조선전기 무기·군사체제에 대한 일대 전환을 요구하였다. 비록 조선전기에도 개인용 小火器인 勝字銃筒 등이 개발되어 실전에도 사용되었으나 壬亂前까지는 여전히 弓矢 위주의 무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이 조선전기 군인의 典型이었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군사였던 甲士는 바로 이러한 무사를 試取하여 편성한 군대였다.⁴⁸⁾ 그러나 弓矢는 상당한 筋力과 고도의 熟練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여야 했다.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궁시 연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했다. 또한 무사는 弓矢를 비롯하여 말과 鞍裝, 갑옷 그리고 從者까지 보유해야 했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무사를 甲士로 흡수하여, 軍職을 수여하고 科田과 祿俸을 지급하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는 군사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충의 등장은 이러한 무사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조충은 弓矢보다 5배나 성능이 뛰어났다.⁴⁹⁾ 비싼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들도 鳥銃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죽어 간 것이 임진왜란 戰場에서의 모습이었다. 아무리 筋力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조충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鳥銃出而 項羽無以容其力’⁵⁰⁾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한편 조충의 등장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豪快한 武士의 모습에서 隊伍를 갖춘 步兵들이 조충을 쏘는 모습으로 軍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전투 형태도 개인의 무예가 중시되던 것에서 이제는 조직적인 집단의 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충의 등장은 군사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부문에 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충은 弓

48) 甲士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車文燮, 1959·1960 「鮮初의 甲士에 對하여」 『史叢』 4·5.

拙稿, 1992 「16세기 甲士의 消滅과 正兵立役의 變化」 『國史館論叢』 32.

49) 『宣祖實錄』 권68, 선조 28년 10월 丁未, 22책 p. 575. 「鳥銃五倍于弓矢」.

50) 『英祖實錄』 권47, 영조 14년 8월 乙丑, 42책 p. 602.

矢와 같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무기였다. 또 조총은 역시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火藥과 鉛丸을 필요로 하였다. 훈련도감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分業과 協業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屯田, 柴場을 설치하였으며, 鐵鑛, 硫黃鑛, 鉛鑛 등의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 발발 즉시 明과 왜군으로부터 조총에 관한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여, 그 제조 및 사용법을 傳習하게 된 것은 임란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2월이었다.⁵¹⁾ 그리고 조총의 발사에 필요한 화약 제조술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여,⁵²⁾ 그 다음달인 3월에는 화약 제조술까지 입수할 수 있었다.⁵³⁾ 그 후 선조 26년 6월 선조는 各道에 都會를 설치하여 화약을 제조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비변사 역시 各道の 監司·兵使·水使의 책임하에 本營에는 都會를 설치하고, 또 道內의 大處에는 都護를 설치하여 각종 화포 등 무기 생산 체제를 갖추게 하겠다고 보고하였다.⁵⁴⁾ 그러나 이것들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조총과 화약의 제작 방법을 알아내었다 하더라도 생산체제를 갖추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총과 화약의 생산은 훈련도감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훈련도감이 설립되자 도감 내에 조총과 화약 제조를 담당하는 部署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생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즉 軍需部署로 鳥銃色과 火藥色을 설치하고 종6품 郎廳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선조 27년 2월에는 항복한 왜군을 여기에 入屬시키고 급료를 지급하면서 조총과 화약의 제작방법을 전수하게 하였다.⁵⁵⁾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선조 27년 3월경에는 훈련도감의 조총과 화약의 생산체제가 갖추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⁶⁾

51) 『宣祖實錄』 권35, 선조 26년 2월 乙未, 21책 p. 628.

52) 『宣祖實錄』 권36, 선조 26년 3월 丙寅, 21책 p. 661.

53) 『宣祖實錄』 권36, 선조 26년 3월 壬午, 21책 p. 675.

54)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壬子, 22책 p. 21.

55)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2월 戊寅, 22책 p. 231 ; 3월 己亥, 22책 p. 240.

56) 『宣祖實錄』 권49, 선조 27년 3월 己卯, 22책 p. 231.

훈련도감은 이후에도 계속 조총과 화약 제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조 28년 6월 훈련도감은 海土를 이용한 焰硝 煮取術을 개발한 林夢에 대해 賞典을 베풀 것을 요구하자, 국왕은 파격적으로 東班 6품 實職에 제수하기도 하였다.⁵⁷⁾ 이러한 훈련도감의 기술개발 의지와 기술자 우대 조치는 수많은 匠人들을 훈련도감으로 모이게 하였다. 또 훈련도감은 부역에 시달리던 匠人들을 招致하여 급료를 주면서 우대하여 신무기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훈련도감은 국내 최고의 무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임란중 조총 생산을 개시한 지 30년이 지난 인조 3년(1625)에 이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조총이 일본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자신감까지 표명되게 된다.⁵⁸⁾

임진왜란이 종식된 이후에도 무기 생산에 대한 조선 정부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왜란이 비록 끝나기는 하였지만 倭賊이 再復할 우려가 있었고, 만주에서 흥기한 후금(청)의 세력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胡亂 이후 北伐政策의 추진 속에서 軍備 增強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무기 생산에 진력하였고, 특히 훈련도감과 軍器寺를 중심으로 무기의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⁵⁹⁾ 그런데 軍器寺는 조선초기부터 무기 제조 업무를 담당한 官署였지만,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무기를 비축·보관하는 업무와 매년 정기적으로 왕실과 淸에 封進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한산한 관서로 전락하고 있었다.⁶⁰⁾ 따라서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관임과 동시에 최대의 무기 생산처였다.

조선후기를 통해 신무기 개발은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인조 6년(1628)에 湖南지방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인 벨테브레(Weltevree : 후에 朴延으로 改名)나, 효종 4년(1653) 제주도에 漂着한 네덜란

57) 『宣祖實錄』 권64, 선조 28년 6월 丁巳, 22책 p. 518.

58) 『承政院日記』 251, 숙종 2년 2월 20일, 13책 p. 309.

59) 『仁祖實錄』 권6, 인조 2년 5월 辛巳, 33책 p. 621 ; 권25, 인조 9년 8월 甲辰, 34책 p. 439.

60) 柳承宙, 1993 앞의 책 p. 198.

드인 하멜(Hamel) 일행을 서울로 압송하여 훈련도감에 입속시킨 후 신무기 기술을 전수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⁶¹⁾ 이에 벨테브레는 훈련대장 具仁屋의 휘하에서 화포 제작에 참여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훈련도감 軍籍에 편입되었으며,⁶²⁾ 하멜은 도감군과 같은 給料과 保布를 지급받으면서 新制 鳥銃의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⁶³⁾ 이러한 훈련도감의 신무기 개발 노력에 의해, 숙종 5년(1679)에는 훈련도감에서 50개의 조총이 일제히 발사되는 火車를 개발하여 국왕 앞에서 발사 시범을 보였다.⁶⁴⁾ 또 영조 7년(1731)에 훈련도감은 사정거리가 10여 리에 이르는 紅夷砲를 개발하였다고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⁶⁵⁾ 이와 같이 훈련도감은 조선후기 신무기 개발의 중심 기관이었다.

훈련도감의 무기 생산은 鳥銃色, 弓箭色, 火藥色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는데, 조총의 생산을 살펴보면, 17세기 이후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훈련도감의 조총 생산량은 계속 증가되어 갔다. 인조 5년(1627)에는 年間 조총 생산량이 1,000柄이었는데,⁶⁶⁾ 10년 후인 인조 14년에는 그 두 배인 2,000柄 이상이 생산되고 있었다.⁶⁷⁾ 이와 같이 조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조총 가격도引下되어갔다. 광해군 무렵 조총 1柄의 가격이 15疋이었는데, 인조 3년에는 10疋,⁶⁸⁾ 인조 27년에는 8疋로 인하되고 있었다.⁶⁹⁾ 훈련도감이 이렇게 조총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기 제작기술의 발

61) 벨테브레나 하멜에 대해서는 G. Ledyard編, 1975 『하멜漂流記』 三中堂文庫 참조.

62) 『碩齋稿』 권9 海東外史; 래드야드編, 앞의 책 p. 60 개인용.

朴延者 阿蘭陀人也 崇禎元年 漂流至湖南 朝廷隸訓局……大將具仁屋麾下 其子孫遂編訓局之軍籍……阿蘭陀 一名荷蘭 一名紅夷……朴延爲國其效能 遂傳紅夷砲之制.

63) 『備邊司謄錄』 17, 효종 5년 5월 13일, 2책 p. 421~422.

『孝宗實錄』 권17, 효종 7년 7월 甲子, 36책 p. 61.

造新制鳥銃 先是蠻人之漂到也 得其鳥銃 其制甚巧 命訓局倣而造之.

64)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9월 癸卯, 38책 p. 422.

65) 『英祖實錄』 권30, 영조 7년 9월 辛巳, 42책 p. 279.

66) 『承政院日記』 17, 인조 5년 5월 12일, 1책 p. 830.

67) 『承政院日記』 53, 인조 14년 8월 14일, 3책 p. 425.

68) 『承政院日記』 10, 인조 3년 11월 10일, 1책 p. 449.

69) 『承政院日記』 105, 인조 27년 3월 20일, 5책 p. 973.

전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확장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조총색의 전체 생산시설 규모를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조 13년에는 2개의 가마(爐)를 加設하고⁷⁰⁾ 인조 16년에는 3~4개의 가마를 增設할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들어가고 있었다.⁷¹⁾ 물론 위에서 언급한 조총 가격의 인하는 훈련도감의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 조총 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른 軍門이나 민간제업자들이 출현하여 조총 생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⁷²⁾

조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의 제작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여러 부류가 있었다. 우선 무기제조 전문가인 匠人이 있었고, 도감군도 동원되었으며, 兵曹 上番軍, 각종 役軍 등도 사역되었다. 우선 훈련도감의 무기제조는 전문적인 匠人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훈련도감의 鳥銃·弓箭·火藥色에 종사하는 匠人은 인조 19년(1641) 현재 14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⁷³⁾ 이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분업적인 무기제조 공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훈련도감으로부터 매월 12斗의 급료와 朔布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였다.⁷⁴⁾ 당시 장인들은 官廳 匠籍에 등록되어 관청에 賦役 동원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身役價로서 價布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훈련도감에 입속하면 이러한 관청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훈련도감 장인들은 부역이나 신역 가포를 면제받고 급료와 朔布를 지급받으면 수공업 제작에 임하였던 것이다. 이에 당시 장인들은 훈련도감에 다투어 입속하였다. 현종 2년(1661) 工曹에서는 水鐵匠籍에 등록된 인원이 모두 30인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훈련도감으로 들어가서 공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변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⁵⁾ 이처럼 훈련도감은 公·私 장인들을 흡수하면서 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었다.

70) 『承政院日記』 47, 인조 13년 4월 22일, 3책 p. 127. ‘都監 加設二爐’.

71) 『承政院日記』 64, 인조 16년 5월 2일, 4책 p. 52.

72) 17세기 이후 민간 조총제조업자의 출현에 대해서는 柳承宙, 1969. 7. 앞의 글 참조.

73) 『備邊司謄錄』 6, 인조 19년 5월 2일, 1책 p. 462.

74) 훈련도감에서는 匠人들에게 給料과 朔布뿐만 아니라 鹽·醬·乾魚까지 지급하였다. (『仁祖實錄』 권23, 인조 8년 7월 庚辰, 35책 p. 387)

75) 『承政院日記』 167, 현종 2년 4월 5일, 9책 p. 238.

다음으로 훈련도감의 무기제조에는 도감군도 동원되었다. 鳥銃·弓箭·화약 등 무기제조는 많은 분업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40여 명의 匠人으로만 충당할 수 없어서 이들이 다수 제조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효종 즉위년(1649)에 훈련도감은 무기제작에 도감군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⁶⁾ 한편 훈련도감에서는 도감 아동군을 무기제조장에 들여보내 匠人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처하는 등 자체 내에서 장인을 양성하려고 노력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무기제조장에서 수공업 기술을 익힌 도감군들은 '間閭 工匠'과 같이 개별적으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도 있었다.⁷⁸⁾

장인과 도감군 이외에 훈련도감 무기제조장에서의 잡다한 일 등은 兵曹 上番軍과 役軍들이 동원되어 맡아 보았다. 병조 소관의 보병은 16개월 당 2필의 軍役稅를 납부하였고, 기병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8番 2朔의 상번 근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때 상번군은 주로 각처의 使喚 役軍으로 불려 다니고 있었다. 숙종 8년(1682) 병조판서 南九萬이 '上番騎兵은 본래 宿衛之軍이었는데 오늘날을 使役之卒로 변하여 각처에 使喚으로 派定되고 있다'⁷⁹⁾라고 한 말은 이러한 실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인조 25년(1647) 前僉使 池遇龍도 그의 상소문 속에서 병조의 상번군들이 훈련도감 설립 이후 守直處에 分派되고 役處에 奔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받는 이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말하고 있다.⁸⁰⁾

훈련도감의 군수 생산에서 火藥 역시 중요한 품목이었다.⁸¹⁾ 도감군들은 항상 50개의 鉛丸과 이에 필요한 화약을 지참하고 入番 근무를 하여야 했고,⁸²⁾ 도감군의 훈련시에도 많은 화약이 소모되었다. 이러한 화약을 공급하

76) 『承政院日記』 106, 효종 즉위년 6월 23일, 6책 p. 29.

77)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勿爲出使條(孝廟朝 3년 3월 16일).

78) 『仁祖實錄』 권25, 인조 9년 7월 庚申, 34책 p. 436.

79) 『備邊司謄錄』 36, 숙종 8년 11월 25일, 3책 p. 578.

80) 『承政院日記』 97, 인조 25년 6월 4일, 5책 p. 637.

81) 훈련도감의 화약 생산 실태에 대해서는 柳承宙, 1981 앞의 논문. 참조.

82) 『承政院日記』 57, 인조 15년 4월 16일, 3책 p. 667.

기 위해 훈련도감은 火藥色을 설치하여 화약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화약은 焰硝와 柳灰 및 硫黃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는데 배합 비율은 焰硝 16兩, 柳灰 3兩, 硫黃 1兩 4錢이었다.⁸³⁾ 훈련도감은 각처에서 이러한 원료들을 확보한 후, 光熙門(南小門, 속칭 水口門이라 함.) 근처에 위치한 下都監에 부속된 화약색 건물 내에서 이를 배합하여 화약을 생산하였다.

이상과 같이 훈련도감은 屯田, 柴場 등을 통해 군수 재원을 확보한 후, 조총, 화약 제조장을 설치·운영하여 각 군인들에게 軍需를 보급하였다. 이러한 훈련도감의 운영 방식은 조선후기 군수 광공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지만, 또한 국가 재정과 민생에 막대한 부담으로도 작용하였다.

4. 亂塵의 등장과 상업의 발달

훈련도감의 성립은 조선후기 亂塵의 등장과 상업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에 常住하는 도감군과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급료와 保布를 받지 못하자, 亂塵을 개설하여 상업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서울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감군은 주로 貧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⁸⁴⁾ 따라서 이들의 군역 복무실태는 조선전기와 같지 않았다. 甲士와 正兵으로 대표되는 조선전기의 중앙군들은 대체로 지방에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甲士層은 지방의 부유한 경제력을 지닌 자들로서 이들은 당번이 되면 騎馬와 卜馬 그리고 從者를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와 군역 근무에 임했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들은 지방에서 米布를 가져와 서울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의 군역 근무만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훈련도감 군인들은 이와 달랐다. 이들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常住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保布가 서울 생활에 충분하지 않자

83) 『新傳煮硝方』得硝法始末; 柳承宙, 1993 앞의 책 p. 180.

84) 拙稿, 1994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 2호 pp. 172~178. 참조.

이들은 군역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훈련도감의 설립 직후부터 전개된 상황으로 보인다.⁸⁵⁾

그런데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明兵이 철수 준비를 하자 宣祖는 수도경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훈련도감의 제도 정비와 아울러 屯田으로써 도감군의 생계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⁶⁾ 그러나 둔전을 통한 養兵의 계획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사회에 많은 폐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도감군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외에 각종 漁場, 鹽田을 통해 養兵의 재원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이것 역시 훈련도감의 운영 경비에 겨우 충당될 뿐이었다.

그래서 선조 35(1602)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1결당 1두씩을 걷는 三手米稅를 창설하여 도감군의 급료를 지급하였다.⁸⁷⁾ 이로써 금군 도감군은 1개월에 12두, 한량 도감군은 1개월에 6두(후에 9두로 인상됨)씩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급료 지급과 더불어 정부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給保도 추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선조 34년 2월 도감군 1인당 3명의 보인을 확보하게 하여 도감군은 1년에 9필의 면포를 지급받았다. 즉 도감군은 1개월에 米 12~6두, 1년에 면포 9필을 지급받고 서울에 상주하면서 군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給料과 保布로도 도감군의 생활에는 부족하였다.⁸⁸⁾ 이에 더 이상의 재정지출을 할 수 없었던 국가로서는 도감군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생계가 일단 보장되어야 국가에서도 군역 업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는 도감군에게는 市役을 專減한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선조 33년(1600)에는 도감군이 아닌 자들이 도감군이라 칭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容貌疤痕記를 적은 市牌를 지급하였다.⁸⁹⁾

85)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己亥, 22책 p. 645.

86) 『宣祖實錄』 권107, 선조 31년 12월 乙亥, 23책 p. 550.

87) 『宣祖實錄』 권203, 선조 39년 9월 丁亥, 25책 p. 267.

88)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孝廟朝 원년 5월 9일).

89)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仁廟朝 12년 5월 초8일).

宣祖代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허용할 때에는 市廳과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때는 왜란 직후이어서 물자가 귀했고 경제 활동이 미약하여 시전과의 대립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光海君代를 거쳐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市廳과 도감군의 상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반해 시전 상인들의 市役 부담은 漸增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감군과 市廳 간에 마찰과 분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조 3년(1625) 5월 李貴는

訓鍊都監 砲手들의 許市를……臣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砲手 4,000여 명의 親屬들이 假名으로 장사를 하면 市民들이 어찌 버태내겠습니까? 지난번 砲手들이 그 族屬을 거느리고 市人들을 亂打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⁹⁰⁾

라고 하였다. 즉 宣祖末 市役 면제의 특혜를 받고 상업 활동을 하게 된 도감군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市廳과 경쟁하면서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해 國役을 부담하는 市廳측의 반발은 漸增하고 있었다. 임란후 정부는 파탄에 빠진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전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대가로 禁亂廳權을 주었다.⁹¹⁾ 그러나 금난전권은 도감군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도감군들은 국왕의 親兵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市役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독점 이윤은 확보하지 못한 채 고된 市役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전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갔다.

인조대에 들어와 각 시전과 司憲府, 戶曹, 平市署 등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市役을 부과하여 市廳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⁹²⁾ 따라서 이들은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반대하면서 市廳의 보호에 앞장서

90) 『承政院日記』 6, 인조 3년 5월 20일, 1책 p. 225.

91) 姜萬吉, 1973 「實學者的 商業觀」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大出版部 p. 24.

92) 平市署를 비롯하여 漢城府, 戶曹, 刑曹, 司憲府 등은 조선전기 이래 市廳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아 보는 기관들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卞光錫, 1993 「18세기 平市署의 市廳運營과 市廳體系의 變질」 『釜大史學』 17집 참조.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왕과 훈련도감 당국으로서는 이들의 주장을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국가에서 도감군에게 충분한 급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업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겠지만, 당시의 국가 재정은 그렇지 못하였다. 부족한 급료를 지급하면서 상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市役을 부과하여 군인들의 원망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병자호란 이듬해인 인조 15년(1637) 仁祖는 병자호란시 도감군들의 屬從之勞를 致賀하고 시민과 같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이들에게는 收稅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⁹³⁾ 이것은 宣祖代 도감군 許市 조치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인조 15년의 위와 같은 국왕의 傳敎에 의해 인조대에는 더 이상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효종이 들어서자 이 문제는 다시 표면에 떠올랐다. 사헌부·호조·평시서 등은 ‘訓局之兵 獨非臣民乎’라 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도감군들도 시전과 똑같이 국역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훈련도감으로서는 도감군에게 차별없이 市役을 부과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러한 두 입장은 효종 원년(1650) 정월에 충돌하였다. 이때 도감군들이 자신들의 保布를 市塵에 轉賣하려 하자 사헌부에서 禁吏를 보내어 그 價布를 빼앗아 屬公시키고 또 이들 도감군들을 囚禁治罪한 후 贖木을 징수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⁹⁴⁾

이 당시 도감군의 保布는 도감군의 ‘過冬衣資’라는 명분으로 접수하여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였다. 7~9升木 40尺을 기준으로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⁹⁵⁾ 접수 과정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價布는 點退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도감군의 保布는 높은 상품성을 지녔고, 빈한한 도감군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衣資로 삼지 못하고 당시 통용되는 常木으로 교환하여 생활하였다. 이것을 사헌부는 亂塵으로 간주하여 治罪한 것이다.

93) 『訓局事例撮要』上卷, 軍兵市業條(顯廟朝 9년 2월 8일).

94) 『承政院日記』111, 효종 원년 정월 10일, 6책 p. 255.

95) 『訓局事例撮要』下卷, 砲保條(仁廟條 16년 10월 13일).

이에 대해 훈련도감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즉 도감군들의 상업 활동 허용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의 規例라고 주장하면서, 刑曹·司憲府·漢城府 등 三法司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도감군의 市業者를 侵責하지 말도록 조처해 달라고 상계하였다. 이것은 즉시 국왕의 허락을 받았으나, 효종 원년 윤11월에는 또다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이 형조 禁吏들에 의해 제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훈련도감에서는 또다시 국왕에게 ‘軍兵市塵勿禁事’할 것을 요구하여 허락받고 있다.⁹⁶⁾ 이와 같이 이 당시 서울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놓고 훈련도감과 호조·형조·사헌부·한성부의 대립이 전개되었고, 이 사이에서 국왕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전 상인의 商權 보호와 중앙군의 생계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兩者擇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이 당시 도감군의 상업활동은 단지 保布의 轉換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도감군 중 수공업 기술을 가진 자들은 각종 상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도감군들이 제조·판매한 물종으로는 網巾, 絲帶, 纓子, 繩鞋, 南草, 烟竹, 雉鷄 등이 지적되고 있다.⁹⁷⁾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집 앞에 늘어놓고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부유한 도감군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白木塵까지 열었다. 조선후기에 白木塵은 綿布塵의 별칭으로서 六矣塵 가운데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⁹⁸⁾ 도감군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保布를 常木으로 전환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스스로 백목전을 개설하였다.⁹⁹⁾ 그래서 이들은 保布를 훈련도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것을 다시 백목전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백목전을 개설한 도감군들은 안정적인 상품의 확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효종 5년(1654) 平市署에서는 도감군에게도 동일하게 市役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⁰⁾ 이러한 평시서의 요구는 훈련도감의 격렬한

96) 『承政院日記』 117, 효종 원년 윤11월 10일, 6책 p. 604.

97)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顯廟條 9년 2월 초8일).

98) 『萬機要覽』 財用篇 5, 各塵條, 有分各塵.

99) 『承政院日記』 204, 현종 8년 10월 초3일, 11책 p. 32.

100) 『承政院日記』 131, 효종 5년 4월 17일, 7책 p. 361.

반발을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도감군들은 市役의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조치되었다.¹⁰¹⁾ 평시서와 훈련도감의 타협의 결과였다. 그러나 숙종 원년(1675)에는 도감군의 상행위를 전면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숙종 원년 윤5월 大司憲 尹鑣는 市民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감군의 亂塵을 철폐할 것을 국왕에게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¹⁰²⁾

그러나 도감군들이 단순히 상업 활동을 포기할 리 없었다. 도감군은 상업 활동의 금지에 대한 원통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비변사에서 다시 ‘도감군이 시전과 같은 형태로 상업 활동하는 것은 禁止하지만 手持之物의 판매와 집 앞에서 장사하는 것(家前小市)은 허락한다’라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비변사의 추가 조치에서는 手持之物에 대한 명확한 物種의 규정이 없었고, 또 家前小市 역시 애매한 표현이어서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효과가 없었다. 즉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다시 전개되었던 것이다.¹⁰³⁾

비변사의 애매한 규정에 의해 도감군의 상업 활동이 다시 전개되자, 三法司와 훈련도감의 대립이 재연하게 되었다. 즉 三法司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전면 단속하였고, 훈련도감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단속하는 三法司와 亂塵禁吏를 軍門에서 처결할 것을 국왕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¹⁰⁴⁾ 한편, 시전 상인들 역시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해 숙종 3년 2월부터 일제히 撤市 저항으로 맞섰다. 이에 그 해 8월 호조판서 오시수는 시민들의 撤市訴冤이 반 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상업 행위를 하는 도감군들은 모두 市案에 등록하여 市塵人과 같이 應役할 것’¹⁰⁵⁾을 주장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숙종 3년 12월 비변사에서는 도감군과 시민이 함께 應役할 것을 명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자는 도감군과 시민을 논하지 않고 違令之罪로 다스리겠다고 하여

101)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顯廟條 9년 2월 초8일).

102) 『肅宗實錄』 권4, 숙종 원년 윤5월 丁酉, 38책 p. 282.

103) 『承政院日記』 257, 숙종 2년 11월 6일, 13책 p. 575.

104) 『承政院日記』 256, 숙종 2년 10월 24일, 13책 p. 580.

105) 『承政院日記』 261, 숙종 3년 8월 23일, 13책 p. 900.

이 문제를 일단락지었다.¹⁰⁶⁾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도감군들이 市案에 등재되지도 않고 市役을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상업 활동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숙종 10년(1684) 平市署提調 閔維重은 城外의 寡婦들과 砲手妻들이 涼臺를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涼臺塵 市民들에게 적발되어 평시서에서 砲手와 市民을 잡아서 조사하려고 할 때에, 都監將官이 10여 명의 軍牢를 거느리고 평시서 開坐處에 突入하여 砲手를 放送하고 시민을 捉致하여 決棍까지 加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⁷⁾ 砲手들은 市役을 부담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훈련도감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에 포수들의 市役 면제는 관행화하였다. 숙종 46년 4월 備邊司堂上 兪集一은 당시 匠人들이 한 마을에 포수 1인만 있어도 포수의 手造品은 應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國役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었다.¹⁰⁸⁾ 포수들의 免役을 내세워 포수가 사는 한 마을 전체가 避役하려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도감군의 상업 활동 역시 市塵 상업과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을 배경으로 특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시전 상업과 경쟁하면서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서울의 인구 증가와 사회질서의 동요

앞에서는 훈련도감의 성립과 운영이 조선후기 농업과 광공업, 상업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훈련도감의 영향은 이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훈련도감의 군인 충원방식인 陞戶制는 조선후기 서

106)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 (肅廟條 3년 12월 24일).

107) 『承政院日記』 304, 숙종 10년 6월 23일, 16책 p. 119.

108) 『備邊司謄錄』 73, 숙종 46년 4월 6일, 7책 p. 276.

울의 인구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 훈련도감의 常備軍制도 서울의 인구집중과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도감군은 陞戶制에 의해 충원되었다.¹⁰⁹ 승호제는 선조 39년(1606)부터 실시된 것으로, 每式年마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도에 230명의 군액을 할당하여 군인을 上送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즉 승호제에 의해 3년마다 경기 20, 황해 35, 전라 50, 경상 30, 충청 40, 강원 20, 한성부 30, 개성 5명의 壯丁들이 서울에 올라와 도감군이 되었다. 여기서 한성부의 30명을 제외한 200명의 장정들은 지방에서 집과 農土를 모두 팔아버리고 妻子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훈련도감에서 근무하여야 했다. 즉 3년마다 200戶가 정기적으로 서울로 이주하는 셈이었다. 한편 훈련도감은 이러한 정기적인 승호제 이외에 부정기적인 別陞戶에 의해서도 도감군을 충원하였다. 특히 효종 9년(1658)에는 무려 700명의 도감군을 일시에 충원하는 別陞戶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지방에 散居하고 있던 700戶를 일시에 서울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였다. 이와 같이 지방민을 강제로 서울로 이주시키는 도감군의 충원방식이 17세기 전반 서울의 인구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훈련도감은 長番制(常備軍制)로 운영되었다. 도감군은 서울에 常住하면서 국왕의 侍衛와 서울의 警備·防衛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비군제는 서울의 소비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農圃子 鄭尙驥(1678~1752)는 ‘임란 이후 군문이 증설되면서 不耕之民이 서울로 몰려들어 전국의 貢賦와 錢布를 소비하고 있다.’¹¹⁰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소비인구 증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상업인구와 서울 근교의 商業的 農業을 경영하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¹¹¹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감군과 그 가족들에 의해 亂塵이 설치되고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즉 훈련도감의 등

109) 陞戶制에 대해서는 拙稿, 1994 앞의 글 참조.

110) 『農圃問答』 設兵制(乙酉文庫 125, 乙酉文化社 p. 270)

111) 서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에 대해서는 金容燮, 1971 「朝鮮後期の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참조.

장은 군인과 그 가족들만으로도 서울의 인구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업 인구의 증가도 가져왔다.

그러면 도감군의 戶가 한성부의 總戶數에서 어느 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현종 4년(1663)에 작성된 현존하는 17세기의 유일한 한성부 호적인 「康熙二年癸卯式年 北部帳戶籍(奎19315)」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 호적에는 坊의 명칭이 기록되지 않고, 阿耳古契 등 16개 契와 이곳에 거주하는 681戶의 戶口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호적에 坊의 명칭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호적은 서울 北部 전체의 호적이 아니라 북부 중에서도 ‘有契無坊’지역의 호적임을 알 수 있다.¹¹²⁾ 아직 한성부의 5부 밑에 각 坊으로 편제되지 않은 외곽 지역인 것이다.

이 호적의 특성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 있으므로,¹¹³⁾ 여기에서는 단지 이 호적에 나타난 전체 호구수와 도감군의 호구수를 비교하여 도감군이 한성부 호구 전체에 어느 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가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겠다. 다음 〈표 1〉은 北部帳戶籍에 나타난 전체 호수와 인구수, 그리고 이 가운데 포함된 도감군의 호수와 인구수를 적출하여 비교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北部帳戶籍」의 전체 戶數 681호, 인구수 2,302명 중 도감군이 차지하는 호수는 63戶, 인구수는 155명이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북부장호적」 전체 호수의 9.3%, 전체 인구수의 6.7%를 도감군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부장 호적」이 작성된 城外 지역과는 달리 城內에서 도감군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¹¹⁴⁾ 한성부 전체 戶數에서 도감군의 戶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도 10%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¹¹⁵⁾

112) 高東煥,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 20.

113) 조성운, 1992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근대시민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14) 도감군은 ‘十里之外 不許任意來往(『承政院日記』 298, 숙종 9년 4월 22일, 15책 p. 871.)이라 하여 도성 10리 밖은 마음대로 왕래할 수조차 없었다.

115) 이 호적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주로 奴婢와 그 자녀만이 집중적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 양반이나 일반 평민들의 자녀수, 率居人數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인구수의 비율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표 1〉 北部帳戶籍의 전체 戶口數와 도감군 戶口數 비교

地 域	전 체 戶 口 數		도 감 군 戶 口 數	
	戶 數	口 數	戶 數	口 數
阿耳古介契	9	19	2	6
衍禧宮契	17	77	-	-
加佐洞契	38	126	1	2
水色里契	43	97	6	17
城山里契	57	280	2	5
細橋里契	23	151	-	-
合掌里契	90	375	7	16
望遠亭契	142	340	5	12
汝義島契	44	94	-	-
甌山里契	33	143	1	2
弘濟院契	16	50	5	19
延暑契	103	285	21	45
新寺洞契	32	148	5	12
梁鐵里契	11	48	8	19
末屹山契	20	62	-	-
造紙暑契	3	7	-	-
合 計	681	2,302	63	155

한 군사기관의 군인들이 서울의 전체 戶數의 10% 이상을 점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도감군들로 인해 서울 거리는 군인들로 넘치는 듯한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이 당시의 정부 관료들도 이러한 서울의 모습을 ‘軍容滿城’,¹¹⁶⁾ ‘持兵之士 滿於街路’¹¹⁷⁾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도감군들은 비록 亂塵을 설치하여 상업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주로 소비

116) 『孝宗實錄』 권18, 효종 8년 6월 丙子, 36책 p. 98.

117) 『顯宗實錄』 권1, 현종 즉위년 12월 甲寅, 36책 p. 232.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즉 이들은 급료 이외에 훈련도감으로부터 保布를 지급받아 이로써 물건을 구입하여 생활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상업 경제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서울의 상업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것이 17세기 전반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도감군은 京募集과 도감군 자로써 충원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인구 증가는 차츰 정체하게 된다.

17세기에 들어 도감군들이 이와 같이 서울로 이주하게 되자 서울에는 종래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都市問題였다. 도감군들의 서울 집중은 우선 도성 내에서의 주택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시기에 들어와 서울은 ‘無家小民 雖欲得尺寸之地 亦不可得’¹¹⁸⁾이라고 할 만큼 宅地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 초에 이르면 사대부들도 집이 없어 貫를 들어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상황이었다.¹¹⁹⁾ 이것은 조선전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다. 승호제에 의한 도감군들의 上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한 流入人口의 증가 속에서 서울의 宅地가 점차 부족하게 된 것이다. 훈련도감에서도 도감군들을 위해 空峯를 立案 折受하여 宅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효종대에는 창경궁 동쪽의 땅을 제공하였고,¹²⁰⁾ 숙종 9년(1683)에는 집이 없는 군병 334명에게 仁慶宮 舊基를 택지로 제공하였다.¹²¹⁾ 그러나 이러한 훈련도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도성 내에서는 택지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도감군들은 「北部帳戶籍」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城外의 沿江山底한 곳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갔다.

또 도감군들의 서울 집중은 서울의 위생문제를 야기시켰다. 도감군들은 주로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의 거주지는 불결하기 쉬웠다. 인구의 집중에 따라 안전한 食水의 확보나 汚物의 청결한 처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가장 피해를 받는

118) 『承政院日記』 270, 숙종 5년 6월 23일, 14책 p. 372.

119) 『景宗實錄』 권1, 경종 즉위년 10월 丙戌, 41책 p. 416.

120)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5월 丁巳, 46책 p. 391.

121) 『承政院日記』 298, 숙종 9년 4월 8일, 15책 p. 863.

지역이 도감군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숙종 44년(1718)에는 전염병으로 도감군 1哨의 군사 중 太半이 病死者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²²⁾ 이때 혼련도감은 도감군 460명이 病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³⁾

이와 같이 도감군의 서울 집중은 주택문제, 위생문제 등 이른바 도시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당시 정부 관료나 지배층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것보다 도감군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빈발과 사회질서, 신분질서의 동요였다. 대략 한성부 전체 戶數의 10% 이상을 도감군들이 점유하자, 이들이 도성민의 생활이나 사회 분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다.

도감군은 武力을 숭상하는 집단으로서 도성 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또 무기를 손에 쥐고 집단을 형성하게 되자 종래 신분질서에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서울 거리에서 떼를 지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밤중에 공연히 총포를 쏘면서 도성민을 놀라게 하였다.¹²⁴⁾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禁軍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였다.¹²⁵⁾ 또 이들은 도성의 거리에서 사대부를 만나도 조금도 피하려는 기색이 없이 노려보고 지나가거나,¹²⁶⁾ 사소한 일로 화를 내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사대부가에 突入하여 사대부를 능욕하기도 하였다.¹²⁷⁾ 현종 4년(1663) 10월에는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는 도감군을 刑曹 禁吏가 잡아 가두자 동료 도감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禁吏를 亂打하고 그 도감군을 빼내어 갔다. 이때 刑吏 使令들이 이들을 추적하자 도감군들은 뒤쫓던 使令 2명을 집단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¹²⁸⁾ 도감군들에 의해 공권력조차 무시당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감군들은 빈민층으로서 집단을 이루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122) 『肅宗實錄』 권62, 숙종 44년 윤8월 戊申, 41책 p. 33.

123) 『肅宗實錄』 권61, 숙종 44년 5월 己未, 41책 p. 19.

124) 『承政院日記』 127, 효종 4년 6월 20일, 7책 p. 208.

125) 『承政院日記』 130, 효종 5년 3월 13일, 7책 p. 343.

126) 『承政院日記』 131, 효종 5년 5월 1일, 7책 p. 371.

127) 『承政院日記』 189, 현종 6년 6월 3일, 10책 p. 394.

128) 『顯宗實錄』 권7, 현종 4년 10월 癸亥, 36책 p. 384.

때문에 強盜와 強姦 등 각종 범죄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인조 18년(1640) 이조참판 李植은 도감군으로서 武科에 합격하여 出身이 된 局出身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사대부를 구타하고 婦人을 劫取하였다고 상소하였다.¹²⁹⁾ 현종 7년에는 국왕의 온천 行幸을 수행하던 도감군 여러 명이 남편이 있는 村女를 劫奸하여 사회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었다.¹³⁰⁾ 심지어 현종 11년에는 도감군 4명이 강도단을 결성하여 西學洞에 있는 醫員 邊永熙의 집에 들어가 그 부인을 칼로 찔러 卽死시키고 그 외 4명을 칼로 傷害한 사건도 발생하였다.¹³¹⁾

도감군들의 서울 常住와 이로 인한 이들의 집단적인 무력 과시, 각종 범죄행동들은 문반관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문반관료들은 도감군들을 서울에 상주시키는 훈련도감 軍制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개편을 요구하였다. 효종 8년(1657) 8월 宋時烈은 그의 상소에서 ‘漢時宿衛 皆是子弟 不用軍卒’이라는 朱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왕의 숙위를 신분이 높은 양반 자제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驕卒들로 담당하게 하는 지금의 제도는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²⁾ 효종 8년 10월 許穆 역시 훈련도감 軍制는 養亂이지 養兵의 술책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¹³³⁾ 또 현종 2년 副提學 兪槩는 도감군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서울에 常住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¹³⁴⁾

이상과 같이 훈련도감의 陞戶制와 常備兵制는 서울의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수반하여 주택문제, 위생문제 등 도시문제도 출현시켰다. 한편, 도감군들은 집단적인 무력 과시와 각종 범죄행동 등으로 서울의 중세적 사회질서, 신분질서를 동요시키고 있었다.

129) 『仁祖實錄』 권40, 인조 18년 3월 壬午, 35책 p. 83.

130) 『承政院日記』 194, 현종 7년 4월 23일, 10책 p. 634.

131) 『顯宗改修實錄』 권23, 현종 11년 10월 甲午, 38책 p. 36.

132)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8월 丙戌, 36책 p. 109.

133)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0월 庚辰, 36책 p. 118.

134) 『顯宗改修實錄』 권5, 현종 2년 정월 甲寅, 37책 p. 212.

6. 맺 음 말

지금까지 임진왜란 중에 설립된 조선후기 최대의 中央軍營인 훈련도감의 운영이 사회·경제 각 부문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둔전은 훈련도감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훈련도감은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면적의 둔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훈련도감의 둔전 설치는 여타 宮房이나 衙門屯田의 선례가 되어 조선후기 둔전의 확대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둔전의 설치 확대는 조선후기 토지제도의 새로운 현상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감축하였고 농민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편, 훈련도감은 조선후기 신무기 개발의 중심 기관이었고, 최대의 무기 생산처였다. 훈련도감은 자체내에 무기제조장을 설치하여 조총, 화약 등을 생산하였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둔전의 설치와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훈련도감에 의해 개발된 이러한 광공업 기술은 여타 군영과 관서로 이전 되어 조선후기 군수광공업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훈련도감의 운영은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도 가져왔다. 임란 중 도감군의 생계 보충을 위해 상업활동을 허용하는 市牌가 지급된 이후 도감군의 상업활동은 확대되어 갔다. 이것은 서울에 非市廳系 상인의 대두, 亂廳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도감군들의 상업활동은 조선후기 서울의 상업 인구 증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한편, 훈련도감의 승호제와 長番制(常備兵制)는 서울의 인구증가와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式年 승호제로 3년마다 200명의 壯丁들이 지방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上京하여 훈련도감에 입속하였다. 또 이외에 수시로 別陞戶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감군의 충원방식은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長番兵인 도감군과 그 가족의 서울 거주는 서울의 소비인구를 증가시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인구의 증가도 가져왔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서울에는 주택문제, 위생문제, 범죄문제 등 도시문제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훈련도감의 운영은 조선후기 농업·광공업·상업·사회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사회가 그 이전의 중세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丙寅洋擾와 興宣大院君 政權의 對應

—《巡撫營膳錄》을 중심으로—

연 감 수
(서울대 講師)

1. 머리 말
2. 朝佛兩國軍의 전략과 전쟁의 경과
3. 조선군 전술의 특징과 문제점
4. 흥선대원군 정권과 願助軍需人
5. 맺음 말

1. 머리 말

1866년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시작된 병인양요는 그 동안 선학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이제는 그 경과를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다. 李瑄根의 개략적인 서술¹⁾이 있는 후, 崔爽祐²⁾는 프랑스측 사료를 발굴하여 프

1) 李瑄根, 1931 <西教徒虐殺의 由來와 佛艦來襲> 《朝鮮最近世史》 流星社書店.

李瑄根, 1961 <西教彈壓과 國際的 衝突> 《韓國史 最近世編》 乙酉文化社.

2) 崔爽祐, 1966 <丙寅洋擾小考> 《歷史學報》 30.

崔爽祐 神父가 이용한 자료들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주도하에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韓國教會史研究所 譯, 1977·1979 <韓佛關係資料> 《教會史研究》 1·2(이하 <韓佛關係資料> 1, 2로 약칭)

랑스군의 전략과 동정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병인양요 연구에 전기를 마련했다. 그 후 金源模³⁾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정족산성 전투를 지휘했던 梁憲洙 관계자료 등을 발굴하여 병인양요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연구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병인양요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및 전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서술방식은 그 관점이 지나치게 프랑스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전반적인 구도를 프랑스군이 문제삼았던 프랑스 선교사 살해문제와 개항(혹은 쇄국)문제를 중심으로 그들의 의도가 실현되었는가에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병인양요를 전후한 시점에서 조선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후 이를 어떻게 수습하려 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병인양요 자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빠져 있다.

본고는 병자호란 이후 최초의 외국군 침입으로 이후 군비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조선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전쟁에 임했는가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투양상보다는 전력의 배치 및 전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측의 전략을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다. 한편 실전에는 어떠한 전술을 갖고 임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비록 실제 전투에서는 응용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전술이 모색되었다면 역시 관심을 두었다. 그래야만 이후 흥선대원군정권에서 이루어질 군비증강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巡撫營膳錄》을 기본자료로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崔爽祐 譯註, 1980 《韓國天主教會史》 분도출판사.

펠릭스 클레르 리델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번역위원회 역주, 1994 《리델문서》 I (1857~1875년) 한국교회사연구소(이하 《리델문서》 I로 약칭함).

3) 金源模, 1983 <로즈 艦隊의 來侵과 梁憲洙의 抗戰> 《東洋學》 13

金源模 教授가 이용했던 자료 중 양헌수의 《丙寅日記》는 번역과 함께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金源模, 1983 <丙寅日記의 研究> 《史學志》 17(이하 《丙寅日記》로 약칭함)

金源模 教授는 어렵게 발굴한 梁憲洙의 文集인 《荷居集》을 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선생님의 후의에 고마움을 표한다.

삼았다. 巡撫營(정식 명칭은 畿輔沿海都巡撫營)은 병인양요 당시 조선군의 총사령부격이었는데, 프랑스군이 물러난 후 巡撫營이 파해지고 나서 儀軌廳을 설치해서 순무영 관계자료를 정리한 것이 《巡撫營謄錄》이다.⁴⁾ 이 자료를 통해 병인양요 당시 조선의 대응, 특히 조선이 생각했던 전략·전술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병인양요 중에 순무영에 '願助軍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직역 등과 함께 기재되어 흥미롭다. 그 동안 흥선대원군정권이 수행한 정책 중 자주 거론되는 願納錢의 경우 규모가 가장 컸던 경복궁 증건에서조차 원납자의 명단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전쟁상황이기는 하지만 《巡撫營謄錄》에는 願納한 사람들의 명단이 잘 남아 있어 흥선대원군정권 초기의 기반을 살펴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

2. 朝佛兩國軍의 전략과 전쟁의 경과

가. 프랑스의 전략과 침입과정

조선에서 천주교도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리멜 神父로부터 듣게 된 駐淸 프랑스艦隊 司令官 로즈 해군소장은 즉시 조선에 대한 원정을 결심하고 이 사실을 파리의 海軍及植民省 장관에게 보고하여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라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당시 인도차이

4) 현재 《巡撫營謄錄》은 藏書閣에 5책 完帙이 남아 있고(藏 2-3335), 奎章閣에는 5책 중 제4책만이 영본으로 전한다(奎 15063). 兩者는 제4책에 보이는 몇 가지 오류마저도 똑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巡撫營謄錄》은 동일한 시점에 몇 개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장서각 소장본을 이용했다.

5) 이하 본문에서 사용하는 낱자는 당시 조선의 공식력인 음력을 위주로 하면서 프랑스 측의 동정에 한해서 간혹 음력 뒤에 양력을 병기했다. 그리고 특별한 전거 없이 날짜만 표기하는 것은 프랑스측의 경우는 〈韓佛關係資料〉 2, 조선측은 《巡撫營謄錄》이 그 전거임을 밝혀 둔다.

나에서 일어난 월남인 반란 진압을 지원하고 돌아온 로즈제독은 8월 10일(양력 9월 18일) 3척의 군함을 이끌고 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遠征(제1차 침입)을 위해 체푸[芝罘]를 떠났다. 남양만 일대에 도착한 이들은 일대를 水深測量하던 중 京江入口를 발견하여 旗艦 프리모게호를 勿雉島(오늘날의 芍藥島)에 남겨 둔 채 15일 鹽河를 지나 한강을 거슬러올라갔다. 17일 鹽倉項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조선으로부터 어떠한 적대행위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을 목전에 두자 조선의 태도는 바뀌었다. 18일 아침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앞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조선의 船團을 발견했다. 프랑스군은 船團에 대포를 발사하고 저항하는 조선군사들에게 소총사격을 가해서 전열을 와해시켰다. 그리고는 일대의 수심측량을 마치고, 19일 아침 한강 하류로 철수했다. 이들은 22일 물치도로 와서 프리모게호와 합류, 23일(양력 10월 1일) 이곳을 떠나 25일 체푸에 도착했다. 프랑스군은 제1차 침입을 통해서 그들이 의도했던 정찰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정찰 결과 로즈제독은 조선원정이라는 불확실한 작업에 프랑스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이 거느린 부대만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강화도가 방비된 장소이므로…… 강화도를 猛攻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무수한 暗礁의 덕택으로 侵犯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조선정부를 굴복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얻었다.⁶⁾ 이러한 전략목표를 세운 후, 9월 3일(양력 10월 11일) 군함 7척을 이끌고 다시 체푸를 출발했다. 9월 4일 立波島에 도착한 프랑스 함대는 다음날 勿雉島에 정박했다. 9월 6일 아침 通信艦·砲艦 4척에 함대의 병력을 분송시켜 鹽河를 거쳐 조선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강화도 북동쪽에 있는 갑곶을 점령하고 그 곳에 야영지를 구축했다. 9월 7일 도즈리 중령이 이끄는 100명의 군인들이 강화부 점령을 위한 예비정찰을 수행했다. 이들은 강화수비병의 저항을 물리치고 강화부 동문으로 돌입했다. 프랑스군은 성내로 들어와서 城堞을 파괴하면서 성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살핀 후 갑곶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9월 8일

6) <韓佛關係資料> 2, p. 229.

로즈제독이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군은 강화부 남문으로 돌입하여 조선군의 커다란 저항 없이 강화부를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했다. 그리고 조선원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선교사 학살을 규탄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9월 9일에는 50여 명의 정찰대를 강화도를 마주보는 내륙의 通津府에 파견하여 이곳을 무혈입성하여 약탈한 후 文殊山城 등 주변을 관찰하고 다음날 갑곶으로 돌아왔다.⁷⁾ 이로써 조선정부를 확실히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강화점령은 성공했고, 강화해협 일대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프랑스의 전략목표는 막 실현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굴복하지 않았다. 프랑스군의 포고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들의 계속되는 약탈로 인해 강화부민들은 강화부에서 피난했다. 몇몇 천주교 신도들을 제외하고는 프랑스군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방도가 전혀 없었다. 프랑스군이 받은 조선으로부터의 반응은 9월 11일 프랑스군의 침략을 규탄하고 하루빨리 물러나라는 『巡撫營傳擲洋船都主』였다. 이에 로즈는 프랑스 선교사 학살에 관련된 3정승을 처벌할 것과 수호조약체결을 위한 전권대사 파견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로즈제독은 서울로부터 회답이 올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것이 양자 사이의 평화적인 교섭노력의 마지막이었다. 강화도를 점령하면 조선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예상은 점차 빗나가고 있었다.

로즈제독은 서울에서 온 천주교인을 통해서 조선정부가 군대를 새로 조직하고, 마침내 2~3천 명의 조선군이 강화도 西岸에 상륙하여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로즈제독은 江華府에는 도즈리 중령 지휘하의 군대만을 주둔시키고, 강화도 東岸의 甲串에 설치된 野營地를 더욱 강화했다. 9월 18일 오전 70명의 프랑스군은 해안정찰을 위해 염하 건너편 문수산성에 파견되었다. 문수산성은 프랑스군이 주둔한 갑곶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 배후지인 通津府는 이미 9월 9일 무혈입성했던 곳이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상륙과정에서 이 곳에 매복해 있던

7) 《巡撫營傳錄》 9월 10일, 《日省錄》 고종 3년 9월 11일 〈巡撫營 以洋賊入通津府掠奪民財及公私賤 先鋒中軍李容熙到該府留陣馳啓報〉.

韓聖根이 지휘하는 廣州 別破陣 50명의 습격을 받아 3명의 전사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프랑스군은 조선군을 추격하여 문수산성에 입성하여 이곳의 군사시설 등을 파괴했으나 갑자기 피어 오른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한 채 야영지인 갑곶으로 귀환했다. 조선군도 3명의 전사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나,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조선에 침입한 이래 최초로 전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프랑스군이 이제부터는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선군의 강한 저항을 물리쳐야만 했다.

이때쯤 로즈제독은 조선에서 철수할 생각이었다고 나중에 보고했으나⁸⁾ 믿기 어렵다. 프랑스군은 방어용 요새 구축작업을 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하며, 화덕을 설치했다.⁹⁾ 이는 로즈제독이 조선에서 겨울을 지낼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마도 강화도에 장기 주둔하면서 서울로 들어가는 물산들을 봉쇄하여 조선정부의 항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수 병력으로 강화도의 모든 지역에 주둔군을 둘 수 없던 프랑스군은 강화도 각 지역에 정찰대를 파견하여 일대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¹⁰⁾ 이러한 파괴의 전략적 의도가 조선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무력시위였다고 보기에는 조선군의 본진에서 너무 먼 곳에서 자행되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강화도민들의 반란이나 조선군의 강화도 상륙에 의한 배후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주둔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군에게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10월 2일(양력 11월 8일) 정찰병으로 추정되는 프랑스군들이 德浦鎮에서 조선군들의 기습

8) <韓佛關係資料> p. 245.

9) <리델문서> I, p. 163.

10) 9월 20일에는 ‘江華府外界……似是訓局火藥庫衝火’, ‘江華御營倉舍 及玉浦江邊人家 與龍津鎮火藥庫衝火’, 9월 21일에는 ‘下來于廣城津 一并衝火鎮舍城門 仍向德津鎮’ 하는 것이 조선군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에 순무중군은 ‘近日賊漢 恣意肆惡 到處衝火 是乎所 各鎮所在軍物 不無虛失之慮’ 해서 文殊山城, 廣城鎮, 德浦鎮, 草芝鎮 등의 軍物을 모두 陣中에 갔다 두었다고 9월 24일 보고했다. 9월 29일에도 ‘江華西城近處 火焰漲天 似是賊漢衝火’한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것도 火藥庫 파괴였을 것이다.

에 놀라 달아났다.”¹¹⁾ 그리고 이날 저녁 로즈는 강화도 남쪽의 鼎足山城에 조선군이 침투했다는 정보를 들었다. 10월 3일 아침 올리비에 대령 인솔하에 경무장한 150명의 프랑스군은 정찰임무를 띠고 정족산성을 향해 출발했다. 정족산성 부근에 다다른 올리비에 부대는 일부 군인들을 산성 가까이 접근시켰다. 이때 매복 중이던 梁憲洙 부대의 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5명의 장교를 포함해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리비에에는 이 중요한 장소를 정찰하고, 그 駐屯部隊를 위협했다며 자신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점령하려면 적어도 500명의 군인과 野砲兵 1중대를 갖고 정식으로 포위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강화도에 주둔한 프랑스 병력을 총동원하자는 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프랑스군의 철수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제독은 철수를 결정했다. 10월 5일(양력 11월 11일) 아침 6시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전리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갑곶을 떠났다. 강화도에서 철수한 프랑스군은 물치도 주변지역의 수심측량 등을 하다가 10월 12일(양력 11월 18일) 조선영해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로써 로즈제독 휘하의 군사만으로 강화도를 점령하는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을 굴복시키려던 프랑스측의 의도는 조선군의 저항으로 좌절된 것이다. 이제 프랑스가 자신들의 의사를 조선측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정부 차원의 전쟁이나 서양연합군 결성에 의한 침입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11) 프랑스측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다음날 벌어진 정족산성 전투에 가려져 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 순무영이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에 인용된 德浦鎮僉使의 馳報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把守하던 조선군이 一齊放砲해서 프랑스군 1명이 사살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프랑스군이 사살되었는지는 당시 조선측 자료의 특성상 별로 신빙성은 없다. 그러나 조선군이 프랑스군에게 기습공격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은 확실하다.

나. 조선군의 전략과 대응과정

조선정부는 중국 禮部에서 보낸 咨文을 통해서 7월 초에 이미 프랑스군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조선정부는 조선 내부의 사정을 프랑스가 알게 된 것은 국내의 동조세력인 천주교도들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금압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沿海 各 邑 鎭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던 중 미국 국적의 선박인 제너럴서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나타났다. 이들은 조선 지방관들의 거듭되는 퇴각 지시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火攻에 의해서 7월 24일 섬멸당했다. 이처럼 서양의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자 8월 1일 고종은 내탕금 5만냥을 내려 八道 沿海의 방비를 강화시키고,¹²⁾ 8월 3일에는 斥邪 綸音을 반포했다.

제1차 침입을 감행하는 프랑스함대가 조선정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8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지방관들이 몇 차례 問情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이양선 2척이 나출 만인 8월 17일 楊花津까지 이르렀다. 조선정부는 船團을 구성해서 한강을 가로질러 이들이 더 이상 진격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8월 18일에는 御營中軍 李容熙로 하여금 標下軍과 훈련도감의 馬軍 2哨와 步軍 7哨를 거느리고 江上에 나아가 방비토록 했다. 서울 앞마당까지 서양 선박이 등장하도록 조선측이 변변한 대응조차 못 하자 도성주민은 크게 동요하여 곡물이 품귀하고, 피난민이 줄을 이었다.¹³⁾ 그러나 다행히도 프랑스군은 조선측에 몇 차례 대포를 발사하고는 19일 아침 철수했고, 이에 西江에 출진했던 조선군도 다음날 撤還했다.

2차로 침입하는 프랑스함대가 조선군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9월 5일이

12) 이튿날 의정부에서는 이를 兩南에 각 8천냥, 兩西·湖西·北關에 각 6천냥, 京畿·關東에 각 5천냥씩 분배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아직 조선정부는 프랑스군이 정확히 어디로 침입해 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여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양성이 아니라 지역의 규모 등을 참작해서 준비를 분배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異樣船近泊於龍山等地 五營出去 而城中倉庫空虛 五六日之內 都民盡爲飢餓 空家逃避者 不知其數 汲水軍都無 乘輜軍 每十里雖給二三兩 而四求不得云云(《龍湖閑錄》四, p.19.)

었다.¹⁴⁾ 이번에는 大3隻과 小4隻 등 7척으로 이루어진 함대였다. 9월 6일에는 大3隻이 뒤에 남고 4척이 일제히 강화를 향해서 항해한 후 갑곶에 상륙했다. 이 소식에 접한 조선정부는 9월 7일 이들이 다시 서울에 진격할 것에 대비해서 訓練大將 李景夏와 摠戎使 申觀浩에게 江頭에 나아가 방어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침입한 프랑스군이 공격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江華府였다. 갑곶에 상륙한 프랑스군의 정찰대가 강화부를 유린하자 다음날인 9월 8일 의정부는 국왕에게 請對해서 巡撫營을 설치하고 훈련대장 李景夏를 巡撫使로 삼을 것을 허락받았다. 한편 순무영 설치와는 별도로 지난번 프랑스군이 침입했던 鹽倉項을 지키고 있던 총용사 申觀浩 휘하에 군사를 보강했다. 이 같은 중앙군의 병력배치는 총용청을 중심으로 서울을 방비케 하는 한편 서울의 군영 중에서도 핵심 군영인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순무영을 설치하여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군을 토벌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프랑스군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순무영이 중심이 되었다.

순무영은 禁衛營에 開府했고 순무사는 監兵使 이하를 專制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¹⁵⁾ 巡撫 中軍에는 訓練都監 中軍인 李容熙를 임명했다. 순무 중군 이용희는 훈련도감의 마병 1초와 보군 5초, 표하군으로 先鋒陣을 구성하여 출정했다. 巡撫先鋒陣은 崇禮門을 나와 楊花津, 通津을 거쳐 통진부 북쪽에 있는 祖江浦에서 渡津해서 月串津을 거쳐 위기에 처한 江華留守府를 구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巡撫先鋒이 서울을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江華府는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강화부가 함락되자 프랑스군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프랑스군이 주둔한 강화도의 甲串 對岸

14) 중앙정부는 대체로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따라서 이후 중앙정부의 조치는 현지 상황이 일어난 지 대개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

15) 이러한 巡撫使 지위와 開府所 설치의 흥경래난을 진압하기 위해 1811년 설치되었던 巡撫營과 마찬가지로였다. 《巡撫營謄錄》(서울대古 4250~66) 순조 11년 12월 23일 : 驪江出版社 影印本 p.11.

에 있는 문수산성의 방비를 각별히 신경 쓸 것을 통진부사에게 지시했다. 만일 문수산성이 함락된다면 강화를 회복할 대책이 없어지고, 서울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다. 幸州項에도 병력을 배치했고, 다음날 서울에서 강화로 통하는 육로의 요충지인 礪峴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강화부가 함락되었으므로 이제 조선군의 전략은 프랑스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수비에서 강화부의 회복을 위한 공격까지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더욱 많은 군대가 필요해졌다. 순무영은 先鋒陣이 지나가는 주변의 列屯 수령들에게 傳令을 보내 ‘在籍軍伍’를 모두 調發할 것과 방을 걸어 ‘自願出頭者’를 ‘招募’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起義人들을 召募하기 위해서 경기를 제외한 전국 7도에 召募使를 파견했다. 그리고 강화부를 수복하기 위해 순무영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銃手’¹⁶⁾를 上送할 것을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도 관찰사에게 지시했다.

중앙에서 이 같은 대비책을 수립하는 동안 이미 프랑스군은 통진부를 무혈입성했다. 이제 프랑스군이 강화를 넘어 육지에 상륙해서 금세 서울로 진격할 것처럼 느껴졌다. 이에 순무영은 9월 10일 이미 김포를 지나 통진에 근접한 선봉진에 결전을 독려했다. 군사모집에도 더욱 박차를 기했다. 南兵使에게도 砲手上送을 지시하고, 負商들에게도 참전을 권유했다.

그러나 9월 9일 통진부를 공격한 프랑스군들이 문수산성을 살펴보고 다음날 철수했을 뿐 통진에 주둔하거나 더 이상 진격해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제1차 침입 때와는 달리 더 이상 진격할 의도는 없음을 알려 주는 셈이었다. 프랑스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9월 13일 지방의 인심을 소란시킬 우려가 있는 各道の 召募와 出身赴陣을 중단하라는 傳敎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측은 이제 프랑스군의 서울 진격 저지보다는 강화부 회복에 전력을

16) 銃手는 일반적으로 砲手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한편 砲手 중에서 鄉砲手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京軍으로 편제된 砲手[京砲手]에 대비되는 말이다. 공식적으로는 外邑砲手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鄉砲手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였다. 병인양요 때 활약한 포수들은 주로 山行砲手였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 포수[官砲手]에 대비해서 私砲手로 불렸다.

기울였다. 강화부를 회복하려는 주력부대는 역시 선봉진이었다. 그런데 9월 18일 최초로 프랑스군 전사자를 발생시킨 문수산성 전투에 참여했던 廣州 別破陣 50명은 모두 砲手로 구성된 부대였다. 그래서인지 9월 19일 현지 사령관인 순무중군 이용희는 포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 듯 자신이 거느린 훈련도감의 馬·步軍 중 銃手는 1/5에 불과한 것을 푸념하면서 최소한 포수 300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침 이때쯤부터 각 지방에서 上送한 포수들이 속속 순무영에 도착하기 시작했고(〈표 1〉 참조), 순무영은 즉시 이들을 先鋒陣으로 보냈다. 9월 24일 선봉진은 이들 포수를 주둔지인 통진을 중심으로 요충지에 埋伏시켰다. 이같이 포수를 매복하는 전술은 문수산성 전투에서 성과를 얻었던 방법이었다. 선봉진은 서울을 출발한 지 보름 만에 기본전술이 三手兵體制에서 砲手中心體制로 바뀐 것이다.

한편 문수산성 전투를 전후한 시점에서 延安·白川·金川·平山 등지에서 ‘在籍軍伍’를 징발하여 부대를 편성했다는 수령들의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鳥銃보다는 주로 활이나 칼, 창 등으로 무장했을 것이다. 순무영은 이들에게 寅火堡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을 배후에서 공격하려는 의도였다.¹⁷⁾

9월말이 되면 결전이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평안도 포수가 순무영에 도착하자 순무영 지휘부의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이제 전체 포수의 수는 선무중군 이용희가 최소한이라며 요구했던 300명의 두 배를 넘기 시작했다(〈표 1〉 참조). 9월 29일 平山府使의 牒報에 대한 題辭에서는 京師의 공격이 急迫해졌다고 알려 주고 있다. 10월 2일에는 황해감사와 개성유수에게 전령을 내려 대군 3,000명이 旱路로 조만간에 喬桐에 들어갈 것이

17) 梁憲洙는 처음에는 개성에서 강화로 건너가 전투할 의도였다고 한다.(我之始計之自松都擊後者《荷居集》卷一〈答再從姪藍浦令柱石書〉) 원래 개성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나루터는 강화도 북단의 昇天浦였다. 그러나 승천포는 강화부의 뒷산에서도 쉽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조선군은 喬桐을 통해 강화도 서북지역의 寅火堡로 건너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양헌수가 개성에서 넘어가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니 군량을 교동에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조선군의 渡津이 쉽지 않았다. 프랑스군은 이미 강화점령초기부터 천주교도를 통해 조선군이 교동에 집결한 후 강화도의 서북지역으로 넘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¹⁸⁾ 해안경비를 강화했다.¹⁹⁾ 무엇보다도 프랑스군이 강화도 일대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조선군은 선척이 있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²⁰⁾

그러던 중 千摠 梁憲洙는 강화도 남쪽에 있는 鼎足山城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순무증군에게 알린 후 10월 1일 밤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潛渡하여 정족산성에 포진했다. 정족산성에 군사를 보낸 것은 ‘入據堅守 相機進擊賊穴之意’라는 전략을 갖는 것이었다.²¹⁾ 이는 양헌수부대가 강화도 남쪽에 거점을 마련하여 강화부를 공격하게 하는 한편 선봉진의 주력군이 강화부의 서북지역을 공략하려는 전체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0월 3일 정족산성의 양헌수 부대는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조선군은 최초로 프랑스군과의 접전에서 승리하고, 강화도 남쪽에 거점을 마련했다. 이날 밤 평안도 포수 88명이 정족산성에 급파되어 병력을 보강했다. 정족산성 전투도 문수산성 전투처럼 포수들이 매복했다가 一齊放砲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10월 5일 새벽 프랑스군이 돌연 강화도에서 철수했다. 이제 전쟁은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서 철수한 프랑스군은 여전히 부평 앞바다에서 수심을 측량하거나 간혹 적은 인원이 해안에 상륙하기도 했다. 이에 그 동안 강화도로 병력을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방비가 소홀해진 富平에 10월 6일 右先鋒將 金善弼로 하여금 泮人 200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도록 하고 外邑砲手 97명 등을 추가 지원해 주기도 하는 등 부평에 대한 방

18) <韓佛關係資料> 2, p. 243.

19) 賊勢則雄據沁都一邊 作起天主堂 山山斥候 峯峯瞭望 <荷居集> 卷一 <答再從姪藍浦令柱石書>.

20) 吾軍則雖有船隻 莫可進一步地 <荷居集> 卷一 <答再從姪藍浦令柱石書>.

21) <巡撫營騰錄> 10월 2일.

비를 강화했다. 10월 10일 永宗鎭에 申孝皙이 인솔하는 관서포수 200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신희철부대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軍糧의 보급 등만이 강조될 뿐 火攻할 수 있는 선척의 동원 등은 없었다. 이는 海戰을 통한 프랑스군과의 교전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만일 프랑스군이 영종도에 상륙할 경우 매복에 의한 一齊放砲를 시도할 의도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해 보기도 전인 10월 12일 프랑스군은 최종적으로 조선의 영해를 벗어났다. 10월 20일 巡撫營도 撤罷됐다.

3. 조선군 전술의 특징과 문제점

서양의 우세한 화력에 대해 조선군은 어떤 전술을 구사하려 했을까? 우선 해상전투 방식을 살펴보자.²²⁾ 조선이 프랑스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해상전투로 생각한 것은 夜攻이었다. 밤에는 遠近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정확히 대포를 발사할 수 없고 전후좌우에서 그들의 눈이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戰船에 사람 모양으로 엮은 풀을 실어서 병사들이 탄 것처럼 위장하여 적들의 포탄을 소진하게 한 후, 대포를 설치한 戰船이나 龜船을 쏘살같이 進攻시켜 火砲를 적선에 가까이 붙여 발사하거나 火藥, 焰硝, 硫黃, 松脂 등을 장작이나 풀 등과 함께 실은 배로 적선에 붙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적선에 탄 용사들이 鳥銃이나 활을 쏘고, 혹은 커다란 도끼나 끌로 적선을 파괴하려 했다. 한편 서양의 선박은 크기 때문에 龜船이 일단 한번 적선 옆에 붙기만 하면 저들의 대포나 火箭 등이 소용이 없어지므로 승산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는 평양에 나타났던 제너럴셔먼호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火攻²³⁾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무영이 이러한 공격방식을 永宗僉使 白樂莘에게만

22) 이하 夜攻에 대한 서술은 《巡撫營膳錄》 9월 10일의 〈傳令永宗僉使白樂莘〉.

23) 《日省錄》 고종 3년 7월 27일 〈平安監司朴珪壽 以異樣船剿滅馳啓〉 《조선전사》 13, p. 77.

전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勿雉島에 정박중이던 프랑스의 旗艦과 僚艦들에게 적용해 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해전은 대동강에 정박한 武裝商船과 바다에 정박한 ‘산처럼 커다란’ 軍艦의 차이를 실감할 수 없었던 서울에 있는 장수들의 탁상공론이었다. 즉 프랑스군의 위력을 大砲에서만 찾을 뿐 선박의 견고함이나 기동성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 점차 프랑스 함대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그들의 실체를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인지 이후에는 바다에 나아가 異樣船에 대항하는 전략구상은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강화도 주변의 제해권은 프랑스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프랑스군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게 되었다. 순무영에서는 수령들에게 선박을 동원하여 대령하라고 계속 지시했지만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다. 정족산성 전투를 벌인 양헌수부대가 어둠을 이용하여 潛渡해야만 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潛水軍이었다. 잠수군이라는 명칭은 강화부가 함락된 직후인 9월 10일 전라도에 別軍官 崔鷹哲에게 召募임무를 맡긴데서 처음 보인다.²⁴⁾ 이후 공충수영과 황해수영을 통해서 잠수군이 순무영에 도착했다. 이들은 아마도 프랑스군의 눈에 띄지 않게 바다를 건너거나 배에 접근할 수 있는 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선봉진에 배속은 되었으나 실제 전투를 벌인 적은 없다. 그러나 해안에서 공격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외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병력의 양성을 과제로 남겨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병인양요에서 수훈을 세운 것은 역시 砲手들이었다. 프랑스군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한 전투는 포수를 매복시켰다가 조총을 일제히 발사한 것들 뿐이었다. 애당초 순무영이 설치되어 지방의 병력을 처음 동원할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병력들은 포수였다. 가령 9월 9일 경기·황해·강원감사에게

24) 그러나 최용철이 召募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프랑스군이 강화에서 철수하기 하루 전에야 겨우 현지에서 召募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뿐이다.

山行砲手を 모아오라는 傳令에서는 선봉진 주변 列邑에 ‘在籍軍伍’를 동원하려는 전령과는 달리 ‘其所 捍禦之方 莫若銃手之多矣’라고 표현한 것 등이 그 예이다.

포수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였고, 특히 평안도 江界砲手に 대해서 기대를 거는 듯 평안도관찰사에게 강계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동원을 지시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각각 1,000명씩 함경도 남병영에는 500명의 포수동원을 지시했는데, 이처럼 이 지역에서 많은 포수동원을 지시한 것은 이곳의 親騎衛 등이 이 시기까지도 실질적인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는 멀어서인지 그곳의 포수들은 거의 활약하지 못했다. 마지막 전투인 정족산성 전투의 경우 주력은 鄉砲手였는데, 대부분이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황해도의 포수였다.²⁵⁾ 평안도 포수 중에서 가장 먼저 순무영에 도착했던 약 90명만이 정족산성 전투가 끝난 직후 지원병으로 올 수 있었다. 함경도 포수는 프랑스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서울에 도착조차 못했다.<표 1> 참조)

그렇다면 병인양요 때 활약했던 鄉砲手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순무영에 징집되었던 포수들을 각 고을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外邑砲手の 巡撫營 도착 현황

월 일	巡撫營에 砲手を 파견한 지역 및 병력수	소 계	누 계
9. 16.	安城 4	4	4
9. 17.	長湍 4, 抱川 8, 楊根 20	32	36
9. 18.	廣州 10	10	46
9. 19.	驪州 7, 竹山 7, 永平 합 29	43	89
9. 21.	加平 13, 金化 10, 鐵原 23, 原州 23, 春川 합 50, 金城 20	139	228
9. 22.	平康 21, 橫城 20, 洪川 27, 安峽 10	78	306

25) 《備邊司謄錄》 고종 3년 10월 23일 <論賞別單>.

월 일	巡撫營에 砲手를 파견한 지역 및 병력수	소 계	누 계
9. 23.	楊口 11, 金川 7	18	324
9. 24.	獐蹄 8	8	332
9. 25.	海州 4, 信川 3, 文化 3, 延安 2, 伊川 29	41	373
9. 26.	淮陽 33	33	406
9. 27.	平安巡營 63, 祥原 22, 三登 22, 狼川 18, 瑞興 30, 康翎 2, 白川 2, 黃州 12, 遂安 12, 兎山 12	195	601
9. 28.	黃海水營 17, 新溪 18, 鳳山 21, 旌善 10, 谷山 23, 長淵 15, 寧越 9, 平昌 5, 戴寧 7	125	726
9. 29.	平山 12, 長連 7, 殷栗 8	27	753
10. 1.	成川 24	24	777
10. 2.	松禾 5, 安岳 12, 豐川 8	25	802
10. 3.	平安兵營 100, 慈山 12, 江東 16, 殷山 18, 龜城 50, 泰川 50	246	1,048
10. 5.	德川 48, 熙川 50	98	1,146
10. 6.	朔州 101	101	1,247
10. 7.	昌城 31, 陽德 25, 寧遠 50	106	1,353
10. 9.	价川 38, 雲山 30, 江界 100	168	1,521
10. 10.	寧邊 100	100	1,621

전거 : 《巡撫營膳錄》

여기서 월일은 외읍포수의 명단이 巡撫營에 도착되어 《巡撫營膳錄》에 기재된 날짜이다. 포수들의 명단은 인솔장교가 함께 갖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개 병력의 순무영 도착 날짜와 일치한다. 순무영에 도착한 병력이 선봉진에 배치되는 데는 대개 2~3일 정도 걸렸다.

한편 순무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봉진이나 강화에 자원출정하는 병사들도 많았으므로 실제 병력은 이 표보다는 좀더 많았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수령이 주체가 되어 소집 동원되었다. 감영이나 병영의 포

수를 제외하면 이들은 원래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되었던 砲手[官砲手]보다는 '山行砲手'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병인양요에서 실제로 활약했던 경기, 강원, 황해도 포수의 경우 인접해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동원되지 못했다.²⁶⁾ 그리고 鐵原府의 경우 3명은 나이가 이미 70이 되어서 9월 22일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을 만큼 노쇠한 포수도 있었다. 순무영이 선봉진에 9월 20일 보냈던(〈표 1〉)에서는 9월 21일 명단이 도착한 병력) 關東砲手 137명은 無制之卒이어서 선봉진에서 새로 都令哨官과 領率書字的을 임명하여 敎鍊시켜야만 했다.²⁷⁾ 9월 27일에는 海州砲手 중 3명이 화약을 장전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미숙한 경우도 있었다. 양헌수가 지휘했던 향포수도 “도무지 烏合之卒이라 도무지 旗鼓의 절제와 나아감만이 있고 물러섬은 없다는 義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²⁸⁾ 그나마 손돌목에서 潛渡할 때 19명이 도망쳤다. 이들은 순무영이나 선봉진에 배속되는 과정에서 도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튼 그나마 이러한 外邑砲手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매복을 시켜 놓고, 프랑스군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 이제 이들 外邑砲手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였다.

그렇다면 京軍들은 병인양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사실 제일 처음 구성된 선봉진은 5군영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訓練都監軍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三手兵체제로 훈련을 받고 있어서 정작 銃手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²⁹⁾ 그 동안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부대가 정작 위기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선봉진은 순무영으로부터 銃手の 지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26) 砲手 동원령은 9월 9일 내려졌는데 처음으로 포수가 순무영에 도착한 것은 9월 16일 가서야 安城砲手 4명에 불과했다. 이 때는 이미 프랑스군이 곧 서울로 진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뒤였다.

27) 《巡撫營膳錄》 9월 24일.

28) 《丙寅日記》 10월 1일, p. 207.

29) 出征軍 步不過五哨 馬不過三哨 設令此皆能銃者 猶患不足 況其中銃手 纔居五分之一者乎 見今臨敵最緊者 惟銃手 而各浦防守 四散分列 大陣所在 殆不滿百 《巡撫營膳錄》 9월 19일.

한편 軍籍에 올라 있는 병력의 동원은 더욱 힘들었다. 특히 삼남지역은 自願軍 召募의 대상이었을 뿐 포수를 동원하라는 명령도 나중에야 일부 지역에 내려졌을 뿐이다. 이는 이 지역의 군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징세대상의 의미가 강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在籍軍伍’를 ‘調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선봉진 주변의 列邑 즉 南陽, 仁川, 安山, 通津, 金浦, 陽川, 高陽, 交河, 坡州, 長湍, 金川, 白川, 平山, 延安 등도 실제로는 金川, 白川, 平山, 延安 4군만이 부대를 편성했을 뿐이다. 그나마 수령들의 보고서를 보면 군적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군적에 의한 ‘調發’이 아니라 실제로는 ‘召募’하고 있었다. 사실 이들의 동원은 민심의 소동만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의 지역만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다.

4. 홍선대원군 정권과 願助軍需人

프랑스군이 침입하자 인심이 크게 동요했다. 그러한 가운데 프랑스군의 침입에 대해 강한 斥和論을 세우고 항전을 독려한 것은 누구보다도 홍선대원군이었다. 강화부가 함락되고 프랑스군의 요구조건이 전달된 후인 9월 14일 홍선대원군은 主和를 賣國으로 단정하고, 자신의 항전방침을 뒤따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議政府 堂上坐起處에 보내어 돌려보도록 했다.³⁰ 巡撫營의 군사들에게 3~4일에 한 번씩은 음식물을 내려 주거나 待令執事 등을 보내서 격려했다. 이러한 격려는 국왕이 宣傳官을 보내어 군사들을 격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

사실 국왕은 프랑스군과의 항전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령 巡撫營이 설치된 9월 8일에도 국왕은 經筵을 하고 있었으며, 경연이 끝난 후 경연관들에게 프랑스군의 동정을 물을 정도로 전쟁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의정부의 요청에 따라 李景

30) 《龍湖閑錄》四, pp. 44~45.

夏를 순무사에 임명하고 순무사의 상징인 尙方劔을 하사하는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이었다. 그나마 이러한 의례행사에서 국왕이 순무사의 권한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을 잘 몰라서인지 순무사의 주청이 있는 다음에야 監兵使 이하를 전제한다고 명령했다.³¹⁾ 물론 국왕도 간혹 宣傳官을 파견해서 순무영의 군사들을 위로했고, 순무영에서도 매일 국왕에게 군사들의 동정을 보고했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개황일 뿐이었다. 양헌수부대가 정족산성에 들어갔다는 선봉진의 첩보는 기밀누설을 염려한 순무영에서 국왕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³²⁾ 나중에 승전소식만을 보고했을 따름이다. 이에 반해 홍선대원군은 순무중군이 중단할 것을 지시한 양헌수의 정족산성을 점거계획을 다시 승인할 정도로 구체적인 작전계획까지 관여했다.³³⁾ 즉 국왕은 새로운 기구의 창설, 관직 임명 등에서 의정부나 순무영의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승인권만을 행사했을 뿐인 데 반해 홍선대원군은 국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최고군사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홍선대원군은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척화론을 주도하고, 직접 전쟁을 지휘했다. 더 나아가 전쟁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했다. 9월 9일 의정부는 강화부 함락의 책임을 물어 강화유수 李寅夔를 해임하고 대신 武臣인 李章濂을 임명하면서 강화유수를 登壇例, 즉 군영대장의 예로 시행할 것을 주청하여 국왕의 승인을 얻었다. 이는 그 동안 홍선대원군이 문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武將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던 기존의 정책을 전쟁상황에서 다른 정치세력의 별다른 저항 없이 확대해 나간 것이다.³⁴⁾

홍선대원군의 주도하에 巡撫營을 중심으로 조선의 적극 항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巡撫營에 軍需를 돕기를 ‘願’했다. 프랑스군에 의

31) 《승정원일기》 고종 3년 9월 8일.

32) 《巡撫營騰錄》 10월 2일.

33) 《丙寅日記》 10월 1일, p. 225.

34) 홍선대원군이 武將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종 2년 統制使의 外登壇 시행문제를 둘러싸고 文臣들과 벌였던 갈등에 대해서는 延甲洙, 1992 <大院君 執政의 성격과 權力構造의 변화> 《韓國史論》 27, pp. 239~242 참조.

〈丑 2〉

願助軍需人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 내역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 내역
9. 16.	軍器寺 僉正	河 靖 一	黃牛 2隻	9. 21.	出 身	金 命 九	白米 20石
9. 16.	宗親府 書吏等		黃牛 3隻	9. 21.	南部居 進士	盧 巖 錫	錢 200兩
9. 16.	宗親府 權頭等		黃牛 1隻	9. 21.	前中軍	鄭 龍 赫	黃頭 5石
9. 17.	議政府 書吏等		白米 10石, 黃豆 10石	9. 21.	出 身	金 舜 柱	錢 100兩
9. 17.	議政府 使令等		黃豆 10石	9. 21.	宜惠廳 書吏	李 錫 範	錢 100兩
9. 17.	前監牧官	安 廣 煥	黃牛 2隻	9. 21.	前訓練僉正	林 鳳 章	黃牛 2隻
9. 17.	前注簿	張 淳 奎	白米 30石	9. 21.	前主簿	鄭 憲 教	米 5石
9. 17.	義州居 前五衛將	金 鎮 裕	黃牛 10隻	9. 21.	前五衛將	金 在 洙	米 3石, 太 2石
9. 17.	前五衛將	鄭 德 煥	白米 5石	9. 21.	閑 良	千 相 鎬	錢 50兩
9. 17.	訓練都監 庫直	金 道 漢	白米 10石	9. 21.	司諫院 書吏等		米 5石
9. 18.	前五衛將	天 義 賢	錢 300兩	9. 21.	前察訪	文 義 說	米 10石
9. 18.	(義州居)	李 碩 燁	錢 300兩	9. 21.	戶曹 書吏	金 斗 植	米 5石
9. 18.	御營廳 書吏	車 允 行	錢 100兩	9. 21.	戶曹 書吏	崔 錫 祐	米 5石
9. 18.	出 身	金 重 孝	白米 10石	9. 22.	內閣 書吏	廉 在 鎭	黃牛 2隻
9. 18.	訓練都監 庫直	曹 仁 植	錢 100兩	9. 22.	司諫院 前正	鄭 在 昕	錢 100兩
9. 18.	禁衛營 書吏	朴 啓 煥	錢 100兩	9. 22.	司 果	李 俊 壽	錢 100兩
9. 19.	統 長	李 在 澤	黃牛 1隻	9. 22.	前五衛將	李 鼎 禹	錢 100兩
9. 19.	統 長	崔 虎 大	黃牛 1隻	9. 22.	折 衝	姜 泰 鉉	白米 5石
9. 19.	算學 教授	李 海 斗	黃牛 1隻, 生猪 2口	9. 22.	出 身	李 仁 爽	白米 5石
9. 19.	戶曹 書吏	金 學 準	錢 200兩	9. 22.	承政院 書吏	李 禹 錫 等	黃牛 3隻
9. 19.	戶曹 書吏	金 完 祖	錢 200兩	9. 22.	承政院 使令	崔 夏 鎭 等	黃牛 2隻
9. 19.	戶曹 書吏	金 禹 鼎	錢 100兩	9. 22.	宜惠廳 書吏	吳 道 烈 等	白米 20石, 太 20石
9. 19.	明禮宮 掌務	劉 在 韶	白米 5石	9. 22.	宜惠廳 庫直	高 鎭 堡 等	白米 20石, 太 20石
9. 19.	宜惠廳 庫直	金 鎮 漢	錢 100兩	9. 22.	宜惠廳 使令	金 昌 燁 等	白米 10石, 太 10石
9. 19.	經筵廳 書吏等		黃牛 2隻	9. 22.	講進宮 掌務	李 承 業	錢 200兩
9. 19.	司諫院 前正	卞 元 圭	錢 300兩	9. 23.	內閣 使令等		黃牛 1隻
9. 21.	文禧廟 守僕	洪 鍾 淵	錢 10兩	9. 23.	義禁府 羅將等		太 10石
9. 21.	前五衛將	金 龍 九	白米 20石	9. 23.	前五衛將	金 得 憲	白米 5石, 錢 100兩
9. 21.	出 身	金 鴻 九	白米 20石	9. 23.	前中軍	崔 致 斗	錢 100兩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내역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내역
9. 24	閣 監	朴敏浩	錢 100兩	10. 6.	兵曹 書吏	金禹錫	白米 3石
9. 23	崇 政	朴大永	錢 300兩	10. 6.	政院 書吏	洪成澤	豆 5石
9. 24.	白米廳 市民等		錢 2,000兩	10. 6.	前守門將	朴重秀	錢 200兩
9. 24.	前主簿	劉淵哲	錢 100兩	10. 6.	兵曹二軍色 庫直	鄭基星等	白米 5石
9. 24.	前五衛將	洪就源	白米 5石, 太 2石	10. 6.	玉堂 隨廳使令	李晚根等	白米 5石
9. 25.	兵曹 書吏	劉熙泰	白米 5石	10. 6.	玉堂 引倍使令	金致寬等	白米 5石
9. 27.	前中軍	金仁豐	錢 100兩	10. 6.	兵曹 書吏	安道性	白米 5石
9. 28.	前五衛將	尹茂性	太 10石	10. 6.	訓練都監 書吏	崔鎮泰	太 10石
9. 28.	前別將	宋應駿	太 10石	10. 8.	前五衛將	安時潤	錢 300兩
9. 28.	宣惠廳 書吏	尹義錫	太 10石	10. 8.	出 身	李承儉	錢 500兩
9. 28.	兵曹 書吏	石燦永	白米 5石	10. 9.	前五衛將	李命揆	錢 100兩
9. 28.	兵曹 書吏	鄭繼聖	白米 5石	10. 9.	前五衛將	李舜榮	錢 100兩
9. 28.	兎山居 副護軍	尹榮參	黃牛1隻, 唐米 1石	10. 9.	前五衛將	洪鳳周	錢 200兩
9. 28.	兎山居 前守衛官	尹榮浩	黃牛2隻, 小米 1石	10. 9.	前五衛將	金俊哲	錢 100兩, 黃牛 2隻
9. 29.	吏曹 書吏	吳相麟	白米 2石, 太 1石	10. 9.	出 身	安鴻德	錢 500兩
9. 29.	內需司工房 執吏	金日淵	白米 5石	10. 9.	出 身	宋德立	白米 2石, 黃豆 2隻
9. 29.	壽進宮 掌務	尹永基	錢 50兩	10. 9.	折 衝	林峻成	白米 5石
10. 1.	戶曹 庫直	韓性敏	白米 3石	10. 9.	折 衝	金敬運	太 5石
10. 2.	吏曹 書吏	安奎明	米 3石, 太 2石	10. 9.	前僉知	金潤行	錢 100兩
10. 2.	司僕寺 書吏	金禹錫	牟 10石	10. 9.	布廳 市民		錢 1,000兩
10. 2.	司僕寺 書吏	朴喜運	太 10石	10. 9.	洪川 縣監	高奭鉉	錢 300兩
10. 2.	前五衛將	趙胤顯	錢 300兩	10. 9.	抱川居環派人 前監役	李冕應	白米 3石
10. 3.	宗親府 書吏	金萬興	錢 100兩	10. 9.	抱川新坪里洞 民等		白米 9石
10. 3.	前五衛將	金英世	錢 50兩	10. 9.	尙衣院 書吏	李鍾元	白米 3石, 太 2石
10. 3.	戶曹 庫直	洪道演等	白米 10石, 太 5石	10. 9.	兵曹 書吏等		錢 150兩
10. 3.	前五衛將	方孝涵	錢 500兩	10. 9.	其人貢人等		錢 1,000兩
10. 4.	白米廳 市民	李度膺	錢 300兩	10. 9.	前五衛將	梁殷柱	錢 100兩
10. 4.	分院 民	鄭學連等	錢 500兩	10.10.	前僉使	李東根	白米 20石
10. 4.	前判官	金駿錫	錢 50兩	10.10.	芋布廳 市民等		錢 1,000兩
10. 4.	吏曹 書吏	安奎鎮	白米 1石, 太 1石	10.11.	吏曹 書吏等		錢 300兩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 내역	일 일	직 명	성 명	願助 내역
10.11.	前 同 知	張 義 煥	錢 100兩	10.15.	潭陽居嚮派人生員	李善等16人	錢 200兩
10.11.	出 身	安 膺 浩	錢 50兩	10.15.	禮曹 書吏	朴源基等	錢 100兩
10.11.	前 僉 知	朴 道 源	錢 100兩	10.15.	前 僉 知	朴 敦 行	白米 5石, 太 2石
10.11.	前 僉 知	金 應 斗	白米 2石, 黃豆 2石	10.16.	安城 郡守	李 承 老	引籠餅 100籠, 黃牛 2隻, 南草 100把
10.11.	藥房 書員	韓 守 性	錢 50兩	10.16.	尙衣院 書吏	劉 喜 相	白米 3石, 太 2石
10.11.	綿紬塵 市民	韓 守 德	錢 50兩	10.16.	淮陽 府使	鄭 淵 善	錢 200兩
10.11.	前慶熙將	韓 萬 衡	錢 100兩	10.17.	綿紬塵 市民等		錢 500兩
10.13.	司僕寺 書吏	李 喜 相	白米 10石	10.17.	江西居 前正言	金 善 柱	錢 500兩, 白米 10石, 黃牛 3隻, 草鞋 500部
10.14.	前 縣 監	吳 仁 杓	錢 50兩	10.17.	紙塵 市民等		錢 500兩
10.14.	安山居嚮派人	李 昌 植	白米 16石	10.20.	折 衝	李 學 基	白米 5石
10.14.	尙衣院 書吏等		錢 100兩	10.20.	閑 良	李 義 稷	白米 5石
10.15.	藥房 書員	高 庚 錫等	錢 100兩				

전거 : 《巡撫營膳錄》

해 함락되었던 통진에 선봉진이 들어간 직후인 9월 11일 통진에 사는 幼學 李重允이 黃牛 3隻을 순무중군에게 願助軍需라며 기진한 이래 많은 願助軍需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巡撫營에 願助軍需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³⁵⁾

이들이 願助한 것은 現物이 많고, 그 용도는 '精饋', 즉 군인들의 식량 및 의식 등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조세적인 성격보다는 기진하는 사람의 자발성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성도 사실은 홍선대원군에 의해서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35) 순무영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12월 3일의 戶冊에 보내는 關文에서는 '願助軍需'를 '願納'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願助軍需와 願納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서울에 설치된 순무영 외에도 통진의 선봉진이나 정족산성에 들어간 양현수부대 등에도 願助軍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주변지역의 幼學 등이어서 홍선대원군정권의 기반을 살피는 데는 크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표 2>에서는 생략했다.

〈표 2〉에서 제일 먼저 願助한 사람들을 보면 9월 16일의 軍器寺 僉正 河靖一, 宗親府의 書吏等과 權頭等이었다. 다음날은 議政府 書吏等과 使令等 그리고 前監牧官 安膺煥, 前注簿 張淳奎, 義州居前五衛將 金鎮裕, 前五衛將 鄭德煥, 訓練都監 庫直 金道瀾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河靖一과 張淳奎는 홍선대원군의 家令들로서 千喜然, 安弼周 등과 더불어 이른바 ‘千河張安’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이었다.³⁶⁾ 그리고 주지하듯이 宗親府와 議政府는 홍선대원군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기관들이었다. 따라서 巡撫營에 대한 이들의 願助軍需는 홍선대원군의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巡撫營에 대한 願助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총 141건의 願助軍需 사례가 등장했다. 이들을 지역별로 다시 살펴보자. 우선 현직 중앙관료가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직관료로는 10월 9일 洪川縣監을 비롯해서 10월 16일 安城郡守, 淮陽府使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관이었고, 자기 지역에서 출정한 군사들에 대한 위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현직 중앙관료들은 자신의 직역을 통해서 전쟁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이지, 참전한 군사들에 대한 보조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전직관료들은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전직관료 중에서 분명한 文班은 10월 17일의 前正言뿐이다. 副護軍(9. 28), 前縣監(10. 14), 前察訪(9. 21)이 모두 문반출신이라 하더라도 총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武班은 前五衛將 18건, 前僉使 1건, 前中軍 3건, 前訓練僉正 1건, 前別將 1건, 前守門將 1건, 前慶熙將 1건, 등 총 26건(18.4%)이나 등장한다.³⁷⁾ 이 시기 홍선대원군은 문반유력가문세력 내의 세력기반이 취약했고, 관료조직에서는 주로 무반들을 자기 기반으로 삼아 이들의 권한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홍선대원군 정권의 특징이 軍需를 願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36) 朴齊炯 《近世朝鮮政鑑》上 (李翼成譯, 1981 탐구당) pp. 58~60.

37) 前 同知 1건, 前 僉知 4건의 경우 實職은 아니지만 품계 앞에 ‘前’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반관료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무반관료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있다.

이른바 기술직 중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算學教授 1건(9. 19)과 司譯院 前正 2건(9. 19; 9. 22)뿐이다. 꽤 경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 중에서도 願助軍需人은 그다지 많지 않아 이들도 대단히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市民들이 7건, 貢人들이 1건 등장하여 상인층의 경우 특별히 적극적 혹은 소극적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장 활발하게 願助軍需하는 사람들은 書吏층이었다. 書吏만으로도 모두 36건(25.5%)이나 등장했다. 이들이 소속된 기관을 보면 兵曹, 戶曹, 吏曹, 禮曹, 宣惠廳, 司僕寺, 尙衣院, 承政院, 御營廳, 訓練都監, 禁衛營, 宗親府, 議政府, 經筵廳, 司諫院, 內閣 등 중앙의 주요관서를 두루 망라하고 있다. 書員 2건, 執吏 1건, 使令 6건, 掌務 3건 등도 이들과 별로 신분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7건이나 등장하는 庫直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중앙관서의 행정실무자들인데 대단히 광범위하게 願助軍需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바치는 내역을 보면 단독으로 바치는 경우 錢 100兩이거나 黃牛 2隻 혹은 米 5石 정도가 일반적이다. 洪川縣監이 바친 錢 300兩, 淮陽府使의 錢 200兩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守令과 書吏의 신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書吏들의 경제력도 만만치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리층은 19세기 전반 세도정치하에서 행정실무를 관장하면서 그 실력을 더욱 늘릴 수 있었고, 각 지방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보망을 갖추고 있던 세력이었다.³⁸⁾ 그런데 홍선대원군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巡撫營에 대한 軍需의 願助에 서리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홍선대원군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있거나 홍선대원군이 이들을 잘 동원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실 홍선대원군은 관료기구에 아직 자신의 정치세력이 정착하기도 전부터, 이른바 ‘大院位分付’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수행했는데³⁹⁾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巡撫營에 대한 願助에서 드러나는 書吏層의 홍선대원군정권에 대한 지

38) 유봉학, 1990 <日錄 <公私記攷>에 나타난 19세기 書吏의 생활상 <奎章閣> 13.

39) 延甲洙, 앞의 논문, pp. 226~234.

지 내지는 흥선대원군의 書吏層들에 대한 동원능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맺 음 말

병인양요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겪은 최초의 외국의 침략이었다. 이러한 침략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정권은 강경한 斥和論을 세우고 巡撫營을 설치하여 군사적인 대응을 했다. 전쟁초기에 이미 江華府가 함락되었으므로 순무영의 전략은 강화부의 회복에 초점이 모아졌다.

원래의 회복전략은 군사들을 喬桐에 집결시킨 후 강화도 寅火堡로 상륙시켜 강화부를 배후에서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이 경비를 강화하고, 특히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이러한 전략은 실행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鼎足山城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한 梁憲洙의 항전으로 강화도 남쪽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군은 프랑스군을 남북에서 협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시도되기 전에 프랑스군은 철수했다.

강화부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 황해도 일부 군현의 軍籍에 있는 東伍軍등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 동안 군적 관리가 소홀해져서 실제로는 自願軍의 召募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巡撫營이 강화부 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기대했던 군인들은 ‘善放砲手’였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의 砲手들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京砲手와 경기, 황해, 강원도의 포수들이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군이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정족산성 전투의 주력군은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황해도의 포수 등 이른바 ‘鄉砲手’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山行砲手로서 유사시 즉각 동원되기 어려웠고 군인으로서의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三手兵體制의 훈련도감군보다도 매복하였다가 一齊放砲하는 이들 鄉砲手들이 위력을 발휘했다.

한편 강화부를 회복하는 데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병력을 수송할 선

박의 동원이었다. 서양의 우세한 군함 앞에 조선의 선박은 무용지물이었다. 夜攻·火攻이 구상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바다에서 대항해 본 적은 없었다. 바다는 전투장이 아니라 전투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일 뿐이었다. 조선은 潛渡할 수 있는 선박과 潛水軍의 동원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전투경험은 이후 홍선대원군 정권의 군비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즉 그 동안 소홀해진 軍籍을 정비하기보다는 砲手의 양성을 통해서 이른바 精銳兵을 갖추는 데 군비강화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군영보다는 각 지방의 鄉砲手들을 증강하게 되었다. 한편 선박을 통한 외국군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潛水軍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박의 정비와 함께 漕軍을 무장시켜 砲手로 만드는 방식을 병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무영에 軍需를 願助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기 홍선대원군 정권 기반의 일단을 살필 수 있었다. 즉 武班과 書吏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홍선대원군정권을 지지하고 있거나 홍선대원군이 이들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서리층에 대한 통제력은 홍선대원군이 아직 관료기구에 자신의 정치세력을 제대로 부식하지 못한 정권초기부터 막강한 권력을 관철시킬 수 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國防關係記事의 檢討

李 相 一

(國史編纂委員會 編史研究士)

1. 서 론
2. 〈독립신문〉의 對外認識
3. 국방관계기사의 검토
4. 결 론

1. 서 론

〈독립신문〉은 한국 최초의 民間新聞으로 俄館播遷 당시 정부의 후원하에 徐載弼 등이 주축이 되어 1896년 4월 7일 創刊되었다. 창간에서 1898년 5월 중순까지는 서재필이 주관하였고, 서재필이 한국을 떠난 뒤 사장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였으나 실질적으로는 尹致昊가 운영하였으며, 1899년 1월 尹致昊가 德源府使 兼 元山監理로 떠난 뒤부터는 아펜젤러가 6개월간 운영을 맡았으며, 1899년 6월 1일부터 폐간까지는 영국인 엠벌리(H. Emberley)가 맡아 보았다.

1899년 12월 4일자로 終刊號를 낼 때까지 한글판 776호, 영문판 442호가 간행된 〈독립신문〉은 獨立協會의 기관지격으로 1890년대 후반기에 약 43개월간의 언론계몽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 운동에 선구적인 업적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의 기능이 거의 없었던 「漢城旬報」·「漢城周報」와는 달리 논평과 비판을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論說을 1면 머리에 실어서 정부와 집권위정자들의 稅政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이권 침탈에 혈안이 된 列強 세력의 부당한 요구와 음모를 서슴지 않고 폭로하였다.

徐載弼은 신문의 어느 기사보다 논설을 중요시하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썼다. 尹致昊는 국문판 논설을 직접 쓰면서 〈독립신문〉의 논조를 서재필이 主筆로 있을 때와 같은 보조로 이끌고 나갔으나, 아펜젤러는 主筆로 취임한 후 정부비판의 논조를 현저히 완화하고 주로 온건한 계몽적 논설들을 게재하였다.

〈독립신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독립신문〉의 창간 배경, 〈독립신문〉의 발전과 변화, 언론계몽활동 등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¹⁾ 아직까지 신문의 내용에 관한 주제별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 실린 論說이나 記事가 開化期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볼 때 開化期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립신문〉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이나 기사의 內容 分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²⁾ 따라서 本稿에서는 한글판 〈독립신문〉의 論說³⁾ 가운데 國防關係만을 발췌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독립신문〉 연구에 약간이나마 기여하

1) 崔埈, 「고종시대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고찰—독립신문과 협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3, 1959; 姜在彥,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 『조선사연구회논문집』 9, 1972; 鄭忠良, 「독립신문의 개화기 여성의 교육개발, 진흥 및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6, 이화여대, 1975; 愼鏞廈, 「독립신문의 창간과 그 계몽적 역할」,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李光麟, 「서재필의 독립신문간행에 대하여」,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趙恒來, 「독립신문의 여성교육논고」, 『여성문제연구』 10, 효성여대, 1981; 李萬甲, 「독립신문에 표시된 가치관념」, 『韓沽勛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金信在, 「독립신문에 나타난 '三國共榮論'의 성격」, 『경주사학』 9, 1990; 呂增東, 『附倭逆賊機關紙 독립신문연구』, 경상대출판부, 1991.

2) 李光麟,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3) 論說이라고一括해서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는 便紙나 投稿하는 글도 있다.

고자 한다. 본고는 1896년 4월 7일 創刊되어 1899년 12월 4일 廢刊되기까지의 논설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신문〉에 나타난 對外認識과 각국의 국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군사에 대한 개념과 한국의 군사력 강화, 외국군대의 한국주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독립신문〉의 對外認識

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독립신문〉에서는 당시의 國際情勢가 “만국의 오늘날 나타난 형상을 볼진대, 동맹국이니 통상국이니 하나 실상은 한 나라가 눈이 없은즉 그 코를 베어 먹을 판국이라. 일본의 느지러운 뺨도 대한을 위함이 아니요, 로국의 흘리는 침도 대한을 위함이 아니요, 그 외 각국의 욕심들도 대한을 위함이 아니나 그러하나 이는 인간의 자연한 정세”⁴⁾라고 하여 弱肉強食의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 이미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었으므로 스스로 개항장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⁵⁾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適者生存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 속에서 세계 형편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나라들은 “무수한 재물과 심력을 허비하여 날을 다투고 시를 아끼어 조금도 만족치 아니하고 나라를 발달하여 홍왕케 할 경영만 있는 까닭에 각종 학교를 많이 실시하여 인민의 학문과 지식을 넓히며 해륙군을 해마다 확장하여 나라 위엄과 상권과 백성의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등”⁶⁾ 세계 각국의 開明한 나라들은 모두 정치하는 도락을 가지고 있는데 大韓政府에서

4) 〈독립신문〉, 1898. 1. 22.

5) 〈독립신문〉, 1898. 6. 9. 「논설」

6) 〈독립신문〉, 1899. 2. 23. 「나라 등수」

는 과연 어떠한 도락을 가지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다.⁷⁾

즉, 英國은 “일개 섬나라요, 다른 나라와 같이 각종 천조물이 구비치 못한 까닭에 여러 가지 인조물을 극히 정교하게 제조하여 남의 나라 천조물과 바꿀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나라 물건과 재물만 가지고는 세계에 제일 부강한 나라가 못 될 줄 아는 고로 그 정교한 제조물을 가지고 천하 각국에 다니며 일년에 돈을 여러 億百萬元씩 수입하며 해군을 강하게 길러 바다 권리와 항구에서 무역하는 상권을 모두 영국 사람의 장중에 넣으려 하고 있으며”, 美國은 “본래 나라도 적지 않거니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육축과 백곡이 잘 되며 각종 천조물이 많은 고로 입국한 지 백여 년에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을 일삼지 않고 다만 편민리국할 신법을 창설하여 항상 새 땅을 개간하는 데 전심치지함에 미국의 흥성함이 만고이래로 통천하에 있지 아니한 바 되었으며 또한 미국이 강토를 넓힐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근처에 강한 이웃이 없는 고로 해륙군을 길러 방비할 것이 없은즉 이에 편안히 큰 대륙의 빈 땅에 거하여 법률을 세워 다스려 한 가지 안락태평함에 가히 극락세계가 되었으며”, 러시아는 “극북 광막한 땅에 처하여 지광이다 하고 정부대신들이 학문과 지식이 넉넉하며 국량이 매우 넓으나 무식한 백성이 많고 기후가 극히 한랭하여 황무한 땅이 절반이요, 사람들이 살기가 대단히 괴로운지라, 불가불 강토를 넓혀 좋은 땅을 많이 얻어야 가히 아라사가 세계에 횡행할 터인 고로 해륙군을 해마다 확장하여 새로 구라파 땅을 잠식하려다가 여러 강국들이 힘써 막는 고로 능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필경은 동양이나 점령하여 볼까 하여 혹 개명치 못한 나라의 권리를 농락하려 하고 있으며”, 日本은 “해마다 해륙군에 심역을 다하며 대한이 개명치 못하여 청국 속국이 되면 필경 다른 강한 나라에게 생김을 입어 동양 형세가 위태할 듯한 고로 갑오년에 청국을 치고 대한을 독립시켰으며 오늘날까지 정신을 가다듬어 서양 각국을 방어하며 동양을 보전하려”⁸⁾ 하고 있다는 것이다.

7) 〈독립신문〉, 1899. 2. 27. 「각국 도락」

8) 〈독립신문〉, 1899. 2. 27. 「각국 도락」

그러나 大韓의 현실은 “회 규칙이며 신문 규칙을 까다롭게 하여 아무쪼록 백성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말도 있고 밤낮 사면에 별교나 늘려 세워서 사람을 잡는다 하여 인심이 의구하게 하며 상소며, 고변이며, 익명서며, 재판이며, 사직으로 세월만 허비할 동안에 도적은 왕성하고 국재는 탕갈하고 외국의 수모는 첩첩이 자취하고 내정은 나날이 소요하니 다른 나라와 같이 큰 사업은 생각도 못하려니와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여 이 화려한 대한 천지의 위태함이 조석에 놓여 있음”⁹⁾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아가 朝鮮을 둘러싼 東洋의 情勢는 “서북으로는 아라사와 법국이 머리와 우편 팔을 잡아당기고, 동남으로는 두 다리와 왼편 팔을 일본이 잡아당기는 모양”¹⁰⁾으로, “만일 朝鮮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일을 안 하면 이 여러 크고 강한 나라 틈에서 나라를 보전하고 독립이 되어 전덜 수가 없는”¹¹⁾ “진실로 두려운 때”¹²⁾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 인식하에 국가간의 경쟁에서 힘이 곧 정의이므로 한국이 列強에 의해 植民地化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아직 植民地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列強으로부터 가해져 오는 外壓은 한국의 국가적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¹³⁾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신문〉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청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아라사나 똑같은 권리가 있고 다만 그 나라들만큼 힘이 없는지라, 나라가 힘이 없다고 그 나라 정정 방방한 권리까지 없다고 하여서야 법률상에 어찌 마땅하리요……대한국이 세계에 제일가는 나라들과 동등권리는 있고 아직 그 나라들만큼 열리지만 못한지라.¹⁴⁾

9) 〈독립신문〉, 1899. 1. 17. 「동서양 형세」

10) 〈독립신문〉, 1897. 10. 9. 「논설」

11) 〈독립신문〉, 1896. 8. 22. 「논설」

12) 〈독립신문〉, 1899. 3. 2. 「각국의 성쇠」

13) 朱鎭五,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p. 777.

14) 〈독립신문〉, 1897. 10. 26. 「논설」

라고 하여 大韓帝國이 獨立國家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大韓은 외양으로 볼 것 같으면 또한 당당한 제국으로 西洋諸國과 동등 모양이나 실상인즉 법률이 공평치 못하여 국세가 점점 빈약하고 민심이 해이하여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니 이것은 외양과 대단히 같지 아니할 뿐”¹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兵備를 갖추지 못한 한국과 같은 弱小國이 외국과 겨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만국공법이 대포 한 자루만 못한지라, 정치와 법률이 무엇이뇨 하며 혹은 이르되 대한민국은 제일 병비(兵備)가 없으니 어찌 외국과 다투리요 하니 이는 지각 없는 자의 말이라. 나라에 관계되는 것은 병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과 밖의 형세를 민첩하게 살펴 같지니 대개 싸우는 것은 나라 힘을 세운 뒤에 발동할 것이라. 가령 말할진대 강한 나라는 만국공법을 버리고 대포 한 자루만 쓸지라도 약한 나라는 만국공법을 쓰는 것이 관중할 바이로다.¹⁶⁾

라고 하여 힘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萬國公法을 外交에 활용하여 나라의 獨立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1880년대 중엽 한국이 列強에 의해 國權이 침해되고 萬國公法이 무시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에서는 1890년대에 이르러서도 국가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萬國公法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저 萬國公法은 어떤 한 나라가 타국과 분쟁을 갖게 되거나 이해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自國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自國을 防衛할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였다.¹⁷⁾ 그러나 <독립신문>에서는 단지 萬國公法에 들어 있는 ‘均勢’를 통해 제3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中立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

15) <독립신문>, 1898. 7. 14. 「이게 독립인지」

16) <독립신문>, 1898. 1. 20.

17) 李光麟, 「한국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p. 166.

왔던 것이다. 이것이 〈독립신문〉의 현실인식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독립신문〉에서는,

그런고로 조선이 이 가난한 처지와 같으니 아무쪼록 어느 나라를 편벽되게 교제를 한다든지 어떤 나라의 권리를 다른 나라보다 더 가지게 한다든지 누구에게 의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거르면 필경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새삼하고 시기하여 그 편벽되게 대접받는 나라와 시기하는 나라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지라, 만일 싸움이 나거르면 조선은 누가 이기든지 없어지는 날이니 그렇고 볼진대, 조선에 상책은 아무쪼록 조선 까닭에 다른 나라들이 싸움 아니하도록 일을 하여야 할지라.¹⁸⁾

라고 하여 偏重外交를 지양하고 列強에게 均霑利益을 부여함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列強들의 싸움을 미리 방지하고 나아가 朝鮮의 獨立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여러 列強들에게 利權을 골고루 분할함으로써 조선 내에 利害關係를 형성시켜, 조선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自國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입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

나. 각국의 국방에 대한 인식

〈독립신문〉에서는 日本과 구미제국의 文明開化의 한 요인으로서 전통적으로 武藝를 숭상하는 풍속과 발달된 軍事訓練術, 정밀한 軍事制度 등을 들고 있으나 대체로 國防力의 증가보다는 學問과 商業에 힘쓰는 편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1897년 1월 14일 〈독립신문〉 논설에서는 1897년도 日本의 예산편성에 있어 軍事費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고는, 日本이 현재의 군사력만으로도 東洋에서는 자체방위가 충분한데 막대한 軍事費를 증액하는 것은 일본을 세계상에 兵權이 강한 국가로 만들고 동시에 歐美諸國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軍費의 증가보다는 學問과 商業에 힘쓰는 것이 장차 日本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 〈독립신문〉, 1897. 8. 10. 「논설」

만일 일본이 삼십년 동안만 더 병이 있어 타국과 싸움 말고 학문과 상무를 힘써 세계 병권을 얻을 생각을 말고 상권을 얻을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일본 인민에게 크게 유조하고 동양 제국에도 호협이 있을 터이라. 총 가지고 얻는 영광과 힘 가지고 뺏는 권리는 나라마다 장구치 못하고 학문과 장사하는 권리 얻는 나라는 그 이익을 잃는 법이 없고 세계에 대접받고 친구 많이 얻기는 병권 얻는 나라보다 더한지라. 일본이 병권 가지고는 얻을 리가 적고 장사하는 권리 가지고는 리 볼 일이 다만 동양안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이 있으니 어찌하여 일본 정치가들은 이 생각을 아니하고 이렇게 큰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야 군함과 싸움하는 기계를 사 들이는지 알 수 없더라.¹⁹⁾

〈독립신문〉에 의하면 1897년 현재 日本의 軍事力은 “전국에 있는 상비 후비병을 합하여 근 오십만 명이요, 해군이 대단히 늘어 지금 세계에 넷째 가는 해군 강국이 되었고 근일에 영국서 새로 철갑선 두 척을 지어 왔는데 하나는 세계에 제일 큰 전함이요, 지금도 밤낮 짓는 것이 군함이요, 대포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해륙군을 확장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돈을 몇 억만원씩 들여 군비를 확장하여 외국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보잘것이 없을 것”²⁰⁾이라고 日本의 軍費擴張에 대하여 의구심과 함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독립신문〉에 의하면 현재 “세계 각국은 무예를 숭상하여 다투어 가며 빠른 군함과 편리한 대포를 준비하여 유사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²¹⁾ “한 나라가 군사 10만 명을 더 늘이면 또 한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늘이며 저 나라에서 무슨 편리한 병기를 만들면 이 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이롭게 만들어 밤낮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²²⁾고 한다. 또한 歐美洲 부강한 나라 군인들의 담대한 용맹과 활발한 기상이며 紀律의 엄숙함과 兵學에

19) 〈독립신문〉, 1897. 1. 14. 「논설」

20) 〈독립신문〉, 1897. 12. 28. 「논설」

21) 〈독립신문〉, 1898. 6. 4. 「여송 수전」

22) 〈독립신문〉, 1899. 3. 2. 「국가의 성쇠」

능통함을 칭찬하면서²³⁾ “태서 각국은 백성들이 士農工商 간에 다 武藝를 익히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독일·프랑스·러시아의 軍事制度를 소개하고 있다. 西洋 軍事制度의 특징은 군사가 곧 백성이요, 백성이 곧 군사로서 일찍이 군사와 백성을 두 가지로 마련치 아니한 고로 서양 각국에서는 무슨 환란이 있으면 국내의 백성들이 집마다 병정이요, 사람마다 군사라 그 技藝의 정미함과 위세의 웅장함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²⁴⁾ 특히 英國이 사방에 토지를 많이 점령한 것은 海軍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들은 商農 兩班을 의론치 아니하고 民兵을 뽑아 보국하며,²⁶⁾ 水陸軍의 정밀한 제도와 효용한 기예가 달마다 다르고 날마다 같지 아니하여 점점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²⁷⁾ 반하여 한국은 자고로 불행히 진당누설이나 승상하고 武器를 업수히 여겨 인민이 잔약하고 겁이 많아 몇 백년을 남의 나라의 공격만 받고 수치만 당하여 쓸데없는 큰소리만 할 줄 알되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쳐보지 못하였으며,²⁸⁾ 兵丁은 貧寒한 사람이 오늘 월급을 탐하여 병정노릇하다가 내일 그 자리를 팔고 나가며,²⁹⁾ 지형이 서로 같은 유럽의 이태리국의 陸軍은 30만명이 되는데 大韓의 海軍은 그림자도 없으며 이태리의 병함은 230척이 있는데 대한의 병함은 한 척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있다.³⁰⁾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陸軍을 擴張할 것과 國庫에 財政이 조금 퍼지거든 군함도 장만하고 海軍을 設施하고 정밀히 교련하여 남의 나라 해상에 떠다니며 순양도 하여 보고 남의 나라의 토지도 좀 얻어 보아 대한의 위엄도 세계 각국에 남과 같이 크게 떨쳐 보이도록 힘써³¹⁾ 앞으로 십년 후에는

23) 〈독립신문〉, 1899. 3. 30. 「군인의 책임」

24) 〈독립신문〉, 1899. 9. 8. 「군무론」

25) 〈독립신문〉, 1899. 9. 8. 「군무론」

26) 〈독립신문〉, 1898. 9. 21. 「유지각한 친구의 글」

27) 〈독립신문〉, 1899. 9. 8. 「군무론」

28) 〈독립신문〉, 1898. 7. 9. 「민권이 무엇인지」

29) 〈독립신문〉, 1898. 9. 21. 「유지각한 친구의 글」

30) 〈독립신문〉, 1899. 6. 19. 「지리의 이상함」

31) 〈독립신문〉, 1899. 9. 8. 「군무론」

日本으로부터 對馬島를 찾아오고 滿洲를 차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³²⁾

3. 국방관계기사의 검토

가. 군사에 대한 인식

〈독립신문〉에서는 “천하에 가히 백년을 군사를 쓰지 아니할지언정 또한 가히 하루라도 군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³³⁾라고 하여 軍隊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둥”, “난시에 나라를 보호하는 사람들”,³⁴⁾ “대군주 폐하의 보호병이요, 전국 인민의 의지하는 사람들”³⁵⁾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軍事와 財政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관과 힘줄에 해당하는 것³⁶⁾으로서 “백성들이 농사와 장사를 하여 정부에 돈을 내어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군사의 월급과 의복과 음식을 주시는 것인즉 군사는 곧 백성을 위하여 임군과 정부를 위하여 아무 때라도 죽을 일이 있으면 조금치도 지체없이 뛰어나가야 할 직무를 행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은 군사된 사람의 영광이라”³⁷⁾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軍人들은 그 말은바 책임이 다른 일반 관인들과는 달리 항상 황실의 고평이 되어 정치상 일에는 시비간 상관을 아니하고 판국 밖에 있으면서 병학을 연습하며 군물을 정예하게 예비하였다가 혹 나라에 변이 나서 국권이 위해로울 경우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위하여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워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려 가면서 나라를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로

32) 〈독립신문〉, 1896. 8. 4.

33) 〈독립신문〉, 1896. 7. 9. 「논설」

34) 〈독립신문〉, 1896. 7. 11. 「논설」

35) 〈독립신문〉, 1896. 7. 9. 「논설」

36) 〈독립신문〉, 1897. 11. 13. 「논설」

37) 〈독립신문〉, 1896. 7. 9. 「논설」

서 황실과 정부와 인민의 목숨이니 그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³⁸⁾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軍人은 나라의 기둥으로서 튼튼한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죽는 것을 두려워 아니하고 도망질 아니할 것
- 2) 상관의 명령을 추호라도 어기지 말 것
- 3) 몸을 정케 하여 몸에 병이 없이 할 것
- 4) 길에 다닐 때라도 몸을 정답게 가지고 음담패설을 아니하고 주색잡기에 범치 아니하며 백성의 물건을 추호라도 무리하게 건드리지 아니하고 인민들을 무단히 침범치 말 것
- 5) 영문 규칙을 자세히 알아 일호라도 범치 말 것
- 6) 동관들과 형제같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여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도와 주어 난시나 평시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여 조금치라도 사사협이가 없게 할 것
- 7) 상관을 규칙대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상관의 명예와 목숨을 언제든지 보호하여 주고 상관을 의지하기를 목숨같이 의지하여 만일 그 상관의 규칙에 있는 일을 명하거든 죽을 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곧 행하며 만일 어떤 상관의 규칙 외의 일을 행한다든지 무례한 일을 군사를 대하여 하든지 까닭없이 각박하게 대접을 하거든 당장은 아무 말도 말고 하라는 대로 하다가 조용히 상관에게 가서 제 소견의 말을 공손히 말하여 가부를 밝게 말하고 만일 그리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종시 그런 일을 행하거든 그 상관의 상관에게 고하여 법률로 다스리게 하고 결단코 상관을 욕을 한다든지 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이 할 것
- 8) 군사가 되어 더러운 것과 게으른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파수를 보든지 행진을 하든지 길에 그저 지나갈 때라도 몸을 엄숙히 가져 남이 보기에 도 위엄이 있게 몸을 가지고 의복과 군기를 아무쪼록 아끼고 정케 하여 남이 감히 웃는다든지 흉보지 않게 하고 머리도 정하게 깎아 남이

38) 〈독립신문〉, 1899. 3. 30. 「군인의 책임」

보기에 간단하고 정하고 날새 보여 남이 보면 두려워하고 군세계 보여
감히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행신을 할 것

9) 무슨 직무가 있든지 나라의 일이거든 좋든지 언짢든지 남에게 밀지 말고 먼저 그 일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였거든 공치사할 생각 말고 으레 할 직무를 한 것으로 생각할 것

10) 튼튼히 외국 물정을 듣고 배워 더 높고 큰 사람이 될 생각들을 할 것³⁹⁾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에 앞서 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敎育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지 못한 군사 백만 명은 교육받은 군사 천명에게도 지는 법이기 때문에 군사를 가르칠 때에는 技藝뿐만 아니라 군사의 행실과 마음과 몸 닦는 법을 함께 가르쳐야 참 군사가 되는 법이요, 군사라고 다만 技藝만 배워서 는 군사가 아니고 남의 흉내내는 원숭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⁴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군대는 保國之道의 근본⁴¹⁾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⁴²⁾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인식

1894년 봄 官軍은 東學農民軍에게 패배함으로써 그 무력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淸日戰爭 이후 獨立國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內亂을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軍事力을 보유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1897년 10월 大韓帝國이 성립되면서는 皇帝의 절대권 확보와 관련하여 그 물리력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군대 건설의 필요성은 황제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식인층에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독립신문>에서는 養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9) <독립신문>, 1896. 7. 9. 「논설」

40) <독립신문>, 1896. 7. 9. 「논설」

41) <독립신문>, 1898. 1. 20.

42) <독립신문>, 1897. 1. 12. 「논설」

국중에 소란한 일이 없게 하려면 튼튼한 군사가 있어야 할지라. 조선 사람들이 세계에 강병이 될 만한 것이 본래 사람들이 병학에 재주가 있는즉 군사 조련하는 일을 속히 배우고 또 조선 사람들이 본래 몸이 튼튼하여 청년이나 일본사람들보다 얼마큼 더 강하나 지금 군사가 외국군사만 못한 것은 장관이나 군사가 규모가 작이지 못한 까닭이라. 조선이 큰 군사는 두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강하고 규모 있는 군사를 두어 대군주 폐하의 성체를 염려없이 보호할 만하고 국중에 비도들이 없게는 하여야 할지라.⁴³⁾

나아가서는 “병함을 많이 제조하고 군사를 힘써 교련하여 한번 다른 나라와 같이 세계에 다니면서 위세를 자랑하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⁴⁴⁾ 강한 軍隊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朝鮮은 “토지는 삼천리요, 인구가 이천만이로되 탁지부의 세입이 6백만원이 못 되고 육군은 만 명이 되지 못하고 군함은 하나도 없는”⁴⁵⁾ 현실에서 “해륙군을 확장하여 나라의 위엄을 세계에 떨쳐 보고 싶어도 국재가 없어서 실현시킬 수 없는”⁴⁶⁾ 형편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세를 자랑할 생각을 먹기는 고사하고 흑간 인천바다 밖에 수상한 외국 배 한 척만 왔다는 소문만 있을 지경이면 관민간에 어떻게 방비할 경영은 당초에 아니하고 다만 36계 중에 제일 상책만 생각하는 현실에서는 비록 토지가 육대주의 반을 차지하고 군사가 몇 백만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에 대접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⁴⁷⁾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朝鮮은 “세계만국이 독립국으로 승인하여 주어 조선 사람이 어떤 나라에게 조선을 차지하라고 빌지만 아니하면 차지할 나라가 없는지라. 그런 고로 조선에서는 해륙군을 많이 길러 외국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까닭도 없고 다만 국중에 해륙군이 조금 있어 동학이나 의병 같은 토비나 진정시킬 만하였으면 넉넉할지라”⁴⁸⁾고 하여 지방 각처의 土匪를

43) 〈독립신문〉, 1896. 10. 24. 「논설」

44) 〈독립신문〉, 1899. 11. 11. 「논설」

45) 〈독립신문〉, 1899. 2. 18. 「신이 제일 보배」

46) 〈독립신문〉, 1899. 3. 20. 「교육할 일」

47) 〈독립신문〉, 1899. 11. 11. 「논설」

48) 〈독립신문〉, 1897. 5. 25. 「논설」

진정시킬 만한 軍事力만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朝鮮은 “타국과 싸울 일이 없으므로 많은 군대가 필요 없고 內地를 편안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나 다만 수효만 돌아보고 정예한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國財만 허비할 뿐이니 지금 5~6천 명에게 허비하는 돈으로 3~4천 명만 정예하게 가르치고 장관을 각별히 선택하여 기율과 호령을 엄숙히 하여 유사한 때에 의지할 만하야 정부를 튼튼히 하고 민심을 진위하면 충분하다.”⁴⁹⁾고 하여 군대의 少數精銳化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1898년 4월 러시아 군사고관 철수 이후 정부가 軍隊를 擴張⁵⁰⁾하려고 하자 당시 <독립신문>에 나타난 일반적인 여론의 방향은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⁵¹⁾ 그 이유는 지금 朝鮮에서 군사의 수는 3~4천 명이던 황실 호위와 인민보호에 충분하므로 새로이 軍事力을 강화하는 것은 급선무가 아니며 설령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군대로는 帝國主義의 침략을 방지할 그렇게 거대한 규모는 될 수 없고 다만 국내 亂黨을

49) <독립신문>, 1898. 10. 20. 「물나요씨 의견」

50) 1898년 7월 2일 정부는 ‘육군증설과 해군정제(定制)’에 관한 조칙을 내려 軍部로 하여금 상비군 준비와 육군 10개 대대 증설, 해군편제 방법 및 그 경비확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다(宋炳基 외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광무 2년 7월 2일, pp. 378~379).

51) 勉菴 崔益鉉은 1898년 11월에 올린 12조 시무책의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 군대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5營制로의 복귀와 지방의 節度使制度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軍法을 바로잡고 武備를 닦으십시오. 신이 생각하건대 나라에는 군사가 없을 수 없는데도 우리 나라에는 군사가 없고, 군사는 장차 쓸 데가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군사는 쓸 데가 없습니다. 대체로 군사관 병영에서는 장수에게 죽음을 바치고 陣地에 임해서는 적에게 죽을 것을 각오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군사는 그렇지 못하여 모두 親衛隊니 侍衛隊니 하는 이름이 있으며, 聖上으로부터 東宮에 이르기까지 都元帥니 元帥니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들이 모두 그들의 장수를 만만히 보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대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죄가 있어 매질을 하면 ‘반드시 내 몸애 ‘親’字와 ‘侍’字를 지냈는데 어찌 감히 매질하는가’라고 합니다.……신은 바라건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五營과 節度使의 제도를 복구하고, 親衛니 侍衛니 元帥니 하는 명칭을 없애고, 將帥들에게 각기 그 군사를 거느리되 生殺權을 전적으로 맡겨 技藝를 가르치고 忠義를 권장하도록 하여 위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보다 천만 다행함이 없겠습니다.”(『勉菴集』 권4, 再疏(1898년 10월)).

진정할 뿐이니 군대를 확장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教育에 투자하여 後生들을 잘 배양하면 富國強兵하는 책술이 자연히 그 가운데 있다는 주장에서였다.⁵²⁾

대신 〈독립신문〉에서는 獨立을 維持하기 위한 방안으로 軍事力を 強化하기보다는 “아무쪼록 외국들과 교제를 잘 하여 그 나라들이 조선을 두려워서 못 뺏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아니 빼앗게 방책을 세우고”⁵³⁾ “그 나라들이 조선을 침범치 못하도록 정이 생기게 하는 것이 육군을 많이 기르는 것보다 나은 확책이자 조선 정치상에 제일 긴요한 조목이라”⁵⁴⁾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에서는 軍費增強에 드는 예산을 教育에 투자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비에 지출하여 국민을 開化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교육 우선, 인재양성 우선을 내세우고 있다. 즉, 〈독립신문〉에서는,

대개 나라가 개명하고자 하면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만약 인재를 교육치 못하여 백성이 어둡고 새 학문을 배운 것이 없이 다만 구습만 좋아하면 비록 주야로 병정을 교련하고 각처에 광산을 설치하고 각 포구에 개항을 하여도 다 쓸데없고 나라 형세가 쇠약하여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는지라.⁵⁵⁾

라고 하여 조선이 현재의 殘惡한 형세를 면하고 開明進歩를 하기 위해서는 人材를 教育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학교를 널리 설립하여 인재교육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군사가 강할 수도 없거나와 설혹 강할지라도 사사로운 싸움에는 날래고, 나라 싸움에는 겁을 낼 터이니 그러한 군사는 쓸 데가 없다는 것이다.⁵⁶⁾ 즉, 〈독립신문〉에서는 현재 조선에는 비록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인재들을 교육시키지 못하

52) 〈독립신문〉, 1898. 7. 8. 「각국 어학교」; 8. 13. 「유지각한 친구의 편지」; 9. 13. 「여인 교육」

53) 〈독립신문〉, 1896. 8. 22. 「논설」

54) 〈독립신문〉, 1896. 12. 19. 「논설」

55) 〈독립신문〉, 1899. 5. 24. 「교육비 청구」

56) 〈독립신문〉, 1899. 6. 28. 「학도는 개명의 기초」

여 開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삼십 년 전에 극히 쇠미하던 日本은 일찍이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지금은 東洋諸國 중에 제일 開化되어 國富兵強하고 인민이 태평하게 되었다고⁵⁷⁾ 인식하여 日本의 近代化의 성공 요인으로 人材教育을 들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인재교육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⁵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自主獨立을 목표로 투쟁해 온 <독립신문>이 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軍事力의 強化를 반대하고 東學이나 義兵 같은 土匪를 진정시킬 정도의 軍事力만 유지할 것을 주장한 것은 軍事力 增強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시의 제반 국가운영이 借款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軍事力의 增強은 國家財政의 과탄을 가져와 오히려 독립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신문>에서는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列強과의 外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교력의 직접적 힘의 바탕이 되는 군사력 강화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⁵⁹⁾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상 軍事力의 強化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

다. 외국군대의 조선주둔에 대한 인식

<독립신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軍隊가 朝鮮 內地에 와서 있는 것은 獨立國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 큰 부끄러움이라고⁶⁰⁾ 주장하고 있으나 1897년 3월 11일자 논설에서는 外國 軍隊의 朝鮮駐屯을 인정하

57) <독립신문>, 1898. 9. 19. 「유지각한 친구의 글」

58) 李萬甲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신문> 154편의 표본 논설 가운데에서 目標로서 강조된 최고의 價値는 忠君·愛國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빈번히 내세우고 있는 目標의 가치는 學問의 發展과 生活의 合理化,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教育이라고 한다. 즉, 教育은 徐載弼이 愛國愛族 다음으로 강조한 가치이지만 서재필이 떠난 뒤에도 그것은 계속 강조되었다고 한다.(李萬甲, 「독립신문에 표시된 價値觀念」,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pp. 605~607)

59) 崔德壽, 「독립협회의 정체론 및 외교론 연구-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정치사연구』, 1985, 사계절, p. 333.

60) <독립신문>, 1896. 5. 28. 「논설」

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조선이 자주독립을 하려면 외국군사가 국중에 없어야 할 터인데 조선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로운 줄은 모르고 외국 사람을 경계없이 해하며 국중에 내란을 지어 나라에 소란하게 하는 까닭에 외국병정들이 와서 있게 되니 이것은 외국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자기 발등을 때리는 까닭이라. 그러하기에 아라사와 일본이 암만 약조를 하고 암만 조선일을 관계하려고 하더라도 조선서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일만 잘하여 갈 것 같으면 외국이 다 저절로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대접할 터이요, 외국에 치소받을 일이 도무지 없을지라.⁶¹⁾

즉, 외국 군대가 조선에 駐屯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警察과 軍隊가 在韓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東學이나 義兵 같은 국내 變亂을 진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인이 합심하여 전국에 亂이란 것이 없도록 하고, 내외 국민이 밤중에 무인지경을 가더라도 염려가 없으며 능히 보호하여 줄 힘이 있도록 만들면 외국군대는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²⁾

한편, 外國人의 願入에 대하여 〈독립신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선에 선생노릇할 사람들이 없으므로 불가불 외국인을 願入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願入하여 일을 하게 하는 데는 “첫째 학문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둘째로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이 한국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고, 셋째로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일을 잘 알고 시행해 주어야 효험이 있을 것이며, 또한 외국인을 고임하여 언제까지나 외국인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배워서 외국인들의 도움이 없어도 지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⁶³⁾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신문〉에서는 1896년 10월의 러시아 軍事教官 派遣에 대하여 軍事教官 派遣의 경위와 閔泳煥의 업적을 찬양하고,

61) 〈독립신문〉, 1897. 3. 11. 「논설」

62) 〈독립신문〉, 1898. 4. 14. 「논설」

63) 〈독립신문〉, 1897. 10. 23. 「논설」

“아라사 정부에서 정령 하나와 위관 둘과 하사 열을 조선정부에 빌려 조선 육군과 무관학도들을 가르치니 우리가 바라건대 외국군제들을 배워 외국과 같이 장관과 병정들이 규모 있고 용맹 있게 되어 위로는 임금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전국 인민을 안돈하야 국민이 태평하게 되기를 바라노라”⁶⁴⁾라고 하여 러시아敎官에 의한 朝鮮軍의 훈련이 國王의 신변보호와 國內變亂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러시아 軍事敎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897년 10월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1897년 10월 23일 <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지금 시위대 병정들을 아라사 사관들이 가르쳐 군사들이 매우 이왕보다 정밀히 되었는지도 모르거니와 만일 정밀히 되었으면 한국 사관들이 속히 교육을 하여 이 아라사 사관들 고입한 연한이 찬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도 본국 사관들이 능히 그 사람들만큼 군사를 조련하게 되어야 한국이 외국 사관없이 군사를 남의 나라만큼 기를 날이 있을 터이라”고 하여 러시아 軍事敎官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897년 2월 20일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高宗이 還宮한 이후 大韓帝國이 선포되고 친러 수구파 정권이 수립되어 이들에 의하여 일련의 개혁정책이 진행되어 가면서 <독립신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논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898년 3월 22일자 논설에는 外國士官에 대한 반대와 各部 顧問官에 대한 반대의 글이 실리고 있다.

대법 군제라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손톱과 어금니 같은지라. 손톱과 어금니를 능히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부리는 바이 된즉 그 스스로 호위하기를 바라기 어려운지라. 돌아간 을미년에 우리 나라의 군사가 일본 사람의 돈 바이 돼야 마침내 창을 거꾸로 잡아 후를 시한 변에 이르는 남의 절제를 받는 데서 난 것이니 어찌 가히 다시 다른 나라 사관을 써서 우리 나라 군사를 절제케 하오리까…… 외국 정치와 규모를 만드시 행한 연후에 나라가 가히 부강하고 백성이 가히 치안하겠은즉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배워서 행하는 것이 같지 아니할 바이 없을 터인데 어찌 만드시 외국사

람으로써 각부 고문관을 시켜 우리 나라 관인들을 천단히 제어케 하는지 이것은 신 등이 알지 못할 바이며 서울 안에 가히 외국군사 있는 것을 허락치 못하겠는데 어찌하여 갑오 이후로 임의로 횡행케 하여 안으로 우리 나라 사람의 의심과 두려움을 불어나게 하며 밖으로 각국 사람의 본받는 것을 이루게 하는지.

이어 1898년 3월 31일자 〈독립신문〉에는 大韓帝國의 자주독립을 부정하는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지목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글이 실리고 있다.

갑오년 경장한 이후로부터 각부에 외국 사람을 고립하여 모르는 사무를 맡기니 이 일이 비록 나라 권리에 큰 관계는 없다 하나 또한 좋은 일이라고 이를 것은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을 우리가 못하고 남을 청하여 사무를 책임시키니 어찌 좋다 이르리요. 그러나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우리 나라 인심이 안연하더니 상년 이후로 아라사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 나라 탁지와 군부에 고립한 후로부터는 비단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전국 인심이 흥흥하여 사람마다 마음이 싫고 겁들을 내니 그 일이 매우 이상한지라. 다른 나라 사람을 고용하기는 일반이거늘 어찌하여 그전에는 말이 없다가 지금은 시비가 분등한지 의심이 나는 일이라……지금 영국이나 일본은 우리 사랑하여 보호하려는 인정은 없으나 토지와 인민을 욕심내어 삼키려 하지는 않거니와 아라사는 시비를 불계하고 저의 위력만 믿어 우리를 압제하고 인정없이 마구 뺏으려 하니 세계 인종 중에 비유하면 곧 시랑이라. 우리 나라에서 시랑을 청하여다가 두고 군사자투와 재물권리를 주었으니 어찌 겁내고 싫은 마음이 없으리요.

위 논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外國人을 顧入하여 各部의 사무를 돌보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英國人과 日本人을 고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가 러시아인이 度支部와 軍部の 顧問을 맡은 이후로는 獨立協會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大韓帝國을 강탈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인에게 맡긴 度支部顧問과 軍部顧問은 반드시 그 권리를 조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1898년 4월 12일 러시아 軍事顧問과 財政顧問은 집단으로 사직을 하고 韓露銀行도 개점한 지 1개월 반 만에 폐쇄되었다.

4. 결 론

〈독립신문〉에서는 당시의 세계질서를 社會進化論이 보편화됨으로써 ‘弱肉強食’·‘適者生存’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시대로 인식하고 獨立을 유지하기 위해서 自強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自強을 이룩할 수 있을 때까지 國權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였으며 國權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軍事力이 확보되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독립신문〉에서는 여러 번의 논설을 통하여 끊임없이 軍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구미제국의 武藝를 숭상하는 풍속과 발달된 군사조련술, 정밀한 軍事制度 등을 文明開化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신문〉에서는 日本이나 歐美諸國의 軍費增強을 의심의 눈으로 비판만 하고 있을 뿐 그 위험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총 가지고 얻는 영광과 힘 가지고 얻는 權利는 오래 가지 못하고 學問과 장사하는 권리를 얻는 나라는 그 이익을 잃는 법이 없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접받으므로 세계 각국은 國防力의 증가에 힘을 쓰기보다는 學問과 商業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19세기 말 帝國主義 시대에 있어서 〈독립신문〉의 현실인식의 한계성을 뚜렷이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서는 國王의 신변보호와 國內變亂의 방지를 위하여 큰 軍事는 두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강하고 규모 있는 軍隊를 養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自主獨立을 목표로 투쟁해 온 〈독립신문〉이 軍事力 增強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제반 국가운영이 借款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軍事力 增強이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와

오히려 독립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에서 군사의 수는 3~4천 명이면 황실호위와 인민보호에 충분하므로 새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급선무가 아니며 실령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軍隊로는 帝國主義의 침략을 방지할 만한 그렇게 거대한 규모는 될 수 없고 다만 국내의 亂黨을 진정할 뿐이니 군대를 확장하기보다는 教育豫算의 증가를 통한 人材養成과 列強 간의 勢力均衡을 유지하여 獨立을 유지하려는 中立外交論을 강조하였다.

大韓帝國 軍事訓練 體系에 대한 一考察

—《步兵操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徐 仁 漢

(國防軍史研究所 先任研究員)

1. 머리 말
2. 《步兵操典》編纂의 背景
3. 《步兵操典》의 主要內容 分析
4. 맺 음 말

1. 머리 말

조선이 1876년 개항 이후로 혼란한 정세 속에서 외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를 손꼽는다면 그것은 軍事制度일 것이다. 일본·러시아를 비롯한 침략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측의 첨예한 갈등이 결국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그 군사력은 곧 軍事制度의 運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이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기까지 20여 년 간 군사제도는 조선의 전통군제와 새로 도입되는 외국 군제가 교체 혹은 혼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효과적인 훈련체제로 정비되어 軍事敎理로 확립된 理論體系가 바로 이 당시의 ‘軍事敎範’인 것이다.

오늘날 군사교범은 대체로 戰術學·火器學·學術學 등으로 분류되는데,¹⁾ 이 논문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步兵操典》은 전술학에 해당하는 교범이다. 특히 火器學 분야의 교범인 《兵器學教程》(연대 미상), 《射擊教範》(1900), 《步兵射擊教範》(1900 ?)을 분석한 연구성과가 있는데,²⁾ 이는 대한제국 시기 軍事教範類를 분석한 연구가 부실한 실정에서 매우 주목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교범 이외에도 대한제국의 군사훈련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戰術學教程》(1902), 《軍制學教程》(연대 미상), 《兵器學教程》(연대 미상), 《築城學教程》(연대 미상), 《地形學教程》(연대 미상), 《陸軍衛生學教程》(연대 미상), 《馬學教程》(연대 미상), 《體操教範》(연대 미상), 《軍隊內務書》(1900) 등과 같은 비교적 다양한 군사교범류가 대한제국 시대에 편찬 간행되었다.⁴⁾

이 중에서도 《步兵操典》은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듬해(1898) 6월 이전에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한제국시대 교범들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 《步兵操典》은 1898년 6월 25일에 '改正 第1號'로 간행된 것이며, 그 시기도 러시아 군사교관단이 본국으로 귀국하던 1898년 3월을 전후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車文燮 교수는 “필자가 접한 군사관계 서적으로는 가장 오랜 것이며, 실제 軍事運用의 基本이 되는 것이므로 가장

1) 林在讚, 〈舊韓末 軍事教範〉, 《3土官學校 論文集》 제26집, 1988, p. 72.

2) 林在讚은 이 논문 결론에서 《射擊教範》과 《步兵射擊教範》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3) 林在讚, 〈舊韓末 軍事教範〉, 《3土官學校 論文集》 제26집, 1988.

4) 車文燮, 〈舊韓末 陸軍武官學校研究〉, 《亞細亞研究》 제50호,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p. 194~201;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 출판부, 1996, pp. 320~332.

그런데 이러한 교범류들은 대체로 러시아나 독일·일본의 근대적 군사학을 도입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주로 프랑스 군사학을 도입하였으므로, 결국 대한제국은 러시아 외에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교리를 도입하여 이용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무 6년(1902)에 발간된 《戰術學教程》의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佛國 聖西爾兵學校 戰術學教程, 基本戰術(일본국 육군대학교 독본), 德國 戰術學教程, 德國 戰略學, 德國 陸軍士官學校 戰術學教程, 帥兵術(일본국 육군대학교용), 澳國 陸軍士官學校 戰術學教程(車文燮, 〈舊韓末 陸軍武官學校研究〉, pp. 194~195; 《朝鮮時代 軍事關係研究》, pp. 320~321).

먼저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⁵⁾고 《步兵操典》의 刊行時期 및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步兵操典》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大韓帝國軍의 訓練體系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國軍의 訓練體系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확인해 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國軍이 大韓帝國軍의 正統성을 계승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步兵操典》編纂의 背景

조선은 1876년 개항 이래 서구의 과학기술을 접하면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 12월에 군령기관인 三軍府를 혁파하고 軍務司를 설치하는 등의 군제개편에 눈을 돌리는 가운데, 1882년 임오군란 이후로 도입되기 시작한 淸國式 軍制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⁶⁾ 그 후 1887년 12월에는 다시 ‘鍊武公院’을 설치하여 美國式 軍事訓練을 실시하는 등⁷⁾ 신식군제를 도입하여 조선의 구식군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기술과 자금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전통적 군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⁸⁾ 결국 조선은 天津條約 이후로 청·일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군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청·일전쟁에 戰場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인 1894년 7월부터 시작된 ‘甲午改革’으로 6曹가 폐지되어 兵曹가 軍務衙門으로 개칭되었으나, 이때도 명칭이나 바꾸는 정도의 형식적인 개혁에 그치는 문제점을 남겼다.

5) 車文燮, 〈舊韓末 陸軍武官學校研究〉, p. 198의 주 72;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p. 326.

6) 이 무렵의 군제변천 상황은 崔炳鈺의 〈開化期의 軍事政策 研究〉(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87)가 주로 참고된다.

7) 李光麟, 〈美國 軍事教官의 招聘과 鍊武公院〉,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5.

8) 金泳鎬, 〈韓末 西洋技術의 受容〉, 《亞細亞研究》 제3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pp. 319~322, 342~343.

그 후 본격적인 군제개혁이 시작되는 것은 1895년 이른바 ‘乙未改革’으로부터였다. 3월 1일 지방 수륙군의 최고 지휘관인 5 留守·各道 觀察使·기타 水陸軍의 주요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兵符’를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명령 지휘체계가 정지된 것을 시작으로 개혁작업이 본격 추진되었다.⁹⁾ 이어 윤5월 9일에는 烽燧臺와 烽燧軍을 혁파함으로써 재래식 군사 신호 체계인 烽燧制度를 폐지하였다.¹⁰⁾ 그리고 7월 15일에는 각도의 兵營과 水營, 鎭營, 鎭堡 등에 대한 폐지령이 한꺼번에 하달됨으로써 조선의 전통적 군사력이 붕괴되어 ‘軍事力 空白’ 상태에 직면하였다.¹¹⁾ 이와 같이 갑오·을미년 간에 추진된 이른바 ‘軍制改革’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조선의 구식군제를 서둘러 폐지함으로써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나 ‘軍事力의 空洞化 現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訓練隊’가 1895년 1월에 근대화된 군사력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친일적 성향이 강하여 국방군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결국 ‘乙未事變’에 연루되어 1895년 9월에 폐지되고 말았다.¹²⁾ 그리하여 1896년 2월 ‘俄館播遷’ 이후로는 러시아식 군제를 도입하여 새로이 군사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1896년 2월의 아관파천 직후인 4월 22일에는 親衛大隊를 통합하여 親衛 1聯隊를 편성하는 등 중앙군에 대한 개편작업이 전개되고, 지방에서는 5

9) 《日省錄》高宗 32년 3월 1일.

10) 《高宗實錄》권33, 高宗 32년 윤5월 9일.

11) 《日省錄》高宗 32년 7월 15일, 〈칙령 제140호〉, 〈칙령 제141호〉, 〈칙령 제142호〉.

12)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黃炳茂의 〈日本이 施行한 軍制改革과 京軍〉(《論文集》 제5호, 육군사관학교, 1967)이 주목되며, 林在讚의 〈訓練隊 士官養成所에 대한 一研究〉(《3士論文集》 제18집, 陸軍 第3士官學校, 1983)도 참고된다.

13) 러시아 군제를 도입하게 되는 背景에 대하여는 高柄翊의 〈露皇戴冠式에의 使行과 韓露交涉〉(《歷史學報》 제28집, 1965)와 《國譯韓國誌》(러시아 大藏省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1984), pp. 678~681, 鄭求福, 〈甲午改革 以後의 新軍制〉(《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 篇, 육군사관학교, 1977, pp. 373~379)가 주로 참고된다. 그리고 1994년에는 러시아 군제 도입과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李玟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가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월 30일에 각 지방의 구식군인(舊額兵)들을 ‘地方隊’로 편성하는 작업이 9개 지역에서 추진되었다.¹⁴⁾ 8월 26일에는 4개 군에 지방대가 추가로 설치되기도 하나 불과 1개월 만인 9월 24일에는 이들을 포함한 7개 지방대 편제가 폐지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기도 한다.¹⁵⁾

이러한 와중인 10월에 러시아 軍事 敎官團이 입국하여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1896년 10월부터 러시아 교관 10여 명을 초빙하여 러시아식으로 훈련을 실시한 결과, 1897년 3월에는 1천 명의 ‘侍衛隊’가 편성되어 중앙군의 주력이 되었다.¹⁶⁾ 親衛隊에서 차출된 이들을 ‘侍衛隊’로 명명한 것은, 고종이 慶運宮(현 덕수궁)으로 돌아온 지 1개월 후인 1897년 3월이었다. 그리고 정예병을 차출당한 친위대는 220명이던 1개 대대 정원이 4월 4일에 170명으로 축소 재정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지방군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도 착수하여 6월 14일에 8개 지역에 地方隊 5천여 명을 편성하였다.¹⁷⁾ 그리고 중앙군의 일부인 扈衛軍이 宮內府 侍從院 소속으로 6월 30일에 편제되었다가¹⁸⁾ 11월 14일에 ‘扈衛隊’로 개칭되면서 정원 732명으로 확정되었다.¹⁹⁾

이와 같이 새로운 部隊들이 창설되거나 기성부대들이 改編 혹은 再編成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어 가자 1898년 1월 26일에는 中央軍과 地方軍을 旅團으로 편성하라는 황제 지시가 軍部에 하달되었다.²⁰⁾ 이는 아마도 1897년 10월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이후로 그에 걸맞

14) 《高宗實錄》 권34, 建陽 元年 5월 30일.

15) 《高宗實錄》 권34, 建陽 元年 9월 24일.

16) 《國譯 韓國誌》, p. 679.

鄭求福, 〈甲午改革 以後의 新軍制〉, pp. 375~376.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 국회도서관, 1970, p. 215.

17) 《舊韓國官報》 5, 제664호, 建陽 2년 6월 16일.

18) 《日省錄》 光武 元年 9월 12일.

19) 《舊韓國官報》 5, 제799호, 光武 元年 11월 20일, pp. 733~734의 병졸 ‘584명’은 ‘684명’의 오기이며, 합계 632명도 732명의 오기로 밝혀졌다. 이에 군부에서는 6월 1일부로 의정부 참서관 조병규에게 공문을 보내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軍部來文》(奎, 17786) 제3책, 光武 2년 6월 8일).

20) 《高宗實錄》 권37, 光武 2년 1월 26일.

는 군대규모로 확대 재편성하려는 황제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짐작된다.²¹⁾ 2월 9일에 군부대신 李鍾健이 軍隊病院의 설치를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고종은 대한제국군의 훈련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우선 러시아 교관에 의한 그간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대한제국 장령들이 훈련을 전담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독립협회측이 종로에서 개최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건의된 러시아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의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을 수용하여 3월 12일부로 공사관측에 해임을 통보하고 이들의 출국에 즈음하여 24일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칙을 하달하였다.²³⁾

“군사제도라는 것은 오직 지시를 분명히 하고 부대편성을 정연하게 하는데 있다. 러시아 사관이 병사를 교련한 지가 이미 몇 해가 되어 기예가 숙련하여 성과와 노고가 매우 많아 짐이 아주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이제 모두 출국하게 되었다. 각 장령들은 마땅히 규정대로 더욱더 연마해서 조금도 해이함이 없어야 하며 軍容을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을 군부에 신칙한다.”

즉 러시아 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대한제국 將領들이 부대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여 군대의 위용을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대한제국 將領들이 군대훈련을 전담하여 러시아 교관들이 지도할 때와 다른없는 훈련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97년 2월부터 5월까지 5명이 임관한²⁴⁾ 이후로 유명무실하던 무관학교를 1898년 5월 14일에 관제를 개정(칙령 제11호)한 다음, 7월에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도²⁵⁾ 우수한 무관을 양성함으로써 러시아 교관들이 지도

21) 그러나 이때 지시대로 여단 편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여단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를 지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2)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p. 335.

23) 《高宗實錄》권37, 光武 2년 3월 24일.

24) 林在謙, 《舊韓末 陸軍武官學校 研究》, 第一文化社, 1992, 〈附錄〉 pp. 163~171.

25) 車文燮의 《舊韓末 陸軍武官學校 研究》가 주요 연구로 참고된다. 《亞細亞研究》 제50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상태를 유지하거나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훈련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당시에 간행된 군사교범이었다. 러시아식 군사훈련이 한창이던 1897년 전반기에 이미 러시아의 군사교범들이 러시아 교관의 지도 아래 한글로 번역되었다. 러시아군의 《內務教範》이 번역되어 보급되었고,²⁶⁾ 이 밖에도 신병 훈련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범들이 번역되어 훈련지침서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⁷⁾ 당시 宮內府 特進官 閔泳駿은 대한제국군의 훈련을 외국 군사교관들에게 위탁한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통하여, ‘각국 훈련기법의 장점만을 선택한 후 이를 한 通으로 編輯하여 대한제국의 口令으로 가르친다면 단기간에 많은 정예군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훈련교범 편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⁸⁾

3. 《步兵操典》의 主要內容 分析

1898년 3월에 러시아 교관들이 해임되어 귀국한 후로 대한제국 장령들을 교관으로 하여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훈련의 표준이 될 만한 군사교범을 편찬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되었다. 그 결과 1898년 6월 25일에 《步兵操典》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이때 간행된 《步兵操典》의 內表紙에 ‘步兵操典 改正 第1號’라고 인쇄된 것으로 보아 언젠가 앞서 간행되었던 《步兵操典》의 내용을 개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步兵操典》에는 그 당시 대한제국이 지향하는 군사훈련의

호, pp. 182~184;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pp. 301~304). 林在讓, 《舊韓末 陸軍武官學校 研究》 p. 22.

26) 光武 4년에 간행된(제1판) 교범인 《軍隊內務書》는 이 《內務教範》의 영향을 받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27) 《國譯韓國誌》, p. 679.

28) 《高宗實錄》 권36, 光武 元年 11월 13일.

29) 이 《步兵操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藏書番號 015015)된 것으로, 군부대신 副將 閔泳綺가 光武 2년(1898) 6월 25일에 ‘改正 第1號’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이론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步兵操典》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 대한 제국이 열강의 근대적 軍事敎理를 자주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이 정립시킨 군사훈련 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일제의 영향력이 심화되는 1904년 러·일전쟁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強軍 育成에 중요한 지침서로 기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1898년 6월 25일 간행된 이 《步兵操典》은 다음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7개 항목이 총칙과 제1·2부, 그리고 附錄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핵심내용은 다시 제1부 ‘基本敎練’ 220개 항목과 제2부 ‘戰鬪’ 125개 항목으로 양분되어 있다. 제1부와 제2부의 345개 항목에서 ‘基本敎練’이 차지하는 비중은 63.77%로 ‘전투’의 36.23%에 비하여 무려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이 《步兵操典》의 성격이 戰鬪敎範이기보다는 병사들의 기본 훈련인 制式訓練에 중점을 두고 편찬된 교범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부대를 새로 창설하고 여기에 열강의 신식 군사교리를 도입하여 훈련 시켜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선 기본훈련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步兵操典》을 간행하는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칙 제1에서 “교련의 주요한 의도는 지휘관 및 병졸을 훈련하여 전쟁에 이용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제반 연습을 전쟁에 적합케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2에서 “중대장 이상의 諸隊長은 操典을 遵奉하여 그 부하를 교육하는 책임이 있으니 그 교육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타인의 견제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³¹⁾ 즉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부하를 교육시키는 데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이 《步兵操典》을 교범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30) 林在贊은 무관학교의 교재용 군사교범이 구한말 각종 부대에서 훈련하는 데 필요한 군사교리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시기 군사교리에 대한 연구는 기본자료가 비교적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舊韓末 軍事敎範〉, p. 72).

31) 《步兵操典》, pp. 1~2.

《步兵操典》 목차 일람표(1898. 6. 25. 간행)

		總	則
第 1 部 基 本 教 練	제 1 장 各 個 教 練	總 則	
		徒 手 教 練	不 動 姿 勢, 轉 回, 行 進
		執 銃 教 練	銃 的 操 法, 銃 創 的 着 脫, 裝 填, 彈 丸 抽 出, 射 擊, 執 銃 行 進 襲 步
		散 兵 教 練	行 進 및 停 止, 射 擊
	제 2 장 小 隊 教 練	總 則	
		密 集 隊 次	小 隊 的 編 制, 整 頓, 小 隊 的 背 面 向, 銃 的 操 法 及 銃 創 的 着 脫, 結 銃 及 解 銃, 裝 填, 射 擊, 橫 隊 的 正 面 進 行, 斜 行 進, 驅 步 襲 步, 小 隊 的 停 止, 行 進 間 的 背 面 向, 退 步, 方 向 變 換, 側 面 行 進, 側 面 行 進 間 伍 的 分 解 及 重 複, 伍 伍 方 向 變 換, 停 止 及 正 面 向, 行 進 間 右(左)向, 側 面 縱 隊 로 橫 隊 와 橫 隊 로 側 面 縱 隊 에 移 轉, 二 列 로 一 列 과 一 列 로 二 列 에 移 轉, 解 列 及 聚 立
		散 開 隊 次	散 開, 散 兵 線 的 運 動, 散 兵 線 的 射 擊, 聚 立 及 併 聚 立
	제 3 장 中 隊 教 練	總 則	
		密 集 隊 次	橫 隊 的 編 制 及 區 分, 整 頓, 背 面 向, 銃 的 操 法, 橫 隊 的 運 動, 側 面 縱 隊, 中 隊 縱 隊 的 編 制, 橫 隊 로 中 隊 縱 隊 에 移 轉, 半 中 縱 隊 에 編 制, 中 隊 縱 隊 와 半 中 縱 隊 로 橫 隊 에 移 轉, 中 隊 縱 隊 로 半 中 縱 隊 와 半 中 縱 隊 로 中 隊 縱 隊 에 移 轉, 側 面 縱 隊 로 中 隊 縱 隊 及 半 中 縱 隊 와 中 隊 縱 隊 及 半 中 縱 隊 로 側 面 縱 隊 에 移 轉, 中 隊 縱 隊 及 半 中 縱 隊 的 運 動, 方 陣, 射 擊
		散 開 隊 次	散 開 及 散 兵 線 的 運 動, 射 擊, 散 兵 線 的 增 加, 援 隊, 突 擊, 聚 立 及 併 聚 立

第 1 部 基本教練	제 4 장 大隊 教練	總 則	
			大隊의 基本隊形, 整頓, 銃의 操法, 一의 隊形으로 他隊形에 移轉, 同一의 隊形으로 間隔距離에 開閉, 基本隊形의 運動, 戰鬥展開
	제 5 장 聯隊 教練	總 則	
	제 6 장 旅團 教練		聯隊의 聚立隊形, 聚立隊形의 運動, 戰鬥展開
			旅團의 聚立隊形, 聚立隊形의 運動, 戰鬥展開
第 2 部 戰 鬪	제 1 장 普通 原則	緒 言	
			練兵場의 效用, 散開隊次及密集隊次, 散開戰鬪, 諸兵種에 對한 動作, 工具의 使用,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 動作, 戰鬪正面及梯隊區分, 攻擊及防禦
	제 2 장 部隊 戰鬪		中隊戰鬪, 大隊戰鬪, 聯隊戰鬪, 旅團戰鬪
	제 3 장 結 論		
附 錄	軍 旗 迎 送	總 則	
			軍旗의 奉迎, 軍旗의 奉送, 軍旗奉持法及其敬禮
	軍 刀 持 法		

《步兵操典》의 제1부 ‘基本教練’의 내용을 각 장별 항목과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분석해 보면 大韓帝國軍의 訓練 重點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 小隊教練이 36.36%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제1장 各個教練과 제3장 中隊教練이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 大隊教練과 제5·6장의 聯隊·旅團教練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아서 교범으로서의 구색을 갖추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

인다.

제1장 各個教練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칙에 “각개교련은 부대교련의 기초인데 체조를 보조하며 정밀 엄격하고 용의주도한 교수를 필요로 하니 이 各個教練이 완전해야 비로소 部隊教練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19개 항으로 구성된 徒手教練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자세·방향전환·이동에 있어서의 종류별 기본자세와 구령(호령) 등을 설명한 것인데³²⁾ ‘앞으로 가’ ‘左(右)向 앞으로 가’ ‘뒤로 가’와 같은 구령은 오늘날 國軍의 제식훈련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執銃教練은 28개 항으로 구성되며 도수교련을 숙달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총기 휴대법, 총검의 탈착, 실탄의 장전 및 추출, 사격 등 총기와 직접 관련된 동작의 요령과 구령 등을 기술하였다.³³⁾

‘基本教練’의 내용별 항수와 비율표

각 장 구분	항 수	비 율(%)
제 1 장 각 개 교 련	62	28.18
제 2 장 소 대 교 련	80	36.36
제 3 장 중 대 교 련	46	20.90
제 4 장 대 대 교 련	22	10.00
제 5 장 연 대 교 련	6	2.72
제 6 장 여 단 교 련	4	1.81
합 계	220항	100%

여기서도 ‘받들어 銃’ ‘세워 銃’과 같은 용어들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세기 말의 대한제국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이 1세기가 경과한 오늘날 國軍의 군사훈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散兵教練은 14개 항으로 구성되며, 新兵에게 地形을 이용하여 野戰에서 행진·정지·사격 등을 숙달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앞의

32) 《步兵操典》, pp. 8~21.

33) 《步兵操典》, pp. 21~45.

집중교련을 숙달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³⁴⁾

제2장 小隊教練은 總則·密集隊次·散開隊次로 구성되는데, 중대교련의 일부로 중대에 편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훈련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소대훈련에서 가장 큰 비중(62.50%)을 차지하는 것이 밀집대차로서, 소대의 편제에서부터 소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방향전환, 이동과 정지 등을 숙달시키는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⁵⁾ 여기에도 ‘左(右)로 나란히’ ‘바로’ 등과 같은 낱어는 용어들이 보이고 있다. 산개대차는 밀집대차에 절반 정도의 비중(33.75%)인 27항목으로 구성되며, 산병의 행동요령과 훈련에 필요한 구령 등을 명시하였다.³⁶⁾

제3장 중대교련은 앞장의 소대교련과 동일하게 밀집대차와 산개대차로 구성되는데, 기본교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개 항목에 20.90%로서 소대교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런데 중대교련에서 밀집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서 33개 항목에 71.74%에 이른다.³⁷⁾ 이는 대한제국이 부대편성의 기본단위를 ‘中隊’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실례이다. 앞의 소대교련에서 밀집대차의 비중이 높았던 것도 실상은 중대교련 밀집대차의 예비단계로서의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대교련의 밀집대차에서는 소대교련의 밀집대차에서 볼 수 없었던 3가지 형태의 隊形을 圖形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다. 즉 4개 소대를 1중대로 편성하되, 횡대로 정렬한 4개 소대를 우측의 1소대부터 좌측의 4小隊까지 소대간 각각 약 2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횡대로 정렬시키는 것을 ‘中隊橫隊’라 하고, 앞뒤 거리 6보를 유지하여 각각 횡대로 정렬한 4개 소대가 앞의 제1소대부터 뒤의 제4소대까지 종대로 정렬한 상태를 ‘中隊縱隊’라고 하였다. 그리고 左에서 右로 2소대와 3소대를 횡대로 하여 前列에 배치하고 6보의 거리를 둔 後列에 1소대와 4소대를 횡대로 배치한 형태를 ‘半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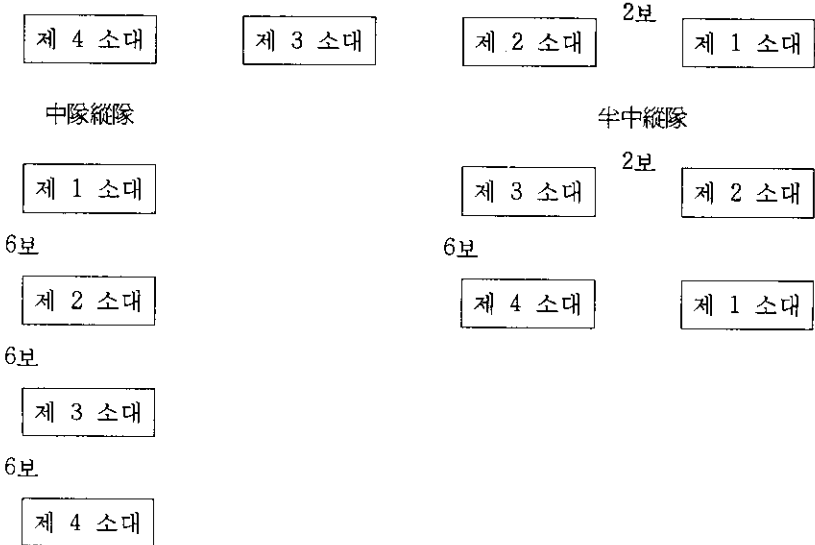
34) 《步兵操典》, pp. 45~52.

35) 《步兵操典》, pp. 52~87.

36) 《步兵操典》, pp. 87~107.

37) 《步兵操典》, pp. 107~137.

中 隊 橫 隊



縱隊'라 하여,³⁸⁾ 이 세 가지 대형을 중대정렬의 기본대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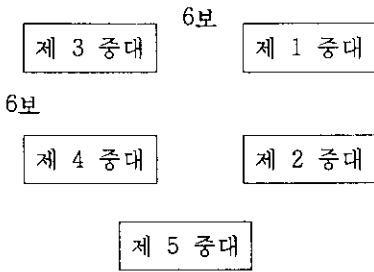
散開隊次도 역시 소대교련의 산개대차를 기본으로 숙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전투지원대의 임무와 지원요령을 명시한 '援隊'와, 돌격할 때의 요령과 구호 및 나팔수의 신호요령 등을 명시한 '突擊'이 소대교련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³⁹⁾ 역시 중대를 전투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이다.

제4장 大隊教練은 그 비중이 기본교련의 10%에 불과하여 매우 소략하며, 대형과 대형 간의 이동 및 변형을 주로 다루고 있다.⁴⁰⁾ 5개 中隊를 1大隊로 하는 대대의 기본대형을 (1)重複縱隊 (2)大隊縱隊 (3)縱隊橫隊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 《步兵操典》에 러시아식 군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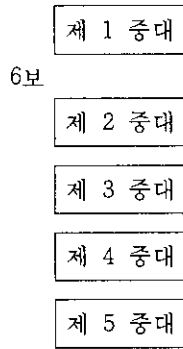
38) 《步兵操典》, pp. 108~117.
 39) 《步兵操典》, pp. 137~144.
 40) 《步兵操典》, pp. 144~165.

있는 것으로 보아 편찬 작업은 러시아 교관단이 국내에 체류중일 때이거나 적어도 귀국한 직후에 바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앞의 1개 중대를 4개 소대로 편성한 것과, 아래 대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1개 대대를 5개 중대로 편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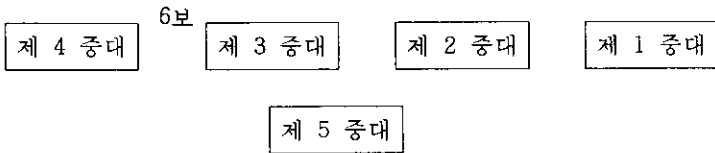
(1) 重複縱隊



(2) 大隊縱隊



(3) 縱隊橫隊



대대교련에서 비로소 보이는 戰鬪展開는 대대장의 지휘하에 중대단위로 축차적으로 전개하며, 나머지 중대는 후방에서 豫備隊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5개 중대를 동시에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전선에 투입된 중대는 중대장이 장악하여 운용하나 예비대의 경우는 여전히 대대장의 지휘하에 두었다. 한편,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전투전개 방법을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군의 작전계획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제5장 聯隊教練과 제6장 旅團教練은 기본교련의 3% 내지 2%를 차지하는 미미한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연대교련의 경우는 각 대대별 정렬방법과 연대장이 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聯隊旗의 호위는 5명의 一等兵卒을 선발하여 호위병으로 하되 2명은 기수의 左右에서 각각 호위하고 나머지 3명은 뒤 열에서 호위하도록 2열 횡대를 갖추어,⁴¹⁾ 오늘날의 1열 횡대와와는 차이가 있다.

旅團教練은 각 연대별 정렬 방법과 전투전개에서의 연대 운용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나팔수 1명이 旅團長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⁴²⁾ 이는 연대장이 지휘할 부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꺼번에 肉聲으로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팔 소리로 사전에 신호를 약정하여 연대장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步兵操典》의 제2부 ‘戰鬪’의 내용을 각장별 항목과 그것이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도식화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戰鬪’의 내용별 항수와 비율표

각 장 구 분	항 수	비 율(%)
제 1 장 보 통 원 칙	87	69.60
제 2 장 부 대 전 투	29	23.20
제 3 장 결 론	9	7.20
합 계	125항	100%

제2부 戰鬪가 제1부 기본교련의 절반 정도의 분량이나, 제1장 ‘普通原則’의 경우는 제2부에서 69.60%의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제1부와 제2부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8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³⁾ 실제 전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제2부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41) 《步兵操典》, pp. 165~173.

42) 《步兵操典》, pp. 173~176.

43) 《步兵操典》, pp. 177~249.

中隊戰鬪·大隊戰鬪·聯隊戰鬪·旅團戰鬪의 제대별 특징만을 언급함으로써 4개 제대의 전투를 불과 29개 항목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大隊長·聯隊長·旅團長의 任務와 役割을 상술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⁴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步兵操典》의 개략적 구성내용이며 ‘軍旗迎送’과 ‘軍刀持法’은 《步兵操典》의 본문내용이 끝난 다음에 ‘附錄’으로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⁴⁵⁾ ‘軍隊禮式’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4. 맺 음 말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步兵操典》이라는 한 권의 군사교범의 분석을 통하여 대한제국이 지향하던 군사훈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1부 ‘基本教練’의 항목이 63.77%의 비중으로 ‘戰鬪’의 36.23%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교범은 서구열강의 근대식 군사교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본교련에 중점을 두어 制式訓練 위주로 편찬된 교범임을 알 수 있다. 과거 조선의 구식군제와 매우 상이한 군제로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와 같이 기본훈련에 충실하려는 자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대한제국군의 제식훈련에 사용되던 많은 종류의 구령(호령)들이 오늘날에도 전수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1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2장 小隊教練과 제3장 中隊教練의 경우는 매우 많은 부분이 오늘날 국군의 훈련에서도 적용되는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제2부 ‘전투’의 경우는 약간 원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제1부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부대규모의 변화와 전술·전략의 변화, 그리고 무기

44) 《步兵操典》, pp. 249~279.

45) 《步兵操典》, pp. 287~295.

및 통신기구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步兵操典》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단편적으로나마 大韓帝國軍의 訓練體系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國軍의 訓練體系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 國軍이 光復軍-獨立軍-義兵을 거슬러올라가 大韓帝國軍으로 연결되는 정통성을 계승한 ‘民族軍’으로 자부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⁴⁶⁾

46) 趙東杰 교수는 오늘날 國軍은 ‘自由主義的 民族軍’이며, 舊韓國軍은 ‘封建的 民族軍’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軍史의 研究方向과 軍史에 대한 認識風土가 올바르게 定立되어야만 國軍이 民族과 自由를 수호하는 歷史的 任務를 認識하는 精神戰力이 論理的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정통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精神戰力 強化의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켰다(〈韓國軍史의 源流意識〉, 《軍史》 제5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2).

韓國戰爭 以前(1948~50) 北韓의 統一論과 그 性格

梁 寧 祚

(國防軍史研究所 主任研究員)

1. 序 言
2. 北韓 政權의 武力統一論과 祖國戰線 結成과 關係
3. 北韓 政權의 武力統一 決定과 祖國戰線의
平和統一論 性格
4. 結 語

1. 序 言

1947년 7월 제2차 美蘇共委의 결렬 이후 單政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48년 南北間 정치지도자들은 統一民族國家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였고, 남북간에는 결국 각기 체제를 달리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후 남북의 정치 상황은 平和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었으며, 38도선은 觀念의 線에서 점차 有形의 線으로 고착되었다.

결국 북한에 의해 시작된 전쟁은 '內戰的 國際戰'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민족의 일대 비극을 맞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전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解放以後 冷戰의 激戰場이란 측면과 강대국간의 戰略的背景 안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은 복잡한 利害關係의 대립

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타의에 의한 外的 조건보다도 남북 갈등이라는 內的 조건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쟁을 결정하는 背景이 되었던 北韓 政權의 統一論을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政黨·社會團體의 統一戰線體의 형태로 결성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하 祖國戰線)이 제기한 통일론을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정권이 어느 시점에서 武力統一論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蘇聯·中國과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 平和統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무력통일론을 실현하기 위한 軍事力의 蓄積過程, 對內外 名分 確保過程·政勢에 대한 評價와 對南·對美戰略 등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祖國戰線의 結成 趣旨, 活動과 役割 및 性格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은 당시 남한 정부와 유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평화통일 논의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전선에서 제시된 평화통일론은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이 결성된 1949년 6월부터 북한의 통일론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론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比較 接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몇 편이 발표되었으나,¹⁾ 대체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기엔 부족한 편이며, 특히 북한의 통일론과 관련한 연구는 지극히 소략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 Bruce Cu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1990.

朴明林, 〈韓國戰爭의 勃發과 起源〉, 高大政治學博士學位論文, 1994.

심지연,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과 韓國戰爭—金料奉의 活動과 役割을 중심으로—〉,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韓國戰爭과 北韓社會主義體制建設〉, 1992, 〈許憲研究〉, 歷史批評社, 1994.

李信澈,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研究〉, 成均館大 史學碩士學位論文, 1994.

《러시아 外交文書》, 《虜獲文書》, 《北韓關係史料集》, 《祖國의 統一獨立을 위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文獻集》, 《朝鮮中央年鑑》 등의 자료²⁾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기타 자료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北韓 政權의 武力統一論과 祖國戰線 結成과의 關係

가. 金日成의 武力統一論 構想

1948년 12월 25일 蘇聯은 北韓에 駐屯한 蘇軍의 최종 撤收를 보도하였다. 그 후 북한 내부에서는 '소련군 철퇴는 전 세계 인민의 평화를 실현하고 미제국주의의 야망을 폭로하는 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群衆集會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³⁾ 또한 주북한소군 철수 보도를 접한 남한의 상당수 지도자들도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만큼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주한외국군 철수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 國防文書에 의하면 이 문제에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軍事顧問團과 별도로 북한에 머물면서 전쟁준비를 지원한 소련의 군사전문가나 군무원 숫자는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러시아秘密外交文書》는 1993. 12. 14. 秘密解除되었으며, 韓國戰爭 관련부분은 大韓民國 外務部에서 총 4권으로 번역되어 未發刊된 자료이다. 《虜獲文書》는 한국전쟁 당시 美軍이 북한으로부터 노획한 자료로서 美國 國立文書保管所에 등록된 것을 國防軍史研究所에서 재수집 정리한 자료이다. 이외 자료로 國史編纂委員會, 《北韓關係史料集》 제6권, 1988.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大會文獻集, 朝鮮民報社, 1949. 수록) :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50 및 1951~1952 : 朝鮮勞動黨出版社, 《祖國의 統一獨立을 위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文獻集》, 1951 등이 있다.

3) <북조선노동당 인제군당 당조회의록>, (1949. 1~3), SN849-1(SN은 國防軍史研究所 자료등록번호, 이하 같음).

즉, 당시 군사전문가 잔류상황은 소련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1949년 2월 18일자 보고서 ‘軍撤收 以後 殘留人員’에 총 4,298명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 중 4,020명은 군인이고 나머지 273명은 군무원임을 밝히고 있다.⁴⁾ 당시 같은 시점에 남한에 잔류한 미군병력이 1개 聯隊戰鬥團임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駐北韓蘇軍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美軍 報告書에 의해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美 육군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12월 25일 북한으로부터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2천의 軍事顧問 요원과 천여 명의 경비병력이 북한에 잔류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⁵⁾ 또 다른 情報報告書에 의하면, 1942년 2월 蘇聯軍 1,500명이 평양에서 확인되고, 이반 메시코프의 지휘를 받는 소련 공군요원 211명이 주둔하고 기타 신천·차령·양양·철원·원산·연포·함흥·나남·청진에서 소련군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⁶⁾

당시 南韓 國會에서도 소련군 철수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⁷⁾ 李承晚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또 越南者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일부 소련군 잔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러나 당시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1948년 말 모스크바에서는 人民軍 戰力增強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蘇聯 國防相 주재하에 北韓·蘇聯·中共의 軍事代表者 戰略會談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에서 향후 18개월 내 북한 인민군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육성하기로 합의하고 있었다.⁹⁾ 이러한 사실은 일부 소련군의 잔류가 인민군 전력증강의 일환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4)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고, 자료번호 23, 목록번호 173346, 문서번호 73, 195.

5) General Correspondence Security Classified July 1947~Dec 1950, 육군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1949. 1. 25), SN623.

6) FEC, Intell. Summary No. 2486 (1949. 6. 30), SN223.

7) 大韓民國國會, 《國會速記錄》 제2회 24호(1949. 2. 7).

8) 《朝鮮日報》 1949년 7월 1일자, 8월 20일자.

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1976, p. 705.

소군의 북한 잔류문제는 인민군의 戰力問題와 직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김일성의 통일 방안과도 그렇게 무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1949년 3월 5일 스탈린 방문시에 武力統一論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스탈린 방문을 요청하여 1949년 1월 17일 수락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김일성은 적어도 1949년 1월 17일 이전에 무력통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¹⁰⁾

이는 김일성이 남한의 민중봉기 등을 통하여 전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략을 전환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해서도 소련공산당 내부자료를 근거로, 1948년 분단국가 수립 이후 김일성과 지도자들은 평화통일을 위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적 수단에 의하여 통일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¹¹⁾

1949년 초부터 金日成은 李承晩 政權에서 표출되는 北進發言에 대하여 “남조선 매국노 중 어떤 놈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격으로 북벌 운운하고 있다”¹²⁾고 말한 것은 잔류 소군과 인민군 전략증강계획에 나타난 일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무렵 김일성은 소련에 무력통일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먼저 1949년 3월 초 김일성-스탈린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박헌영을 대동하고 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1949~1950년도 무역협정,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군사력 건설 등의 협의를 가졌다. 특히 이때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력통일에 관한 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다.¹³⁾

10)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2~3.

11) 朴明林, 앞의 論文, p. 30.

12) 《김일성저작선집》 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53, p. 316.

13)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4.

즉, 김일성은 ‘武力에 의한 朝鮮統一 方案’을 스탈린에게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탈린은 北韓軍이 南韓軍에 대해 절대적인 優位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先制攻擊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에는 아직 美軍이 주둔하고 있으며 또 美蘇共委에서 38도선 分割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탈린은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스탈린의 입장은 북한이 방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비록 스탈린으로부터는 무력통일론에 관한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군과 내각 일부에서 일찍부터 구상·논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김일성은 적어도 訪蘇 이전에 북한 지도자들과 무력통일론에 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같이 동석한 박헌영과도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經濟復興發展計劃 支援을 위해 4,000만 달러의 차관,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때의 차관은 상당 부분 인민군의 무기 및 장비 수입에 사용되었다.¹⁴⁾

회담에서 김일성·박헌영은 스탈린으로부터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으며, 북한의 해군과 공군 지원, 북한군 중 일부를 蘇聯軍事學校에 委託하여 실시할 것 등을 약속받았다.¹⁵⁾ 여기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곧 이어 3월 12일 개최된 김일성과 국방장 불가닌과의 회담에서 논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골격으로 3월 17일에는 소위 ‘戰爭支援의 性格, 蘇聯에서의 北韓軍 教育 및 經濟關係의 發展과 其他 問題들에 관한 朝·蘇 協定’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들 간에는 ‘經濟·文化協定’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발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일부에서 당시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만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크레플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의 중점이 軍事力 支援에 있었음이 밝

14)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2~8, 제2권, p. 2.

15)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9~10, 제4권, pp. 28~31.

16) 國防軍史研究所 所藏, 〈김일성-불가닌 회담록〉, 1949. 3. 12.

혀졌다.¹⁷⁾는 북한과 소련과의 협정에 의해 지원된 군사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¹⁸⁾

항공기 및 공군장비로는 일류신-10 30대, 일류신 연습기-10 4대, 야크-9 30대, 야크-11 6대, 야크-18 24대, PO-2 4대, 예비모터 AM-42 6대, 낙하산 250개, 예비부품가격 350,000루블 등이며, 기갑장비로는 전차 T-34 87대, 자주포 SU-76 102대, 장갑차 BA-64 57대, 사이드카 M-72 122대, 예비부품 가격 200,000루블이며, 소총 및 포병화기로는 7.62mm 소총 10,000정, 7.62mm 저격소총 1,000정, 7.62mm 카빈소총 4,000정, 45mm 대전차포 48문, 76mm ZIS-3포 73문, 122mm 포 18문 등이다.

이로써 北韓은 1949년도에 蘇聯으로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많은 군사장비를 인도받게 되었으며 특히 항공기와 전차 등의 지원은 이미 남한과 현격한 戰力隔差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1950년 초 김일성이 대남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¹⁹⁾도 이러한 군사장비를 보유하게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 朝·中間題는 兩國間의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북한-중국과의 회담에서도 무력통일론이 협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⁰⁾ 즉, 1949년 4월 28일 북한 勞動黨 中央委員會 代表 金一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高崗·朱德·周恩來뿐만 아니라 毛澤東과 3월의 스탈린과의 합의내용 및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공군 내의 韓人師團의 북한 인민군 편입문제를 확정지었다.

이때 毛澤東은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韓國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持久戰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日本이 끼여 들어 남한 정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 蘇聯이 있고 우리들이 滿洲에 있으므로

17)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8~11.

18) 《러시아 外交文書》 제4권, pp. 28~31.

19)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 32.

20)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 6~7, 제3권, pp. 19~22.

걱정할 필요없다”라고 말하고, 이 경우 “中共軍을 派兵하여 日本軍을 격퇴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中國共產黨이 國民黨軍과 전투중에 있으므로 행동을 유보하도록 김일성에게 권고하였다. 한인사단에 대하여는 2개 사단의 이관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단은 중국남부에서 국민당과 전투중에 있으므로 후에 인계할 것을 약속하였다.

코발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모택동과 김일 회담에서 모택동은 ‘남침 시기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만약 1950년 초 국제정세가 유리해지면 南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²¹⁾는 한편 이 회담은 만약 日本軍이 투입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中國軍도 파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천명된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²⁾

이때의 회담 내용은 모택동과 김일성이 각각 5월 14일과 17일에 蘇聯 大使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北韓·蘇聯·中國 간에는 1949년 3~4월 일찍부터 한반도 무력통일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祖國戰線이 창설된 직후인 1949년 6~7월 집중적인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는 軍事的 攻擊을 위한 名分の 蓄積이었다는 분석은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²³⁾

이후 김일성의 무력통일 주장은 대내적으로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6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된 祖國戰線結成大會에서 김일성의 연설 해프닝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26일 김일성은 통일계획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자, 예상밖으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제기케 하였으며, 김일성의 적절한 해명 후에 이 제의는 만장일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김일성이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론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김일성의 통일구상이 조국전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

21)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6~7.

22) 韓國戰爭時 日本 問題는 拙稿, 〈韓國戰爭時 日本의 軍事的 役割에 관한 考察〉, 陸士 鄭夏明教授停年紀念論叢, 1993. 참조.

23) 朴明林, 앞의 論文, p.41.

표들과 일정한 꺾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⁴⁾

김일성은 적어도 1949년 초부터 무력통일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또 이를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對外的 名分을 축적하기 위해 평화통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입장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평화통일을 제기하는 한편, 美國으로부터 軍援을 제한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통일론을 공공연하게 內外信에 공언하고 있었던 李承晩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월 모스크바 회담 이후 人民軍의 戰力은 크게 증강되었다. 이에 고무된 김일성은 1949년 8월 12일 일시 귀국하는 스티코프 대사에게 對南 先制攻擊을 준비해야겠다는 문제를 제안하였다. 그 요지는 美軍이 撤收함으로써 38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또 38도선 分界線 衝突로 인해 인민군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더욱이 남한이 祖國戰線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력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²⁵⁾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자 김일성은 38도선에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解放區’ 건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 역시 소련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 웅진반도 점령 계획을 제시하였다.²⁶⁾ 웅진지역의 확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선을 120km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 역시 북한이 戰力이 아직 미비하다는 소련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으며,²⁷⁾ 소련은 전쟁이 持久戰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스탈린은 소위 民主基地를 강화—즉, 남한 내에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24) 《러시아 外交文書》 제4권, pp. 38~39.

25)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 10~11.

26)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11, 제3권, p. 31.

27)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12, 제3권, p. 32. 9월 12일 툰킨 분석보고에 의하면, 내전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인민군은 승리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분석되었으며, 당시 김일성은 남한전력을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확산, 인민군의 증강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령하였다.²⁸⁾

한편, 蘇聯 共產黨 中央委는 9월 24일 남한공격 시기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평화통일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1949년 9월까지도 美蘇共委에서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대단히 조심스런 입장이었으며 특히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박헌영은 미군철수후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없으며 무력통일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³⁰⁾

이와 같은 경향은 下部 機關에도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949년 10월경 북한의 駐在地 事業(對南工作員 事業)에 관하여 그들의 임무를 “平和體制에서 戰時體制로 移行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주재지는 1949년 초부터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나 1949년 10월경부터 원산·양양·화천·인제·양구·부산·진해·포항·목호·주문진 등의 루트 확보강화와 적정탐지 공작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³¹⁾ 연천주재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진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규합하며 반동분자들을 분열와해시키고 남치함으로써 國土完整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³²⁾

김일성은 소련의 합의와 무관하게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용진을 공격하였다.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소련이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스티코프에게 용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두 차례나 강도 높게 질책하고 있다.³³⁾

28)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51~53, 제2권, p. 17.

29)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 17~18.

30)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32~33.

31) <북한주재지사업에 관하여>, <원산주재지 사업보고서> (1949. 10), 노획문서 SN02.

32) <연천주재지 사업보고서> (1949. 8), SN02.

33)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34~35.

스티코프는 “내무상 박일의 지령에 따라 제3국경 경비여단장이 남한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북에 위치한 주요 두 개의 고지를 탈취할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보자긴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하였으며, 또 10월 31일 보자긴 대령이 감제고지이며 38선으로의 유일한 연락로인 은파산을 탈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모스크바는 11월 20일 재차 스티코프에게 “38도선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본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⁴⁾

이렇듯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무력통일론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북한군 군사력 증강과 아울러 북한 내부와 소련, 중국으로부터 지원 내지는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結成과의 關係

1949년 金日成·朴憲永은 내부적으로 무력통일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949년 6월 결성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제시한 平和統一論에 관해 살펴보고 그것이 김일성·박헌영의 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北韓은 소위 人民政權을 수립한 이후 革命的 根據地로써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남북한의 정치세력을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표출된 것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이었다.

34) 《러시아 外交文書》 제3권, pp. 35~36. 김일성의 무력통일론에 관한 평가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전쟁을 구상하고 추진하였지만, 그는 아직 9월까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북한 리더십은 내부적으로 1949년 말에 전쟁에 대한 합의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林明林, 앞의 論文, p. 57, p. 93) 그러나 김일성과 박헌영이 적어도 1949년 1월 17일 이전부터 분명히 갖고 있었으며 다만 선제공격에 관한 스탈린으로부터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먼저 1949년 5월 12일 南勞黨, 民主獨立黨, 朝鮮人民共和黨, 勤民黨, 南朝鮮清友黨, 社會民主黨, 南朝鮮民主女性同盟, 全國勞動組合評議會 등 8개의 政黨·社會團體의 명의로 제기되었다.

즉, 이들은 “民族的 중대한 당면과업인 祖國統一과 外軍撤退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자기들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일층 광범한 全朝鮮的 民族統一戰線 結成”을 역설하면서, “민족적 과업에 조용하여 북조선급 남조선 제 정당·사회단체들에 대하여 단일한 조국통일민주전선을 결성하고 미군철폐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로 일치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⁵⁾

이에 지지를 표명한 北朝鮮 民戰은 다시 祖國戰線結成準備委員會를 구성할 것과 1차회의를 5월 25일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南韓 民戰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갖추었다.³⁶⁾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는 북조선 민전의 제의대로 1차로 평양에서 5월 25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51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68명이 참여하였으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허헌·홍명희·김달현·이영 등이 선출되었으며, 이어 6월 7일 2차회의에서 결성안이 결정되었다.³⁷⁾

2차에 걸친 준비회의에 이어 祖國戰線結成大會는 1949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의 71개 정당·사회단체의 대표 704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남한에서는 남한 좌익 대표들의 越北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좌익 정당·사회단체 대표 80여 명이 월북하였으며 그 밖에 남로당을 비롯한 정당대표

35) 《朝鮮中央年鑑》, 1950, pp. 86~88.

36) 남한 민전이 결성준비위원으로 선정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노동당 허헌·박현영·김삼룡·이기석, 조선인민공화당 김원봉·성주식,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허성택, 전국농민총연맹 이구훈,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유영준, 남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희영, 조선문화단체총연맹 김남천, 기독교민주동맹 김창준 유교연맹 김용섭, 전국협동조합중앙협의회 박경수, 반일운동자구원회 정홍석, 반파쇼투쟁위원회 정운영, 재일본조선인연맹 송성철 등이었다.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大會文獻集》, pp. 159~160.

37) 《北韓關係史料集》 제6권, p. 311, 《朝鮮中央年鑑》, 1950, p. 233.

들은 지난해부터 북한 정권에 참여중이거나 활동중이었다.³⁸⁾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문제는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 보고, 조국전선 계획에 관한 보고, 조국전선의 조선인민에 대한 관심 표명, 위원회의 보고, 중앙위원 선출 등이었다.³⁹⁾ 준비위원장인 김두봉은 개회사에서 투쟁목표로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남한 정부를 타도하고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개회사에 이어 41명의 주석을 선출하였다.⁴⁰⁾

조국전선결성대회는 27일 강령 초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위원회 의장단으로 김두봉·허헌·김달현·이영·유영준·정노식·이극로 등을 선출하고, 조국전선 중앙상무위원으로 김일성·김두봉·허헌·박헌영 등 27명이 선출되었으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김일성·김두봉 등 99명이 각각 구성되었다.⁴¹⁾

따라서 조국전선 의결기관으로 祖國戰線大會·中央委員會·中央擴大委員會·常務委員會·議長團會議가 중심이었으며, 의결사항은 지방의 各道 委員會와 市郡 委員會를 통해 하달되었다.⁴²⁾

祖國戰線은 미군과 유엔한위의 철수, 조국통일, 민주개혁 강화, 인민공화

38) 《러시아 外交文書》 제4권, p. 38.

39) 《러시아 外交文書》 제4권, pp. 38~39.

40) 주석4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북조선노동당), 김두봉(북조선 노동당), 허헌(남조선노동당), 박헌영(남조선노동당), 김책(북조선노동당), 홍명희(민주독립당), 최용건(북조선민주당), 김달현(북조선청우당), 김원봉(조선인민공화당), 이영(근로인민당), 최경덕(북조선직업총동맹), 강진건(북조선농민동맹), 장권(사회민주당), 박정채(북조선민주여성동맹), 김병제(남조선청우당), 강순(근로대중당), 이용(신진당), 나승규(민중동맹), 한정민(북조선민주청년동맹), 한설야(북조선문화예술동맹), 이극로(건민회), 박세영(전평), 이구훈(전농), 유영준(남조선여성동맹), 조희영(민주애국청년동맹), 김남천(남조선문화단체총연맹), 김량욱(북조선기독교도연맹), 김창준(남조선기독교도연맹), 김세룡(북조선불교연맹), 김룡담(남조선불교연맹), 전운영(반파쇼투쟁위원회), 이두산(조선대중당), 이용선(민족자주연맹), 이기석(남조선노동당), 임기준(신생회), 김익두(북조선기독교도연맹), 구재창(민족공화당준비위원회), 이병호(사회당), 정노식(남조선협동조합), 이종만(조선산업건설협의회), 박승병(민족대동회), 《北韓關係史料集》 제6권, pp. 312~313.

41) 《朝鮮中央年鑑》, 1950, p. 237.

42) 李信澈, 앞의 論文, p. 55.

국 절대지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13가지의 基本綱領을 발표하였다.⁴³⁾

- ①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을 즉시 撤去케 하며 所謂 ‘유엔委員會’을 물러가게 하고 祖國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鬭爭한다.
- ② 統一을 妨害하는 祖國의 叛逆者들을 反對하며 祖國의 統一을 급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人民들의 總역량을 動員한다.
- ③ 우리 祖國의 北半部에서 이미 실시된 民主改革들을 일층 確固發展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 ④ 1948년 8월 25일 總選舉의 結果 樹立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를 지지하며 복리향상을 위한 共和國 政府의 활동을 협조한다.
- ⑤ 全朝鮮의으로 광범한 民主改革을 실시하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⑥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者들과 朝鮮反動分子들에게 의하여 탄압당한 人民들의 자치기관인 人民委員會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 ⑦ 日本國家·日本人·개인·법인 및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토지를 無償沒收하여 농민들에게 無償分配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土地改革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⑧ 일본국가·일본인·개인·법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에게 산업 기타 기업소들의 國有化를 남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⑨ 남조선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테러를 반대하여 남조선 감옥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 ⑩ 蘇聯과 民主主義 中國과 人民民主主義 諸國家들과 기타 자유애호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⑪ 日本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 ⑫ 侵略的 同盟을 조직하며 새 戰爭挑發目的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43) 《朝鮮中央年鑑》，1950, pp. 88~89.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적 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 ⑬ 民族經濟와 民族文化를 발전시키며 조선인민들 속에서 文盲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日本帝國主義 사상 잔재와 기타 온갖 反民主主義의 思想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祖國戰線이 제시한 綱領은 美軍과 유엔韓委의 철수, 조국의 叛逆者 반대, 祖國統一, 民主改革 강화, 人民共和國 支持 協助, 반제노선 등이 중요한 實踐 綱領이었다. 즉, 조국전선은 북한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목표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국전선은 結成大會에서의 보고에서는 ‘어느 당과 단체이고 조국전선에 참가하였다고 해서 자기들의 독자적 활동에 있어 조국전선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하였지만,⁴⁴⁾ 강령에서 나타나듯이 조국전선에 참가한 정당·사회단체는 북한 정부를 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국전선의 강령은 직접적으로 北韓 政府의 政綱 實現과 연결된 것이며, 그것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조국전선은 결성시 남한측에 총선거를 통한 平和統一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중에 선거 실시에 관해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남쪽에서의 자유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몇몇은 이것이 인민과 북한 정부로 하여금 李承晚 政府를 남한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되었다.⁴⁵⁾ 여기에서 제시된 통일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⁶⁾

- ① 조국의 평화적 統一事業을 朝鮮人民들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주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實踐하자.
- ② 우리는 조국의 平和的 統一에 방해를 주는 美軍이 우리 조선에서 즉

44)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大會文獻集》, p. 61.

45) 《러시아 外交文書》 제4권, p. 59.

46) 《朝鮮中央年鑑》, 1950, p. 93.

시 撤退할 것을 요구한다.

- ③ 우리는 非法的 機關인 소위 ‘유엔朝鮮委員會’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
- ④ 우리는 南北朝鮮을 통하여 통일적 立法機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 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를 실시하자.
- ⑥ 조국의 평화적 統一計劃을 토의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 團體 대표자들의 協議會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選舉指導委員會를 구성하자.
- ⑦ 입법기관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平等的 秘密 投票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제 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들은 選舉權을 박탈당한다.
- ⑧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천하자.
 - ㉠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들과 그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 것.
 - ㉡ 전체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 것.
 - ㉢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출판기관들의 廢刊에 대한 指令을 취소하고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
 - ㉣ 언론·출판·집회·군중대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 ㉤ 전체 政治犯들을 즉시 석방할 것.
- ⑨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 남북조선의 現存 政府와 그의 機關들에 선거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지시들을 줄 것.
 - ㉡ 자기의 결정과 지시실행을 檢閲할 것.
 - ㉢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해 조선에서 外國軍隊의

撤去를 감시할 것.

- ⑩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警察 保安機關들을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로 넘어온다. 선거지도 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과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였던 자들을 제대시키며 濟州道 人民抗爭과 南朝鮮遊擊運動彈壓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解散시킨다.
- ⑪ 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最高立法機關은 朝鮮共和國의 憲法을 採擇하여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지금 현존하여 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된다.
- ⑫ 南北朝鮮에 現存하여 있는 軍隊들은 民主主義 基礎 위에서 朝鮮共和國 政府가 聯合시킨다.

이 제의의 요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우리 인민 자체로 실천, 주한미군 철퇴, 유엔조선위원단 철수, 남북통일적 입법기관 선거 동시 실시,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제의에서는, 물론 戰術的 의미에서이겠지만, 남북한에 現存한 政府와 기관들이 선거준비를 지원해 주되, 선거 결과에 따라 既存 政府는 해체하고 신정부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북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민족반역자 배제 조건이 들어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반동매국노들의 괴뢰정권 타도'를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면서 對外 正當性을 얻기 위한 전술적 고려였다.

북한 정치지도자들은 남한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 북한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양면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당시 북한이 자체 내에서 좌파의 승리에 관해 북한에서 80%, 남한에서 70%의 득표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⁴⁷⁾

결국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의 정치세력들이 조국전선이 제의한 선거를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 제의가 거절될 경우 북한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또 김구와 김규식 세력을 祖國戰線 내에 끌어들이지 못하더라도 평화적 통일과 협상이라는 틀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보다 쉬운 일일 것이므로 북한 지도부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⁸⁾

조국전선은 中央 常務委員會 서기국 명의로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이방책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역설하고, 또 ‘평화의 방법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투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⁴⁹⁾ 당시 북한이 남파한 遊擊隊는 1948년 11월 4일~1950년 3월 28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천4백여 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중 2천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된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조국전선이 결성된 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는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⁵¹⁾

이와 같이 북한이 각 정당·사회단체를 결합하여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볼

47)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

48) 李信澈, 앞의 論文, p. 67. 허헌은 김구·김규식에 대해, “양씨는 작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서명한 모든 결의를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중략) 양씨가 리승만을 반대하는 것은 이승만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승만이 틀어쥐고 있는 그 정권을 자기들의 것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고 비난하였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pp. 36~37.

49)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大會文獻集》, p. 62

50) 전편위, 《한국전쟁사》 1(구판), 1967, pp. 94~95.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pp. 148~149. 강동정치학원에서는 대남지하공작요원으로 파견할 정치요원과 유격훈련을 받고 유격대로 파견할 군사요원, 지하조직과 유격활동을 결합 혼합요원 등으로 나누어 훈련시켰다.

51) 심지연, 앞의 論文, p. 86.

수 있다. 즉, 조국전선의 결성은 북한의 평화통일안 제안과 남한의 거부로 이어지는 결과인 對外 正當性을 확보하면서 무력통일을 위한 對內 名分確保 및 戰時動員體制 強化를 위한 二重의 目的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전선의 활동목적은 평화통일안 제안 및 실천에 있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시 北韓 政權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국전선의 獨自性이 얼마나 보장되었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내각수상인 김일성은 조국전선 결성식에서부터 그 후 참석하여 지지 발언을 표명하고, 또 1949년 8월 북한 정부가 조국전선의 선언서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평화적 통일방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온갖 협조를 다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⁵²⁾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평화통일론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은 채 무력통일론을 견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 확보와 소련으로부터의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조국전선의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일 만한 세력들이 월북했거나 남한 내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다.⁵³⁾ 조국전선이 북한 정권 절대 지지 강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 그 실현 가능성이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조국전선 호소문 지지운동에 대하여 群衆大會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었다. 北勞黨 인제군당 회의록에 의하면,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면에 33명을 파견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출판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⁵⁴⁾

52) 《北韓關係史料集》 제6권, p. 314.

53) 심지연, 앞의 論文, p. 91. 남한 내 좌익 당조직은 현실적으로 조직적인 세력이 왜해진 상황이었으며 1950년 3월 27일 서울지도부의 金三龍, 李舟河 등이 체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54) 〈북조선로동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1호(1949. 12. 10), SN887-8.

3. 北韓 政權의 武力統一 決定과 祖國戰線의 平和統一論 性格

가. 武力統一의 決定과 對蘇聯·中國과의 關係

金日成은 1949년 10월 中國이 內戰에 승리하여 政府를 수립하게 되자 “이제 南朝鮮 解放의 차례”라고 하며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1950년 1월 17일 外相 朴憲永 主宰 만찬에서 소련의 스티코프 대사와 참사관들에게 先制 攻擊計劃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스탈린과의 회담을 주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⁵⁵⁾

南韓 人民은 나를 믿고 있으므로 우리의 軍事的 支援을 원하고 있다. 빨치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남한 인민은 우리에게 좋은 軍隊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최근 아주 고심하고 있으며 밤잠을 못 이루며 統一問題를 생각한다. 北侵時 南侵은 불필요하며, 李承晩이 北侵하지 않기 때문에 人民軍 攻擊行動을 허락받기 위해(소련; 필자 주) 방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북한이 소련의 ‘北侵時에만 反擊 許容’이라는 제한적 공세허용을 받은 이후부터 남한이 북침하기를 鶴首苦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기대의 내면에는 대남전력에 자신이 있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일성은 스티코프의 주선으로 1950년 4월 초에 비밀리에 다시 스탈린을 방문하여 南北韓 統一의 方法, 北韓 經濟開發의 展望, 그리고 共產黨 內部問題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先制 南侵을 開始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北韓과 中國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55)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0.

협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⁶⁾

이에 앞서 1949년 12월 16일 중국 모택동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수뇌들과 회담을 가지고 《中蘇友好同盟相互條約》, 《長春 鐵道·旅順 및 大連에 관한 協定》, 《借款協定》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다.⁵⁷⁾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冷戰體制下의 兩國間 結束 다짐은 물론 세계공산화를 위한 역할 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南侵戰爭支援 問題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4월 25일 모스크바로부터 귀환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다음달 13일 북경의 모택동을 방문하였다. 이 날 김일성 일행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⁵⁸⁾ 모택동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라고 응신하였다.⁵⁹⁾

이러한 김일성의 방소문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커밍스에 의하면, “호루시초프 회고록에는 김일성이 1949년 3월과 1950년 6월 사이 다시 한 번 그 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회고록 자체를 불신하면서 북한과 소련과의 협의 사실과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장비지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⁶⁰⁾

56)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9, pp. 23~24.

57) 國防軍史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 1994, p. 93.

58)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5.

59)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5, 제3권, p. 72.

60) Bruce Co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Vol. 2*, pp. 439~465. 커밍스는 이에 대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공개된 러시아 外交文書에 의해서도 그러한 문제제기는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1950년 5월 모택동은 스탈린의 메시지를 받은 후 5월 15일 김일성 및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군사력 증강→평화통일 제의→전투행위의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¹⁾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모택동과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미군과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그 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⁶²⁾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南侵攻擊 作戰計劃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하였고, 결국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예프 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5월 29일에 이를 완성하였다. 이 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⁶³⁾ 마지막으로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⁶⁴⁾

따라서 김일성은 1949년 초 이전부터 무력통일론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소련으로부터의 평화통일론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라는 경고성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통일을 제안하고 있었다. 또 북한과 소련, 중공의 일련의 회담내용을 통해 남침을 제안한 국가는 바로 북한이었으며, 김일성의 무력통일론과 남침계획에 대해 스탈린과 모택동은 신중하게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련결정에 관한 모든 논의가 내부자료가 없는 가운데 사변적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의 소련과 대북관계에서의 가설은 러시아비밀외교 문서에 의해 많은 부분이 사실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61)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6.

62)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 24~27.

63)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 26.

64) 《러시아 外交文書》 제2권, pp. 27~28; 戰略問題研究所(譯), 볼고코노프, 《스탈린》, 세경사, 1993, pp. 372~373.

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平和統一論의 性格

앞에서 金日成·朴憲永의 무력통일의 결정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 동안 祖國戰線에서 제안한 平和統一論의 內容과 性格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조국전선은 남한의 5·30선거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선거 전부터 無所屬 候補와 中間派 候補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이었다. 5·30선거에는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등록하였으며, 이들의 득표는 선거전에 예상한 대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이 당선되었다.⁶⁵⁾ 또 중간과 인사로 김규식·조소앙·여운홍·장건상·원세훈·안재홍이 출마하여 이들 가운데 원세훈·조소앙·여운홍 등이 당선되었다. 특히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은 서울 성북에서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을 전국 최다득표로 눌러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민족자주연맹의 원세훈도 윤치영과 대결하여, 장건상이 경장국장 출신 김국태와 대결하여 당선되었다. 중간과 출신의 후보들이 조국전선에서 주장한 소위 민족반역자라고 지칭한 후보들을 꺾고 당선된 것이다.

祖國戰線의 政治的 意圖는 5·10선거를 거부하였던 무소속 내지는 중간과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院內에 진출할 경우 이들과 제휴하려 했던 것이며⁶⁶⁾, 또 이들을 조국전선 내에 틀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더라도 協商의 對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조국전선은 6월 5일 제5차 中央委員會 회의에 이어 거의 1년 만인 6월 7일 다시 中央擴大委員會를 소집하여 평화통일을 제의하는 호소문 등을 결정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조국전선 통일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呼訴文을 발표하였다.⁶⁷⁾

65) 大韓民國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舉集》 제1집, 1973, p. 626.

66) 심지연, 앞의 論文, p. 91.

67) 《朝鮮中央年鑑》 국내편, 1951~1952, p. 14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全體 民主主義 政黨·社會團體들과 전체 愛國의 人士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 ① 8월 5~8일에 우리 조국 南北半部의 전 지역을 통하여 總選舉를 실시하고 統一的 最高立法機關을 創設할 것.
- ② 8월 15일 일제통치로부터 解放된 5周年 記念日에 이 총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최고입법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소집할 것.
- ③ 6월 15~17일에 당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남북반부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協議會를 38연선 해주시 혹은 개성시 어느 한 도시에서 소집할 것.

이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들을 채택할 것.

- ㉞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諸 條件
- ㉟ 朝鮮最高立法機關 總選舉 實施의 節次
- ㊱ 總選舉를 指導할 中央指導委員會의 創設
- ④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북반부의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 ㉞ 조국의 통일을 파탄시킨 犯罪者들인 리승만·이범석·김성수·신성모·조병옥·채병덕·백성욱·윤치영·신흥우 등 民族叛逆者들을 南北代表者 協議會에 참가시키지 말 것.
 - ㉟ 조국통일 사업에 유엔朝鮮委員團의 간섭을 용허하지 말 것. 조선 인민은 外國의 干涉이 없이 반드시 自力으로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
- ⑤ 南北代表者 協議會 사업기간과 총선거 실시기간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兩 政權 當局은 사회질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이 呼訴文에서는 1949년 6월 결성 당시 평화통일 제의와는 약간의 격차가 있음이 발견된다. 이때의 주장은 1949년 6월 회의에서 주장한 것과 비교하여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이승만 등 9명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과 南韓 國會와의 妥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데 그 차이가 있었다.

즉, 먼저 해방 5주년을 통일로써 기념하자고 하였으며, 총선을 위한 정당·사회단체 代表者 協議會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자 협의회의 참가조건으로 평화적 통일을 과탄시킨 범죄자들로서 이승만·이범석·김성수·신성모·조병옥·채병덕·백성옥·윤치영·신흥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排除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南北間 平和統一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애초부터 막아버리는 격과 같았다. 당시로서 남한의 중요 정치 세력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을 제외하고자서는 통일문제는 진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排除와 役割을 동시에 요구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⁶⁸⁾

한편, 祖國戰線은 허헌의 보고를 통하여 南北協商에 참여한 인사 조소앙·여운홍·원세훈 등이 5.30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표명하도록 촉구하였다.⁶⁹⁾

그러나 이들 소위 中間派들은 이미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조국전선의 정치적 기대와는 다른 입장이었다. 조소앙은 ‘大韓民國은 5천년 독립민족의 適者이며 장래 統一政府에로 돌진할 유일무이한 원동체’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었으며, ‘民族陣營의 存亡, 韓民族의 民族的 運命은 大韓民國의 육성강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⁷⁰⁾ 때문에 이들이 조국전선의 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祖國戰線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위원장 김두봉)에 평화통일의 대책을 문의하였고, 상임위원회는 그 가능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0년 6월 19일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平和的 祖國統一 推進에 관하여’라는 8개항으로 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決定書를 제시했다.⁷¹⁾

68) 심지연, 앞의 論文, p. 92; 李信澈, 앞의 論文, p. 76.

69)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문헌집》, p. 185.

70) 朴明林, 앞의 論文, pp. 508~509.

71) 《朝鮮中央年鑑》 국내편, 1951~1952, p. 81. 조국전선에서 선정한 호소문의 전달대상은 이승만·김성수 계열 정당을 제외한 각 정당·사회단체이며, 이승만 등 9명을 제외한 남반부 과학문화교육 종교 및 사회활동가들, 남반부의 언론·출판·교육·문화·

- 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과 南朝鮮 國會를 단일한 전 조선 입법기관으로 聯合하는 방법으로써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실천할 것.
- ② 이러한 방법으로 성립된 全 朝鮮立法機關은 共和國의 憲法을 採擇하고 共和國 政府를 構成할 것.
- ③ 채택된 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全 朝鮮 立法機關 總選舉를 실시할 것.
- ④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또는 전 조선 입법기관의 정상활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할 목적으로
 - ㉠ 평화적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흉들이며 원수들이던 이승만·김성수·이범석·신성모·채병덕·백성욱·조병옥·윤치영·신흥우 등 民族叛逆者들을 逮捕할 것.
 - ㉡ 언론·출판·집회·시위·군중대회의 自由를 保障할 것.
 - ㉢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전체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전체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것.
- ⑤ 입법기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는 南北朝鮮에 現存한 軍隊와 警察 혹은 保安力을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단일한 군대와 경찰 혹은 보안대로 개편할 것.
- ⑥ 美帝國主義者들이 우리 조국에 대한 分裂政策과 隸屬化 政策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朝鮮委員會'에게 조선으로부터 즉시 물러갈 것을 제의할 것. 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
- ⑦ 평화적 조국통일과 관련된 모든 대책들은 금년 8월 15일 즉 日帝 統治로부터 조선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완전히 실천시킬 것.
- ⑧ 南朝鮮 國會가 교섭진행을 동의하는 때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1일에 자기의 대표단을 서울로 派送한다든지 혹은 남조선 국회대표단을 平壤에서 접견하기에 준비되어 있다. 南朝鮮 國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들에게 不可侵과 安全을 반드시 保障하여야 하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남조선 국회대표들의 불가침과 안전을 보장한다.

이 決定書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 국회를 단일 입법기관으로 聯合하고, 입법기관은 共和國의 憲法과 공화국 政府를 구성하며, 입법기관 總選實施를 제시하고, 그 실천조건으로 民族叛逆者 逮捕 등의 祖國戰線擴大中央委員會 呼訴文의 내용보다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소위 민족반역자들을 代表者協議에서 단순히 除外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逮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 南韓 政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자고 제안되었다. 쌍방간 통일문제에 관한 協議의 主體를 國會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적어도 外形의으로는 '6월 21일 자기 대표단을 서울로 파송한다든지 혹은 남조선 국회 대표단을 平壤에서 접견하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듯이 國會와의 協商 可能性을 열어 놓은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 무렵 북한 내부에서는 南韓 國會가 祖國戰線의 提議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고 있었다.

만일 南朝鮮 國會에 조금이라도 議員들의 의사표시의 自由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평화적 조국통일에 관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提議가 尙당 상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 조선 민족의 舉族의 志望인 이 평화적 통일을 파탄시키는 李承晩 역도들에게 대한 糾彈과 處罰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조선인민들은 南朝鮮 國會 내의 一部 人士들의 去就를 아주 慎重하게 注視하고 있다.⁷²⁾

그러나 祖國戰線에서의 제안은 후일 자체 내에서 지적되었듯이 소위

72) 《투사신문》 1950년 6월 15일.

‘이승만·김성수 도당보다 덜 나쁜 자들을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들을 조국전선 내로 끌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협상의 대상으로 이승만보다는 용이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常任委員會의 統一方案에 대해 國會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반응이 없자 金料奉은 6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조국전선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남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北侵을 위한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⁷³⁾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의 경우였다.

상임위원회가 통일방안을 제시한 때에 맞추어 人民軍總司令部는 攻擊部隊의 移動과 동시에 극비리에 南侵命令을 차례로 해당부대에 하달하고 있었다. 우선 부대전개가 한창 진행중이던 6월 18일에 人民軍參謀部가 발행한 偵察命令 제1호가 공격부대에 하달되었다.

이 명령은 공격부대 정면의 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攻擊待機陣地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대담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⁷⁴⁾ 정찰명령에 이어 부대기동이 완료될 무렵 인민군의 공격부대에 대한 준비된 戰鬪命令 제1호가 하달되었다.⁷⁵⁾

73) 《朝鮮中央年鑑》 국내편, 1951~1952, p. 82. 이에 대해 심지연, 앞의 論文, p. 95에서는 “祖國戰線이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를 통해 평화통일 제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찰명령 1호, 전투명령 1호 등 攻擊作戰命令을 계속 내리고 38선에 무력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었기에 金料奉의 記者會見은 전쟁도발을 은폐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회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분석된다.”고 하였고, 또 《허헌연구》, pp. 222~223에서는 “김두봉은 북한에 설정된 민주제도를 수호하고 이를 남한에까지 설정하기 위하여 이승만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필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무력침공의 불가피성을 암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은 정부를 수립한 이래 민주기치론에 입각하여 남한 내의 혁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6월 25일의 전쟁도발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

74)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중인 1950년 10월 4일에 서울에서 노획되었다. 이 무렵 예비부대에는 6월 20~30일까지의 구체적인 야영훈련계획이 하달되었다.〈인민군 제238군부대 명령 및 지령철〉, SN501.

75) 人民軍 제2사단, 제4사단, 제6사단 戰鬪命令 제1호(1950. 6. 22), 國防軍史研究所 所藏.

그러나 南侵이 개시된 다음날인 26일 最高人民會議는 상임위원장 김두봉의 명의로 군사위원회 조직 정령에서, “南朝鮮 李承晚 傀儡政府의 소위 국방군들의 38선 이북 전 지역에 대한 불의의 侵攻으로 말미암아 국내에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또는 同族相殘의 內亂을 일으킨 이승만 매국역도들을 소탕하기 위한 戰爭”으로 規定하였으며,⁷⁶⁾ 祖國戰線에서도 中央委員會를 소집하여 전쟁을 “美帝 指示에 의한 同族相殘의 內亂”으로 규정하는 呼訴文을 발표하였다.⁷⁷⁾

따라서 祖國戰線은 決議文이라는 형식으로 총선실시를 주장하고, 6월 19일 다시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다면 國會에 의한 통일방법을 協議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지만, 이것은 남한의 평화제의 거부라는 名分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戰爭計劃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結 語

지금까지 北韓 政權과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統一論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서언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본론에 전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어에 대신하고자 한다.

金日成 政權은 1949년 1월 이전부터 武力統一 方案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1949년 3월 김일성이 스탈린 방문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訪蘇 以前부터 北韓指導部에서 무력통일론을 심각하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같이 동석하였던 朴憲永과 사전에 合意를 이루었음을 살펴보았다.

김일성 정권은 곧 이어 개최된 北韓, 中國會談에서 그와 같은 무력통일론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모택동으로부터 중국이 國民黨軍과 전투중에 있

76) 《朝鮮中央年鑑》 국내편, 1951~1952, p. 82.

77) 〈민주조선〉 1950년 8월 31일.

으므로 행동을 유보하도록 권고받았다. 이후 김일성 정권은 소련에 1949년 8월 對南先制攻撃을 제안한 데 이어 삼척 解放區 設置 제안, 웅진 공격 등을 제안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소련과 무관하게 화력을 집중하여 웅진을 공격하였다.

한편 1949년 6월 각 정당·사회단체의 좌파 統一戰線體로서 駐韓外軍撤收와 統一完遂의 목적을 갖고 결성된 祖國戰線은 결성대회시 ‘어느 당과 단체이고 독자적 활동에 있어 조국전선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하였지만, 실제 綱領에서 나타나듯이 조국전선에 참가한 정당·사회단체는 北韓 政府를 支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국전선의 강령은 직접적으로 北韓 政府의 政綱 實現과 연결된 것이며, 그것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역시 조국전선의 활동 목적은 평화통일안 제안 및 실천에 있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다. 그러나 조국전선의 정권으로부터의 獨自性은 대단히 미약하였으며 그 활동 역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조국전선의 결성은 북한의 평화통일안 제안과 남한의 거부로 이어지는 결과인 對外 正當性을 확보하면서 무력통일을 위한 對內 名分確保 및 戰時 動員體制 強化를 위한 이중의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전선의 평화통일 방안은 남북간 평화통일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애초부터 막아 버리고 있었다. 당시 南韓 政治勢力의 排除와 役割을 동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것은 1950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조국전선은 1950년 6월 19일 다시 남한 국회에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지만, 그것 역시 남한의 평화통일 제의 거부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나아가 전쟁계획의 한 전술로 활용한 것이었다.

조국전선에서 평화통일안을 제의하고 있을 때 정권 내에서는 전쟁계획과 남침일까지 완료해 놓고 있었다. 1949년 김일성·박헌영 일행의 모스크바 회담 제의 이후 1년 후인 1950년 1월 17일 김일성은 선제공격 계획에

승인받기 위해 다시 스탈린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4월 초 비밀리에 회담하였다. 김일성은 이 회담에서 스탈린으로부터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으며 통일과업인 선제남침을 개시하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를 얻었다. 이러한 합의는 중국의 승인이 전제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 일행은 다시 5월 초 모택동과 비밀회담을 갖는다. 5월 15일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군사력 증강→평화통일 제의→전투행위의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모택동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한편,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그 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金日成과 朴憲永은 1949년 1월 이전 내부적으로 武力統一論을 염두에 두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또 이를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對外的 名分을 축적하기 위해 祖國戰線을 통한 平和統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李承晩이 대중여론과 유엔,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 美國으로부터 支援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北進 主張을 공언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에도(江戶)시대 일본 蘭學者들의 軍事論에 대한 연구

—林子平, 本多利明, 佐藤信淵을 중심으로—

朴 榮 濬
(國防軍史研究所 研究員)

1. 머리 말
2. 蘭學의 등장과 발전
3. 蘭學派의 현실인식과 군사론
4. 蘭學派 군사론의 성격
5. 맺 음 말

1. 머리 말

본 연구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 활약한 난학자들의 세계인식과 그에 기반한 국가체제정비론, 특히 군사론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난학이란 당시 일본과 유일하게 교역이 허가되고 있었던 서구국가인 네덜란드에 나가사키에 설치한 商館을 통해 일본에 유입된 의학, 자연과학, 지리학, 군사학 등의 제반 학문을 가리킨다. 官學으로서 주자학적 가치가 통용되던 막부 시기의 지적인 구도 속에서 난학의 전파는, 비록 일부에 국한되긴 하였지만 막부 시기의 지식인들에게 세계관의 질적인 비약과 확대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난학의 영향 속에서 활동한 막부 시기 일본 지식인들, 특히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 혼다 토시아키(本多利明, 1744~1821), 사토오 노부히로(佐藤信淵, 1768~1850)를 중심으로 그들의 군사문제에 관한 발언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대략 18세기의 중반과 19세기의 초반 무렵에 저술활동을 하던 인물들인데,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비교적 군사문제에 대한 다양한 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발언을 난학의 카테고리에 묶어 정리해 보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들의 사상을 난학이라는 단일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지는 다소 논외의 여지가 있다.¹⁾ 연구자에 따라 이들은 海防論者, 洋學者, 중상주의자, 국방사상가, 개혁사상가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식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난학의 영향권 속에서 학문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학의 범주 속에서 이들의 군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개항 이전의

- 1) 이들 사상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느냐는 각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마츠하라 아키라(松原晃)는 하야시 시헤이, 혼다 토시아키, 사토오 노부히로 등을 국방사상가로 소개하고 있다. 松原晃, 『日本國防思想史』(東京: 天理時報社, 1943); 마루야마 마사오는 명치유신을 국민주의가 완성되는 시기로 파악하면서 그 이전을 국민주의의 전기적 시기로 보고 그 사상적 형태를 海防論, 富國強兵論, 尊皇攘夷論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하야시 시헤이는 오오하라 코오킨코(大原小金吾), 코가 세이리(古賀精里, 1750~1817) 등과 더불어 해방론자로 분류되고 있고, 혼다 토시아키와 사토오 노부히로는 공히 부국강병론의 계열로 파악되고 있다. 丸山眞男, “國民主義の 前期的 形成”, 『日本政治思想史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2, 1983); Donald Keene은 하야시 시헤이와 혼다 토시아키를 공히 서구 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Donald Keene, *The Japanese Discovery of Europe, 1720~1830*(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John Hall은 혼다 토시아키, 사토오 노부히로 등을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 1680~1747), 카이호 세이료오(海保青陵, 1755~1817) 등과 더불어 19세기의 중상주의적 사상가로 이해한다. John Whitney Hall, “Tokugawa Japan: 1800~1853”, James B. Crowley, ed., *Modern East Asia: Essays in Interpretation*(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70), p. 86; 피터 두오스는 18세기 말엽 막부 체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사상가로 카이호 세이료오와 더불어 혼다 토시아키, 사토오 노부히로를 들고 있다. Peter Duus, *The Rise of Modern Japan*(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국내 번역은 피터 두오스, 『日本近代史』 김용덕 역(서울: 지식산업사, 1983).

시기에 서구 문물의 도래에 대해 일본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에 대한 군사적인 발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²⁾

본 연구는 이들 학자들이 국내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군사론을 주요 내용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하면서 논문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첫째, 도쿠가와 막부체제에서 난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하야시 시헤이, 혼다 토시아키, 사토오 노부히로 등의 현실인식 및 제도개혁론 등은 어떠한 내용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이들의 개혁론 가운데 특히 군사론은 어떠한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군사론과는 어떤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이들의 군사론은 서구로부터 수용된 군사론으로부터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2. 蘭學의 등장과 발전

가. 난학의 등장 배경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 세력들을 물리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막부를 에도(江戶)에 설치하고, 독특한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체제는 도쿠가와 막부체제라고 불리워

2) 한편 이 논문은 필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는 수년 전에 明治維新 시기의 군사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拙稿, “明治維新 前後의 日本軍事史”, 『軍史』 제28호(국방군사연구소, 1994), pp. 115~160. 그런데 위 논문은 일본의 근대사 관련자료와 연구성과를 매우 피상적으로 섭렵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위 논문에서 다루어진 하야시 시헤이나 사토오 노부히로의 군사론은 내용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전 논문에 대한 반성과 보완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지는 것으로서, 이후 250여 년 간 일본의 봉건시대를 지탱하게 된다. 그러나 도쿠가와 체제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내외로부터 새로운 성격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로부터는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상인 계층이 거대해짐과 동시에 전통적인 지배계층이었던 사무라이 계층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영국 등이 각각 북쪽과 남쪽에서 일본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학문체계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인식체계를 모색하게 하였고, 특히 서구 세력의 등장은 자연히 서구문물의 수용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우리가 살펴볼 란가쿠(蘭學)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란가쿠의 등장은 쇄국정책하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통상을 허용한 네덜란드로부터 기인되었다. 1641년 일본정부는 화란인들의 상관을 규슈지방의 서쪽 히라도에서 나가사키 항의 데지마(出島) 섬으로 변경시켰다. 데지마의 공장은 이후 250여 년 간 존속했고, 이곳에는 화란인들이 계속 파견되었다. 파견된 사람들이 모두가 일본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가졌다거나 서구문명의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서구의 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고,³⁾ 이들을 통해 일본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서구문명의 세례를 듬뿍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당시의 화란은 영국과 더불어 유럽 문명을 선도하던 나라의 하나였으

3) 이들 중 일부 파견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 1691~1692년간 공장에서 근무했던 독일 의사 캠퍼(Engelbert Kaempfer)는 History of Japan이란 책을 썼다. 1775~1776년간 의사로 일했던 스웨덴 과학자 툰베리(C.P. Thunberg), 1804년 러시아 사절단을 이끌고 나가사키에 들렀던 크루젠스텐(Adam Krusenstem) 등은 일본에 대한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크루젠스텐은 유럽, 특히 화란이 일본에 대해 알고 있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툰베리의 체재기간은 일본에서 난학이 개화하던 시기여서 그의 역할이 상당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서구의 기술과 과학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은 1823년 의사로서 나가사키에 도착한 독일인 지볼트(P. F. von Siebold, 1796~1866)였다. 그는 일본의 언어, 역사, 지리, 동물, 식물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나루타기주쿠라는 사설학교를 세워 일본 학생들에게 의학을 실습시키고 가르쳤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6년이 지볼트의 탄생 200주년 기념일인데, 일본 정부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이를 기념할 정도로 난학 傳來者들을 각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며, 라이텐에 중요한 의학연구센터가 있어 의학이나 과학의 수준이 높았던 나라였다. 따라서 화란 과학의 업적들이 商館의 의사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⁴⁾

그러나 쇄국정책의 실시 이래 100여 년 간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일종의 사상통제기간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는 1630년 포고를 내려 당시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마테오 리치와 다른 제수이트 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종교와 과학관련 서적 32종의 유입을 금지시켰다. 일본에 이미 유입된 서적의 복제본은 정부에 의해 수거되고 분서되었다. 유럽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서적들의 금지는 일본 학자들로 하여금 서양의 업적들을 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란 상관의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허용되던 나가사키에서는 필요에 의해 화란어에 대한 연구가 17세기 중반 무렵에 시작되었고, 1670년대에 가서는 언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역관이 생기기도 하였다. 화란인들이 원본과 아울러 중국 역본을 첨부하여 소수의 관리들을 가르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역관들은 그렇게 능숙하지는 못했고, 언어에 대한 습득이 주목적이었을 뿐 막부의 통제 속에서 더 광범위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란가쿠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 계기는 18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였다. 1720년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기독교 교리를 논하지 않는 서양의 다른 서적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켰다. 이 조치는 순전히 개명된 쇼군 요시무네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개량된 달력을 갖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었고, 그를 위해 발달된 서구의 수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들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1720년 요시무네의 이 칙령에 의해 란가쿠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다. 1740년 요시무네는 노로 겐조와 아오키 콘요우(青木昆陽, 1698~1769)에게 각각 지시하여 노로는 과학

4) 어떤 연구자들은 만약 데지마의 공장을 영국이나 러시아가 운영했다면 일본인들은 보다 많이 양보하여 국가에 해가 되었을 것이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맡았더라면 일본이 근대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서구에 대한 매개자로서 데지마에 화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님스텐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Donal Keene, op. cit., p. 9.

분야를, 아오키는 사전편찬을 위하여 화란언어를 배울 것을 명했다. 이 지시에 따라 1750년까지 노로는 “阿蘭陀本草和解”를 펴냈고, 아오키는 불완전하나마 1758년, 사전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란가쿠는 나가사키에 주재하는 소수의 역관들뿐 아니라 쇼군의 영지에까지 학습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⁵⁾ 또한 쇼군 요시무네는 네덜란드인 케제루를 초빙하여 기마법을 교수케 하고, 네덜란드에 주문하여 忽微砲, 加農砲, 天砲 등의 대포를 주조케 하고, 오규우 소라이에게 지시하여 『西洋火器神器說』을 짓게 하는 등 서구의 군사기술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란가쿠가 배태되기 시작한 18세기 중기에는 주로 서구의 천문학, 의학, 수학, 생물학 등 실용과학과 그 기반이 되는 어학과 지리학에 관심이 많았다.⁶⁾ 그래서 대개 18세기 말까지 유입된 책도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사전류, 의학, 자연사, 천문학, 물리학 등에 관련된 과학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18세기 말 로오쥬였던 마츠다이라 사다노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대략 1792~1793년경부터 화란책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야만 국가는 과학에 능숙해서 그들의 천문학, 지리학, 군사기술, 내과 및 외과의 학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 ……나는 나가사키의 번주에게 연락해서 정부가 그 책들을 획득하여 나라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공식적인 필요가 생길 시에 참조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⁷⁾

5) Donald Keene, *Ibid.*, pp. 14~15.

6) 언어를 매개로 하기 전에 유입된 서구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술기법이다. 서구의 원근법을 본뜬 우끼에(浮繪)는 최초로 오쿠무라 마사노부(1686~1764) 등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후에 마루야마 오쿄(1732~1795), 히라가 겐나이(1729~1780), 오다노 나오다케(1749~1780), 아키타번의 다이묘 사다케 요시아스(1748~1785), 시바 고칸 등에 의해 유럽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졌다. 중국식 화법에도 정통했던 시바 고칸은 특정한 법도를 따라야 하는 중국식 화법으로는 후지산을 후지산답게 그리지 못하지만, 화란식 미술기법은 후지산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bid.*, pp. 62~66.

7) *Ibid.*, pp. 75~76.

네덜란드로부터 다양한 책이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지식인들에게는 서구의 언어 자체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쇼군 요시무네가 아오키에게 명하여 사전편찬을 지시한 이래 서구문자의 소개, 서구서적 번역 등의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찍이 1592년과 1614년간 제수이트 교단에서 로마문자를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쇄국정책 실시 이후에는 고토 리순이 1765년 『阿蘭陀話』를 펴내면서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소개하고 있다. 니시 겐자부로는 1767년 화란-일본 사전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작업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니시가 사망하여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다.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 1723~1803)는 화란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1770년 나가사키에 와서 많은 네덜란드책과 숙어책들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란가쿠의 성장이 확실하게 된 계기는 1796년 이나무라 삼파쿠(稻村三伯)가 화란-일본어 사전을 간행한 이후이다. 이 사전은 8만 단어를 수록한 프랑소와 할마의 화란-프랑스어 사전에서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대체한 것이다.⁸⁾ 언어 연구를 통해 일본인들이 점차 독해능력을 갖춰감에 따라 세계와 사물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이 책을 통해 충족될 수 있었고, 새로운 학문경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병행하여 일본을 둘러싼 세계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1763년 역관 기타지마 겐신은 1700년에 나온 네덜란드 원본에 의거하여 지도제도 이론서를 완성하였다.⁹⁾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이 예조, 타타리(Tartary), 조선, 유구, 대만, 루존, 자바 등과 함께 지구상의 특별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란가쿠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가장 극적인 업적은 1774년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에 의해 이루어진 의학서 번역이었다. 스키타는

8) 최초의 영일사전은 막부의 지시에 의해서 나가사키의 화란어역관 모토키 쇼자에몬이 1814년 6천 단어 규모로 발간했는데, 1862년 호리 타스노스케가 3만 단어를 수록한 英和사전을 발행하면서 이것이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Hirakawa Sukehiro, "Japan's turn to the West", Marius B. Janse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5: The Nineteenth Centur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440~441.

9) 책의 영문제목은 Explanations of the Dutch Celestial and Terrestrial Maps로 되어 있다.

1771년 나가사키에서 Tafel Anatomia라는 책을 얻었는데, 이 책은 원래 1731년 독일 의사 쿨무스(Hohann Adam Kulmus)에 의해 저술된 것이었다. 스키타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언어는 읽을 수 없었으나, 도해(圖解)들이 그가 이전에 배웠던 중국 의서와 다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1771년 4월 일종의 천민계급인 에타(穢多)에 의해 실시된 어느 사형수의 인체해부를 마에노와 함께 관람하였다. 해부관람의 결과 인체의 장기구조에 대한 도해가 중국 의서보다는 Tafel Anatomia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키타는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다. 번역과정에는 스키타의 동료들인 나카가와, 주난 등이 가세하는데, 이들은 각각의 서구 언어에 상응하는 일본어 하나 하나를 찾아내고, 해당되는 언어가 없을 경우에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4년간 계속하였다. 이 결과 1774년 네덜란드어로부터 번역된 최초의 일본어 역서인 『解體新書』가 나왔다.¹⁰⁾ 이후 란가쿠는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오랑캐들의 학문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반가쿠에서 란가쿠라는 말로 바뀌기도 했다. 젊은 사람들이 란가쿠를 배우기 위해 나가사키로 몰려들었다.

네덜란드어 이외의 다른 서구 언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갔다. 1779년 쇼군 이에하루는 마에노 료타쿠에게 그의 장서 하나에 대한 번역을 명했는데, 그것은 라틴어 서적이었다. 그래서 라틴어에 대한 연구와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¹⁾ 중화세계 이외의 영역인 서구의 지리, 언어, 과학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자연히 일본 지식인들이 가진 세계관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0) Marius B. Jansen, *Japan and Its World: Two Centuries of Change*(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 32~36.

11) 이후 1808년에는 나가사키 商館長 Doeff가 6명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수업을 하였다. 1809년에는 일단의 일본인들이 러시아어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Donald Keene, op. cit., pp. 78~79.

나. 세계인식의 변화

란가쿠 학자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관해선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했을 뿐 아니라, 난학자들 자신들도 서양의 정치·사회제도나 가치를 중시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난학자들도 유학 계통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을 도덕과 문화 밖의 야만세계로 파악하고, 일본문화가 서양문화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난학자들이 서구의 학문 수용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에 비해 쇄국정책에는 대부분 동조하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오츠키 겐타쿠(大槻玄澤)는 일본이 란가쿠를 터득해야 하지만, 일단 란가쿠를 습득하고 나면 서구와의 더 다른 교역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혼다 토시아키도 서구를 동경하였지만, 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이 란가쿠의 성장에 따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서구의 언어와 지리, 그리고 우월한 과학에 대한 연구를 매개로 하여 확대된 지식인들의 인식지평은 자연히 중화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서구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마에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오츠키(大槻玄澤)는 1783년 『蘭學階梯』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화란어의 문법, 발음 등도 소개하고 있지만, 난학 그 자체의 가치가 전통적인 유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오츠키는 지리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지리에 관한 지식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 오오츠키 저서 서문에 기고한 오기노 규코쿠는 漢學은 죽었고, 가장 좋은 전통은 네덜란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난학은 공허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¹²⁾ 1787년 모리시마 추료는 『紅毛雜話』를 저술하면서 일

12) Donald Keene, *Ibid.*, pp. 25~27.

본어 발음을 표기하는 수단으로 중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중국 문자 사용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는 유럽지식에 대한 옹호와 反중국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바 고칸도 복잡한 중국 문자를 습득하는 데 따르는 애로가 일본에서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았다. 서구 문자뿐 아니라 한글, 만주어, 인도 알파벳에까지 견식을 가졌던 시바는 가나가 다른 문자보다도 일본인의 발음에 부합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심지어 혼다 토시아키는 가나가 중국 한자보다도 우수하지만, 서구 알파벳은 그보다 더 좋다고 보았다. 알파벳이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교역의 필요상 어느 나라 문자 체계보다도 편리하다고까지 주장하였다.¹³⁾ 18세기 말엽에 이르러 활동한 난학자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럽이 일본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혼다 토시아키의 경우는 가장 오래 된 문명은 이집트로서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3800년, 일본은 1500년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럽의 문명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장구하며, 따라서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는 유럽의 관행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유럽 문명은 실용성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을 부강하게 하였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기 난학자들은 서구지식의 확산에 따라 고쿠가쿠에서도 제기된 유학비판과 궤를 같이하여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려고 하였고, 서구 세계를 새로운 모델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진로를 모색하려 하였다.

란가쿠와 고쿠가쿠의 공통의 표적이 된 유학자들은 이에 대해 18세기 말 막부를 설득하여 주희의 학설을 제외한 여타 학문을 금지케 하는 등 점차 서학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나섰다. 유학자 가운데 난학 등의 가치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시바노 리슈잔(1734~1807) 정도였다. 학파간의 대립에 대한 막부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였다. 막부는 어느 경우에는 유학자들의 손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부도 어느 정도는 란가쿠의 유

13) Donald Keene, *Ibid.*, pp. 70~72.

용성을 인정하고는 있었다. 19세기 들어 외국 서적의 번역이 막부 정부에 의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1803년 쇼군은 에도에 화란의 천문학과 조사서들을 번역하는 관청을 설립하였다. 1811년 막부는 天文方에 蛮書和解御用掛를 설치하여 보다 일반적인 번역을 담당시킴으로써 私學으로 발달해 온 난학을 公學化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유용한 산술, 물산, 본초, 의학 등의 이용후생적인 지식에 난학을 한정시키고, 아울러 洋學的 지식의 막부 독점을 의도했다. 초기에는 어학, 지리학,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달된 란가쿠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접어들어서는 대내외 위기감의 고조와 아울러 점차 무기와 군사기술에 관심을 이동시켰다.

3. 蘭學派의 현실인식과 군사론

우리는 위에서 18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대내외 현실, 그리고 새로운 학문 경향의 대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러시아나 영국의 일본에 대한 접근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여 지식인들은 국방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서구로부터 들어온 학문인 란가쿠의 지식에 근거해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탈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군사사상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당시 군사사상의 발달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고 여겨지는 하야시 시헤이, 혼다 토시아키, 사토오 노부히로 등을 중심으로 초기 난학자들의 군사론을 재구성하기로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무라이 출신들로서 대개 1780년에서 1840년 사이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전개한다. 이 시기는 일본의 대내외 현실이 가장 위기적 상황을 보이던 무렵이었고, 한편으로는 란가쿠가 활발하게 연구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들이 전적으로 란가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쿠가쿠의 영향도 받았고, 미토가쿠(水戶學)도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란가쿠의 세례를 공통적으로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종전의 유학에 국한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봉건적 체제의 틀을 뛰어넘는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같은 난학자의 카테고리로 묶어 이들의 군사문제에 관한 사고유형을 정리하기로 한다.

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

(1) 배 경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는 1738년 센다이에서 林笠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이 『西洋紀聞』, 『蝦夷志』를 저술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¹⁴⁾와 교제한 관계로 시헤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책들을 보면서 해외사정에 대한 안목을 얻었고, 아키타번의 사토오(佐藤信季)¹⁵⁾나 쿠도우 헤이스케(工藤平助)와 교제하면서 국방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1772년에는 직접 에조를 다녀오기도 하였고, 1775년, 1777년, 1781년 등 3번에 걸쳐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화란인 아룬헤이토에게 해외의 형세를 직접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력을 통해 하야시 시헤이는 세계 정세에도 밝게 되었고, 란가쿠의 경향에 대해서도 나름의 안목을 형성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1786년에 에조, 조선, 유구 등 3나라의 지리풍속, 역사에 관한 『三國通覽圖說』을 저술하였고 1791년에는 『海國兵談』을 저술하였다.¹⁶⁾ 그러나 하야시는 책을 출간하자마자, 서문에서 예상한 것처럼, 당시 老中 마츠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어 에도로 이송되어 투옥되었다. 그 사유는 그가 국사를 다루면서, 기존법률의 침해를 옹호하는 책을 저술했기 때문이라는 죄명이었다.

(2) 주변 정세인식

하야시 시헤이는 서구의 기술과 제도, 그리고 서구인들의 전쟁수행방식

14) 에도 시기 최초의 난학자로 평가된다.

15) 뒤에 살펴볼 사토오 노부히로의 아버지가 된다.

16) 松原晃, 『日本國防思想史』(東京:天理時報社, 1943), pp. 173~174.

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용기나 근접전에서의 숙달을 증시하는 중국인과 달리 화력을 전투에 있어서 중요시하며, 특히 해전에 뛰어나서 아주 훌륭한 성능의 배를 만든다고 보았다. 유럽인들이 건조한 선박은 중국의 그것보다 뛰어나며, 그래서 해상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서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의 위대성 이면에는 훌륭한 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서구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년 동안 정복하려고 하지만, 같은 나라 국가들의 병사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이 도달하지 못한 단계”라는 것이다.¹⁷⁾ 훌륭한 법은 원거리 영토를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학문을 해 왔고, 천문학과 지리학에 능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장하지 않고서도 원거리 대외정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서구의 기술에 대한 발견은 동시에 일본의 입장에서서는 위협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서구지역의 군대들이 일본에 침략해 올 가능성을 도의시할 수 없으며 만일 서구국가들이 일본에 침략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인들과 친한 중국이 서구의 훌륭한 법을 받아들여 영토확장의 욕망을 가질지 모른다고 하여시는 우려하였다. 서구 국가들 가운데 하여시가 가장 위협을 느낀 나라는 러시아였다. 서구 제국은 아직 일본과의 거리가 멀지만 러시아는 바로 일본의 지척에서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여시의 현실인식이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그 군대는 타타르, 시베리아의 먼 거리까지 정복했고, 심지어 캄차카까지 진출하였다. 러시아는 그 관심을 이제 쿠릴열도에 미치고 있다. 1771년에는 바론 베노스키라는 탐험가가 모스크바-캄차카를 거쳐 일본의 항구에까지 방문하였다. 그가 여기에 온 동기는 우려할 만하다.”¹⁸⁾

위의 인용문은 당시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책과 남하정책에 대해서 하여

17) Donald Keene, op. cit., p. 41.

18) Donald Keene, Ibid., p. 41.

시가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하야시는 만주족이 설립한 청의 군사제도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았다. 청태조가 창시하여 인접지역을 침략하는 데 사용된 8旗의 군제는 황, 백, 홍, 남, 양황, 양백, 양홍, 양람의 기를 말하는데, 3백인마다 1佐領, 5좌령(1,500)마다 1參領, 5참령(7,500)마다 1都統, 8도통(병력 6만)의 군제를 말한다. 시헤이는 이에 경계하여, 8기군제 때문에 인접제국이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은 이에 무방비하고, 병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을 탄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하야시의 인식은 다소 예외적이다. 일본 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문명의 전수자로서 여겨 왔는데, 하야시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을 문명의 전수자가 아니라, 일본의 잠재적인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 군사론

만일 러시아나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하야시는 일본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위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가 저술한 『海國兵談』에서 일관된 주제가 되어 있다. 『海國兵談』의 서문에서 그는 일본이 海國이라고 선언한다.

“海國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지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고, 사면이 바다인 나라를 말한다. 海國에 적합한 방어준비는 중국의 군사제술에 규정되어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가르쳐 온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 일본의 군사대비는 외국 침입자를 격퇴시키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¹⁹⁾

해국은 외적의 도래가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쉬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외적의 도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방이 험난한 바다인 까닭에 외적이 함부로 오기가 힘들다. 다른 한편 도래가 쉽다고 하는 이유는 외적이 군함을 타고 순풍을 얻으면 비록 일본까지 2~3백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험난한 바다를 믿고 대비

19) Donald Keene, Ibid., pp. 39~40.

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병법이란 孫子兵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孫子兵法을 해국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孫子兵法은 중국 대륙에서와 같은 산악과 계곡에서의 전투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해상을 통한 적선으로부터의 침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야시는 중국의 사례에 대한 의존, 동양고전에 대한 집착보다는 해상국가라는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海戰을 통한 해상방위, 즉 海防論에 그 핵심이 놓여져 있다. 海國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은 해전에서의 승리에 있으며, 海戰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火炮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중국이나 타타르와 같은 육상 국가와 달리 일본의 방위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들이라 보았다. 그리고 해전에 대비하기 위한 3가지 긴요한 사항으로 첫째, 함선의 제작에 공리를 다할 것, 둘째, 함선의 조타수를 교육하여 그 조련을 능숙하게 할 것, 셋째, 병사들에게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키고, 함선의 조정을 교육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나가사키에 세워진 것처럼 일본의 연안을 포대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안은 그 자체가 외국과의 국경선이므로 나가사키에만 포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대 설치 소요기간으로 15년이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야시는 특히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책으로 에조지에 대한 점령을 논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캄차카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조 점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화란인 아룬헤이토와의 대화 및 쿠도 헤이스케의 주장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야시의 군사론은 그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론, 해방론 등을 제안한 것은 분명 봉건적인 세계관의 탈피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군사정책상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경제적으로나, 대외정책면에서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신분제 면에서 하야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구분

관념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 점은 이와 같은 군사상 제반 조치들의 행위주체로서 그가 여전히 사무라이 계급들을 거론하는 점에서 드러난다. 사무라이들이 오랫동안의 평화무드에 젖어 전쟁기술을 잊어버리고 사치에 젖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을 재교육시켜 위협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무라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군사의 권리와 의무를 신분제의 틀 안에서 파악하는 특성을 보여 준다.

나. 혼다 토시아키(本多利明, 1744~1821)

(1) 생애

혼다 토시아키는 1744년에 일본의 서북부 에치고에서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18세에 에도에 도착하여 수학을 배웠고, 23세에 학교를 개설하여,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을 가르쳤다. 일본의 현실문제, 유민문제 등에 대한 연구 끝에 그는 무역이 일본 및 세계를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역을 이루기 위해서 항해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화란어를 배우고, 화란 저술을 번역하기도 하였다.²⁰⁾ 이런 점들이 혼다를 난학의 계열로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오히려 혼다는 난학자들과는 교제가 깊지 않았고, 오히려 미토의 유학자들인 다찌하라 수이켄(1744~1823), 고미야마 후켄(1764~1840) 등과 서신왕래를 하곤 하였다. 혼다의 대부분의 저술은 1790년과 1800년 사이에 집필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 주요 저술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 그의 사후에 저술이 출간되기 시작하여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에 가서야 그의 저술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²¹⁾

20) Donald Keene, *Ibid.*, pp. 91~92; 혼다는 1804년 일종의 항해저술인 『渡海新法』을 저술하였다. Seiho Arima, "The Western Influence on Japanese Military Science,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onumenta Nipponica*, Vol. XIX, No. 3~4 (1964), p. 357.

21) 1888년에야 그의 『西域物語』가 동경신문의 부록으로 출간되었다. Donald Keene, *Ibid.*, pp. 91~94.

(2) 교역론, 해외식민지론

혼다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하여 군사학자라기보다는 중상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경제학자로 이해된다. 사실 그의 견해는 경제적인 발상이 많다. 그런데 그의 경제적인 견해는, 특히 해외팽창론이나 식민지론 등은 군사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본 논문은, 다소 무리가 뒤따르지만 군사론의 범주에서 그의 경제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다는 당대의 서구 국가들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또한 섬 나라로서의 일본의 특수성 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팽터스라고도 불리우는 그의 경제론은 독특하게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듯이 보인다. 『西域物語』에서 혼다는 일본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추세에 미루어 볼 때 33년간 19.7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급속한 인구증가의 추세에 비추어 영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식량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혼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역과 해외팽창, 해외식민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혼다는 홀란드와 영국 같은 해양국가들의 예와 같이 일본도 해외교역을 통하여 번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와 긴 항해를 견디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선박의 제조와 항해술의 습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우선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강을 연결하여 운하를 만들어 강상(江上)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약의 제조가 중요하다. 또한 일본이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나 지리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본따 국내 교역만이 아니라 해외교역을 통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 경작이 가능한 영토로 팽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교역을 통한 해외팽창론의 구상이 제출되는 것이다. 혼다는 일본이 아직은 항해 및 운송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본 근해의 섬인 에조, 사할린으로, 나아가서는 쿠릴열도, 보닌제도, 캄차카, 알류산열도, 심지어는 북아메리카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혼다가 비교적 정확한 지리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혼다는 이 영토들이 지금은 러시아나 다른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만, 일본이 지리적으로 이들 나라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이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에조나 사할린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이들 지역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먼저 장악할 것이라고 하였다. 혼다의 해외팽창론은 무력대결의 가능성을 내포한 호전적인 팽창론인 셈이다.²²⁾ 혼다는 식민지화가 군주의 최우선의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영국의 예를 들며 영국이 영토는 작지만 식민지화를 통해 부강해지고 대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에게도 영국과 같은 방식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혼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식민지화의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배를 파견하여 해당 섬의 위치와 규모, 섬의 산물과 원주민의 습속에 관하여 평가한다. 그 후 식민지화의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한다. 원주민들에게 좋은 주거방법을 가르치고, 도구를 사용케 하며, 가능한 한 원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애정의 감정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비록 그들이 야만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 같은 감정을 통해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²³⁾

식민지화의 방식에 관한 한 혼다는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처럼 신도(神道)를 원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방법은 옹호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일본문화의 혜택이 원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강요된 복종을 달갑게 생각하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 일본은 이들 지역에 문명을 베풀고, 대신 이들 지역으로부터는 식

22) 1790년대 초반 일본 내에서 에조지역 개발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혼다는 1792년 제출된 문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에조 진출에 대한 자신의 논거를 밝힌다. 그 이유는 1)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자연적인 경계선 설정하여 러시아가 마음대로 일본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2) 죄수들이 유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3) 광산 개발을 통해 유용한 금속을 산출해 낼 수 있고, 4) 경작이 된다면 에조가 기근시에 일본 본토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5) 에조의 목재들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Donald Keene, *Ibid.*, p. 119.

23) *Ibid.*, p. 116.

량과 다른 생산품을 유입하여 일본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식민지화에 투입된 비용은 이들 원산품들의 반입으로 인하여 충당되고도 남는다. 그 결과 일본은 서양에서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지배자(Mistress of the East)가 될 것이다. 이것이 혼다의 꿈이었다.

그런데 식민지화, 해외팽창을 위해서 국내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혼다는 국내적 여건으로서 선박제조기술의 개발, 또한 산업진작 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혼다는 러시아의 여제 캐서린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본이 에조 경영을 시작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쿠릴, 캄차카,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당시의 쇄국정책의 기조 속에서 그의 사상은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막부는 대본영(大本營)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혼다 토시아키의 사상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 문제에 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경제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그가 주장한 해외팽창의 범위를 놓고 볼 때 이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흥미롭게도 다음에서 살펴볼 사토오 노부히로의 군사론이 지리적인 범위 면에서는 혼다 토시아키의 식민지 구상과 상당 부분 겹쳐지고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이 이 양자를 부국강병론자로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1768~1850)

(1) 생애

사토 노부히로는 1768년 아키타번에서 佐藤信季의 아들로 태어났다.²⁴⁾ 아버지의 사후 그는 에도에 나와 난학자 우다가와 겐즈이(宇田川玄髓)에게 배우고, 다시 하야시 시헤이와 교제하면서, 海防說을 배우고, 荻野流의 포술을 배우고, 일본, 중국, 서양의 兵術을 안배시켜, 독특한 견해를 확립하

24) 佐藤信季, 역시 아키타藩의 저명한 농학자로서, 1781년 에조를 여행하고, 그 다음해에 아키타번의 번주에게 국내개혁과 에조 개척을 주장하는 건백서를 제출한 바 있는 인물이다. 松原晃, 앞의 책, p. 173.

여 하야시 시헤이의 해방론을 일층 발전시켰다. 사토 노부히로가 처음으로 국방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808년 영국선박 페이턴호가 나가사키에 입항했을 때였다. 그 해 12월 그는 阿藩의 家老 集堂勇左衛門에게 초빙되어 그곳에 체재하면서 국방대책에 관한 저술들을 집필하였는데, 그 중 『防海策』, 『宇內混同秘策』, 『防海餘論』, 『水戰法秘訣』, 『存華挫狄論』 등이 유명하다.²⁵⁾ 사토 노부히로의 군사론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일정 정도 난학의 영향이 크지만, 다른 한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宜長), 하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 등의 國學派 등의 일본 제일주의 사상과 地政學的 사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²⁶⁾

(2) 해외팽창론

사토의 해외팽창론이 전개된 것은 주로 아편전쟁 이전에 쓰여진 군사저술, 특히 『防海策』과 1823년에 씌어진 『宇內混同秘策』 등에 의해서였다. 이 책들에서 그는 일본이 천지에서 최초로 생긴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국가이며, 세계의 창생을 구제할 천명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곧 세계 만국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국학(國學)으로부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防海策』에서 사토 노부히로는 국방상의 제1대책으로서 對러시아 策을 논하고 있다. 러시아 대책으로서 그는 캄차카와 오호츠크를 점령할 필요를 논한다. 점차 에조를 개발하고, 캄차카를 공격하여 뺏으며, 러시아에서 설치한 기지와 병력들을 내쫓고, 성곽을 구축하여 일본의 영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땅들을 얻은 연후에 이곳을 근거로 하여 동북경략을 하는데, 배를 내어 근방의 여러 나라와 북아메리카의 여러 섬들을 개척한다는 것이다.²⁷⁾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의 일본 진출에 대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사토가 구상한 防海의 제2대책은 對英정책이다. 對영국 방어의 수단으

25) 松原晃, 앞의 책, pp. 202~203.

26) 千越重昌, 『兵學者 佐藤信淵』(東京: 鶴書房, 1943), pp. 270~275.

27) 松原晃, 앞의 책, p.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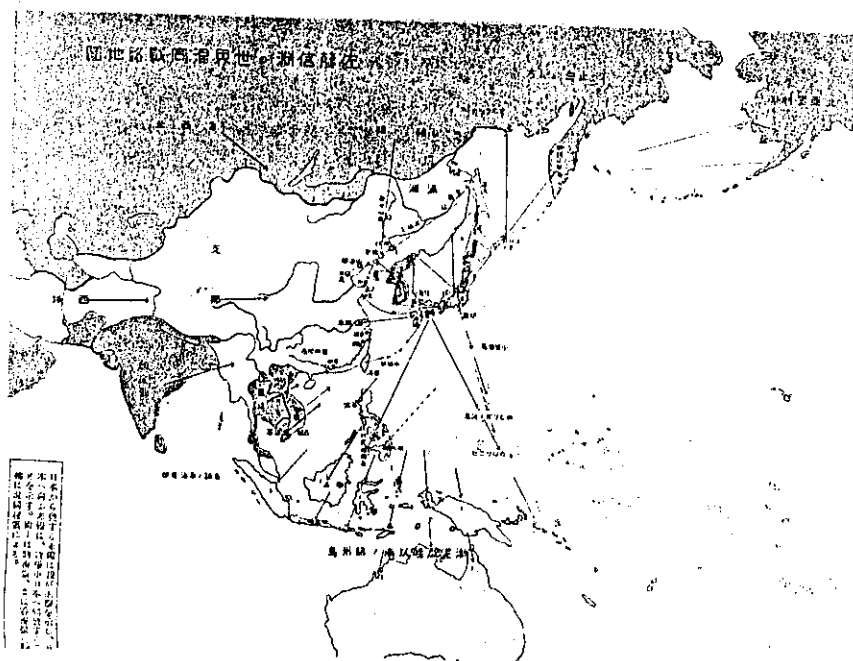
로는 우선 이즈(伊豆)의 7섬에서 배를 내어 남양 중의 무인도인 오가사와라(小笠原) 섬을 개척하고, 여기에서 다시 배를 내어 필리핀 등의 섬을 개발하고, 이 섬을 근거로 불의에 배를 내어 루손(呂宋)과 巴刺比亞(바타비아)의 두 나라를 공격하여 뺏고, 이 두 나라를 근거로 남방 도모의 기초를 삼고, 여기에서 다시 배를 내어 자바와 보르네오(渤海)에서 이외의 섬들을 경영한다.²⁸⁾

1823년에 씌어진 『宇內混同秘策』에서는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앞에서 서술한 북진과 남진책으로 러시아와 영국에 대항하는 이외에 대륙정책을 실행하여 중국대륙에서 형세의 지위를 점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사토 노부히로는 일본의 해외침략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전략적 위치상 중국을 판도에 넣으면 서역, 태국, 인도 등이 점점 일본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토는 중국침략을 일본 중심주의에 의해서 합리화하고 있는데, 즉 만주와 중국의 지배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민중을 곤궁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들어 만국의 無道를 바로잡아야 할 天理를 가진 일본이 출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사토 노부히로의 발상에는 지정학적 사고와 일본 제일주의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그는 중국을 공략하는 방략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후에 서술할 일본 국내체제의 정비 후에 편성될 새로운 행정조직들이 각각 중국 공격의 축선을 담당하는데, 공격축선은 모두 7개 축선으로 되어 있다.²⁹⁾ 제1축선은 아오모리(靑森)와 센다이의 병사들로 구성되는데, 이 지방 병사들은 추위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봉으로 진격하여, 흑룡강 방면에서 서남으로 여러 하천을 도하하여 진격하며, 제2축선은 沼垂府와 가나자와부(金澤府)의 병력으로 구성하여 조선의 동쪽에 있는 만주의 華林河 등을 거쳐 그곳에서 아오모리와 센다이의 병력과 합세하여 같이 길림과 盛京을 공격하며, 제3축선은 마쓰에(松江府) 부와 蕪의 병력으로 편성하여

28) 松原晃, 앞의 책, p. 205.

29) 이하의 내용은 松原晃, 앞의 책, pp. 208~209.



〈그림 1〉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해외침략계획³⁰⁾

30) 출전은 千越重昌, 『兵學者 佐藤信淵』(東京: 鶴書房, 1943), p. 365.

조선의 동해를 거쳐 함경, 강원, 경상 3도를 공략한다. 제4의 축선은 博多府의 병력을 중심으로 하여 충청도를 공격하여 조선을 손에 넣는다. 제3과 제4의 공격축선 구상에서 드러나듯이 사토 노부히로의 중국침략론은 자연히 조선에 대한 침략을 내포하고 있는 발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조선이 떨어지고, 盛京이 수중에 들어오면, 북경 방어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청나라 군주는 陝西로 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7府의 병력이 요양에서 합세하여 산해관에 공격해 들어가고, 제5의 축선으로 泊府의 병력은 이 사이에 유구에서 출발하여 대만을 취하고, 절강지방에 이르러, 대주, 영파 등지를 경략하고, 제6의 축선으로 南海 四國의 병력은 오가사와라에서 남양지방을 공격하여 남양자원으로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제7의 축선은 마츠마에(松前)의 병력으로서 예조의 북방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일본의 힘이 강대해지고, 남경이 함락되면, 구마모토의 병력이 親征으로써 바다를 건너 남경에 假皇居를 설치하고, 경략한 지방의 선무공작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노부히로의 해외침략계획을 지도에 도시해 본다면 그의 구상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사토 노부히로의 구상대로 침략이 단행된다고 볼 때 일본은 조선은 물론이고, 만주와 중국을 차지하게 되며 북으로는 사할린과 캄차카, 알류산열도 및 시베리아 지역, 남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호주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앞에서 살핀 혼다 토시아키의 해외식민지론의 구상이 경제적인 교역과 팽창의 논리였다면 확연하게 사토 노부히로의 구상은 군사적인 측면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당시 철저히 해국정책을 고수하던 막부의 대외정책상 이러한 사상이 정책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대동아공영권의 논리가 나오고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던 무렵 사토 노부히로의 사상은 일본에서 큰 각광을 받은 바 있다. 즉 사토 노부히로의 군사론은 그 후 일본이 걸어간 길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사토 노부히로가 제시한 침략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체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국내체제 정비론

장래에 이와 같은 해외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사토는 그를 위한 일본 정치, 군사, 행정,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그가 주장한 핵심은 막부체제와 같은 봉건체제에서 중앙집중적인 군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50여 개 이상의 번으로 분할된 봉건체도를 타파하고 지방행정구역을 8대 지방, 2부, 13성 등의 군현체도로 나눌 것을 주장하였다. 중앙국가기구의 정비도 불가피해진다. 그는 일본의 새로운 수도로서 에도지역을 주장하였는데, 처음으로 東京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에도의 개칭론, 동경천도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앙국가기구로서 大學校, 三臺, 六府의 설치를 주장하였다.³¹⁾

해외침략을 단행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병제의 정비이다. 사토 노부히로는 병제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구상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신분제에 근거한 사무라이 병제를 철폐하고, 천황이 직접 통솔하는 국민개병제를 창안한다는 것이다.³²⁾

이 군대는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며, 육군은 親衛 6명, 內衛 36명, 外衛 180명으로 구성한다. 陸軍府의 직원은 奉行 1인, 長吏 4인, 參政 8인, 대장군 좌우 각각 1인, 老將軍 210인을 두며 親衛는 주로 왕실 수비 및 경호를 담당하고 각명마다 3,000인씩, 총 18,000명 규모로 설치한다. 그래서 육군의 규모는 친위, 내외, 외위 합해 총 12만 6천인 정도가 된다.

이렇게 편성된 육군은 전법의 수련에 노력해야 한다. 훈련을 위해 천황의 황성 가까운 곳에 5개소의 演武場을 설치하여 車, 騎, 步兵의 전법 조련 및 야전의 18법(陣取, 守備, 出陣 등)을 강습케 하고, 大銃點放修練場을 설치하여 三銃(行軍, 防守, 水戰)의 용법을 수련하게 한다. 그는 해외정벌시 육군의 파견부대 구성에도 착안했는데, 그에 따르면 해외정벌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老將軍 가운데 征夷大將軍을 1명 뽑고, 參政 1명을 선발하여

31) 千越重昌, 앞의 책, pp. 278~282.

32) 이하 사토 노부히로의 군제개혁론에 대해서는 앞의 책, pp. 286~292 참조.

副將軍으로 삼고, 正師 1명으로써 監軍을 담당케 하고, 外衛의 장군 수십 명으로써 각 부대를 통솔하게 한다.

水軍府의 지휘관으로서 奉行 1인, 長吏 2인, 參政 4인, 老將軍 36인, 將軍 71인 등을 설치하고, 內衛 16명, 外衛 72명의 부대를 구성한다. 내위 16명은 왕궁 가까운 곳 강이나 바다에서 요새를 세워 수군을 훈련시키며, 황실 경호를 담당케 한다. 외위 72명에는 각영마다 1인의 장군을 두고, 각각 500인 정도의 수병을 지휘케 한다. 수군의 임무는 수군을 장악할 뿐 아니라 어업에도 힘을 쏟고, 여러 산품의 유통에도 조력하여 국가경제를 돕는 것이다. 특히 수군은 해외정벌시 그 임무가 막중하다. 해외정벌의 경우에 따라 수군의 편성은 달라진다. 해외제국을 정벌하는 경우 제1의 방안은 우선 수군부의 노장군 1인을 선봉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참정 1인을 부장군으로 하고, 三臺의 亞師 각각 1인씩을 監軍으로 하고, 水陸 양부의 장군 수십인으로 하여금 병사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고, 제2의 방안은 教化臺의 무사 중에서 대원수를 뽑고, 水陸 양부에서 長吏 1인을 부원수로 하고, 노장군 등으로 각각 병사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토는 봉건제도 타파와 군현제도의 설치를 주장했으며,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하여 많은 병력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체제를 주장했다. 또한 復古法을 실행하여 통제경제를 행하고, 군함을 여럿 건설하고, 대포를 주조하여, 水戰을 훈련시킬 것을 주장하고, 이런 연후에 해외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아편전쟁 이후의 군사론

노부히로는 이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는 北夷를 공략하고, 영국의 동진에 대해서는 남양에 병력을 파견할 것을 논의하고, 대륙에서 형세의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동아의 맹주가 되어 실권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1842년 아편전쟁 등을 통해 영국의 실세력을 알게 되면서 소극적인 海防의 논지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1847년 미군함이 우라가에 온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토의 군사론은 그 이전의 공세적인 것에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1847년에 『水陸戰法錄』, 『東西火攻辨』 등을 저술하여 아편전쟁시 등장한 영국의 군함이나 대포의 위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³³⁾ 같은 해에 쓰여진 『防海餘論』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세론에서 방비론으로 전환하고 있다. 에도를 방어하는 浦賀와 三崎, 이즈제도 등 중요 지역에 여럿의 포대를 건설하고, 거대한 포를 설치하며, 포탄의 발사법을 숙련시키며, 군사항구들에는 견고한 군함을 갖추는 것이 방어론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는 특히 해방과 해군의 필요를 역설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막부에도, 각번에도 재정상태가 극히 곤궁하여, 해방을 엄중하게 하는 것이 큰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부히로는 아울러 국가경제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기도 한다. 그는 네덜란드인을 불러 군선의 제작과 선박조종술 및 항해술, 대포의 발사법, 水戰 등에 대해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대선의 주조를 금지하고 있었고, 막부나 번에서도 네덜란드인의 고용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부히로는 가능한 상태 가운데 대항책을 강구하여 직접 自走火船, 異樣船, 신형小艇을 발명하기도 한다. 자주화선이란 시혜이의 火船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流星화약을 장전하여, 스스로 달리는 것으로서 현재의 수뢰의 전신이라 할 만한 것이다. 異樣船은 큰 배의 주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안된 小艦이다. 그 외 사토는 화기를 연구하고, 대포를 주조하고, 수전 및 육전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중국이 영국에 굴복한 사실을 알고는 영국에 단독으로 대항하는 것이 곤란함을 깨닫고, 1849년에 씌어진 『存華挫狄論』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제휴설을 주장하기도 한다.³⁴⁾

33)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東京: 風間書房, 1962; 原書房, 1980 覆刻), p. 384.

34) 松原晃, 앞의 책, pp. 213~215.

4. 蘭學派 군사론의 성격

지금까지 에도시기에 활동하였던 하야시 시헤이와 혼다 토시아키, 사토 노부히로의 군사론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이들의 군사론이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던 서양 군사론과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전통적 군사론과의 차이

서양세력의 도래에 따라 막번체제의 군사체제상에 불안함을 느낀 것은 비단 난학파뿐만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주자학자들이나 국학자들도 나름대로 군사개혁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통적인 주자학이나 국학자들의 군사적인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난학파의 군사론은 전통적인 군사론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고,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사무라이 군대론, 전략전술론, 영토팽창론 등의 요소로 나누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무라이 군대론에 대한 비교이다. 난학파들의 본격적인 등장 이전에 활동한 개혁적인 성향의 주자학자들이나 국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서구 세력의 도래와 그에 따른 일본 방비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막번 군사체제의 주축인 사무라이 계층의 경제적, 군사적 약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무라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제안이 제시되었다. 쇼군 요시무네(1684~1751)는 전반적인 검약을 강조하면서도 負債를 진 사무라이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구상하였다. 중상주의적 경향을 가진 학자 카이호 세이료오(1755~1817)는 사무라이도 상인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교역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무라이 계층의 군사적 약화에 대해서도 해결책들이 제시되

고 있는데, 古學者 오규우 소라이(1666~1728)나 다자이 슌다이(太宰春台, 1680~1747)는 사무라이들의 도시居住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무라이들의 농촌 복귀를 촉구하는, 소위 무사들의 土着制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사무라이들이 都市의 성격을 띠고 있는 城下町에 모여 살게 되면서 戰士로서의 정신 자세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회귀, 다시 말하면 사무라이들의 본거지였던 농촌으로 돌아가 무사로서의 기백을 잃지 않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무라이(士)다운 행태의 회복이 강건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많은 지식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 주장들이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개혁적이었다고 평가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막번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사농공상을 엄격히 구별하는 신분제 관념, 사무라이 계급 주축의 군대형성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즉 군사체제 개혁의 처방의 범위는 대개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하야시 시헤이나 혼다 토시아키의 경우에도 신분제 관념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제기되어 있질 않다. 그러나 이들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활동하는 사토 노부히로의 경우에는 사무라이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군사체제의 대안으로 전 사회신분을 망라하는 군대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봉건적인 身分制 군대에서 근대적인 국민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상이 1800년대에 접어들 무렵의 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막번체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신분제 관념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³⁵⁾

다음은 전략전술론에 대한 비교이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군사전략에 관한 한 孫子の 저술이 정형적인 텍스트로서 수용되어졌다.

35) 1800년대 전반기에 이르면 미토 가쿠(水戶學)에서 과거의 신분제 관념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참가하는 군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1825년에 발표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의 『新論』이 바로 그것이다. T.나지타, 『근대일본사: 정치항쟁과 지적 긴장』 박영재 옮김(역민사, 1992). p. 74.

이 점은 막부 시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손자병법을 애독하였으며, 하야시 라잔도 손자병법을 깊이 연구하였다.³⁶⁾

그런데 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고전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의 기운이 농후해지면서 손자병법에 대해서도 일본적 특수성이라는 견지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오규우 소라이는 그의 군사저술 『젠로쿠 가이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한 전쟁은 소위 전쟁술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지형적으로 산악지형도 있고, 평탄한 지형도 있다. 군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동일한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형화된 형식의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장군들의 능력에 의해 다양한 경우에 따른 전략적 원칙들을 계속 연구함으로써만이 승리의 길을 얻을 수 있다.”³⁷⁾

위 인용문에는 고전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일본적 현실에 적합한 군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규우 소라이의 경우에는 군사학에 관한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구의 화기에 대하여 실증적 관심을 넓혔는지도 모른다.³⁸⁾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난학자들에 의해서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는 해양을 끼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그 지리적 특수성에 걸맞는 새로운 군사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孫子兵法의 전제를 비판하고 海防論을 주장했던 것이다.

난학파들의 등장 이전 시기에 활동하던 지식인들 가운데에도 서구세력의 도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영토확장, 해외팽창론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하야시 시헤이의 부친과 교우를 나누었던 아라이 하쿠세키(1657~

36)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東京:原書房, 1962, 1980), pp. 245~248.

37) Hirakawa Sukehiro, op. cit., p. 448.

38) 오규우 소라이는 이미 1700년대 초반에 쇼군 요시무네의 명에 따라 『西洋火器神器說』을 짓고 있다.

1725)는 이미 1700년대 초반에 『蝦夷志』를 저술하여 당시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에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일본이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에 노출되기 시작했던 1780년대에는 에조 개척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781년, 쿠도 헤이스케(1734~1800)가 『赤蝦夷風說考』를 저술하여 에조방위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해인 1782년에는 사토 노부히로의 부친이기도 한 佐藤信季가 아키타번의 다이묘에게 에조 개척을 주장하는 건백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로오쥬(老中) 다누마 오키츠구(1719~1788)는 직접 에조 정착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에조 개척으로 대변되는 이들 학자들의 해외팽창론은 난학파들에 의해 계승되면서 보다 확대된 형태를 띤다. 하야시 시헤이는 지리적으로 에조, 조선, 유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혼다 토시아키나 사토 노부히로는 보다 거시적으로 북으로는 캄차카, 쿠릴, 북아메리카, 남으로는 필리핀, 자바, 보르네오 등어까지, 서로는 중국 대륙에까지 미치는 해외팽창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펴본 난학파의 군사론은, 특히 군대구성론, 전략술론, 해외팽창론의 측면에서 그 이전 시기의 주장들과 비교해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면서도 보다 대담한 주장까지 개진하고 있다. 그 대담성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계급을 망라한 군대의 구성, 손자병법에 대한 비판, 해외팽창론 등의 발상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이전 시기의 선진적인 주장들의 수용 이외에 무슨 요인이 자리했던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절을 바꾸어 당대 도입된 서구 군사론이 어떻게 난학파들에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점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서양 군사론의 수용

도쿠가와 막부는 초기에는 외국과의 접촉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1639년 쇄국령의 실시 이후에는 근 100여 년 간 서구문물과의 접촉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러다가 1720년 이후에 쇼군 요시무네에

의해서 서구의 서적에 대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서구 문물은 일본 지식인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수용된 서구의 군사론은 어떠한 것인가.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서구의 어떤 군사정보가 어떤 군사서적을 통해 일본에 유입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쇄국령의 시행 이후 서구의 군사정보는 네덜란드를 매개로 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1637~1638년간 시마바라의 반란 진압 당시 막부는 화란상관에 체재하던 니콜라스 코에케베커, 프랑소와 카론, 볼프강 브라운 등의 네덜란드인들로부터 박격포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1649년 화란상관의 중재에 의해 바타비아로부터 일본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박격포 기술자들은 8개월간 에도에 머물면서 막부 관계자들에게 포술을 전수했는데, 이것이 막부 鐵砲房에서 다스케(田村)류의 포술로 발전하였다. 또한 호조 우지나가(北條氏長, 1609~1670)는 이들로부터 배운 서구의 포위전에 관한 전략을 『由利安攻城傳』에 남기고 있다. 또한 화란상관이 위치한 히라도 지방의 사무라이였던 후루카와 지로에몬(古川治郎右衛門)은 화란 선박의 포수로부터 얻었던 서구 포술의 지식을 『紅毛火術錄』에 기록하였는데, 이 책은 원거리 측정, 기중기, 조준계산법, 후장식 대포, 대포, 박격포, 포탄, 火船 등 당대 유럽 포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³⁹⁾ 1690년 나가사키에 도착한 엥겔버트 캠퍼(Engelbert Kaempfer)는 169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시즈키 마고헤이(志筑孫平, 1677~1710) 등과 10권으로 된 『紅毛火術秘傳抄』를 저술했는데, 이는 『紅毛火術錄』보다 최신의 정보인 17세기 후반 유럽포술에 대한 연구이다.⁴⁰⁾ 또한 1700년대 초반에는 오규우 소라이(1666~1728)가 쇼군 요시무네의 명에 따라 『西洋火器神器說』을 저술하고 있다.

1783년 저술된 『蘭學階梯』에는 “미리타이루 오루던후쿠”를 포함한 당시 유입된 서구 군사서적의 병서 16종이 실려 있다.⁴¹⁾

이를 내용별로 보면 군사 사전류 1권, 육군 병서류 8권, 水戰 병서류 3권, 공병에 관한 서적 3권, 기타 1종이다. 육군 兵書類는 步兵교련법, 砲兵

39) 이상은 Seiho Arima, *Ibid.*, p. 356.

40) Seiho Arima, p. 356.

41) 丸山國雄, “西洋軍事學の攝取” 『軍事史學』 第12號(1968), pp. 24~26.

교련법, 騎兵교련법, 三兵配合교련법, 將帥術 등에 관한 서적들이고, 공병에 관한 서적은 築城術, 진지구축 등에 관한 서적들이다. 그리고 水戰에 관한 서적류는 軍艦中 諸兵교련, 造船法, 海軍砲兵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1790년 로오주 마츠다이(松平定信, 1748~1829)는 서구 군사학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 1723~1803)에게 명하여 1708년 크라프(Abraham Kraaf)가 저술한 *Machines Wiskunst*의 8장 “Fortification”을 번역하게 하였고, 이는 1790년 『和蘭築城書』로 출간되었다.

18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서구 군사학 관계 서적 번역은 화란역관이었던 이시바시 수케자에몬(石橋助左衛門)이 번역한 『西洋火筒放發論』, 모토키 쇼자에몬(本木庄左衛門, 1767~1822)이 번역한 『砲術備要』, 『軍艦圖解』, 츠지란세츠(辻蘭説)가 번역한 『陸海戰圖』, 시미즈 마사노리(清水正徳, 1766~1848)가 번역한 『西洋火器圖説』 등이 있다.⁴²⁾

1820년 이후 수입되어 번역된 서구의 군사전략서는 다음과 같다. 1841년 나무라 모토요시(名村元義)가 번역한 『遠西火攻精選』⁴³⁾, 1843년 스기타 세이케이(杉田成卿)와 우다가와 요안(宇田川裕庵)가 공동번역한 『海上砲術全書』⁴⁴⁾, 1847년 후지이 사부로(藤井三郎)가 번역한 『舶砲新篇』⁴⁵⁾, 타카노 초에이(高野長英)와 스즈키 슌잔(鈴木春山)이 공동번역한 『三兵戰術書』⁴⁶⁾ 1851년 우에다 료쇼(上田亮章)가 편집한 『鈴林必携』(Artillery Pocket Book),⁴⁷⁾ Savart(1827)와 Merkes(1825) 등에서 편역한 『築城學』, Beuscher(1834),

42) 이상은 Seiho Arima, “The Western Influence on Japanese Military Science,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omumenta Nipponica*, Vol. XIX, No. 3~4 (1964), pp. 360~361. 여기에서 시미즈 마사노리(清水正徳, 1766~1848)의 『西洋火器圖説』은 오규우 소라이(荻生徂來, 1666~1728)가 저술한 『西洋火攻神器說國字解』와 같은 내용이다. 시미즈 마사노리는 清水赤城이라고도 하며 그 밖에 그는 1807년에 『神器譜』, 1814년에 『火砲要録』 등을 저술하고 있다.

43) 원 저자는 Sessler(1823).

44) 원 저자는 Calten(1832).

45) 원 저자는 Calten.

46) Decker와 Brandt 공저(1831); 타카노 초에이(高野長英)는 P.F.von Siebold의 제자이다.

47) 원 저자는 Bruyn, 원제는 Military Pocket Book(1833).

Stieetjes(1832), von Schilt-Houwer 등에서 편역한 『砲術書』, 1817년 Giesweit가 저술한 『馬術騎兵術』 번역, 화란군 보병교련서에서 편역한 『步兵操練書』 등의 목록이 보인다. 『兵學小識』의 서문을 쓴 安井衝이 외국 오랑캐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외국군대의 진보한 병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서구의 군사저술에 대한 활발한 번역을 통해서 서구의 병법을 받아들여려고 했던 것 같다.

목록만으로 본다면 1800년대를 전후로 유입된 서구군사론은 주로 화기를 중심으로 한 포병관계 군사론, 축성술과 공성술에 관련된 공병관계 군사론, 海戰 및 軍艦 등의 海軍관련 군사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략 1800년대를 전후로 주요 군사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하야시 시헤이나 혼다 토시아키, 사토 노부히로 등은 이런 군사서적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

하야시 시헤이의 경우 상당한 정도로 서구 군사론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다. Seiho Arima는 하야시 시헤이가 저술한 『海國兵談』이 서구 군사과학을 도입하여 근대전략을 연구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 책의 집필에 동원된 자료는 현재 미토 쇼코칸(書庫館)에 보관되어 있는 Wilhelmi di Lichii의 Kriegsbuch(Johann Philipp Andere, Frankfurt am Meyn, 1689) 12권과 1798년 한 화란인이 나가사키 봉행에게 준 Luchtship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⁴⁸⁾

『海國兵談』이 1792년에 저술된 점을 감안하면 Seiho Arima의 주장처럼 1798년에 수입된 Luchtship이 『海國兵談』의 저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Wilhelmi di Lichii의 Kriegsbuch(전쟁론)와 『海國兵談』과의 관련은 앞으로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 할 만하다.

사토 노부히로도 『防海餘論』에서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중국과 싸워 이긴 이유로 방패, 칼, 화살, 장창 등 고전적인 무기를 고집하는 중국군에 비해 영국이 총포 등의 화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면서, 스나반 총, 카라베인총, 대포 등 3종류의 무기를 구득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

48) Seiho Arima, op. cit., pp. 358~359.

다.⁴⁹⁾ 이 점으로 미루어 사토의 경우도 서구의 화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야시 시헤이나 사토 노부히로 등이 당대에 진행된 서구 군사학의 수용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해진다. 개량된 서구식 화포의 채택 주장, 해안방어에 대한 강조, 삼병전술과 같은 新병법의 옹호 등은 이들이 서구 군사론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음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이들을 난학파로 규정한 본 연구의 전제가 크게 보아 무리는 아니었다고도 생각된다. 이들의 군사론이 공유했던 독특성은 상당한 정도로 서구로부터 유입된 군사론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혼다 토시아키나 사토 노부히로가 주장한 해외팽창론이나 사토 노부히로가 말하는 국민군대의 구상과 같은 경우는 그 원천과 성격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서구에서도 국민군대의 제도화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토 노부히로가 염두에 둔 것과 같은 국민군대의 구상은 상당히 시대를 앞선 주장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외식민지론이나 영토팽창론의 경우에도 서구 제국주의의 해외팽창현상이 초보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구 군사론의 일방적인 수용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요소들은 단지 서구 군사론의 수용에 근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國學의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배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을 만국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萬國의 無道를 일본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본중심주의의 영향권 속에서 해외식민지론이나 팽창론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즉 난학파 군사론의 요소들은 막번체제하에서 수용된 서구군사론과 독자적으로 배태된 國學的 사고가 일부 지식인의 사상 속에서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49) 丸山國雄, 앞의 글, p. 28.

5. 맺 음 말

우리는 지금까지 하야시 시헤이, 혼다 토시아키, 사토 노부히로 등의 난학과 군사론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논문을 끝내면서 이상에서 정리된 바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존연구에서 별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하야시 시헤이와 혼다 토시아키, 사토 노부히로를 蘭學派의 카테고리에 묶어 주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그들이 주장한 군사론의 독특한 요소를 찾아내려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주장한 海防論, 해외식민지론, 해외팽창론, 국민군대 구성론, 서구식 화기 도입론 등이 당시의 일본의 전통적 군사론의 틀을 벗어나는 요소들임을 밝혔다. 특히 신분제의 관념을 뛰어넘는 국민군대조직의 발상, 손자병법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동양군사론의 전제들을 비판하는 시각, 해외식민지론 및 해외팽창의 관념 등은 봉건적인 막부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요소들임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당시의 막부체제의 기본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해방론의 주장을 제시했던 하야시 시헤이의 경우에는 저서의 출간 이후 금고의 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군사론의 등장인 일본의 정책, 막부의 정책으로 직접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군사론의 요소들이 추후에 진행되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어떠한 영향을 주며 반영되느냐를 추적하는 과정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주제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근 조선이나 청에서의 유사한 군사론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비교해 보는 일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해외팽창론은 그 의미를 제한시키려 해도 좁게는 征韓論, 넓게는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의 원형질적 요소를 담고 있다. 해외 팽창론을 주장한 사토 노부히로의 주장이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 학계 일각에서 높이 평가된 점은 위의 언급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론이 제시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이념이 어떻게 후일에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일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 난학과 군사론의 많은 부분이 당대에 수용된 서구군사론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海防論, 서구식 화포의 수용, 삼병전술의 옹호 등은 당대에 도입된 서구군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외팽창론이나 식민지론, 국민군대론 등은 서구군사론의 영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독자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난학과 군사론이 서구군사론과 아울러 國學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군사론이 어떻게 막부와 제번의 군사근대화 개혁에 반영되는가, 그리고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근대화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연관을 밝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크리미아戰爭時 新聞報道가 英國軍에 미친 影響

元 泰 載
(陸軍本部)

1. 머리 말
2. 新聞의 役割增大와 戰爭勃發
3. 戰時報道와 軍·言論의 갈등
4. 맺음 말

1. 머리 말

크리미아戰爭(Crimean War:1854-1856)은 유럽 歷史뿐만 아니라 軍事史的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戰爭이 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戰爭史上 처음으로 公共輿論이 전쟁상황과 군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즉 크리미아戰爭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 전쟁이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 특별히 重要性을 지녔다거나 관심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新聞과 通信手段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의 참혹상이 國民들에게 널리 알려진 까닭이었다.

나폴레옹戰爭 당시 스페인이나 위털루에서의 英國軍의 용맹성에 대한 武勇談을 듣거나 新聞記事를 읽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크리미

아戰爭에서 經步兵旅團의 벨러클라버(Balaclava) 要塞 공격에 관한 武勇談이나 나이팅게일의 美談에 대해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신문 역사상 처음으로 더 타임즈(The Times)의 러셀(William Russell) 記者 등 각 신문 특파원들이 전투현장에 직접 종군하여 전쟁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

또한 저널리즘의 기술진보, 즉 寫眞機의 발명과 빠른 蒸氣船의 등장으로 인해 본국 국민들은 앉아서도 최전선의 交通壕 속에 있는 兵士들의 비참한 모습을 쉽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²⁾

반면에 대중의 여론은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失策을 이해하고 寬容을 베푸는 데 아직 익숙하지 못했다. 나폴레옹戰爭 이후 政府 각 분야의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公共機關 및 官吏들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이보다 훨씬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론은 크리미아에서 陸軍의 낙후된 行政 및 軍需支援體制가 빚은 실패에 대해 비판할 채비가 너무도 잘 되어 있었다.

한편 戰爭에 대한 一般 知識人들의 태도 변화도 크리미아戰爭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된 또 다른 理由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미 戰爭은 더 이상 支配階級の 전유물이 아니며, 바로 '國民들의 戰爭(the People's War)'³⁾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産業革命의 영향으로 일찍이 中産層으로 부상한 많은 英國民들은 이제 戰爭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전쟁을 肯定的 시각으로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다. 또한 19세기의 宗教的 信仰에 대한 쇠퇴 현상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왔다. 즉 죽음이 더 이상 永生不滅에 이르는 전제가 될 수 없었기

1) E.L. Woodward, *The Age of Reform 1815~1870*(Oxford : Clarendon Press, 1958), p. 255. 戰爭報道的 기원은 1807년 같은 신문의 헨리 로빈슨(Henry Robinson) 記者가 나폴레옹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베를린에 파견되어 자세한 전황 보도를 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전투현장에 직접 종군한 것은 아니었다.

2) J.B.R. Nicholson, *The British Army of the Crimea*(Birkshire : Opsprey, 1974) 이 책은 당시 종군기자들이 크리미아에서 찍은 寫眞畫報로 꾸며진 것으로 이 당시의 사진기술 수준과 함께 군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3) Olive Anderson, *A Liberal State at War*(London : Macmillan, 1967), p. 1.

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욱 비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⁴⁾

19세기 중반 英國에서는 輿論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다른 類型의 두 集團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한 집단은 過去를 되돌아 봄으로써 現實을 진단하려는 전통주의자들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未來를 예견함으로써 現在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進歩主義者들이었다.

傳統主義者들이 과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세대였다면, 進歩主義者들은 미래의 기술진보에 좀더 관심을 가진 세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난 40여 년 간의 급속한 變化, 특히 交通·通信手段의 발전에 주목하였으며, 技術進歩에 관한 한 열강 중에서도 英國이 단연 선두이며 러시아가 가장 후미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⁵⁾ 전신·철도·후미 장전식 대포·사진기 그리고 蒸氣機關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장차 전 양상을 大量 殺傷, 速戰速決戰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신속과 정확(short and sharp)'은 당시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同時代人들의 희망과 기대였던 것이 다.⁶⁾

크리미아戰爭이 끝난 후, 그 커다란 충격으로 인해 비로소 英國陸軍은 워털루 이후 계속되어 온 깊은 停滯期에서 벗어나 일련의 改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新聞은 바로 이러한 개혁을 태동시키고 가속화시킨 장본인이었다.

본 글에서는 최초로 新聞記者가 직접 전쟁터에 從軍했던 크리미아戰爭 당시 軍과 言論 및 輿論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바람직한 軍·言論 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Woodward, Reform, p. 225 러스킨(John Ruskin)과 비스마르크(Bismark)는 서로 편이한 인물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가 전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영혼의 존재를 믿느냐 믿느냐, 즉 개인의 종교적 신앙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強調했다는 사실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급속한 과학발전의 영향으로 基督敎가 최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Anderson, Liberal State, p. 2

6) Ibid, p. 3. 그것은 곧 新聞의 속성과도 부합되었다.

2. 新聞의 役割增大와 戰爭勃發

크리미아戰爭이 막 시작되었을 때 더 타임즈는 “戰平時를 막론하고 改革을 성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중에 대한 公開와 대중에 의한 討論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소수 言論人들만의 견해는 아니었다. 1850년대에는 사회와 개인을 막론하고 自由가 發展과 改革의 주요 원천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自由言論이 專制主義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어수단의 하나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부한 이야기였다.⁷⁾ 그 시대의 많은 중산층들은 新聞과 大衆集會 그리고 대의 기관인 議會를 통한 자유로운 公共意思 表現手段을 보 유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발전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歷史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었다.⁸⁾

英國의 과거 憲政史를 돌이켜 볼 때, 국민 여론은 전통적으로 議會를 통해서 표출되고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 의 國民들은 議會가 국민여론의 방향을 인지하고 특히 戰時에 政府의 政策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⁹⁾ 즉 전시에는 여론을 재빨리 수렴하고 이를 다시 政策에 반영하는 정치적 安全瓣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議會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忍耐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된 사회 분위기는 의회라는 낡은 기능 대신 선동적인 大衆集會와 新聞이라는 매우 감각적인 機能을 선택하게 되었다.¹⁰⁾ 그런 면에서 크리미아戰爭은 議會의 권위가 실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The Times, 10 June 1854, cited by Anderson, *Liberal State*, p. 70.

8) Ibid.

9) *Saturday Review*, 1 Dec. 1855, cited by *ibid.*

10) Ibid., p. 85.

11) Ibid., p. 86~87.

한편 産業革命의 결과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상승한 중산층은 이미 1832年 이후 新聞을 통해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왔다. 이 당시 新聞의 역할 증대에 대해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는 이렇게 보도했다: “지널리즘은 이미 支配階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오히려 國內의 비판적 지식인 계층이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통제하는 手段인 동시에 제국 內의 제4신분이 되었다.”¹²⁾

아무튼 新聞이 知識層에게 정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주고, 전쟁이 예기치 않은 大衆公開와 討論現象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었다. 또한 從軍記者制度和 寫眞技術의 발전은 크리미아전쟁의 산물이었다. 특히 더 타임즈는 戰爭을 다룬 태도 면에서 주목을 끌었다. 나폴레옹戰爭 당시까지만 해도 더 타임즈는 1일 발행부수가 겨우 5,000부에 불과했으나, 크리미아戰爭 중에 무려 61,000부로 격증하였다.¹³⁾ 더욱이 1855年 新聞에 대한 印紙稅가 폐지된 이후 이 新聞은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영국내 여론 형성의 중추역할을 하는 中産階層 家庭의 식탁 위로 배달되었다.¹⁴⁾ 더 타임즈가 실제 전쟁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新聞의 社史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더 타임즈는 크리미아戰爭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에 걸쳐 책임이 있으며 결국은 英國이 勝利하는 데 공헌했다. 이 新聞은 남아 있던 陸軍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한 部署(주: 육군 및 식민성)를 무너뜨리고 다른 부서(주: 육군성)의 개편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新聞은 한 사람의 野戰軍 司令官(주: 래글런 將軍)을 물러나게 하였다.¹⁵⁾

12) Edinburgh Review, 102(Oct. 1855) : 487, cited by ibid, p. 87.

13) ibid, p. 71. 전쟁 당시 발행부수에 대해서 바네트(Barnett)와 스피어스(Spiers)는 40,000부라는 다른 統計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튼 더 타임즈의 발행부수가 당시의 다른 경쟁지들의 발행부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Edward M. Spiers, The Army and Society : 1815 to 1914(London : Longmans, 1980), p. 97 ; Corelli Barnett, Britain and Her Army 1509~1970(London : Allen Lane, The Penguin, 1970), p. 285.

14) Barnett, Her Army, p. 285.

15) The Times, The History of the Times : The Tradition Established 1841~1884, 5 vols.(London :

크리미아戰爭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1世(Nikolai I)가 터키 領內에 있는 기독교도들과 예루살렘의 聖地 保護權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터키가 1853년 10월 對러시아 宣戰布告를 함으로써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30일 시노페(Sinope)海戰에서 터키가 대패하자, 英國과 프랑스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勢力均衡을 구실로 ‘유럽의 患者’로 불리던 터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854년 1월에는 英·佛 黑海聯合艦隊가 파견되었으며, 2개월 뒤인 3월 28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宣戰布告가 뒤따랐다. 당시 聯立 內閣을 이끌고 있던 애버딘卿(Sir George Hamilton Gordon Aberdeen)은 군사적 개입을 꺼려 하고 있었으나 프랑스의 單獨介入에 대한 우려와 강렬한 민족주의 성향을 띤 言論, 議會 및 國民輿論의 압력에 의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의 전제적 통치체제와 팽창주의적 外交政策에 대한 英國民들의 증오는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었다. 일찍이 윌슨(Robert Wilson)은 1817년에 러시아의 外交的 目標에 대해 경고하는 論文을 발표한 바 있으며, 1820년대 후반에는 에반스 中領이 러시아의 南下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自由國家들이 터키帝國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었다.¹⁶⁾ 또한 과거의 차아티스트 指導者들과 급진파 指導者들도 民族主義運動에 편승하여 전국 대도시에서의 大衆集會를 주도했으며, 더 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新聞들은 시노페戰鬪 이후 대중들의 러시아 증오심을 이용하여 參戰熱氣를 더욱 부채질했다.¹⁷⁾

비록 急進論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전쟁을 지지하기는 自由主義者나 保守主義者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동기는 專制君主의 曠政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帝國主義的 侵略에 대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지만, 그들은 목적에 있어서만은 일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어도 年未까지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首相인

the Times, 1939), 2 : 191~192.

16) J.H. Gleason, The Genesis of Russophobia in Great Britain(Cambridge : Havard U.P. 1950), pp. 50~54, 101~104, 164~204.

17) Asa Briggs, The Age of Improvement(London : Longmans, 1960), p. 380.

에버딘卿도 세바스토폴이 곧 함락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특히 陸軍長官이던 뉴케슬 公爵은 세바스토폴을 함락한 후, 地上軍은 그곳에서 越冬을 하거나 아니면 要塞를 파괴한 후 보스포러스 해안으로 철수하여 월동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모하리만치 樂觀論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¹⁸⁾

1854年 2月 약 27,000명의 遠征軍이 크리미아를 향해 출발했다. 遠征軍의 규모와 도착 날짜는 當局의 검열 없이 더 타임즈에 의해 밝혀졌다. 원정군은 3개 近衛大隊과 25개 步兵大隊, 그리고 16개 騎兵中隊로 구성되었는데 步兵의 경우 25개 大隊에서 오직 6개 大隊만이 과거 30여 년 동안 現役に 있던 부대였으며, 그나마 將兵들 대부분이 참전 경험이 없었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래글런卿은 스페인戰爭 참전자였으며, 워털루(Waterloo)戰鬪에서는 한 팔을 잃기까지 했으나, 1854年 66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거의 40年間이나 전투에 참가해 보지 않았으며 指揮官 職책을 수행해 본 적도 없었다.¹⁹⁾

또한 그와 더불어 步兵師團들을 지휘하게 된 5명의 將軍들 중 오직 2명만이 겨우 大隊級 정도의 전투지휘 경험이 있었으며, 더구나 케임브리지 公爵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6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 기병부대 지휘관들도 重騎兵旅團長인 스칼레트卿(Sir James Scarlett)을 제외하고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騎兵師團을 지휘한 루칸卿(Earl of George Charles Bingham Lucan)이나 그와 사돈간이었던 經騎兵旅團長 카디건卿(Earl of James Thomas Brudenell Cardigan) 모두가 실전 경험이 없었으며, 게다가 두 사람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다.

참모직에 임명된 자들도 하나같이 경험이 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高級副官이던 이스트코트(Estcourt) 將軍은 군대업무보다도 탐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으며, 최초 軍需參謀였던 로스卿(Sir De Ros)은 참모경험

18) The British Banner, 24 May 1854, p. 375,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98.

19) 크리미아戰爭에서도 래글런은 아직도 敵을 ‘프랑스軍’이라고 잘못 기술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나폴레옹戰爭의 영향이었다. 그는 수려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양심적인 젠틀맨이었으나, 능력 면에서 평균 이상의 인물은 아니었다. Woodward, Reform, p. 264.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본국에서 야전까지의 실질적인 보급 및 수송업무를 맡고 있는 兵站局의 경우, 66歳の 민간인 출신 局長인 필더(James Filder)와 그의 민간인 參謀組織이 27,000명에 이르는 兵力을 지원하기에는 力不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타임즈는 “遠征軍이야말로 일찍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戰鬪力과 놀랄 만한 效率性を 지닌 軍隊”²⁰⁾라고 격찬했다.

3. 戰時報道와 軍·言論의 갈등

크리미아戰爭이 시작되자, 軍은 40여 년 간에 걸친 침묵을 깨고 비로소 다시 輿論의 초점이 되었다. 전쟁상황뿐만 아니라 군대의 管理, 고급 지휘관 및 참모의 능력, 그리고 군대의 保健衛生과 生活環境 등 모든 것이 신문과 의회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특히 크리미아 特派員인 러셀(William Howard Russell) 記者의 선동적인 記事를 통해 비판 여론을 선도해 온 더 타임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戰爭狀況을 恣評하고 폭로하였다.²¹⁾ 크리미아戰線의 고급 지휘관들은 자신들은 런던과 세바스토폴에서 두 개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런던의 敵이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다.²²⁾ 러셀은 단순히 사실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여론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크리미아에서의 輸送, 醫藥品 그리고 보급품 문제뿐만 아니라 陸軍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輿論의 비난을 주도한 것은 바로 그였다. 또한 이 新聞의 편집인인 델레인(Delane)은 1854年 6월에 이미 크리미아事態의 개입에 소극적인 軍將星들을 不平分子라고 비난하면서 크리미아 침공을 주장한 바 있었다.

新聞의 전쟁 관련 보도는 과거에는 주로 外國新聞의 記事나 혹은 현지

20) The Times, 14 Feb. 1854, pp. 6~7,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99.

21) The Times, History, 2 : 166.

22) Spiers, Army and Society. p. 97.

부대에서 고용된 下級將校들이 보내 주는 報告書에 의존하고 있었다. 크리미아전쟁 발발 직전 러시아와 터키 간의 충돌시만 해도 더 타임즈는 내스마이드(Nasmyth) 中尉를 현지 통신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된 통신원들의 기사는 매우 선별적이고 비정기적이었기 때문에 편집인이던 딜레인은 다시 러셀을 특파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러셀은 近衛隊 兵力과 함께 軍輸送船을 타고 말타(Malta)를 거쳐 갈리폴리(Gallipoli)까지 갔다. 陸軍總司令官이던 하딘지 將軍이 러셀에게 약속했던 각종 취재 편의 제공은 野戰將校들에 의해 수시로 무시되었지만 러셀은 손수 천막을 설치해 가면서 잘 견딘 결과, 그가 말타에서 보낸 첫 기사가 1854年 4月 19日字 新聞에 게재될 수 있었다.

현지에서 너무도 심한 軍 管理上의 문제점들을 목격한 그는 갈리폴리에 상륙한 지 불과 3日 만에 딜레인에게 보낸 書信에서 이렇게 썼다: “프랑스軍과 비교해 볼 때 우리 英國軍의 管理는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患者가 누울 침대조차 없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²³⁾

더 타임즈는 또한 戰線에서 보낸 장교들의 書信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러셀의 보도에 대한 信賴度를 높이고자 했다. 將校들은 이 서신을 통해 전선에서의 불만사항과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 폭로하였으며, 딜레인은 論說委員들로 하여금 러셀의 기사를 지지하는 社說을 쓰도록 유도했다. 그리하여 1854年 5月 말경에는 이미 더 타임즈가 軍改革運動을 주도하게 되었다.

軍의 管理體制上의 문제점은 러셀이 파견되기 전에도 이미 더 타임즈에 의해 비판되고 있었다. 이 신문은 이미 1854年 2月에 軍指揮統制權의 분산의 위험을 지적하고 陸軍省으로부터 植民業務를 분리할 것과 한 사람의 閣僚 밑에 다양한 군사 기구를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²⁴⁾ 러셀의 폭로기사는 이러한 主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타에서 兵士들, 특히 患者들이 겨우 모포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遠征軍의 軍수참모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이를 담당하 4名의

23) The Times, History, 2 : 171.

24) The Times, 27 Feb. 1854, p. 8,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100. 그 해 6월 陸軍省과 植民省은 각각 분리되었다.

將校들보다도 그들에게 적당한 人的·物的 支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위층에게 더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⁵⁾

한편 크리미아에서 러셀은 遠征軍 司令官인 래글런卿과 그의 참모진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그의 이러한 비판적인 글이 편집인인 딜레인에게 보내는 개인 書信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딜레인은 이 내용을 政府 閣僚들에게 공개했다. 러셀은 1854年 11月 8日 書信에서 래글런을 이렇게 비난했다.

저는 래글런卿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군을 지휘하기에는 매우 무능한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략적 안목과 기선을 제압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잉커맨(Inkerman)戰鬪의 경우, 심지어 그는 한낱 수수방관하는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의 예하부대들을 순시하거나 部下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²⁶⁾

英國軍이 세바스토폴 지방에서 혹독한 겨울 동안 苦戰하게 됨에 따라 러셀과 불만에 찬 일부 장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어졌다. 그들은 래글런卿과 그의 參謀들뿐만이 아니라 기병 사단장이던 루칸 將軍이나 경기병 여단장이던 커디션 將軍과 같이 부하병사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그들의 본부에만 머물고 있던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11月 25日 세바스토폴發 記事에서 러셀은 이렇게 전장 상황을 묘사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 하늘은 잉크처럼 검게 변하고 바람은 뼈격거리는 天幕을 휘돌아치고 있다. 교통호는 도랑으로 변하고 천막 안에도 물이 1피트씩이나 고였다. 우리 兵士들은 아무런 난방 대책이나 防水服조차도 없이 추운 겨울 전투에 비참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아무도 그들의 安危와 生命을 돌보아 주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²⁷⁾

25) W.H. Russell, *The War : from the landing at Gallipoli to death of Lord Raglan*(London : Routledge, 1855), p. 33.

26) J.B. Atkins, *The Life of Sir W.H. Russell*, 2 vols. (London : J. Murray, 1911), 1 : 174.

27) Russell, *War*, pp. 279~280.

더 타임즈의 論說委員들의 글은 더욱 구체적이고, 人身攻擊的이었다. 그들은 특히 遠征軍 副司官인 잉글랜드卿(Sir Richard England)의 능력과 명망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다. 그들은 동료 장군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軍經歷조차 보잘것없는 그가 現在의 사령관인 래글런의 뒤를 이어 司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더 타임즈는 1842年 신드(Scinde)地區 野戰軍 司官으로 있을 때 敵前에서 패주했던 사실 등을 들추어 냄으로써 그의 지휘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신문은 “크리미아軍의 지휘권을 그토록 소심하고 무능한 人物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²⁸⁾고 결론지었다. 12月 23日 社說에서 더 타임즈는 이렇게 주장했다.

무능·무기력·귀족적 오만·무관심·情實人事·상투적 관행·완고성·그리고 무모한 指揮와 음주 방탕 현상이 세바스토폴陣地와 벨러클라버陣地 그리고 스쿠터리(Scutari)野戰病院과 본국과의 왕복 도중에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우리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듣거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²⁹⁾

참모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명예심과 용기를 지니긴 했으나 聯隊級將校들이나 兵士들과 같이 자기들만 못한 인간들이 처한 不幸에 대해 동정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에 가장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혹평했다. 1주일 후에 더 타임즈는 다시 프랑스軍과 英國軍을 비교하면서 프랑스軍 將校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부하 병사들의 상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英國軍 將校, 특히 래글런卿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날 社說에서는 “우리의 위대한 勝利의 軍隊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무능한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더 軍의 指揮를 맡긴다는 것은 곧 犯罪行爲와 다름없다”³⁰⁾고 주장했다.

28) The Times, 11 Dec 1854, p. 8. and 14 Dec. 1854, pp. 6~8,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101.

29) The Times, 23 Dec. 1854, p. 9, cited by ibid.

30) The Times, 30 Dec. 1854, p. 6, cited by ibid, p. 102.

그러나 러셀의 이와 같은 격렬한 비난은 사실은 자신이 래글런卿과 그의 參謀陣으로부터 받은 경멸적인 대우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러셀은 본국에서 近衛聯本³¹⁾이 최초 자신에게 약속했던 취재 편의 제공을 야전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분노했다. 래글런은 食糧과 기타 편의 제공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新聞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꺼려 하고 또한 러셀이 部隊를 따라 從軍하는 것조차 방해했다. 래글런과의 면담이나 司令部와의 접촉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는 目擊談이나 병사 또는 하급장교들이 전해 주는 부분적인 사실들에 의존해 記事를 作成해야만 했다. 말할 것도 없이 러셀이 받은 대우가 그의 판단과 보도 시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또한 그가 획득했던 많은 잘못된 情報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사화되었던 것이다.³²⁾

그러나 將校團과 軍行政體制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는 달리 兵士들의 武勇에 대한 더 타임즈의 찬양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특히 초기 전투에 관한 러셀의 보도는 영국의 독특한 英雄主義와 武勇에 대한 絳情的 묘사를 통해 全國民들의 사기를 고무시켰다. 그는 세 개의 주요 전투에서의 병사들의 활약에 대해 상세한 기사를 보내 왔다.

그는 1854년 9월 21일 벌어진 엘머(Alma)江 전투에서는, 소총의 일제 사격과 작렬하는 포탄 세례 속에서도 용감하게 江을 건너는 密集步兵들의 모습을 찬양한 데 이어, 10월 25일의 벨러클라버戰鬪에서는 적의 대규모 기병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한 第93高地聯隊(the 93rd Highlanders) 병사들의 투지와, 러시아 騎兵隊를 향해 돌진한 輕騎兵들의 모습을 ‘戰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엄하고도 자랑스러운 장면’이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11월 5

31) 近衛聯本(近衛騎兵聯隊本部)은 최초에는 국왕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병연대에 대한 고유명칭에 지나지 않았으나 육군이 통합 지휘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1798년부터 최고 지휘본부, 즉 陸軍本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議會가 陸軍省을 통해 군을 통제하려 하자, 근위연본은 왕권을 대변하게 됨으로써 이 두 기관이 군의 統帥權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다.

32) C. Hibbert, *The Destruction of Lord Raglan : A Tragedy of the Crimean War* (London : Pelican, 1963), p. 262. 이러한 예는 과거 월남전에서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나라 군과 언론 관계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견된다.

일에 전개된 잉커맨(Inkerman)戰鬪에서도 그는 ‘高貴한 不屈의 의지’를 지닌 英國軍 兵士들이 수적으로 몇 배나 되는 러시아 兵士들의 거듭되는 대규모 공격을 잘 막아냈다고 격찬했다.³³⁾

러셀과 더 타임즈는 비록 몇몇 고급장교들의 개인적인 용기를 찬양하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엘머戰鬪 및 잉커맨戰鬪에서의 승리를 ‘兵士들의 勝利’³⁴⁾라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또한 近年에 이르러 陸軍은 자질이 우수한 新兵을 모집했으며, 이제는 ‘못된 人間이 가장 훌륭한 軍人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³⁵⁾

한편 兵士들의 훌륭한 자질과 용맹성에 대한 더 타임즈의 이와 같은 높은 평가로 인해 전선에서 발생한 負傷兵과 患者 등이 겪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여론의 분노와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野戰病院인 스쿠터리(Scutar)病院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이 러셀이 아니라 같은 신문의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駐在 記者인 체르니(Thomas Cherney)였다. 10月 12日字 기사에서 체르니는 “負傷者를 돌볼 적당한 보호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外科醫師와 看護師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다. 더구나 부상자에게 필요한 붕대는 고사하고 형겔조차도 제대로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³⁶⁾라며 개탄했다.

러셀과 체르니의 기사를 통해 야전군이 겪고 있는 고통을 폭로한 더 타임즈는 군대의 이러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7,000 파운드의 誠金を 콘스탄티노플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더 타임즈의 호소로 인해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이 看護部隊를 이끌고 봉사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녀는 第2陸軍長官이던 허버트卿(Sir Sidney Herbert)의 夫人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다: “저는 더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

33) Russell, War, pp. 180~182, 227~254.

34) The Times, 6 Dec. 1854, p. 8,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103.

35) The Times, 4 Dec. 1854, p. 6, cited by ibid.

36) The Times, 12 Oct. 1854, p. 7, cited by ibid.

해 奉仕해야만 한다는 사실만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³⁷⁾

허버트의 요청으로 스쿠터리病院의 책임자가 된 그녀는 10月 21日 38名의 간호사와 함께 크리미아로 출발했다. 당시 스쿠터리병원은 잉커맨 전투에서 후송된 患者로 만원인데다 비위생적이며 환기조차 안 되는 형편 없는 시설이었다. 환자들은 단순히 負傷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각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등에는 더러운 오물이 몇 겹씩이나 붙어 있었다.³⁸⁾ 몇 명밖에 안 되는 醫師들은 과로에 지쳐 있었으며 醫藥品은 다 떨어져 치료가 中止된 상태였다. 11월 4일 나이팅게일은 이 혼란스런 병원에 도착하자, 곧 관리조직을 개편하고 자기 개인의 財産과 더 타임즈가 마련해 준 기금을 이용하여 醫藥品을 구입했다. 정성 어린 간호와 보살핌으로 인해 그녀는 곧 병사들 사이에서 傳說的 人物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대중의 偶像이 되었다.³⁹⁾

한편 나이팅게일의 활동과 더 타임즈의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크리미아 전선의 지휘관들은 더욱 불신받게 되었다. 러셀은 추운 겨울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막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때마침 전선을 휩쓴 熱病과 痢疾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사들 문제에 주목했다. 1854年 10月 1일부터 1855年 4月 30日까지의 7個月 동안에 크리미아遠征軍의 35%가 죽었는데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이 질병이었다.⁴⁰⁾ 이러한 엄청난 질병의 원인은 불순한 날씨보다는 오히려 過勞와 營養失調, 그리고 형편 없는 피복과 막사시설에 있었다. 병사들은 하루 12時間 이상씩이나 춥고 습기 찬 교통호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했으며, 食事라고는 겨우 소금에 절인 약간의 쇠고기, 비스킷 그리고 녹색커피가 전부였다. 더구나 冬季被服은 처음 6週 동안은 아예 보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寢具라고는 겨우 모포 한 장만이 지급되었을 뿐이었다.

37) Lord Stanmore, Sidney Herbert of Lea : A Memoir, 2 vols.(London : J. Murray, 1906), 1 : 336.

38) Spiers, Army and Society, p. 103.

39) Cecil Woodham-Smith, Florence Nightingale, 1820~1910(London : Constable, 1950), pp. 135~257.

40) Spiers, Army and Society, p. 104.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補給品들이 벨러클라버 부둣가에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兵站局이 그것을 신속히 수송할 수단과 인원부족, 그리고 근무지원 체제상의 융통성 결여로 인해 이러한 不幸이 자초되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12,000벌 이상의 회색 롱 코트가 11월 초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도 9,000벌 이상이 창고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3년에 1회 이상 보급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다.⁴¹⁾ 이듬해 1월 이후에는 코트, 모자, 防水用 각반, 그리고 장화 등이 좀더 자유롭게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원정군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후였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言論이 원정군 사령관과 參謀 및 지휘관리체제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한 데 대한 軍當局의 反應은 어떠했는가? 民間官吏들로 구성된 兵站局에 결함이 있다는 데에는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래글런도 불량한 도로 상태와 輸送手段의 부족, 그리고 참모진의 부족이 보급을 어렵게 만든 原因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제한된 人員과 부족한 수송수단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兵站局長인 필더와 그의 참모진들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며, 문제는 이들 개인들보다는 제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⁴²⁾

또한 고급부관인 이스트코트 장군은 벨러클라버의 비좁은 항구 시설로 인해 보급품의 하역과 보관 그리고 불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쉽게 극복할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軍隊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戰爭의 本質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⁴³⁾ 케임브리지 公爵은 40여 년 간 계속된 平和와 전쟁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효율적인 민간 병참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크리미아事態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했다.⁴⁴⁾

한편, 상당수의 장교들은 더 타임즈社로 서신을 보내어 러셀의 기사를

41) Ibid.

42) Ibid, p. 105.

43) Stanmore, Sidney Herbert, 1 : 298~299.

44) Spiers, Army and Society, p. 105.

지지하고 군내의 많은 문제점들을 폭로하였다. 近衛歩兵 第2聯隊(Coldstream Guards)의 윈드햄(Charles A. Windham) 大領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곳에서 웰링턴과 같은 훌륭한 지휘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래글런 장군의 지도력 결핍을 비난했다. 그는 의약품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더러운 참호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負傷兵들의 곤경을 폭로하고 또한 초기에 평균 6,800명에 달했던 사단 兵力이 2,500명 이하로 줄어든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며, ‘權威主義的인 將軍들은 육군장관에게 엉터리 報告書나 보내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는 무사안일에 젖은 젠틀맨 족속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많은 고급장교들은 新聞報道에 대해 심각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확고한 忠誠心과 愛國心에 불타고 있던 그들은 중군기와와 신문 편집자들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기사’에 분개하였다. 러셀의 기사에 대해 처음에는 단지 ‘천박하고 성가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들 장교들은 점차 이 ‘괘씸하고 수치스러운’ 경멸적 論調의 보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우리의 신문들은 니콜라이 황제의 가장 절친한 親舊이며, 특히 더 타임즈는 급진 과격 사상에 미쳐 있다”⁴⁵⁾고 비난하게 되었다.

이들 장교들은 대체로 세 가지 觀點에서 신문 보도를 비판했다. 첫째, 그들은 신문의 비판이 不公正했으며, 특히 래글런卿에 대한 이들의 視覺은 너무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심프슨(James Simpson) 將軍은 래글런 장군이 1855年 6月 28日 급사하게 된 원인은 이러한 지속적이고도 악의에 찬 批判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⁶⁾ 둘째, 일부 장교들은 신문 보도 내용이 정확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러한 내용은 활자화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로크비卿(Sir Rokeby)은 이 당시 新聞들을 ‘자신의 등지를 더럽히는 아주 못된 새’⁴⁷⁾에 비유했다. 셋째, 많은 장교들은 더 타임즈의 끊임없는 폭로 기사가 결국은 軍의 安全을 위협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45) Spiers, *Army and Society*, p. 106.

46) *Ibid.*

47) *Ibid.*

예를 들어 1854年 10月 23日 러셀이 최전선의 砲兵이 보유한 砲의 숫자와 위치, 그리고 필요한 화약의 量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을 때 이러한 의문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러셀은 나중에 이에 대해 英國新聞으로부터는 아무런 情報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러시아측 고르차코프公(Prince Gortschakoff)의 回顧를 인용하면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反駁했으나, 이러한 변명은 별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⁴⁸⁾

러셀의 기사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立證할 만한 증거들은 많다. 陸軍醫務監(the Director General of the Army Medical Department)인 스미스 博士(Dr. Andrew Smith)는 1,500名の 부상병이 軍醫官도 동행하지 않은 채 캥거루(Kangaroo) 號에 실려 스쿠터리로 후송 도중에 수백명이 사망했다는 신문 보도를 비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배에는 3명의 軍醫官과 450名の 부상자가 타고 있었으며, 도중에 사망한 인원은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⁹⁾

나이팅게일조차도 이 사건에 대한 과장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케너웨이(C.E. Kennaway)도 1856年 한 강연에서 더 타임즈가 1854年 12月 6日 第2판에서는 軍隊 內에 알콜 중독자가 적다고 했으나, 같은 날 第7판에서는 모든 新兵들이 알콜 중독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앞서의 보도를 부인한 사실을 지적했다.⁵⁰⁾

언론에 의한 가장 큰 犧牲者였던 래글런 將軍은 言論檢閲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法務官에게 지시하여 러셀이 기사 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본국의 뉴케슬 陸軍長官에게도 言論街(Fleet Street)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뉴케슬 公爵은 신문 기자들의 보도 내용과 전선 장병들의 투고내용을 신중하게 사전 검토해 줄 것을 編輯者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다.⁵¹⁾ 이에 따라 모닝 포스

48) Atkins, Russell, 1:255~256.

49) Hew Strachan, Wellington's Legacy: The Reform of the British Army, 1830~1854(Manchester: Manchester U.P. 1984), p. 2.

50) Ibid.

51) The Times, History, 2: 576. 러셀은 이에 대해 자신은 래글런에게 사전에 기사 원고를 검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tkins, Russell, 1: 3.

트(Morning Post), 데일리 뉴스(Daily News)의 편집자들만 아니라 더 타임즈의 편집자인 딜레인은 이후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사만을 다루도록 자제할 것을 공작에게 약속했다.⁵²⁾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戰爭行爲를 內査하고 고급 지휘관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궁극적으로 軍改革을 촉구하는 新聞들의 역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근본적으로 검열 재량권이 편집인에게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당시 언론 검열기준은 전적으로 편집자와 특파원 개인의 愛國心에 의존하고 있었다. '新聞이 가치 있는 軍事情報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이 政府와 議會 사이에서 합의된 유일한 기준이었다.⁵³⁾ 심지어는 1855년 4월 議會의 소위 '세바스토폴 委員會(the Sebastopol Committee)'에서 前陸軍長官인 뉴케슬이 聯合軍 戰略에 관해 증언했을 때, 그가 언급했던 軍事的 狀況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內容을 公開하였다.⁵⁴⁾ 그런데 一般大衆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러한 大衆公開原則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대 新聞의 정치적 기능은 주로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빠르고 정확한 戰況報道는 국민 대중을 정부의 戰爭遂行 努力에 일치시킴으로써 애국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인내심을 고양시켰다. 둘째, 新聞에 의해 형성된 大衆의 비판의식은 정부 조치에 대한 壓力 또는 支持 역할을 하였다. 셋째 機能은 주로 上層階級과 高級官吏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들은 新聞의 영향력과 자유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전쟁의 패배 사실에 대한 공포나 국가 지도급 人士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에 따른 문제점 등 國家의 대외적 권위 유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新聞의 機能이란 자신들에게 정확한 情報를 제공하여 군사적 效率性을 제고시키도록 政府에 壓力을 넣게 하는 지극히 제한된 대내

52) Anderson, *Liberal State*, p. 73. 딜레인은 즉시 '海軍과 陸軍(Naval and Military)'이라는 제목의 주요정보 관련 기사의 삭제를 결정했다.

53) *Ibid.*

54) *Ibid.*, p. 74.

정치적 기능으로만 인식되었다.⁵⁵⁾

그러나 전쟁말기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유로운 言論에만 의존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오히려 軍隊와 政府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1855년 초 전국을 휩쓸었던 階級葛藤과 국민여론의 分裂만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더구나 크리미아戰爭에 관한 한, 더 타임즈를 비롯한 新聞들은 輿論을 반영하기보다는 여론 형성을 앞장서 주도해 온 측면이 강했다. 新聞의 지나친 대 정부 공격으로 인해 1855년 봄에 이르러서는 신문이 국민단결이나 희생정신을 고양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⁵⁶⁾

한편, 더 타임즈의 독주는 軍人들뿐만 아니라, 특히 보수적인 新聞들로부터도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했다. 1854년 11월 23日 및 30日字 記事에 대해 더 데일리 뉴스는 '타임즈가 토해 낸 허위에 찬 중상 모략'이라고 비난했으며, 맨체스터 가디언(The Manchester Guardian)은 '엄청난 무분별과 방종'이라고 개탄했다.⁵⁷⁾ 더구나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더 타임즈를 '英國 內의 러시아 同盟軍(Russian Allies in England)'⁵⁸⁾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1855년 가을에 이르자, 그 동안 더 타임즈를 비난해 온 政治家, 軍人, 急進主義者, 知識人 등은 드디어 '反타임즈同盟(Anti-Times League)'⁵⁹⁾을 조직하였으며, 종교계 신문들도 여기에 가세하였다. 특히 더 타임즈에 의해 자신의 名聲이나 이해 관계에 손상을 입었던 人士들의 비난은 극심했다. 1855년 말에 이르러 前首相인 러셀卿(Lord John Russell) 등은 더 타임즈에 대적할 새로운 新聞을 창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3日에는 더 새터데이 리뷰(The Saturday Review)가 창간되었다.

한편, 더 타임즈를 비롯한 英國新聞들의 전시 보도는 러시아뿐만 아니

55) Ibid.

56) Ibid. 그 전까지도 外務長官 클라렌든 같은 人士는 '정부에 대한 모든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여론도 더 타임즈를 '최고의 애국자'라고 믿고 있었다.

57) The Daily News, 25 Dec. 1854, p. 4, and The Manchester Guardian, 27 Dec. 1854, p. 4, cited by Spiers, Army and Society, p. 106.

58) The Spectator, 30 Dec., 1854, p. 1, cited by ibid.

59) Anderson, Liberal State, p. 76.

라 대륙국가들에게도 英國의 國力과 軍事力을 재평가할 기회를 제공했다. 빅토리아女王은 이 점을 들어 自由言論이 得보다도 失이 많다고 불평하였으며,⁶⁰⁾ 英國의 해외 여행자들도 점차 英國의 對外的 威信이 실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軍事力을 國力評價의 절대적 요소로 보고 있던 당시의 유럽 大陸國家들은 영국 신문들이 폭로한 엄청난 양의 軍事情報를 근거로 英國을 國력이 쇠퇴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되었다.⁶¹⁾ 外務長官인 클라렌튼은 이렇게 개탄했다: “그 新聞(The Times)은 英國이 대항해 싸워야 하는 最惡의 敵이다. 그 新聞은 우리가 無力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⁶²⁾

그러나 新聞의 집요한 공격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커다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에 壓力을 가하기 시작했다. 第2 陸軍長官이던 허버트는 더 타임즈의 大攻勢가 시작되기 전인 1854年 12月 22日 래글런 卿에게 보낸 書信에서 현재 政府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人情머리 없고 불만에 가득 찬 대중 앞에서 정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별로 장담할 수가 없다”⁶³⁾고 고백했다.

자기 자신이 ‘大衆의 復讐心의 첫 희생자’일 수 있음을 깨달은 陸軍長官 뉴케슬 公爵도 점차 사태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비판적인 신문 기사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미 4月 28日에는 러셀이 폭로한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래글런 卿에게 요구한 바 있었다. 또한 그는 크리미아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 指揮官 및 參謀組織의 無能과 통찰력 부족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이 크리미아軍의 고통과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議會와 市民大衆의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여 부사령관인 잉글랜드 卿을

60) Sir George Douglas and Sir George Dalhousie Ramsay, The Panmure Papers, 2 vols.(London : Hodder & Stoughton, 1908), 2:150.

61) 1864년 슬레스비히와 홀슈타인 문제로 프러시아가 덴마크를 침범하려고 하였을 때, 파머스턴은 비스마르크에게 영국의 군사개입을 경고하였으나 비스마르크는 이를 무시하고 침략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다시 한 번 군사적으로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Barnett, Her Army, p. 294.

62) Anderson, Liberal State, p. 80.

63) Stanmore, Sidney Herbert, 1 : 308~309.

비롯한 관계 참모들의 교체를 요구했다.⁶⁴⁾

그러나 래글런 司令官은 자신의 참모들에 대한 문책을 단호히 거부했다. 래글런의 이러한 정면 거부는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애버딘 首相의 聯立政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1855年 1月 23日 웨필드(Sheffield)州 출신의 무소속 의원인 로우버크(John Arthur Roebuck)는 세바스토폴에서의 軍事狀況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議會特別委員會(A Select Committee) 구성을 요구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로우버크法案은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애버디政權은 이 표결에서 305 : 148로 패배하여 총사퇴하였으며, 소위 「로우버크 위원회」는 예정대로 구성되었다. 이제 파머스톤(Henry John Temple Palmerston, 3rd Vt.)의 새로운 행정부는 議會 다수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改革路線을 선택해야만 했다.

파머스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신임 육군장관 판무어는 本國陸軍뿐만 아니라 크리미아遠征軍에게까지 과감한 改革을 추진했다. 1855年 2月 12日 閣議에서 판무어는 심프슨(James Simpson) 中將을 크리미아軍 參謀長으로 임명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심프슨의 임무는 래글런卿의 명령을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을 감독하는 외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리 將軍과 이스트코트 將軍을 포함한 參謀機能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판무어卿은 래글런卿에게 서신을 보내어 에어리 장군과 이스트코트 장군에 대한 해임은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수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판무어의 改革意志가 강력할수록 래글런의 반발도 거세어져서 자신의 참모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그와 本國政府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한편 로우버크委員會는 4個月 이상의 활동기간을 통해 證言을 청취했다. 이 위원회 모임은 항상 공개로 진행되고 빠짐없이 新聞에 보도되었으며, 케임브리지 公爵, 에반스 中將 등 군인들과 애버딘 內閣의 몇몇 각료 등 다양한 인물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2,000여 개가 넘는 질문에 대해 답

64) Spiers, Army and Society, p. 107.

변했다.⁶⁵ 그러나 대부분의 證人들은 失敗의 책임이 특정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行政體制에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크리미아에서의 실패 요인은 軍隊의 고질적인 관리 결함과 나아가 政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압축되었다. 1855년 6월 18일자 최종 보고서에서 同 委員會는 陸軍當局이 11월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輸送 및 醫療施設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同 報告書는 정부가 크리미아에 있는 러시아軍의 무장 정도와 특히 세바스토폴 要塞의 군사력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遠征軍을 구성했다고 비난했다. 報告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行政府는 원정군이 즉각 승리할 것으로 희망하고 예견했다. 그리하여 長期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冬季作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즉 충분한 事前 情報가 없이 계획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군사작전이 감행되었던 것이다. 우리 行政府의 이러한 행위야말로 우리 軍이 겪은 커다란 不幸의 제일 큰 원인이다.⁶⁶

크리미아에서의 軍事的 勝利는 영원히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1855년 9월 8일 세바스토폴을 점령함으로써 그 전망은 다시 밝아졌다. 그러나 요새 함락 소식은 영국의 여론을 다시 兩分시켰다. 많은 議員들과 프랑스측은 平和를 원하고 있었으나, 軍事的 冒險家인 파머스톤과 쇼비니즘에 몰든

65) 民間人 출신 議員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전선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전장공포로 인해 실제로는 크리미아에 접근도 못한 채 고작 스쿠터리 野戰病院만을 방문했다. 드루몬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戰爭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채 안락한 상황에 안주하고 있던 무기력한 민간 정치인들은 오직 순진하기만 한 軍出身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면서 인간의 고통이 이 전쟁에서만 특별히 존재했던 것처럼 주장하며, 또한 이러한 고통이 마치 특정한 理念이나 先見之明에 의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66) Spiers, *Army and Society*, p. 112. 이 報告書는 그 동안의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중요한 證人들이 소환되지도 않았으며 공정한 조사활동이 정부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結論은 대체로 공정하면서도 온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래글런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세바스토폴 중심부에 대한 공격을 주저했다는 평가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나, 애버딘 行정부는 평화시의 준비체제로 유럽전쟁에 끼어 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Strachan, *Legacy*, p. 3.

대부분의 신문들은 세바스토폴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동안의 치욕을 보상해 줄 만한 새로운 軍事行動을 촉구했다.

따라서 言論들은 전쟁을 지속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司令官 심프슨 將軍을 비난했다. 그러나 陸軍長官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심프슨은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新聞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群衆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없으며, 다만 나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⁶⁷⁾

그러나 러셀이 평화를 추구하려는 심프슨을 비난하자, 윈드햄 大領은 러시아의 무라비에프(Muravieff) 將軍 휘하의 10萬 正規軍과 또 다른 7萬 예비병력과 대치한 英國軍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며 ‘무책임한’ 러셀에게 항의했다.⁶⁸⁾

결국 戰爭을 계속하기를 꺼려 하는 프랑스의 壓力으로 파머스톤도 平和 協商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차례의 비밀 접촉 끝에 1856年 2月 平和 協商이 시작되었으며 한 달 뒤인 3月 條約이 조인되었다.

4. 맺 음 말

크리미아戰爭은 그 수행방식 면에서 前近代에서 20세기 現代로 넘어오는 分水嶺이었다.⁶⁹⁾ 그것은 웰링턴과 스페인半島 戰爭으로 대변되는 18세기 전술 개념 속에서 성장한 將軍들에 의해 지휘되었으면서도, 현대식 鐵道와 少銃, 電信 그리고 交通壕가 사용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에 의해 야기되었던 크리미아에서의 참담한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와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19세기 후반 영국 육군의 근대화 개혁은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다.

크리미아事態의 호전으로 의회와 신문에 의해 주로 야기된 論爭은 일단

67) Ibid, 1 : 431, 453.

68) Atkins, Russell, 1 : 247.

69) Strachan, Legacy, p. 1. 크리미아戰爭은 英國陸軍改革에서뿐만 아니라 世界戰爭史의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대단히 큰 것이다.

막을 내렸으나, 아무튼 陸軍改革運動은 그 過程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戰時 自由言論은 활동 영역과 영향력 면에서 그 眞價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더 타임즈는 일반 병사들이 처한 곤경과 궁핍에 대해 輿論의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에 앞장섰는가 하면 나이팅게일을 비롯한 看護部隊를 파견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더 타임즈는 폭로 기사를 통해 애버딘 政府를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그 뒤를 이은 파머스톤 政府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크리미아軍 司令官이었던 래글런卿과 그의 후임 司令官인 심프슨卿은 더 타임즈의 이러한 무분별한 폭로 기사에 분개한 나머지 그 統制와 檢閱를 요구하였다. 특히 심프슨은 “言論이야말로 본국에서 우리의 최고 上典이며, 바로 그 사실이 陸軍을 지휘하는 영국 제트맨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⁷⁰⁾이라며 분개했다. 軍 指揮官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결국 전쟁이 끝나는 달에 이르러 전시 보도 규제를 위한 첫 명령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新聞은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등 戰時 軍 改革運動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改革에 관한 그 限界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從軍記者들은 그날 그날의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인상을 기록하였을 뿐이며, 개혁의 세부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문제의 記者로 주목받던 러셀이 크리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首相인 파머스톤은 그를 朝餐에 초대하여 그가 군에 대해 느낀 문제점과 앞으로 군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러셀은 채 30분도 안 되어 “신통치 않은 人物들과의 인터뷰는 그 만듦 지 오래 되었다”⁷¹⁾고 변명하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도망치고 말았다. 사실은 전쟁터에서 軍隊의 한 단면만을 피상적으로 보아 온 그로서는 이미 第2 陸軍長官을 역임한 바 있으며, 現役 首相인 노련한 정치인인 파머스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러셀은 軍 改編의, 중요성 같은 것은

70) Douglas and Ramsay, Panmure, 1 : 453.

71) Atkins, Russell, 1 : 261.

아예 생각조차 않고 있었던 것이다.⁷²⁾

아마도 일부 新聞 編輯人들이나 論說委員들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개혁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거의 예외 없이 戰爭의 치부와 지휘관 또는 官吏들의 실책을 폭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軍 行政上의 결함이나 비능률적인 참모업무, 그리고 지휘관의 무능 등을 發見하는 대로 뉴스거리로 만들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新聞의 關心은 軍 改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삿거리를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감정적인 人身攻擊 등이 개혁 운동을 압도하게 됨으로써 新聞에 의한 개혁운동은 상호 보복적인 비난과 독설이 오가는 저급한 수준으로 급속히 타락하였다. 한편 新聞의 비난 대상이 되었던 人物들은 대부분 근무중 殉職하거나(例: 래글런卿과 이스트코트 將軍), 또는 크리미아 調查委員會로부터 무혐의로 처리됨으로써(例: 뉴케슬 公爵) 이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여론의 동정을 받게 되었다.⁷³⁾

이리하여 新聞 등에 의한 개혁 운동이 점차 信賴를 잃게 됨으로써 改革의 주도권은 자연히 議會로부터 行政府로 넘어 가게 되었다. 실제로 行政府가 개혁 주도권을 장악하자, 벨러클라버로부터의 보급품 수송이 원활해지는 등 가시적인 效果가 나타났다.

그러나 戰後의 軍 改革問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크리미아 參戰兵士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군에 대한 국민들의 認識의 개선 문제이다. 遠征軍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선하였으며 처국적인 환영 행사가 전개되었다. 女王은 1856年 8月 5日字 近衛騎兵聯隊本部 명령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戰爭에 수반되었던 엄청난 난관에 대한 兵士들의 인내와 노력에 대해 찬양했다. 또한 1857年 6月 26日 하이드 파크(Hyde Park)에서 크리미아전쟁에 관한 사실상의 마지막 公式行事로 열린 대규모 查閱式에서 女王은 모든 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빅토리아 십자 훈장(Victoria Cross)’을 크

72) Ibid., 1 : 262.

73) 래글런卿은 1855年 6月 痢疾에 걸려 죽었으며, 이스트코트 장군은 크리미아에서 殉職했고 또한 하던지卿은 이듬해 9월에 죽었다.

리미아 參戰勇士들에게 수여했다. 그 동안 陸軍에 대해 비관의 필봉을 서슴없이 휘둘러 온 더 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했다: “지난 날 육군에게 가해졌던 어떠한 敵對行爲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제 붉은 코트의 우리 兵士들은 전국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⁴⁾

軍을 대하는 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크림리아戰爭은 결과적으로 軍隊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불러 모았다. 세바스토폴戰線에서 온갖 고통을 말없이 감내하며 英雄的 愛國心을 발휘했던 兵士들의 모습은 그들이 처한 곤경과 복지문제에 대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라이트(Henry P. Wright) 牧師는 이제까지 上流層은 병사들을 단순히 ‘暴動 鎮壓用’이나 ‘閱兵式用’으로만 간주해 왔으며, 일반 대중들조차도 兵士들을 오직 욕설·폭음 그리고 싸움 질이나 하는 存在들로 생각해 왔다고 회상했다.⁷⁵⁾ 그러나 戰爭을 통해, 특히 종군기자들의 생생한 보도를 통해 이 偉大한 병사들도 마땅히 구원되어야 할 영혼의 소유자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新聞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國家도 병사들의 福祉問題에 관심과 관용을 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74) The Times, 22 Oct. 1856, p. 6, cited by Spiers, *Army and Spies*, p. 116.

75) Rev. H.P. Wright, *England's Duty to England's Army*(London: Rivingtons, 1858), pp. 6, 36.

新刊紹介

구 분	내 용
韓國軍事史論文選集 (古代篇) • 國防軍史研究所 • 4×6배판 • 1996. 7. 31.	한국고대군사사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 가운데서 25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또 그 동안의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연구사 정리와 한국고대군사사 관계 논문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한국고대군사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앞으로 고려시대편, 조선전기편, 조선후기편, 개항기편, 일제시대편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韓民族戰爭通史 III (朝鮮時代 前篇) • 柳在城 著 • 신국판 • 1996. 9. 14.	14세기 말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약 250년 동안에 걸쳐서 전개된 倭寇討伐戰爭·野人征伐戰爭·朝日戰爭(倭亂)·朝淸戰爭(胡亂) 등 對異民族鬭爭의 과정과 因果를 軍事史의 측면에서 總體的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韓國古代軍事編年史 • 裴亢燮 編 • 1996. 10. 30	한국측 기록은 물론 중국측 史書에 나오는 기사까지 網羅하여 古朝鮮時代부터 南北國時代까지의 軍事史關係 史料들을 年次체로 정리한 것이다. 對內외의 전쟁이나 內亂과 관련한 기사를 비롯하여 軍事組織이나 군사관련 官職 등 各급의 군사제도, 무기 및 군사시설, 軍事思想이나 國防政策과 관련한 사항들을 포괄하여 정리하였다.
韓國戰爭(中) • 蔡漢國 外 • 신국판 • 1996. 12. 28.	國防軍史研究所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새로이 공개된 자료와 參戰勇士들의 證言을 토대로 과거에 편찬된 한국전쟁사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韓國戰爭>이란 제목으로 간행하고 있는 상·중·하 총 3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이다. 본 中卷에서는 중공군 개입에서부터 휴전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구 분	내 용
韓國戰爭의 捕虜 • 金幸福 著 • 신국판 • 1996. 12. 28.	韓國戰爭 기간 중 유엔군 및 共產軍의 捕虜 및 포로수용소 현황을 상술하고, 雙方의 포로관리, 親共捕虜 및 反共捕虜의 투쟁 및 저항활동과 포로 送還을 위한 협상 및 송환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한국전쟁 포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韓國戰爭被害統計集 • 金元權 著 • 신국판 • 1996. 12. 28.	韓國戰爭 기간 중 人的·物的인 被害現況을 관계기관과 협조, 檢證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최신의 統計集이다. 그 내용은 먼저 한국전쟁의 경과를 요약한 다음 피해현황을 국군(각군별), 경찰 및 민간인 그리고 유엔 參戰國 순으로 기술하였다. 공산국(북한, 중공, 소련)의 피해현황도 附錄으로 첨부하여 참고가 되게 하였다.
越南派兵과 國家發展 • 羅鐘三 著 • 신국판 • 1996. 12. 28.	이 책은 월남전 연구의 一環으로서 월남전과 관련한 軍事戰略,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枯葉劑 등 3개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1권의 책자로 엮은 것이다. 월남전의 經過, 월남파병의 經緯 및 월남파병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고엽제의 성분과 毒性 등에 관한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韓國 軍事遺物集 • 車聲煥 編 • 4×6배판 • 1996. 12. 28.	이 책은 古代로부터 光復 이전까지의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武器類와 軍事用具들을 사용기능별로 분류하여 수록한 遺物集이다. 군사유물사에 대한 一目瞭然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머리에 總說을 수록하였으며, 주요 遺物類를 크게 投射武器, 短兵器, 長兵器, 火藥武器, 甲冑, 馬具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구 분	내 용
<p>中共軍의 戰略戰術變遷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舜圭 著 • 신국판 • 1996. 12. 4. 	<p>‘중공군’이 장기적인 ‘혁명전쟁’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戰略과 戰術을 본격적으로 穿鑿한 연구서이다. 본서는 모택동을 비롯한 중공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軍事思想과 그들이 驅使한 전략전술이 中國軍事思想의 ‘總和’로서 수천년간 綿綿히 내려오는 중국군사사상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본격적인 역사적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다.</p>
<p>戰死傷者功勞宣揚事業發展方案 研究報告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 신국판 • 1996. 12. 28. 	<p>이 연구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목숨 바쳐 싸웠던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後孫들의 自矜心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범국민적인 護國思想을 昂揚시키기 위한 국가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韓國歷代의 宣揚事業制度, 세계 각국의 선양사업실태 등을 연구, 수록하였고 또한 報勳受惠者들과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그들의 요망을 발전방안에 반영하였다.</p>
<p>護國戰歿勇士功勳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 4×6배판 • 1996. 12. 28. 	<p>이 책은 8·15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散華하신 분들의 殺身報國 정신을 선양하여 진 국민의 護國思想을 昂揚하기 위한 사업의 一環으로 편찬된 것이다. 『護國戰歿勇士功勳錄』 제 1권에는 大邱暴動事件, 4·3濟州島 暴動事件, 麗水·順天反亂事件, 共匪討伐作戰 및 38도선상 충돌사건 등의 사건개요와 전사자의 인적사항 및 功績사항, 소속부대의 전투사항, 전사일자 및 전사장소, 安葬處 및 안장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p>

구 분	내 용
<p>歷代兵要 上·中·下 (軍事史研究資料集 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 4×6배판 • 1996. 12. 10. 	<p>朝鮮朝 제4대 世宗의 명에 의하여 1451년에 春秋館과 集賢殿의 학자들이 中國과 우리 나라의 역사 기록 가운데에서 國防에 거울삼을 만한 262개의 戰爭 事例를 가려 뽑아 年代順으로 集大成한 戰史集인 歷代兵要를 影印한 것이다.</p>
<p>韓國戰爭資料叢書(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 국배판 • 1996. 12. 30. 	<p>이 책은 미국의 國家安全保障理事會議(NSC)에서 나온 1948~1954년 간의 國內外 政策關聯 文書 가운데 미국의 對韓國 및 對極東政策과 관련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제1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로부터 韓國戰爭 발발 시점까지의 미국의 대한 정책, 제2권은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의 戰時對應政策, 제3권은上記 전 기간 중 미국의 對中國 및 對日本政策을 수록하였다.</p>

『軍史』誌 投稿案内

1. 原稿內容/範圍

- 가. 韓國의 歷代 軍事思想·政策/制度·戰爭史·軍史財(遺物, 遺跡)에 관한 내용.
- 나. 韓國의 安保와 有關한 政治·外交·軍事分野에 관한 내용.
- 다. 世界 各國의 軍事問題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國防政策 및 戰略·戰術研究에 寄與할 수 있는 내용.

2. 原稿作成 要領

- 가. 原稿分量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註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P/C용지(A4용지) 15~20매로 함.
- 나. 原稿作成은 國·漢字를 混用하고 固有名詞 또는 外國語는 原語를 ()안에 밝힘.
- 다. 註는 脚註를 원칙으로 하고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數字로 함(예 : 18).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저서』,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의 방식으로 할 것.

3. 投稿要領

- 가. 提出하는 原稿는 그대로 掲載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어야 함.
- 나. 郵送時 봉투에는 〈軍史誌原稿〉, 原稿表紙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력/경력을 명기할 것.(반드시 디스켓을 함께 보낼 것)
- 다. 提出處
140-600 서울 체신청 직영우체국 사서함 113호 民族軍史部
또는
140-021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國防軍史研究所 民族軍史部

4. 原稿採擇 및 稿料

- 가. 原稿掲載 與否는 當 研究所에서 審議 후 決定함.
- 나. 接受된 原稿는 掲載與否에 관계없이 一切 返還치 않음.
- 다. 掲載原稿는 所定の 稿料 支給.

5. 其 他

- 가. 『軍史』는 年間 2회 發刊하고 있음(前半期 : 6월, 後半期 : 12월). 따라서 3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전반기에, 9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후반기에 게재함.
- 나. 問議/連絡處
國防軍史研究所 民族軍史部 軍史誌 編輯擔當官
전화 : 02) 709-3186

軍 史 (第 33 號)

1996年 12月 20日 印刷

1996年 12月 28日 發刊

發行處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嚴 燮 駢

印刷人 軍 人 共 濟 會
第 1 文 化 事 業 所

정간위 심의필(96-11-6-57)

<非賣品>

本誌에 揭載된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
見解가 아님.

